

2020

# 국가결핵관리지침

2020. 1.



질병관리본부



## 2020년 국가결핵관리지침 안내문

**1** 본 책자는 결핵 예방·관리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 주요 수록내용은 결핵예방법, 결핵환자 관리, 결핵 역학조사, 결핵 검진 및 치료에 대한 기본지식 및 행정사항입니다.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 협력하여 발간한 ‘결핵진료지침 3판(2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학적 결핵진단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균분석과에서 발간한 ‘결핵검사지침2(2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지침에 대한 오류 정정, 내용 수정, 보완 및 제언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로 연락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문 의 : 043-719-7326, 7337

(E-mail) endtb@korea.kr



2020

# 목 차 Contents

## I. 개 요

제1절. 결핵 현황	1
1. 국제 동향	1
2. 국내 동향	2
제2절. 국가결핵관리사업	2
1. 추진 배경	2
2. 결핵퇴치사업의 추진 경과	3
3. 결핵관리 종합계획	3
4.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관별 역할	2
5. 행정사항	2

## II. 결핵 신고·보고· 사례조사

제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6
1. 개요	6
2.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작성	6
제2절. 사례조사	10
1. 개요	10
2.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작성	11

## III. 결핵환자 관리

제1절. 환자 상담 및 교육	6
1. 개요	6
2. 내용	6
3. 환자 기록 관리	8
4. 결핵 산정특례 제도 안내	9
제2절.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2
1. 개요	5
2. 전염성 결핵환자 격리 조치(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	3
3.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관리	5

# 목 차

## Contents

---

제3절.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	7
1. 개요 .....	57
2. 관리방법 및 내용 .....	95
3. 관리종료 .....	6
4. 관리중단자(소재불명 결핵환자)에 대한 후속조치 .....	1
제4절. 입원명령 .....	4
1. 개요 .....	64
2. 입원명령 실시 및 해제 .....	61
3. 입원명령환자 전원 시 조치사항 .....	8
4. 입원명령 해제 후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직접 복약 확인 .....	9
제5절. 격리치료명령 .....	37
1. 개요 .....	73
2. 절차 및 방법 .....	3
제6절.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 .....	5
1. 사업 수행체계 .....	57
2. 지원 범위 .....	6
제7절.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	2
1. 개요 .....	92
2. 등록 및 주기적 관리 .....	49
3. 항결핵주사제 투약 연계 및 비용 지원 .....	9
4. 다제내성 결핵 신약 사전심사제 운영 .....	10
제8절. 외국인 결핵 관리 .....	0
1. 외국인 결핵 검진 .....	3
2.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	8
3. 입국금지대상자 관리 .....	0
제9절. 노인 결핵 관리 .....	1
1. 노인 결핵검진 .....	Ⅲ
2. 노인 유소견자 관리 .....	Ⅱ
3. 노인 결핵환자 관리 .....	0

제10절. 노숙인 등 결핵 관리 ..... 2

- 1. 노숙인 등 결핵 검진 ..... 2
- 2. 노숙인 등 유소견자 관리 ..... 2
- 3. 노숙인 등 결핵환자 관리 ..... 3

제11절.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 4

- 1. 개요 ..... 134
- 2. 사업 내용 ..... 135
- 3.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 환자관리 모니터링 ..... 9
- 4.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 0
- 5. 행정사항 ..... 12
- 6. 예산 기준 ..... 13

IV. 결핵 역학조사

제1절. 가족접촉자조사 ..... 8

- 1. 개요 ..... 148
- 2. 조사 절차 및 방법 ..... 19
- 3. 기관별 역할 ..... 12
- 4.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 ..... 61
- 5.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3

제2절.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 8

- 1. 개요 ..... 168
- 2. 결핵역학조사 방법 및 절차 ..... 71
- 3. 결핵역학조사 기관별 역할 ..... 91
- 4. 대상 기관별 결핵역학조사 ..... 78
- 5.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사 ..... 12
- 6.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관리 ..... 82
- 7.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현황 ..... 32

# 목 차

## Contents

### V. 결핵 검진 및 치료

제1절. 결핵 검진사업 .....	18
1. 결핵 검진 개요 .....	26
2. 대상별 검진 사업 .....	29
제2절. 결핵 치료(결핵진료지침 권고요약 일부 발췌) .....	6
1. 결핵의 치료 .....	26
2. 결핵 재치료 및 약제내성 결핵의 치료 .....	82
3. 특수한 상황에서의 결핵 치료 .....	13

### VI.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제1절. 잠복결핵감염 검진 .....	22
1. 기본 원칙 .....	234
2.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	24
3. 검진 방법 .....	25
4. 검진 결과 통지 및 증빙서 발급 .....	62
5. 결과등록관리 .....	27
6. 행정사항 .....	237
제2절. 잠복결핵감염 치료 .....	22
1. 기본 원칙 .....	247
2. 치료 대상 .....	247
3.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 .....	22
4. 결과등록관리 및 증빙서 발급 .....	15
5. 치료 부작용 관리 .....	22
6. 행정사항 .....	257
7.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	85

### VII. 결핵의 실험실 검사

1. 결핵의 실험실 검사 .....	8
2. 결핵균 유전형 검사 .....	8
3. 결핵검사 정도관리 .....	8



VIII. 인수공통결핵관리	1. 목적 ..... 270
	2. 기본방향 ..... 270
	3. 행정단위별 역할과 기능 ..... 272
	4. 인수공통결핵 관리 및 접촉자 검사 ..... 277
IX. 결핵예방 홍보	1. 추진개요 ..... 276
	2. 결핵예방의 날 ..... 281
	3. 홍보자료 활용안내 ..... 288
X. 국가결핵관리사업 감시 및 평가	1. 목적 및 추진방향 ..... 284
	2. '20년 결핵관리 지표 ..... 288
	3. 모니터링 자료의 환류 ..... 288
XI. 부 록	제1절.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집행지침 ..... 6
	제2절. 결핵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 및 예산의 집행 ..... 3
	제3절. 결핵 필수재 수급관리 ..... 38
	제4절. 「결핵예방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 9
	제5절. 자주 묻는 질문 ..... 8
	제6절. 서식 ..... 338
별책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보건소)
별책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의료기관)



## 주요 개정사항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목차	I. 개요 제1절 결핵 현황 제2절 국가결핵관리사업	I. 개요 제1절 결핵 현황 제2절 국가결핵관리사업
	II. 결핵 신고·보고·사례조사 제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제2절 사례조사	II. 결핵 신고·보고·사례조사 제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제2절 사례조사
	III. 결핵환자 관리 제1절 환자 상담 및 교육 제2절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제3절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제4절 입원명령 제5절 격리치료명령 제6절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 제7절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제8절 외국인 결핵관리 <u>&lt;신설&gt;</u> <u>&lt;신설&gt;</u> 제9절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III. 결핵환자 관리 제1절 환자 상담 및 교육 제2절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제3절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제4절 입원명령 제5절 격리치료명령 제6절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 제7절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제8절 외국인 결핵관리 제9절 노인 결핵관리 제10절 노숙인 등 결핵관리 제11절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IV. 결핵 역학조사 제1절 가족접촉자조사 제2절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IV. 결핵 역학조사 제1절 가족접촉자조사 제2절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V. 결핵 검진 및 치료 제1절 결핵 검진사업 제2절 결핵 치료	V. 결핵 검진 및 치료 제1절 결핵 검진사업 제2절 결핵 치료
	VI.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제1절 잠복결핵감염 <u>검진사업</u> 제2절 잠복결핵감염 치료	VI.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제1절 잠복결핵감염 <u>검진</u> 제2절 잠복결핵감염 치료
	VII. 결핵의 실험실 검사	VII. 결핵의 실험실 검사
	VIII. 인수공통결핵관리	VIII. 인수공통결핵관리
	IX. 결핵예방 홍보	IX. 결핵예방 홍보
	X. 국가결핵관리사업 감시 및 평가	X. 국가결핵관리사업 감시 및 평가
	XI. 부록 제1절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집행지침 <u>&lt;신설&gt;</u> <u>&lt;신설&gt;</u> 제2절 결핵예방법 <u>&lt;신설&gt;</u> 제3절 서식	XI. 부록 제1절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집행지침 제2절 결핵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 및 예산의 집행 제3절 결핵 필수재 수급관리 제4절 결핵예방법 제5절 자주 묻는 질문 제6절 서식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p>I. 개요</p>	<p>제1절 결핵현황</p> <p>1. 국제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계(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 기준 현황</li> </ul> <p>2. 국내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 사망자수(2007-2018년)</li> </ul> <p>제2절 국가결핵관리사업</p> <p>4.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관별 역할</p> <p>나. 기관별 임무</p> <p>2) 지방정부</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시도 결핵관리반의 구성과 운영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관리팀장</li> <li>- 결핵관리사(공중보건 의사 포함)</li> <li>- <u>결핵관리담당자</u></li> </ul> </li> <li>&lt;신설&gt;</li> <li>&lt;신설&gt;</li> <li>•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결핵관리 시행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li> </ul> </li> <li>&lt;신설&gt;</li> <li>&lt;신설&gt;</li> <li>- 시·군·구 보건소의 결핵관리사업 기술지도</li> <li>- 시·군·구 보건소 및 관할 지역 결핵 관련 담당자 교육</li> <li>&lt;신설&gt;</li> <li>•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보건소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연2회(상반기, 하반기)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u>보관</u></li> <li>- 특히, 집단시설 결핵 발생 시에는 수시로 현장조사 및 기술지원 실시</li> </ul> </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관리지원단</li> <li>&lt;신설&gt;</li> </ul> <p>3) 의료기관</p> <p>4) 민간단체</p> <p>가) 대한결핵협회</p> <p>나) 결핵연구원</p>	<p>제1절 결핵현황</p> <p>1. 국제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계(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9) 기준 현황</li> </ul> <p>2. 국내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 사망자수(2008-2019년)</li> </ul> <p>제2절 국가결핵관리사업</p> <p>4.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관별 역할</p> <p>나. 기관별 임무</p> <p>2) 지방정부</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시도 결핵관리반의 구성과 운영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관리팀장</li> <li>- 결핵관리사(공중보건 의사 포함)</li> <li>- <u>결핵관리담당자(공무원)</u></li> <li>- <u>결핵역학조사담당자(공무원)</u></li> <li>- <u>사례관리요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최소 1명)</u></li> </ul> </li> <li>•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결핵관리 시행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li> <li>- <u>결핵환자 사례상담 실시 및 복지서비스 연계</u></li> <li>- <u>결핵역학조사 현장 지원 및 관리</u></li> <li>- 시·군·구 보건소의 결핵관리사업 기술지도</li> <li>- 시·군·구 보건소 및 관할 지역 결핵 관련 담당자 교육</li> <li>- <u>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u></li> </ul> </li> <li>•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결핵환자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문제 점을 확인하여 지역에 맞는 결핵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실시</li> <li>- 취약성이 중등도 이상인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사례상담을 실시하고 환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관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li> <li>- 관내 보건소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연2회(상반기, 하반기)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특히, 집단시설 결핵 발생시에는 수시로 현장 조사 및 기술 지원 실시)</li> </ul> </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관리지원단</li> <li>&lt;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gt;</li> </ul> <p>3) 의료기관</p> <p>4) 민간단체</p> <p>가) 대한결핵협회</p> <p>나) 결핵연구원</p>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p>&lt;신설&gt; &lt;기관별 역할&gt; &lt;신설&gt;</p> <p>5. 행정사항 가. 결핵관리 인력 구성 및 자격기준 1) 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관리 의사</li> <li>• 결핵관리 담당자</li> <li>• <u>결핵관리요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 사업) 유경험자, 간호사, 보건관련 전공자 등</li> </ul> </li> </ul> <p>&lt;신설&gt; &lt;신설&gt;</p>	<p>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lt;기관별 역할&gt; &lt;주요 조직 역할 및 구성&gt;</p> <p>5. 행정사항 가. 결핵관리 인력 구성 및 자격기준 1) 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관리 의사</li> <li>• 결핵관리 담당자</li> <li>• <u>결핵사례관리요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 사업) 유경험자, 간호사, 보건관련 전공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li> </ul> </li> <li>• <u>결핵역학조사담당자</u></li> </ul> <p>바. <u>결핵 필수재 수급관리(부록 3절 참고)</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결핵 필수재의 안정적인 국내수급을 위하여, 수급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진단제 및 국내 생산이 중단된 결핵 치료제를 원활하게 공급 및 관리</u></li> </ul>
<p>II. 결핵 신고 · 보고 · 사례 조사</p>	<p>제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1. 개요 나. 국가결핵 감시체계 기본방향 1) 생략 가) 결핵 발생 시 <u>지체없이</u> 신고·보고</p> <p>다. 국가결핵 감시업무 절차 및 내용 3) 신고·보고시기: 다음의 경우 <u>지체없이</u> 4) 신고대상 가)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3) 검체(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감염병의 진단기준」, [시행 2017.7.18.] [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4호, 2017.7.18.]</p> <p>바.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검토 및 처리 (승인 또는 반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a href="http://is.cdc.go.kr">http://is.cdc.go.kr</a> - 결핵관리)에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를 검토하여 상위기관으로 <u>지체없이</u> 보고</li> </ul> <p>※ 단, 동 자료 검토와 처리로 인해 자료 보고가 지연 되지 않도록 주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지체없이' 보고)</p>	<p>제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1. 개요 나. 국가결핵 감시체계 기본방향 1) 생략 가) 결핵 발생 시 <u>24시간 이내</u> 신고·보고</p> <p>다. 국가결핵 감시업무 절차 및 내용 3) 신고·보고시기: 다음의 경우 <u>24시간 이내</u> 4) 신고대상 가)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3) 검체(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감염병의 진단기준」, [시행 2019.4.30.] [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9-3호, 2019.4.30.]</p> <p>바.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검토 및 처리 (승인 또는 반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a href="http://is.cdc.go.kr">http://is.cdc.go.kr</a> - 결핵관리)에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를 검토하여 상위기관으로 <u>24시간 이내</u> 보고</li> </ul> <p>※ 단, 동 자료 검토와 처리로 인해 자료 보고가 지연 되지 않도록 주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24시간 이내' 신고)</p>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p>제2절 사례조사</p> <p>1. 개요</p> <p>가. 조사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 대상 : <u>조사 기한 내 타 질환으로 진단 변경 또는 사망한 자, 현역 군인(병사), 교정시설 수용자(단, 현역 군인(병사),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시설 정보 조사)</u></li> <li>- 5세미만 소아 결핵환자(폐외결핵포함)는 철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소아 결핵 환자의 배양양성 균주는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li> </ul> <p>&lt;신설&gt;</p> <p>다. 조사 시기 : <u>(신고일 기준) 도말 양성 환자는 3일 이내, 그 외 환자는 7일 이내</u></p> <p>2.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 작성</p> <p>가. 1차 등록</p> <p><u>환자의 인적사항, 가족 및 동거인 정보, 임상특성 등 조사하여 등록</u></p>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환자 증상 시작 3개월 전부터 소속된 집단시설 정보 조사</li> <li>- 가족접촉자 : 지표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의 3개월 이전부터 <u>같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한 접촉자</u></li> <li>- <u>결핵환자등 사례조사 제외자 중 현역군인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시설 정보 조사</u></li> </ul>	<p>제2절 사례조사</p> <p>1. 개요</p> <p>가. 조사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 대상 : <u>조사 기한 내 타 질환으로 진단 변경 또는 사망한 자</u></li> <li>- 5세미만 소아 결핵환자(폐외결핵포함)는 철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소아 결핵 환자의 배양양성 균주는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li> </ul> <p>※ IV. 결핵 역학조사 [표5] 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절차' 참조</p> <p>다. 조사 시기 : <u>신고일 기준 3일 이내</u></p> <p>2.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작성</p> <p>가. 1차 등록</p> <p><u>환자의 인적사항, 과거병력 및 치료이력, 가족 및 동거인 정보, 임상특성 등 조사하여 등록</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과거 결핵발병 여부, 과거 잠복결핵감염 여부, 기저질환 유무 조사</u></li> <li>- 결핵환자 증상 시작 3개월 전부터 소속된 집단시설 정보 조사</li> <li>- 가족접촉자 : 지표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의 3개월 이전부터 <u>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u></li> </ul> <p>&lt;삭제&gt;</p>
<p>III. 결핵환자 관리</p>	<p>제1절 환자 상담 및 교육</p> <p>1. 개요</p> <p>2. 내용</p> <p>3. 환자 기록 관리</p> <p>&lt;신설&gt;</p>	<p>제1절 환자 상담 및 교육</p> <p>1. 개요</p> <p>2. 내용</p> <p>3. 환자 기록 관리</p> <p>4. 결핵 산정특례 제도 안내</p>
	<p>제3절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p> <p>1. 개요</p> <p>2. 관리방법 및 내용</p> <p>3. 관리종료</p> <p>&lt;신설&gt;</p>	<p>제3절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p> <p>1. 개요</p> <p>2. 관리방법 및 내용</p> <p>3. 관리종료</p> <p>4. 관리 중단자(소재불명)에 대한 후속조치</p> <p>가. 대상</p>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p>나. 담당 :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소재지 보건소</p> <p>다. 조치 내용</p> <p>라. 관리체계 및 기관별 역할</p>
	<p>제6절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 사업 수행체계</p> <p>2. 지원범위</p> <p>가. 입원비</p> <p>나. 환자본인부담 약제비</p> <p>다. 간병비</p> <p>2) 지원내용</p> <p>: 간병비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1일 최대 10만원 까지)</p> <p>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p> <p>1) 지원대상</p> <p>2019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가구</p> <p>2) 지원기간</p> <p>3) 지원금액</p> <p>2019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p>	<p>제6절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p> <p>1. 사업 수행체계</p> <p>2. 지원범위</p> <p>가. 입원비</p> <p>나. 환자본인부담 약제비</p> <p>다. 간병비</p> <p>2) 지원내용</p> <p>: 간병비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1일 최대 15만원 까지*)</p> <p>* 간병지원 단계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독실, 공동간병, 중증환자 등)</p> <p>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p> <p>1) 지원대상</p> <p>2020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가구</p> <p>2) 지원기간</p> <p>3) 지원금액</p> <p>2020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p>
	<p>제7절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p> <p>3. 항결핵주사제 투약 연계 및 비용 지원</p> <p>다.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방법) 환자가 정산한 의료비 내역을 증빙 받아 환자에게 환급</li> </ul> <p>&lt;신설&gt;</p>	<p>제7절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p> <p>3. 항결핵주사제 투약 연계 및 비용 지원</p> <p>다.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방법) 환자가 정산한 의료비 내역을 증빙 받아 환자에게 환급 또는 의료기관이 내역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청구 가능</li> </ul> <p>4.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p> <p>가. 대상</p> <p>나. 절차 및 방법</p>
	<신설>	<p>제9절 노인 결핵관리</p> <p>1. 노인 결핵검진</p> <p>2. 노인 유소견자 관리</p> <p>3. 노인 결핵환자 관리</p>
	<신설>	<p>제10절 노숙인 등 결핵관리</p> <p>1. 노숙인 등 결핵검진</p> <p>2. 노숙인 유소견자 관리</p> <p>3.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p>
	제9절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제11절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p>2. 사업 내용</p> <p>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지원</p> <p>나. 「<u>권역 민간·공공협의회</u>」 구성 및 운영</p> <p>1)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권역별로 민간의료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 지역 여건에 맞는 결핵환자관리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방향 도출</u></li> </ul> <p><u>&lt;신설&gt;</u></p> <p>2) 민간·공공협의회 전국 조직</p> <p>3)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위원은 권역내 보건소장, 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사,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등으로 구성</u></li> <li>• <u>위원장은 '시·도 과장', 부위원장은 '권역 책임의사가 맡고, 간사는 '시·도 담당자와 권역 책임간호사'가 수행</u></li> </ul> <p>4)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분기당 1회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u></li> </ul> <p><u>&lt;신설&gt;</u></p> <p>4.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p> <p>나.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자격기준 및 관리</p> <p>3) 근무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휴기는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제60조) 준수</u></li> </ul> <p><u>&lt;신설&gt;</u></p> <p>4) 교육</p> <p><u>&lt;신설&gt;</u></p> <p>5. 행정사항</p>	<p>2. 사업 내용</p> <p>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지원</p> <p>나. 「<u>민간·공공협력(PPM) 의료기관 권역 협의회</u>」 구성 및 운영</p> <p>1)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민간·공공협력(PPM) 의료기관의 기관/권역별 핵심지표 분석 및 미 도달 지표 개선 방안 도출</u></li> <li>• <u>기관별 사례분석(비순응, 중단, 사망, 실패 등) 수행 및 대책마련</u></li> </ul> <p>2) 민간·공공협력(PPM) 의료기관 권역 협의회 전국 조직</p> <p>3)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권역 책임의사, 권역 부책임의사, 권역 책임간호사, 의료기관 책임의사,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u></li> </ul> <p><u>&lt;삭제&gt;</u></p> <p>4)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분기당 1회 개최 후 결과보고서 제출</u></li> <li>※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권역별로 결정</li> </ul> <p>다. 「<u>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표 분석회의</u>」 실시</p> <p>1) 개요</p> <p>2) 대상</p> <p>3) 운영</p> <p>4) 기관별(담당자) 역할</p> <p>4.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p> <p>나.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자격기준 및 관리</p> <p>3) 근무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휴기는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제60조) 준수</u></li> <li>※ <u>병원 내 간호사가 겸임으로 일시적 투입되는 경우 업무대행수당(20만원/월) 지급 가능</u></li> </ul> <p>4)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당해연도 중간에 입사하여 기본교육 미이수 시 수시교육을 통해 기본교육 학습 후 다음연도에 기본교육 반드시 수료</u></li> <li>※ <u>결핵관리전담간호사 교육 수행기관 (대한결핵협회 중앙교육원 ☎ 02-6929-3281)</u></li> </ul> <p>5. 행정사항</p>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p>가. <u>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제출 및 증빙서류 보관</u></p> <p>나. <u>정보 보호</u></p> <p>다. <u>예산의 집행 및 정산</u></p> <p>라. <u>사업계획의 변경(예산변경)</u></p> <p><u>&lt;신설&gt;</u></p>	<p>가. <u>질병관리본부(결핵조사과)</u></p> <p>나. <u>시·도(보건담당과)</u></p> <p>다. <u>시·군·구(보건소)</u></p> <p>라. <u>민간·공공협력(PPM)사업 의료기관</u></p> <p>6. <u>예산 기준</u></p> <p>가. <u>예산의 집행 및 정산</u></p> <p>나. <u>자료보관 및 관리</u></p> <p>1) <u>자료보관</u></p> <p>2) <u>영수증 관리</u></p> <p>3) <u>증빙서류</u></p> <p>다. <u>예산 항목별 편성·집행기준</u></p> <p>1) <u>예산 항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u></p> <p>2) <u>예산 항목별 설명</u></p>
<p>IV. 결핵역학조사</p>	<p>제1절 가족접촉자조사</p> <p>2. 조사 절차 및 방법</p> <p>가. 조사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흡기 결핵 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 및 동거인</li> <li>요양시설 입소자, 기숙사 사용자 등은 집단 시설 결핵역학조사 접촉자에 포함하여 조사</li> </ul> <p>나. 조사내용</p> <p>1) 사례 조사를 통해 호흡기 결핵 환자의 가족 접촉자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가족접촉자 검진관리’ 접촉자 등록 및 정보 입력</li> </ul> <p><u>&lt;신설&g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접촉자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나이, 주소, 의료보장종별, 연락처, 증상 유무, 과거력, 고위험군 여부, BCG 접종 여부 및 형태, 잠복결핵감염 검사법 등) 입력</li> </ul> <p><u>&lt;신설&gt;</u></p> <p>3. 기관별 역할</p> <p>나. 검진 참여의료기관</p> <p>1) 가족접촉자 대상 검진 실시</p> <p>2) 검진 및 치료 결과 입력</p>	<p>제1절 가족접촉자조사</p> <p>2. 조사 절차 및 방법</p> <p>가. 조사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흡기 결핵 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li> <li>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접촉자는 제외</li> </ul> <p>나. 조사내용</p> <p>1) 사례 조사를 통해 호흡기 결핵 환자의 가족 접촉자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가족접촉자 검진관리’ 접촉자 등록 및 정보 입력</li> </ul> <p>※ 향후 행정정보공용이용망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관계 확인하는 체계 마련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접촉자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나이, 주소, 의료보장종별, 연락처, 증상 유무, 과거력, 고위험군 여부, BCG 접종 여부 및 형태, 잠복결핵감염 검사법 등) 입력</li> </ul> <p>※ 외국인 접촉자는 반드시 건강보험가입 시 동일한 한글 이름으로 등록해야 연계가능</p> <p>3. 기관별 역할</p> <p>나. 검진 참여의료기관</p> <p>1) 가족접촉자 대상 검진 실시</p> <p>2) 검진 및 치료 결과 입력</p>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M 외 의료기관에서 검진 한 경우 <u>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 검사 수첩 및 증빙자료를 송부하고, 보건소 담당자가 접촉자 검진 및 치료 결과 입력</u></li> </ul> <p>다. 보건소</p> <p>8) 가족접촉자 검진 대상자 <u>명단 확인 및 검진 독려</u> <u>&lt;신설&gt;</u></p> <p>9) 만 5세(60개월) 미만 소아 결핵환자는 근원환자 조사를 위해 배양양성 균주를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 <u>&lt;신설&gt;</u></p> <p>4.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p> <p>가. 잠복결핵감염 검사</p> <p>1) TST 검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초회검사 시점이 환자의 치료시작시점 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에 가까운 경우, 주치의 등의 판단에 따라 8주가 경과하기까지 기다린 후 초회검사만 시행하고 연속검사는 생략 가능</li> </ul> <p>2) IGRA 검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초회검사 시점이 환자의 치료시작시점 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에 가까운 경우, 주치의 등의 판단에 따라 8주가 경과하기까지 기다린 후 초회검사만 시행하고 연속검사는 생략 가능</li> </ul> <p>3) TST/IGRA 병합 검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초회검사 시점이 환자의 치료시작시점 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에 가까운 경우, 주치의 등의 판단에 따라 8주가 경과하기까지 기다린 후 초회검사만 시행하고 연속검사는 생략 가능</li> </ul> <p>5.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p> <p>나. 지원범위</p> <p>1) 결핵검사 <u>&lt;신설&gt;</u></p> <p>다. 검진비 청구 및 지급 방법</p> <p>가) 건강보험가입자(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li> <li>※ 이름, 주민등록번호 오입력 또는 의료보장종별을 잘못 등록한 경우 연계 여부 <u>[건강보험가입자 아님]으로 표시</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M 외 의료기관에서 검진 한 경우 <u>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검사 수첩 및 증빙자료를 송부하고, 보건소 담당자가 접촉자 검진 및 치료 결과 입력</u></li> </ul> <p>다. 보건소</p> <p>8) 가족접촉자 검진 대상자 <u>모니터링 및 잠복 결핵감염자 치료 독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gt;결핵관리&gt; 결핵 지표관리&gt;소식지 관리에서 월별 가족 접촉자 검진율,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률 및 치료완료율 확인</u></li> </ul> <p>9) 만 5세(60개월) 미만 소아 결핵환자는 근원환자 조사를 위해 배양양성 균주를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IV.결핵 역학조사-[표5]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절차 참조</u></li> </ul> <p>4.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p> <p>가. 잠복결핵감염 검사</p> <p>1) TST 검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초회검사 시점이 환자의 치료시작시점 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에 가까운 경우, 주치의 등의 판단에 따라 8주가 경과하기까지 기다린 후 초회검사만 시행가능</li> </ul> <p>2) IGRA 검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초회검사 시점이 환자의 치료시작시점 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에 가까운 경우, 주치의 등의 판단에 따라 8주가 경과하기까지 기다린 후 초회검사만 시행가능</li> </ul> <p>3) TST/IGRA 병합 검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초회검사 시점이 환자의 치료시작시점 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에 가까운 경우, 주치의 등의 판단에 따라 8주가 경과하기까지 기다린 후 초회검사만 시행가능</li> </ul> <p>5.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p> <p>나. 지원범위</p> <p>1) 결핵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흉부 CT검사는 지원 대상 아님.</li> </ul> <p>다. 검진비 청구 및 지급 방법</p> <p>가) 건강보험가입자(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li> <li>※ 이름, 주민등록번호 오입력 또는 의료보장종별을 잘못 등록한 경우 연계 여부 <u>[건강보험가입자 아님] [연계대상 아님]으로 표시</u></li> </ul>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p>제2절 집단시설 역학조사</p> <p>2. 결핵역학조사 방법 및 절차</p> <p>나. 접촉자조사</p> <p>1) 접촉자조사 실시 기준</p> <p><u>&lt;신설&gt;</u></p> <p>    <u>마) 기타 '결핵전문역학조사반'에서 접촉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u></p> <p>4) 접촉자조사 검사 방법</p> <p><u>&lt;신설&gt;</u></p> <p>5) 접촉자조사 검사 결과 등록 및 관리</p> <p><u>&lt;신설&gt;</u></p>	<p>제2절 집단시설 역학조사</p> <p>2. 결핵역학조사 방법 및 절차</p> <p>나. 접촉자조사</p> <p>1) 접촉자조사 실시 기준</p> <p>    <u>나) 지표환자의 객담을 포함한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나, 흉부 X선 상 공동이 확인된 경우</u></p> <p><u>&lt;삭제&gt;</u></p> <p>4) 접촉자조사 검사 방법</p> <p>* <u>방학, 시험 등 학사일정과 관계없이 신속한 역학조사 시행</u></p> <p>5) 접촉자조사 검사 결과 등록 및 관리</p> <p>• <u>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거부·중단한 자는 추후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u></p> <p>※ <u>역학조사 관할보건소와 접촉자의 잠복결핵 감염 치료보건소가 상이한 경우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 내 대상자 치료 및 추구관리 정보는 공유 가능</u></p>
	<p>3. 결핵역학조사 기관별 역할</p> <p>나. 보건소</p> <p>3)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시행 시 '결핵역학조사반' 구성 및 조사 전반의 업무 수행</p> <p>    - 집단시설 관할 기관 부서 담당자 (예, 학교 - 교육(지원)청 담당자)</p> <p>다. 시도 보건과</p> <p>1) <u>시·도는 관내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대한 행정 관리를 총괄</u></p> <p>2) <u>관내 보건소의 집단 내 결핵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운영 지원 및 관리</u></p> <p>    • <u>집단 내 결핵 발생 시 '결핵역학조사반' 운영 지원</u></p> <p>    • <u>집단 내 결핵역학조사 및 관리 지침 등에 대한 교육</u></p> <p>    • <u>결핵역학조사 관련 교육 및 설명회</u></p> <p>    • <u>접촉자조사 시 관내 의료기관 연계 지원</u></p> <p>3) <u>관내 보건소가 집단시설 역학조사 발생 보고한 사례조사 결과 검토</u></p>	<p>3. 결핵역학조사 기관별 역할</p> <p>나. 보건소</p> <p>3)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시행 시 '결핵역학조사반' 구성 및 조사 전반의 업무 수행</p> <p>    - 집단시설 관할 기관 부서 담당자 (예, 학교 - 교육(지원)청 담당자, 사업장 - 지방고용노동청)</p> <p>다. 시도 보건과</p> <p>1) <u>관내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대한 행정 관리 총괄</u></p> <p>    • <u>예산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u></p> <p>    • <u>행정기관(지방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협의체 운영</u></p> <p>2) <u>지자체 결핵역학조사 계획 수립 및 평가</u></p> <p>3) <u>관내 보건소의 집단 내 결핵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수행 및 관리</u></p>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p>4) 관내 보건소의 유선조사 사례의 경우 <u>현장조사서 및 종료보고서 검토</u></p> <p>5) 관내 보건소 결핵역학조사 자료 관리 및 통계 산출(익월 10일까지 제출)</p> <p>6) 관내 발생한 중점사례 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집단 내 결핵 발생 시 결핵역학조사반 운영</u></li> <li>• <u>결핵역학조사 현장조사 및 중점사례 관리, 언론대응</u></li> <li>• <u>접촉자조사 시 관내 의료기관 연계 지원</u></li> <li>• <u>결핵역학조사 현장조사서 및 종료 보고서 검토</u></li> <li>• <u>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모니터링</u></li> </ul> <p>4) <u>결핵역학조사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지원</u></p> <p>5) <u>관내 보건소 결핵역학조사 자료 질 관리 및 통계 산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조사결과 입력률, 접촉자 검진율, 잠복결핵 치료시작율 등 모니터링</u></li> <li>• <u>결핵역학조사 월 통계</u></li> </ul> <p>6) <u>결핵역학조사 관련 사업지표 모니터링</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결핵관리 지표</u></li> <li>• <u>행안부지자체 합동평가지표</u></li> </ul>
<p>V. 결핵 검진 및 치료</p>	<p>제1절 결핵 검진사업</p> <p>다. <u>유소견자 대상 조치</u></p> <p>1) <u>(추가 검사 실시) 객담검사, 흉부CT검사 등의 방법으로 활동성 결핵 여부 확인 &lt;신설&gt;</u></p> <p>2) <u>(치료 실시) 검사 결과에 따라 - (활동성 결핵인 경우) 결핵 치료</u></p> <p>2. 대상별 검진 사업</p> <p>가. <u>노인 대상 결핵 검진 및 홍보</u></p> <p>1)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결핵발생·사망률이 높은 노인인구에 대한 결핵관리의 일환으로 노인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u></li> </ul>	<p>제1절 결핵 검진사업</p> <p>다. <u>검진결과에 따른 조치</u></p> <p>1) <u>정상소견 : 결핵예방수칙 안내</u></p> <p>2) <u>유소견자 : 유증상자* 또는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 객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자는 검진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구검사(흉부 X선 검사) 실시하도록 추구관리 및 결핵예방 수칙 안내</u></p> <p>* <u>유증상자 :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있음이 문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u></p> <p>** <u>유소견자 : 흉부 X선 판독 결과, 결핵 의심 소견 또는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u></p> <p>3) <u>결핵확진자 - (활동성 결핵인 경우) 결핵환자 신고·보고 치료 실시 및 환자관리</u></p> <p>2. 대상별 검진 사업</p> <p>가. <u>지자체별 자체노인 대상 결핵 검진 및 홍보</u></p> <p>1)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결핵 발생·사망률이 높고 유행 파급력이 큰 전국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외 지자체 여건에 따라 연 1회 결핵검진 제공을 통해 결핵 조기발견 및 타인으로 전파 차단</u></li> </ul>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p>2)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li> </ul> <p>3) 결핵 검진 방법</p> <p>가) (대상자 선정) 노인 인구 밀집 지역, 취약 지역, 노인 입소 시설 등 우선 선정</p> <p>나) (검진 계획 수립)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노인 결핵 검진 계획 수립·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적 위주의 검진은 지양하며, 이동검진 시 결핵 유소견자 대상 객담 검사 누락 방지 및 의료기관 치료 연계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li> <li>검진을 향상을 위해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등 지자체의 노인 대상 보건복지 프로그램 등과 연계 시행 권고</li> </ul> <p>다) (검진 실시) 보건소 방문 또는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흉부 X선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소견자 조치 : 노인의 경우 유소견자 대상 추가 검사(객담 검사 등)를 신속히 실시하고 추가 검사 미실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후 관리</li> <li>정상 소견 등 : 결핵예방수칙 안내 및 연 1회 이상 결핵검진 독려</li> </ul> <p>나.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p> <p>4) 유소견자 대상 조치</p> <p>가) 결핵 검진(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객담검사 등 추후 검사 실시</p>	<p>2)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li> <li>* 노인 인구 밀집 지역·취약 지역 거주자, 환자 발견을 높은 시설·기관 이용자 우선 검진</li> </ul> <p>3) 결핵 검진 방법</p> <p>가) 검진 내용 : 결핵검진(흉부 X선 검사 및 객담 검사)</p> <p>나)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상 소견 등 : 결핵예방수칙 안내 및 연 1회 이상 결핵검진 독려</li> <li>유소견자 : 유증상자* 또는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 객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자는 검진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후검사(흉부 X선 검사) 실시하도록 추후관리 및 결핵예방수칙 안내</li> <li>* 유증상자 :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있음이 문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li> <li>** 유소견자 : 흉부 X선 판독 결과, 결핵 의심 소견 또는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li> <li>결핵확진자 : 결핵환자 신고·보고 치료 실시 및 환자관리</li> <li>※ 관련 행정 조치 실시 : 결핵환자등(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Ⅲ-제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및 Ⅲ. 결핵환자 관리] 등 시행</li> </ul> <p>다) 추진 방법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노인 결핵 검진 계획 수립·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흉부 X선 검사 실시 후 결핵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대상으로 객담 검사를 실시하고 검체 수집의 누락 방지</li> <li>발견 환자 치료 및 유소견자 추후관리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li> <li>검진을 향상과 치료 연계 등을 위해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등 지자체의 노인 대상 보건·복지프로그램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 시행 권고</li> </ul> <p>나.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p> <p>4)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p> <p>가) 정상 소견 등 : 결핵예방수칙 안내</p>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p>나) <u>추구검사 결과, 결핵환자 발생 시 신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및 결핵 치료 실시</u></p> <p>&lt;신설&gt;</p> <p>&lt;신설&gt;</p>	<p>나) <u>유소견자 : 유증상자* 또는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 객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자는 검진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구검사(흉부 X선 검사) 실시하도록 추구관리 및 결핵예방 수칙 안내</u></p> <p>* 유증상자 :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있음이 문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                  ** 유소견자 : 흉부 X선 판독 결과, 결핵 의심 소견 또는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p> <p>다) <u>결핵확진자 : 결핵환자 신고·보고 치료 실시 및 환자관리</u></p> <p>※ 관련 행정 조치 실시 : 결핵환자등 (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II-제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및 III, 결핵환자 관리] 등 시행</p>
	<p>제2절 결핵 치료</p> <p><b>일러두기</b></p> <p>이 절은 결핵 진료지침(3판) 'II.결핵의 치료', 'III. 결핵의 재치료 및 약제내성 결핵의 치료', 'IV. 특수한 상황에서의 결핵 치료'의 권고요약 부분을 일부 발췌하였으므로, 결핵 치료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결핵 진료지침(3판)을 참고하도록 한다.</p>	<p>제2절 결핵 치료</p> <p><b>일러두기</b></p> <p>이 절은 결핵 진료지침(3판) 'II.결핵의 치료', 'IV. 특수한 상황에서의 결핵 치료'의 권고요약 부분을 일부 발췌하고 2020년 3월 발간·시행 예정인 결핵 진료지침(4판)의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의 개정사항' 중 일부를 선반영 하였으므로, 결핵 치료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결핵 진료지침(3판)을 함께 참고하고, 추후 결핵진료지침(4판)을 참고하도록 한다.</p> <p>* 결핵 진료지침(4판) 약제내성 결핵의 치료는 결핵전문위원회 조건부승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방향성만을 담고 있다.</p>
<p>VI. <u>잠복결핵감염</u> 검진 및 치료</p>	<p>제1절 <u>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u></p> <p>1. 기본 원칙</p> <p>2. <u>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u></p> <p>가. <u>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위험 등 파급 효과가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u></p> <p>&lt;신설&gt;</p> <p>&lt;신설&gt;</p> <p>6. 행정사항</p> <p>가. <u>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은 지자체별 국가 결핵예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료로 함</u></p> <p>※ <u>지자체 주도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은 지자체의 예산규모와 예산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추진(집단시설</u></p>	<p>제1절 <u>잠복결핵감염 검진</u></p> <p>1. 기본 원칙</p> <p>2. <u>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u></p> <p>가. <u>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위험 등 파급 효과가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u></p> <p>※ <u>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u></p> <p>※ <u>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제34조(과태료) 관련 FAQ는 부록 참고</u></p> <p>6. 행정사항</p> <p>가. <u>지자체 주도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은 지자체의 예산규모와 예산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추진</u></p> <p>※ <u>유학, 외국체류 등의 목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진과 증명서 발급을 위해 내소할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u></p>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p>종사자 검진은 보건소와 사전 협의 하에 시행)            ※ 이 외 유학, 외국체류 등의 목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증명서 발급을 위해 내소할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증명 발급 수수료 및 검진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p> <p>나. 보건소의 잠복결핵감염 검사 관련 비용 (검사 소모품비, 시약비, 실험실 진단비, 잠복결핵감염 검사 수탁비, 진료비, 약제비 등)은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 예방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음</p> <p>제2절 잠복결핵감염 치료            5. 치료 부작용 관리            마. 치료비 지원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요양급여진액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비급여에 대해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 검토 후 지원 가능</p> <p>6. 행정사항            &lt;신설&gt;</p>	<p>증명 발급 수수료 및 검진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p> <p>나. 필요 시 보건소의 잠복결핵감염 검사 관련 비용(검사 소모품비, 시약비, 실험실 진단비, 잠복결핵감염 검사 수탁비, 진료비, 약제비 등)은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 예방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음</p> <p>제2절 잠복결핵감염 치료            5. 치료 부작용 관리            마. 치료비 지원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100분의100 본인 부담금, 상급 병실료(2~3인실)에 대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검토 후 지원 가능</p> <p>6. 행정사항            가. 보건소에서는 검진 사업 등을 통해 잠복 결핵감염자를 확인하면 치료를 안내하고 독려함            ※ 국가 및 지자체 사업으로 진단받은 잠복결핵감염자의 경우 검진 시행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함 (단, 방역관정 대상자의 경우 치료를 희망하는 보건소 또는 주소지보건소에서 치료관리함)            ※ 관리보건소와 실제 치료보건소가 상이한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대상자 치료정보는 공유 가능함</p>
VII. 결핵의 실험실 검사	<p>1. 결핵의 실험실 검사            나. 검사의뢰            2) 검사 및 의뢰방법            나) 보건소의 객담 도말 검사 결과 통보            3) 검체 보관 및 운송            (1) 객담 운송을 위한 포장은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질병관리본부, 2015)에 준하여 실시</p>	<p>1. 결핵의 실험실 검사            나. 검사의뢰            2) 검사 및 의뢰방법            나) 보건소의 객담 도말 검사 및 결과 통보            3) 검체 보관 및 운송            (1) 객담 운송을 위한 포장은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질병관리본부, 2018)에 준하여 실시</p>
	<p>2. 결핵균 유전형 검사            나. 대상            • 결핵 역학조사관련 배양양성 균주            &lt;신설&gt;            • 보건소를 방문한 외국인 결핵환자 중 배양양성 균주            &lt;신설&gt;</p>	<p>2. 결핵균 유전형 검사            나. 대상            • 결핵 역학조사관련 배양양성 균주            • 다제내성결핵 중 배양양성 균주            • 보건소를 방문한 외국인 결핵환자 중 배양양성 균주            • 만 5세(60개월) 미만 소아 결핵환자 (폐외결핵 포함)의 배양양성 균주</p>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p>3. 결핵검사 정도관리                      나. 도말검사 정도관리                      1) 목적 : 결핵 검사 품질 관리                      2) 대상 : <u>보건소, 결핵협회 검사실, 민간 병원 및 검사실 등</u></p>	<p>3. 결핵검사 정도관리                      나. 도말검사 정도관리                      1) 목적 : 결핵 검사 품질 관리                      2) 대상 : <u>보건소 등</u></p>
<p>X. 국가결핵관리사업 감시 및 평가</p>	<p>1. 목적 및 추진 방향                      나. 추진방향                      1) 공통지표 마련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도모                      • <u>사업관리지표 : 국가결핵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변경사업에 대한 사업별 지표</u>  <u>&lt;신규&gt;</u></p>	<p>1. 목적 및 추진 방향                      나. 추진방향                      1) 공통지표 마련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도모                      • <u>사업관리지표 : 국가결핵관리사업 확대 및 결핵예방관리 강화 대책 수립에 따른 신규·변경사업에 대한 사업별 지표</u>                      • <u>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 상황을 평가·환류하기 위한 지표</u></p>
	<p>2. '19년 결핵관리 지표                      나. 사업관리지표(10개)  <u>I-③</u>                      • <u>잠복결핵감염자 치료실시율 : '17~'18년 결핵안심국가 검진 사업 양성자의 치료실시율</u>  <u>&lt;신설&gt;</u>  <u>II-④</u>                      • <u>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u>  <u>II-⑤-1</u>                      • <u>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률</u>  <u>II-⑤-2</u>                      • <u>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u>  <u>&lt;신설&gt;</u>  <u>II-⑥-1</u></p>	<p>2. '20년 결핵관리 지표                      나. 사업관리지표(16개)  <u>II-③</u>                      • <u>잠복결핵감염자 치료실시율 : '18~'19년 결핵안심국가 검진 사업 양성자의 치료실시율</u>  <u>II-④-1</u>                      • <u>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u>  <u>II-④-2</u>                      • <u>집단시설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율</u>  <u>II-④-3</u>                      • <u>집단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율</u>  <u>II-⑤</u>                      • <u>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u>  <u>II-⑥-1</u>                      • <u>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율(실시율)</u>  <u>II-⑥-2</u>                      • <u>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u>  <u>II-⑦</u>                      • <u>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u>  <u>II-⑧-1</u></p>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접촉자 잠복결핵 치료시작률 <u>II-⑥-2</u></li> <li>• 가족접촉자 잠복결핵 치료완료율 <u>&lt;신설&gt;</u></li> <li><u>&lt;신설&gt;</u></li> <li><u>II-⑦</u></li> <li>• <u>민간·공공협의회의 개최 실적</u></li> <li><u>II-⑧</u></li> <li>• <u>결핵담당자 교육 이수 여부</u> <u>&lt;신설&gt;</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접촉자 잠복결핵 치료시작률 <u>II-⑧-2</u></li> <li>• 가족접촉자 잠복결핵 치료완료율 <u>II-⑨</u></li> <li>• <u>노인결핵검진 수검률</u></li> <li><u>II-⑩</u></li> <li>• <u>폐결핵유소견자 결핵검진 실시율</u></li> <li><u>II-⑪</u></li> <li>• <u>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표 분석회의 실시율</u></li> <li><u>II-⑫</u></li> <li>• <u>결핵담당자 교육 이수 여부</u> <u>다.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3개)</u></li> <li><u>III-①</u></li> <li>• <u>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u></li> <li><u>III-②</u></li> <li>• <u>잠복결핵감염자 치료실시율</u></li> <li><u>III-③</u></li> <li>• <u>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u></li> </ul>																								
	<p>3. 모니터링 자료 환류 가. '결핵관리소식지' 발간 1) 발간시기 및 주기 : 4회 발행</p> <table border="1" data-bbox="308 1165 777 1326"> <thead> <tr> <th>구분</th> <th>발행일</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결핵관리소식지 1호</td> <td>5월</td> <td>1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td> </tr> <tr> <td>결핵관리소식지 2호</td> <td>8월</td> <td>2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td> </tr> <tr> <td>결핵관리소식지 3호</td> <td>11월</td> <td>3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td> </tr> </tbody> </table> <p>표 8. 결핵관리지표 산출 방법 <u>&lt;추가&gt;</u> I-④-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자료원 및 시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 * 신고일기준 당해년 <u>&lt;신설&gt;</u></li> </ul> <p>I-④-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흡기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자료원 및 시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li> </ul>	구분	발행일	내 용	결핵관리소식지 1호	5월	1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결핵관리소식지 2호	8월	2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결핵관리소식지 3호	11월	3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p>3. 모니터링 자료 환류 가. '결핵관리소식지' 발간 1) 발간시기 및 주기 : 4회 발행</p> <table border="1" data-bbox="792 1165 1261 1326"> <thead> <tr> <th>구분</th> <th>발행일</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결핵관리소식지 1호</td> <td>4월</td> <td>1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td> </tr> <tr> <td>결핵관리소식지 2호</td> <td>7월</td> <td>2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td> </tr> <tr> <td>결핵관리소식지 3호</td> <td>10월</td> <td>3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td> </tr> </tbody> </table> <p>표 1. 결핵관리지표 산출 방법 ■ 대표지표 I-④-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자료원 및 시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 * 신고일기준 당해년 * <u>익년 1월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u></li> </ul> <p>I-④-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흡기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자료원 및 시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li> </ul>	구분	발행일	내 용	결핵관리소식지 1호	4월	1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결핵관리소식지 2호	7월	2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결핵관리소식지 3호	10월	3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구분	발행일	내 용																								
결핵관리소식지 1호	5월	1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결핵관리소식지 2호	8월	2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결핵관리소식지 3호	11월	3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구분	발행일	내 용																								
결핵관리소식지 1호	4월	1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결핵관리소식지 2호	7월	2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결핵관리소식지 3호	10월	3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p>* 신고일기준 당해년 &lt;신설&gt;</p> <p>&lt;추가&gt;</p> <p>I-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실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li> <li>* <math>[(A/B) \times 100] + [(e/f) \times 100 \times 0.1]</math></li> <li>A : B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실시자</li> <li>B : 2018년 검진 사업 양성자</li> <li>e : f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실시자 또는 추구 검사자</li> <li>f : 2017년 검진 사업 양성자 중 미치료자</li> </ul> </li> <li>- 자료원 및 시기</li>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 검진일 기준 ('17-'18년)</li> <li>* 국민건강보험공단</li> </ul> <p>&lt;신설&gt;</p> <p>II-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li> </ul> <p>II-⑤-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원 및 시기</li>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 보고일기준 당해년</li> </ul> </li> </ul> <p>&lt;신설&gt;</p> <p>II-⑤-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원 및 시기</li> </ul> </li> </ul>	<p>* 신고일기준 당해년 * <u>익년 1월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u></p> <p>■ 사업관리지표</p> <p>II-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실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li> <li>* <math>[(A/B) \times 100] + [(e/f) \times 100 \times 0.1]</math></li> <li>A : B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실시자</li> <li>B : 2019년 검진 사업 양성자</li> <li>e : f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실시자 또는 추구 검사자</li> <li>f : 2018년 검진 사업 양성자 중 미치료자</li> </ul> </li> <li>- 자료원 및 시기</li>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 검진일 기준 ('18-'19년)</li> <li>* 국민건강보험공단</li> </ul> <p>II-④-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u></li> </ul> <p>II-④-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집단시설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율</u></li> </ul> <p>II-④-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집단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율</u></li> </ul> <p>II-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li> </ul> <p>II-⑥-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u>치료시작률(실시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원 및 시기</li>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 보고일기준 당해년</li> <li>* <u>익년 1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u></li> </ul> </li> </ul> <p>II-⑥-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원 및 시기</li> </ul> </li> </ul>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 치료완료예정일기준 당해년</li> </ul>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II-⑥-1</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접촉자 잠복결핵 치료시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원 및 시기</li> </ul> </li>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 신고일기준 당해년</li> </ul> <p><u>&lt;신설&gt;</u></p> <p><u>II-⑥-2</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접촉자 잠복결핵 치료완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원 및 시기</li> </ul> </li>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 치료완료예정일기준 당해년</li> </ul> <p><u>&lt;신설&g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 치료완료예정일기준 당해년</li> <li>* <u>익년 1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u></li> </ul> <p><u>II-⑦</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u></li> </ul> <p><u>II-⑧-1</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접촉자 잠복결핵 치료시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원 및 시기</li> </ul> </li>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 신고일기준 당해년</li> <li>* <u>익년 1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u></li> </ul> <p><u>II-⑧-2</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접촉자 잠복결핵 치료완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원 및 시기</li> </ul> </li>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 치료완료예정일기준 당해년</li> <li>* <u>익년 1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u></li> </ul>
<p>XI. 부록</p>	<p>제1절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집행지침</p> <p>5.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집행기준</p> <p>가. 공통사항</p> <p>나.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집행기준</p> <p>1)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가능 범위 : 인건비,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홍보비, 여비 등 경상경비)</li> </ul>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제1절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집행지침</p> <p>5.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집행기준</p> <p>가. 공통사항</p> <p>나.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집행기준</p> <p>1)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가능 범위 : 인건비,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홍보비, 여비 등 경상경비)</li> </ul> <p>① 보수</p> <p>② 상여금(명절수당)</p> <p>③ 위험수당</p> <p>제2절 결핵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 및 예산의 집행</p> <p>1. 사업 관리</p> <p>2. 보조금 관리</p> <p>3. 예산항목별 설명</p> <p>4. 인력관련 사항</p> <p>제3절 결핵 필수재 수급관리</p> <p>1. 개요</p>



목차	개정 전	개정 후						
		2. 잠복결핵감염 진단제 수급 관리 3. 결핵 치료제 수급 관리 4. 약제현황관리 모니터링 5. 행정사항						
	제2절 결핵예방법	제4절 결핵예방법						
	<신설>	제5절 자주 묻는 질문 1. 결핵환자 신고·보고 및 산정특례 관련 2. 결핵역학조사 관련 3.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에 대한 사항 4. 그 외 Q&A						
	제3절 서식	제6절 서식						
	<서식 45> 잠복결핵감염 치료 동의서 잠복결핵감염 치료 동의서	<서식 45>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정보이용 동의서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정보이용 동의서						
	<table border="1" data-bbox="308 856 777 1012"> <tr> <td data-bbox="308 856 393 1012">질병 상태 문진표</td> <td data-bbox="393 856 497 1012">주변에 결핵환자 유무</td> <td data-bbox="497 856 777 1012">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 있는 경우 본인과의 관계:                      약제내성 유무: <input type="checkbox"/> MDR  <input type="checkbox"/> XDR <input type="checkbox"/> 모름                 </td> </tr> </table>	질병 상태 문진표	주변에 결핵환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 있는 경우 본인과의 관계: 약제내성 유무: <input type="checkbox"/> MDR <input type="checkbox"/> XDR <input type="checkbox"/> 모름	<table border="1" data-bbox="792 856 1262 1268"> <tr> <td data-bbox="792 856 877 1268">질병 상태 문진표</td> <td data-bbox="877 856 980 1268">주변에 결핵환자 유무</td> <td data-bbox="980 856 1262 1268">                     [검진대상구분]  <input type="checkbox"/> 가족접촉자  <input type="checkbox"/> 집단시설 역학조사  <input type="checkbox"/> 법적 의무대상(국가 및                      지자체사업으로 실시한                      대상 포함)  <input type="checkbox"/> 그 외  <hr/>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 있는 경우 본인과의 관계:                      약제내성 유무: <input type="checkbox"/> MDR  <input type="checkbox"/> XDR <input type="checkbox"/> 모름                 </td> </tr> </table>	질병 상태 문진표	주변에 결핵환자 유무	[검진대상구분] <input type="checkbox"/> 가족접촉자 <input type="checkbox"/> 집단시설 역학조사 <input type="checkbox"/> 법적 의무대상(국가 및 지자체사업으로 실시한 대상 포함) <input type="checkbox"/> 그 외 <hr/>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 있는 경우 본인과의 관계: 약제내성 유무: <input type="checkbox"/> MDR <input type="checkbox"/> XDR <input type="checkbox"/> 모름
질병 상태 문진표	주변에 결핵환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 있는 경우 본인과의 관계: 약제내성 유무: <input type="checkbox"/> MDR <input type="checkbox"/> XDR <input type="checkbox"/> 모름						
질병 상태 문진표	주변에 결핵환자 유무	[검진대상구분] <input type="checkbox"/> 가족접촉자 <input type="checkbox"/> 집단시설 역학조사 <input type="checkbox"/> 법적 의무대상(국가 및 지자체사업으로 실시한 대상 포함) <input type="checkbox"/> 그 외 <hr/>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 있는 경우 본인과의 관계: 약제내성 유무: <input type="checkbox"/> MDR <input type="checkbox"/> XDR <input type="checkbox"/> 모름						
	<신설>	Treatment Consent Form for LTBI treatment						
	<신설>	<서식 93> 소재불명 결핵환자 위치정보 확인요청서 <서식 94> 소재불명 결핵환자 위치정보 확인의뢰서 <서식 95> 검진 사업 참여 수요조사서 <서식 96> 검진일정 보고서 <서식 97> 검진 동의서 <서식 98> 결핵 검진 안내문 <서식 99> 검진실적 보고서 <서식 100> 가족접촉자 명단 변경 요청서 <서식 101> 결핵역학조사 중점사례 보고서 (예시)						

## 업무 관련 연락처

### 가.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질병 정보 상담)

기관 및 부서	업 무	연락처
결핵·에이즈 관리과	- 결핵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 - 결핵관련 법 제·개정	043-719-7312
	-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시행	043-719-7326
	-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 - 결핵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 - 결핵관리과정 교육	043-719-7326 / 7337
	- 결핵 신고·보고체계 운영 및 통계사업	043-719-7341 / 7315
	- 결핵검진(노숙인)사업 - 일반건강검진 폐결핵 유소견자 관리	043-719-7316 / 7315
	- 결핵검진(노인)사업 - 결핵 지자체 지표/의료질향상지표 관리 및 생산	043-719-7920 / 7315
	- 법적 의무대상(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기준 및 사후관리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043-719-7314 / 7335
	- 법적 미의무대상(외국인 시범사업, 학교밖청소년 대상 검진사업 및 교정시설 수용자 치료 관한 사항)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기준 및 사후관리	043-719-7314 / 7336
	-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 운영	043-719-7912
	- 결핵 필수재(의약품 등)의 수급관리	043-719-7927 / 7324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상담, 교육	043-719-7913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관리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043-719-7320) 043-719-7338 / 7323



기관 및 부서	업 무	연락처
결핵조사과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관리	043-719-7283 / 7287 / 7291 / 7296
	- 가족접촉자 조사사업/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043-719-7293 / 7287
	- 잠복결핵감염 치료부작용 관리	043-719-7296
	- 결핵역학조사 통계 관리	043-719-7285
	- 인수공통결핵관리	043-719-7291
	- 결핵역학조사 신속대응차량 운영 관리	043-719-7293
	- 결핵환자 사례조사 관리	043-719-7317
	- 결핵관리사업 총괄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운영	043-719-7325 / 7284
	- 입원·격리치료명령사업 관리 - 비순응결핵환자 관리 - 다제내성결핵환자 관리	043-719-7329
	-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업무중사 일시제한) - 이탈주민 결핵 관리사업 -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	043-719-7328
	-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복약관리)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모니터링 지표관리 및 생산	043-719-7317
- 취약계층 결핵환자관리사업 (결핵안심벨트) - 결핵관리진담간호사 교육	043-719-7231	
위기소통담당	- 결핵예방 소통 기획 및 관리	043-719-7782
세균분석과	- 결핵 공공 진단 계획 수립 및 시행 - 결핵 실험실 검사 정도관리 운영 - 이탈주민 결핵검사 - 결핵균 분자역학 실험실 감시망 구축 및 운영	043-719-8329

## 나. 국가결핵관리 협력기관 연락처

기관	업 무	연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결핵환자 산정특례 등록 관리	산정특례운영부 033-736-1817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급 관련 안내	1577-1000
대한결핵협회	- 노인 결핵 검진 사업 수행 - 노숙인 등(쪽방촌) 결핵 검진 사업 수행	02-2085-0061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등 대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교육 사업 수행	02-6929-328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민간·공공협력(PPM) 의료기관 모니터링 수행	02-632-3825
국립중앙의료원	-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운영	02-2276-237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 운영	1644-6223



## 용어 정의

### 가. (활동성) 결핵 = (Active) Tuberculosis

결핵균이 증식 등 활동을 하면서 몸에 병변을 일으키는 상태로,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진단

#### 1) 세균학적으로 확진된 결핵(A bacteriologically confirmed TB)

: 객담 또는 기관지세척액 등 ‘인체유래물’에 대한 항산균 도말, 배양 또는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PCR, Xpert MTB/RIF 포함) 결과 양성인 결핵

#### 2) 임상적으로 진단된 결핵(A clinically diagnosed TB)

: 세균학적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증상, 영상의학 검사(흉부 X선 검사 또는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CT) 등), 조직학적 검사 등에 의해 주치의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하고 항결핵제를 투여하기 시작한 경우

### 나. 폐결핵(Pulmonary TB) / 폐외결핵(Extrapulmonary TB, EPTB)

#### 1) 폐결핵

: 결핵이 폐실질(Lung parenchyme)에 발생한 결핵

- 속립성 결핵(Miliary TB)은 보통 폐실질이 침범이 있고, 많은 경우 실제 객담 항산균 배양검사 상 양성을 보여 폐결핵에 포함
- 기관지 및 인후두 결핵의 경우 보통 폐외결핵에 포함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호흡기결핵’에 포함

#### 2) 폐외결핵

: 결핵이 흉막, 림프절, 복강, 골격근 등 폐실질 이외의 기관에 발생한 경우

### 다. 약제내성 결핵(Drug-resistance TB)

#### 1) 다제내성 결핵(Multidrug-resistance TB, MDR TB)

: 결핵치료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2)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Extensively-resistance TB, XDR TB)

: 배양된 결핵균이 약제 감수성 검사에서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내성이고 한 가지 이상의 퀴놀론계 약제와 3가지 주사제(카프레오마이신, 카나마이신, 아미카신)중 한 가지 이상의 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

라. 잠복결핵감염(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LTBI)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객담 항산균 검사와 흉부 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

마. 지표환자(Index case, Index patient)

어떤 집단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결핵환자로 결핵역학조사 시 기준이 되는 환자

※ 근원환자(Source case) : 집단에서 발생한 결핵 사건에서 최초의 원인이 된 환자.

지표환자가 근원환자인 경우가 많지만, 근원환자로부터 전염된 환자가 먼저 발견되어 지표환자가 되고, 접촉자 조사를 통해 근원환자는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음

바. 추가환자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를 통해 발견된 결핵환자

사. 접촉자

지표결핵환자(또는 전염성 결핵환자)와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

1) 가족접촉자(Household contact)

: 지표환자가 결핵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요양시설 입소자, 기숙사 사용자 등은 접촉자 분류 정의상 '가족접촉자'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국가결핵관리지침에서는 집단시설의 밀접접촉자에 포함하여 조사



2) 밀접접촉자(Close contact)

: 가족접촉자가 아닌 사람 중 지표환자와 같은 밀폐된 실내공간을 사용하며 장시간 동안 직접 접촉한 적이 있는 접촉자

- 밀폐된 실내공간의 경우 방, 교실 등 좁은 공간에서 주로 전염이 발생하며, 대형 강의실, 복도 등 넓은 공간에서는 실제적 전염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시간 기준은 밀폐된 좁은 공간 접촉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기준 참조 가능
    - 하루에 연속으로(또는 매일) 8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
    - 누적기준으로 40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
- ※ 현장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기준시간 이하의 접촉자도 밀접접촉자에 포함 가능

3) 일상접촉자(Casual contact)

: 접촉자 중 가족접촉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아닌 접촉자

아. 접촉자조사(Contact investigation)

지표환자의 가족 또는 밀접접촉자 중에 있을지 모르는 진단되지 않은 다른 결핵환자(추가환자 또는 근원환자)를 찾아내고, 지표환자로부터 전염되었을 잠복결핵감염자들을 찾아내어 치료하기 위한 ‘조직화된 조사 (a systemic process)’

※ 일상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역학조사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시행

자.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자극하여 인터페론감마 분비능을 측정하는 결핵감염 검사 방법

차.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 결핵균 항원(purified protein derivatives, PPD)을 팔에 피내 주사 후 48-72시간 사이에 형성되는 지연과민반응을 관찰하여 판독

---

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 사업)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

타.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PPM 의료기관)

정부가 지원하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배치된 의료기관

파. 기침예절

기침을 할 때 휴지,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호흡기 감염병(결핵, 인플루엔자 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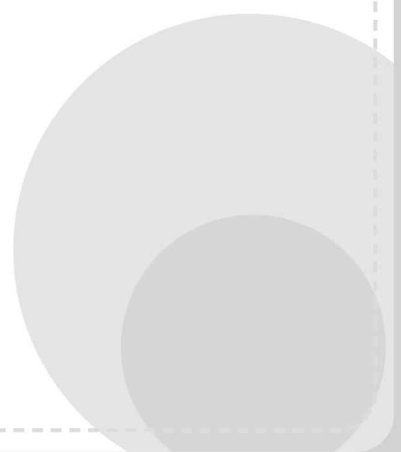


# I

## 개 요

제1절 결핵 현황 / 02

제2절 국가결핵관리사업 / 07



## 제 1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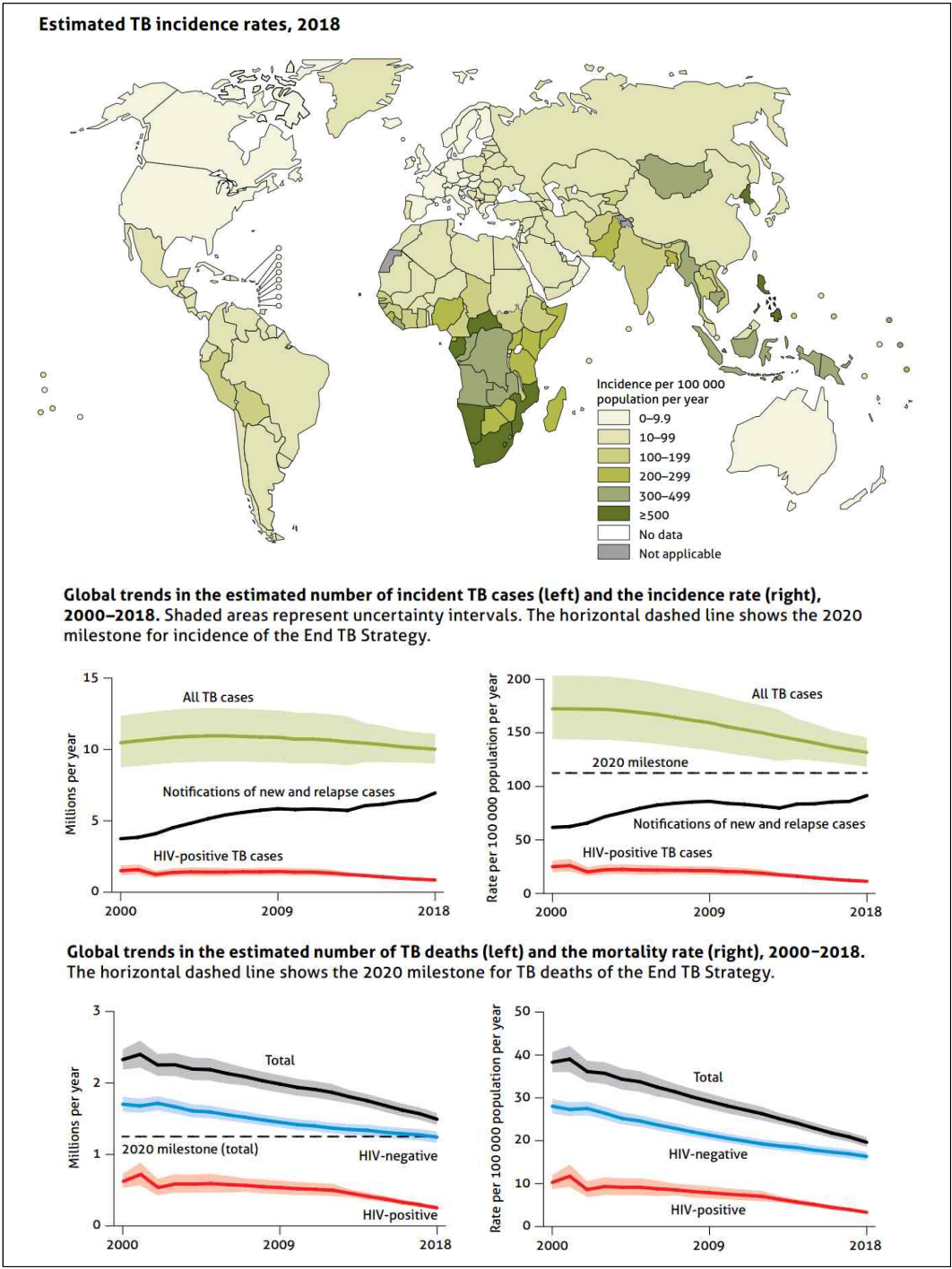
## 결핵 현황

## 일러두기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결핵퇴치전략(End TB Strategy, 2035년까지 2015년 대비 결핵 발생률 90%, 사망률 95% 감소)의 기조에 맞추어 적극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절은 국내 외 결핵 동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1. 국제 동향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전 세계 결핵비상사태를 선언한 이래 결핵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결핵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2000년 이래 5,800만 명의 사망자가 줄어들었고 결핵사망률은 38% 감소하였음. 전 세계 결핵발생이 전년 대비 연평균 2%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결핵은 2019년에도 여전히 에이즈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감염병으로 손꼽히고 있음. WHO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 하였고,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였음. 이 중 62%가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결핵발생 중 24%를 차지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231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해 인구 수 대비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음. 국제사회는 결핵 조기퇴치를 위해 보다 강화된 전략 추진을 위해 '18년 UN총회 시 최초의 'UN 결핵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에 따라 2030년까지 결핵 조기 종식 결의하였음. WHO발표 국제통계에 따른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은 2015년 인구 십만 명당 79명에서 2018년 66명으로 감소하였고, 결핵 사망률은 2015년 인구 십만 명당 5.3명에서 2018년 4.8명으로 감소하였음. 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률은 여전히 1위이나, 결핵사망률은 리투아니아 (5.6명)에 이어 2위를 기록함.



(자료원 :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9.)

그림 1. 세계 결핵 현황, 2018

## 2. 국내 동향

2018년 결핵 신환자는 26,433명(10만 명당 51.5명)으로 2011년 최고치(39,557명) 이후 7년 연속 감소함. 2018년에는 2017년(28,161명, 10만 명당 55명) 대비 신환자율 6.4% 감소함. 특히 20-29세 결핵 신환자는 2018년(2,112명, 10만 명당 31.1명)으로 2017년(2,564명, 10만 명당 38.0명) 대비 18.2% 감소를 보임.

표 1. 2001-2018 연도별 신고 결핵 신환자수 및 율

(단위: 명, (명/10만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환자 수	34,123	32,010	30,687	31,503	35,269	35,361	34,710	34,157	35,845	36,305	39,557	39,545	36,089	34,869	32,181	30,892	28,161	26,433
신환자 율	(71.3)	(66.5)	(63.5)	(65.0)	(72.4)	(72.3)	(70.6)	(69.1)	(72.2)	(72.8)	(78.9)	(78.5)	(71.4)	(68.7)	(63.2)	(60.4)	(55.0)	(51.5)
전체환자 수	46,082	43,040	40,500	41,735	46,969	46,284	45,597	44,174	47,302	48,101	50,491	49,532	45,292	43,088	40,847	39,245	36,044	33,796
전체환자 율	(96.3)	(89.4)	(83.8)	(86.1)	(96.5)	(94.7)	(92.8)	(89.4)	(95.3)	(96.4)	(100.8)	(98.4)	(89.6)	(84.9)	(80.2)	(76.8)	(70.4)	(65.9)

※ 전체환자: 신환자, 재발환자, 실패 후 재치료자, 중단 후 재치료자, 이전치료결과 불명확자, 과거치료여부 불명확자, 기타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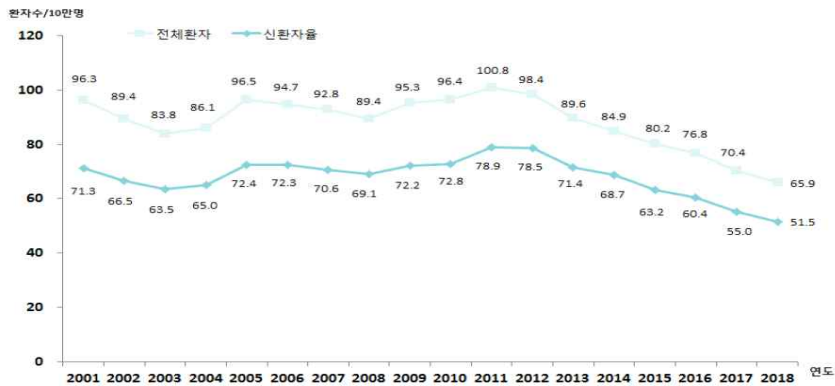


그림 2. 2001-2018 연도별 결핵환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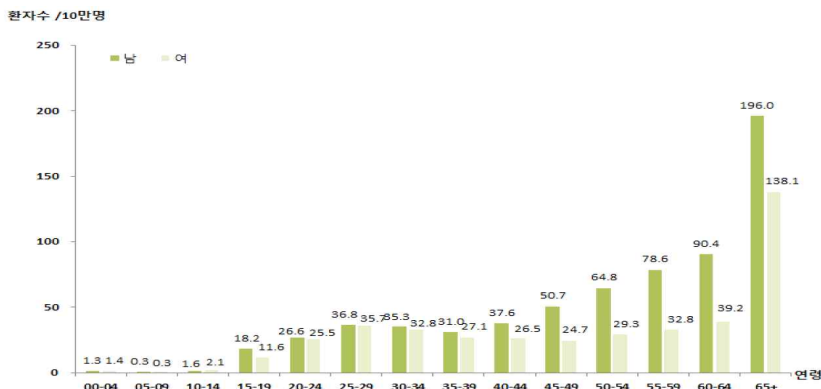


그림 3. 2018 성별, 연령별 신고 신환자율



표 2. 2018 성별 연령별 신고 신환자수 및 율

(단위: 명, (명/10만명))

연령 구분	계	성별	
		남	여
계	26,433 (51.5)	15,313 (59.8)	11,120 (43.3)
0~4세	27 (1.3)	13 (1.3)	14 (1.4)
5~9세	7 (0.3)	4 (0.3)	3 (0.3)
10~14세	43 (1.8)	19 (1.6)	24 (2.1)
15~19세	431 (15.0)	272 (18.2)	159 (11.6)
20~24세	897 (26.1)	482 (26.6)	415 (25.5)
25~29세	1,215 (36.3)	649 (36.8)	566 (35.7)
30~34세	1,101 (34.1)	587 (35.3)	514 (32.8)
35~39세	1,173 (29.1)	637 (31.0)	536 (27.1)
40~44세	1,273 (32.1)	756 (37.6)	517 (26.5)
45~49세	1,716 (37.9)	1,165 (50.7)	551 (24.7)
50~54세	1,963 (47.2)	1,361 (64.8)	602 (29.3)
55~59세	2,381 (55.7)	1,682 (78.6)	699 (32.8)
60~64세	2,177 (64.5)	1,506 (90.4)	671 (39.2)
65~69세	1,918 (81.8)	1,268 (112.3)	650 (53.4)
70~74세	2,001 (110.3)	1,191 (142.7)	810 (82.7)
75~79세	3,044 (192.0)	1,581 (238.5)	1,463 (158.6)
80세 이상	5,066 (308.1)	2,140 (405.9)	2,926 (262.0)

표 3. 2018 시·도별 신고 결핵 신환자수 및 율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신환자수(명)	26,433	4,747	1,764	1,219	1,373	653	583	585	99
신환자율(명/10만명)	(51.5)	(49.2)	(51.6)	(49.8)	(47.0)	(45.0)	(39.2)	(50.7)	(33.4)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환자수(명)	5,666	1,154	862	1,278	1,006	1,419	1,854	2,303	373
신환자율(명/10만명)	(44.1)	(75.3)	(54.3)	(60.6)	(54.9)	(75.6)	(69.5)	(68.6)	(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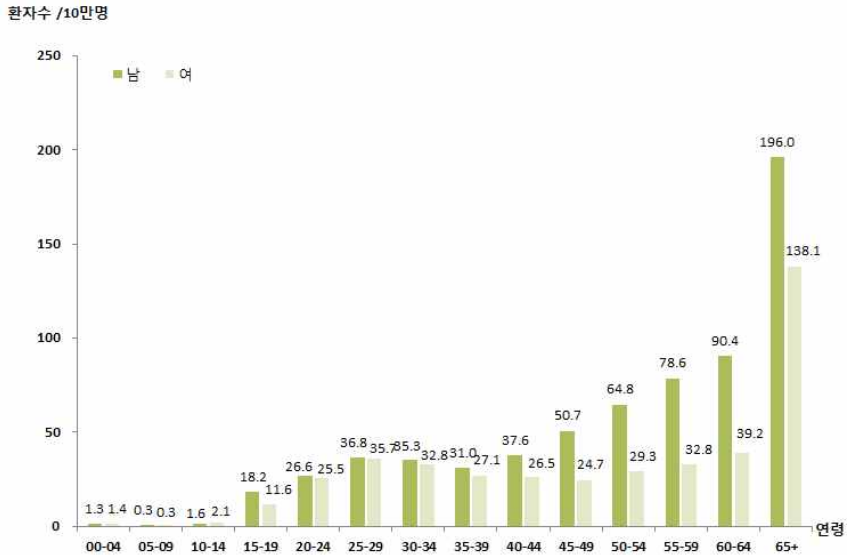


그림 4. 2018 성별, 연령별 신고 신환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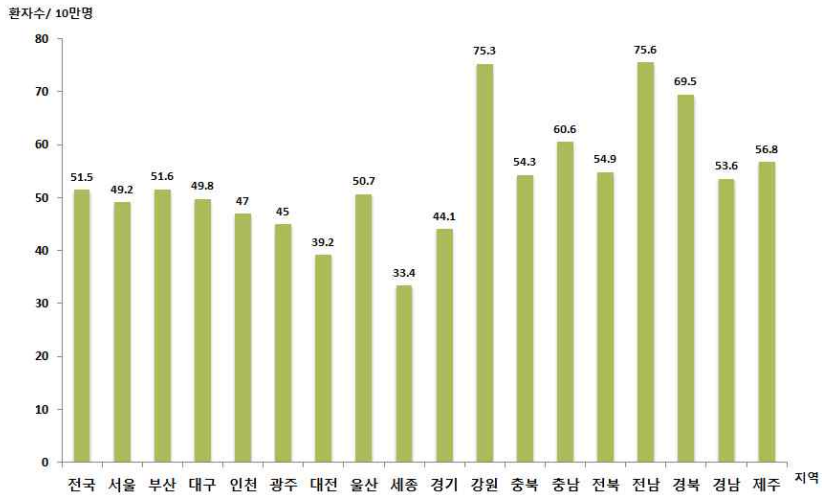


그림 5. 2018 시도별 신고 신환자율

표 4. 결핵 사망자 수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망자	2,323	2,292	2,365	2,364	2,466	2,230	2,305	2,209	2,186	1,816	1,800

※ 자료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제 2 절

## 국가결핵관리사업

## 알려두기

결핵은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중 발생 및 사망이 가장 많고 막대한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국가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절은 국가결핵관리사업의 기본 내용, 관련 조직의 임무에 대한 내용이다.

## 1. 추진 배경

우리나라 결핵관리는 1962년 국가결핵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결핵예방, 환자발견, 등록관리 및 치료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고, 경제성장에 따른 주거 위생과 영양 상태의 개선,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의료접근도의 향상 등으로 빠른 속도로 환자가 감소하였음. 2000년 이후 결핵환자 감소 속도의 둔화로 결핵예방·관리 정책이 집중 투자되었고 그 성과로 최근 5년 연속하여 감소 추세임. 그러나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결핵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환자의 증가, 학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결핵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다각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추진과 노력이 요구됨.



## 2. 결핵퇴치사업의 추진 경과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학계, 의료계를 비롯하여 WHO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핵퇴치 2030계획(2008)’, ‘결핵조기퇴치 New 2020plan(2010)’을 수립하여 새로운 결핵관리사업의 틀을 마련하였음. 또한 결핵예방법 전부개정(2010. 1. 25. 시행 2011. 1.16.)을 통해 결핵환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신고(기존 7일 이내에서 ‘지체없이’로 변경)하고 결핵환자 접촉자조사, 입원명령 및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결핵환자 의료비지원 등의 각종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2013년 ‘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13~‘17)’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결핵퇴치사업에 돌입, 중앙결핵역학조사팀을 구성하여 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 사업)을 강화하여 개별역학조사 등 환자관리체계를 개선하였음. 2014년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2014.1.28. 시행 2014.7.29.)을 통해 잠복결핵감염관리비 지원, 입원명령권의 시·도지사로의 확대 등 퇴치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2015년은 결핵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고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결핵집중 관리로서 결핵예방교육, 잠복결핵감염 검사·치료를 시행하였고, 또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 영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작하여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하는 모든 대상자는 영양급여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치료받게 되었음. 2016년은 지금까지의 환자 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감염 단계부터 발병 전 치료를 하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 본격적으로 법적 의무대상인 집단시설 종사자 외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유치원교사, 재소자 등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을 수행하였음. 또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2016.2.3. 시행 2016.8.4)으로 집단시설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결핵환자 외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무료로 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음. 2018년~2019년도에는 결핵발생을 선진국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담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18~‘22)」,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음.

### 3. 결핵관리 종합계획

#### 가. 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3~2017)

- 비전 :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 목표 :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 당 50명으로 감소 ('11년 대비 1/2)
  - 성과 목표 1 :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 1/2 수준 도달
  - 성과 목표 2 : 도말양성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95% 달성 및 유지
  - 성과 목표 3 : 2020년까지 결핵사망률 1/2 수준 도달

#### 나.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8~2022)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국가결핵 예방·관리에 대한 목표 와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제시

- 비전 :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 목표 :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의 1/2 수준으로 감소
  - 성과 목표 1 :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40명으로 감소
    - \* '35년까지 결핵퇴치(10만 명당 10명)를 목표로 추진
- 추진 방향 :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예방, ▲환자중심의 관리와지지, ▲연구개발 및 진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의 4개 전략을 기반으로 12개 과제 추진

#### 다.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2018-2022)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 이후 좀 더 강화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10만명당 10명 수준으로 조기퇴치를 위한 목표와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제시

- 비전 :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 목표 : 2030년까지 결핵퇴치(10만명당 10명수준)
- 추진 방향 : ▲결핵예방 및 조기발견, ▲환자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제 관리,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의 4개 전략을 기반으로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검진강화, 환자 치료·관리 강화 등을 15개 중점 과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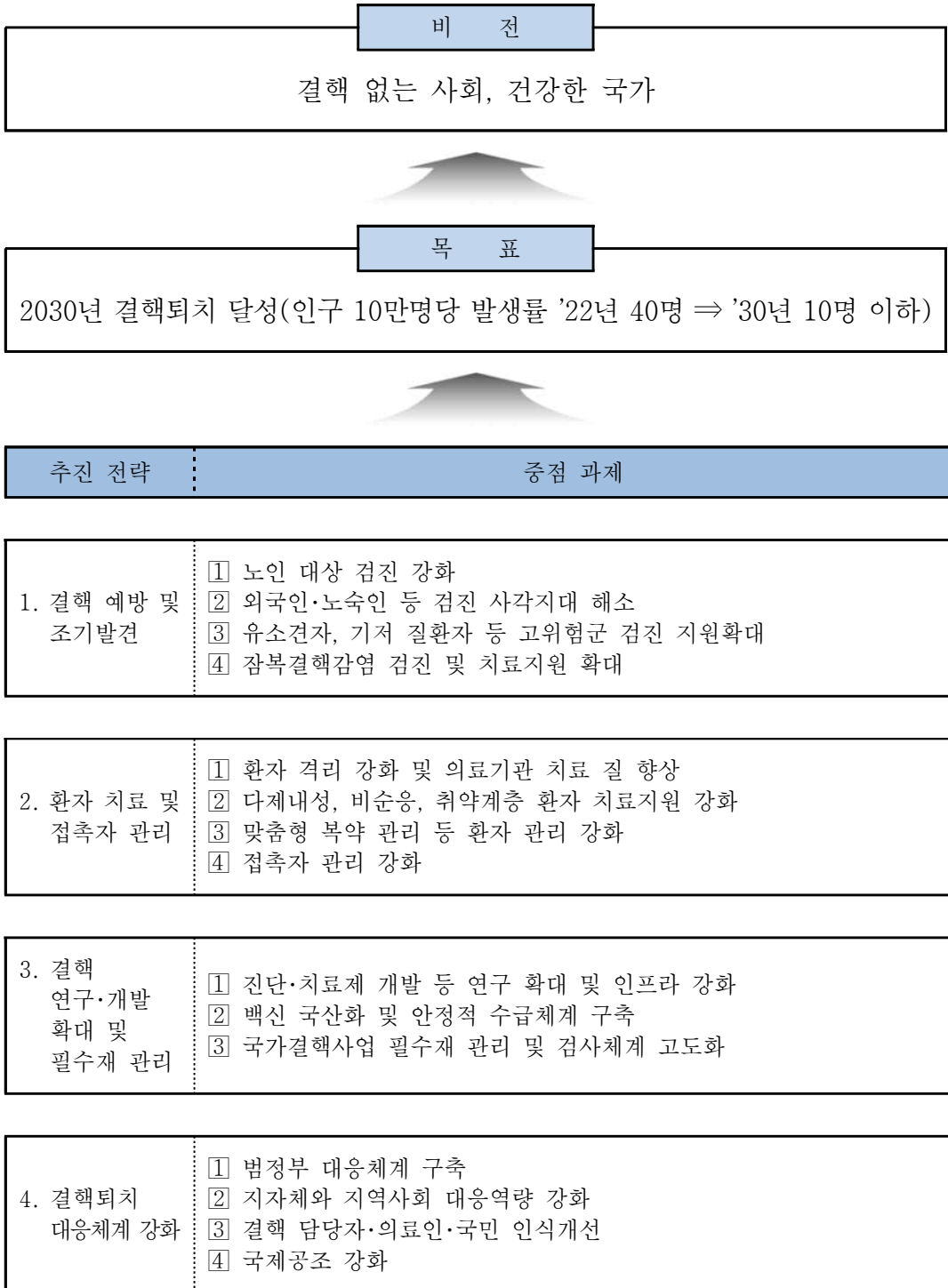


그림 6. 결핵예방관리강화대책 주요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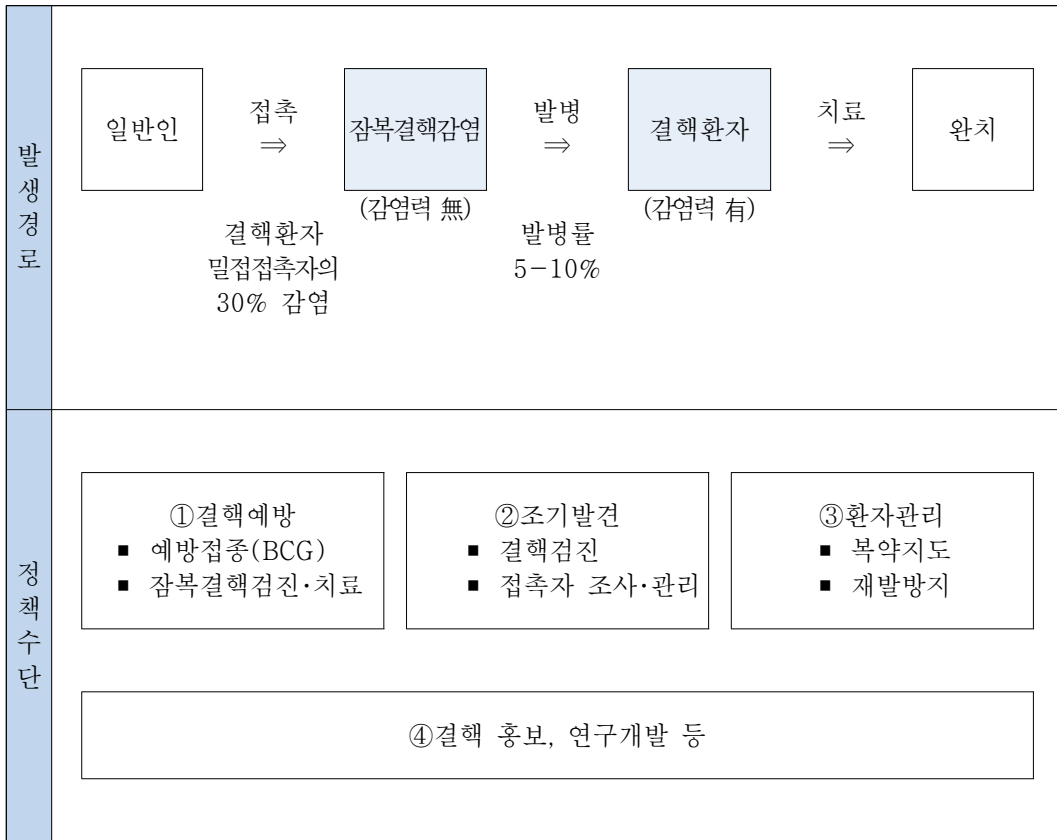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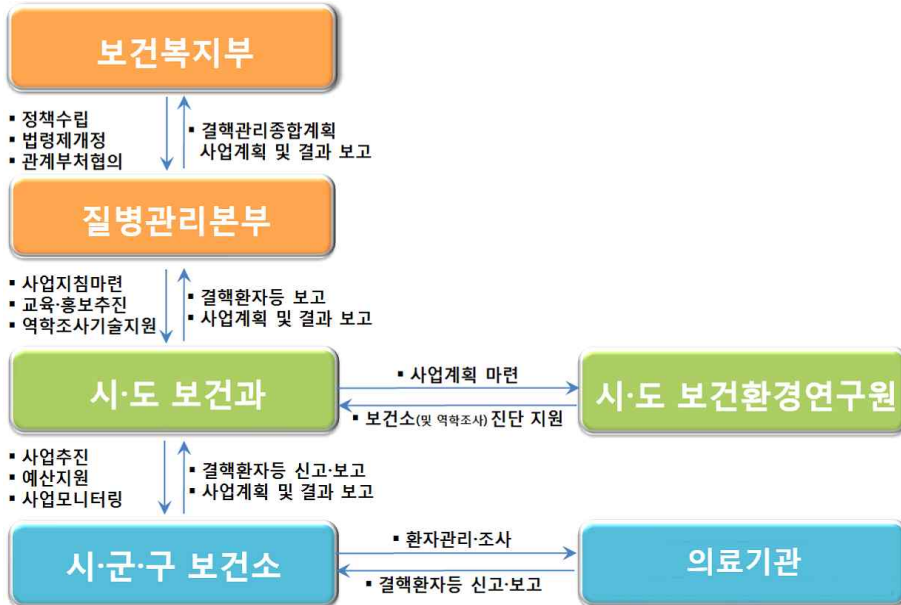


그림 7. 결핵 발생 경로와 정책영역

## 4.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관별 역할

### 가. 결핵관리사업 체계도



### 나. 기관별 임무

#### 1) 중앙 정부

##### 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국가결핵관리정책 총괄
- 결핵예방법 등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 관계부처 협의
- 국가결핵관리사업 관련 민간단체 등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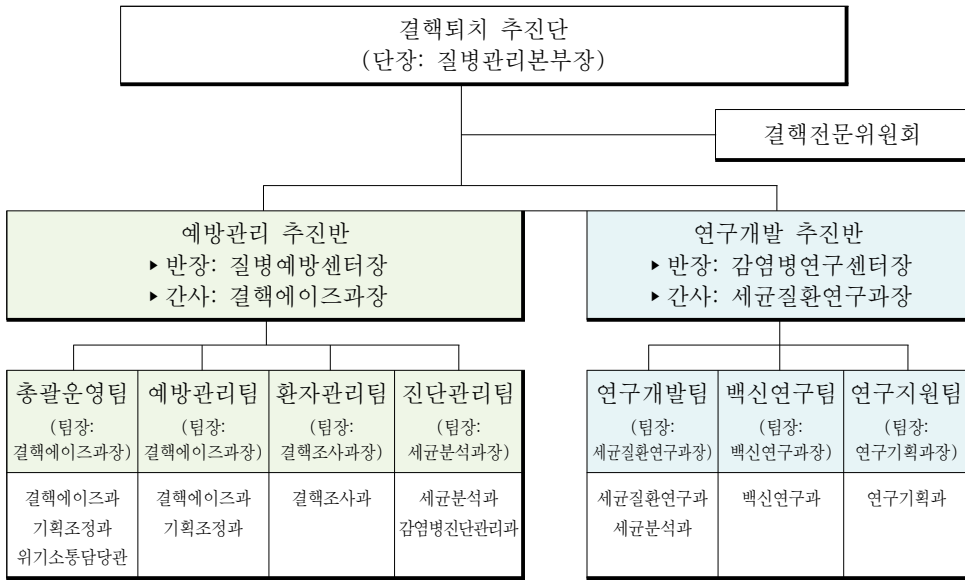


## 나) 질병관리본부

- 결핵·에이즈관리과
  - 결핵관리 종합계획 등 대책 수립과 시행
  - 국가결핵감시체계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 구축 및 운영
  - 국가결핵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지자체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관리 및 평가
  - 국가결핵연구개발
  - 결핵 관련 국제협력사업
- 결핵조사과
  - 결핵환자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민간·공공협력(PPM) 결핵환자관리사업
  - 다제내성,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 가족접촉자조사 및 관리
  - 중앙결핵전문역학조사반 운영
- 세균분석과
  - 결핵 공공 실험실 검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이탈주민 결핵검사
  - 결핵 실험실 검사 정도관리 운영
  - 결핵균 분자역학 실험실 감시망 구축 및 운영
- 감염병진단관리과
  - 실험실 검사법 표준화 및 관리
  - 지자체 실험실 검사역량 강화 지원
- 결핵퇴치 추진단
  -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의 이행·점검·평가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내부 조직

< 결핵퇴치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

- 임무
  -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이행·점검·평가
- 운영
  - 결핵퇴치 추진단 정례회의(격월 1회, 단장 주재)
  - 결핵퇴치 추진단 반별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통한 점검(월 1회)
- 구성



2) 지방정부

가) 시·도

- 보건위생과, 보건정책과 등
  - 시·도 결핵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운영
  - 시·도 결핵관리반의 구성과 운영\*
  - 시·군·구 보건소의 결핵관리사업 지원, 분석 및 평가
  - 결핵통합관리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을 통한 결핵환자등 보고 및 자료 관리
  - 시·군·구 보건소의 결핵관리담당자 교육 및 관리
  - 시·군·구 결핵 집단시설 접촉자조사 관리 및 지원

- 보건환경연구원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실험실 검사
  - 결핵 집단시설 접촉자조사 검사 지원 등

#### < 시·도 결핵관리반의 구성과 운영 >

- 구성
  - 감염병관리팀장
  - 결핵관리 의사 (공중보건 의사 포함)
  - 결핵관리 담당자 (공무원)
  - 결핵역학조사 담당자 (공무원)
  - 사례관리 요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최소 1명)
- 임무
  - 시·도 결핵관리 시행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 결핵환자 사례상담 실시 및 복지서비스 연계
  - 결핵역학조사 현장 지원 및 관리
  - 시·군·구 보건소의 결핵관리사업 기술지도
  - 시·군·구 보건소 및 관할 지역 결핵 관련 담당자 교육
  -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운영
  - 지역의 결핵환자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지역에 맞는 결핵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실시
  - 취약성이 중등도 이상인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사례상담을 실시하고 환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관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관내 보건소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연2회(상반기, 하반기)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특히, 집단시설 결핵 발생 시에는 수시로 현장 조사 및 기술지원 실시)

- 감염병관리지원단 : 시·도 결핵관리 역할 지원

#### <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주요기능 >

- 지역 내 발생 감염병에 대한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음의 업무에 대해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를 지원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대책 마련
  -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자료 환류
  - 감염병 발생시 현장 역학조사 지원
  - 감염병 관리 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 &lt;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gt;

- 역할
  - 권역별로 지방정부 주관으로 민간의료기관, 관련 민간단체와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 지역 여건에 맞는 결핵환자관리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방향 도출
- 구성
  - 전국을 17개 시·도로 나누어 운영
  - 위원은 권역 내 보건소장, 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사,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감염병관리지원단, 대한결핵협회 및 결핵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결핵병원,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 관련 민간단체(다시서기센터, 쪽방상담소 등) 등으로 구성
  - 위원장은 '시·도 과장', 부위원장은 '권역 책임의사가 맡고, 간사는 '시·도 담당자와 권역 책임 간호사'가 수행
- 운영
  - 반기당 1회 개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부위원장이 회의 필요성 제기 가능
    - ※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도별로 결정

## 나) 시·군·구

- 보건소장
  - 관내 결핵관리 시행계획 수립, 운영 및 자체평가 실시
  - 관내 결핵환자등 보고·관리·조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관리, 결핵 예방·홍보사업 등 총괄
  - 관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 사업) 총괄
  - 관내 결핵 집단시설 접촉자조사 총괄
  - 관내 결핵관련 인력 관리

- 결핵관리 의사
  -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표준 진료(결핵진료지침 준수)
  - 관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 사업) 수행
  - 관내 결핵 집단시설 접촉자조사 수행
- 결핵관리 담당자
  - 결핵환자등 신고 접수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결핵환자등 보고, 자료 관리
  - 결핵환자등 사례 조사, 가족 접촉자 조사, 집단시설 역학조사 실시
  - 결핵환자관리(복약지도 및 전염성기간 복약확인,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입원격리 치료 명령 지원)
  - 결핵환자 맞춤형 복약관리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관리
  - 관내 결핵 예방 홍보·교육 사업 추진
  - 결핵 검사(객담 도말 및 배양검사, 기타 결핵 미생물학적 검사, 흉부 X선 검사 등) 의뢰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 사업) 운영, 분석, 평가
  - 입원·격리치료명령 및 비순응 결핵환자 지원(관련 의료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 항결핵제 및 결핵 관련 물품·기자재 관리
  - 결핵 관련 예산 집행 및 집행 실적 보고
- 결핵균검사 담당자
  - 객담 도말 검사 실시 및 관련 기록·시약·기자재 관리
  - 객담 도말 및 배양 검사와 기타 결핵 미생물학적 검사 등 의뢰
- 흉부 X선 검사 담당자
  - 흉부 X선 검사 실시 및 관련 시약·기자재 관리

### 3) 의료기관

- 결핵환자 검사 및 치료
-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PPM 의료기관)
  - 결핵환자 관리 및 접촉자조사 수행
- 가족접촉자검진 참여의료기관
  - 가족접촉자검진 수행

## 4) 민간단체

## 가) 대한결핵협회

-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 결핵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검진
  - 결핵 집단시설 역학조사(접촉자) 검진 지원
  - 결핵 흉부 X선 영상판독 지원(중앙영상 판독센터 운영)
  - 지자체 결핵균 검사 지원
  -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 지원
  - 결핵관리 의사 역할 등의 결핵환자 관리 지원
  - 결핵예방 및 퇴치 활동 지원을 위한 대국민 홍보

## 나) 결핵연구원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기술 지원
- 결핵균검사 정도관리 등 결핵관련 기술지원
- 결핵관련 역학 및 진단 등 연구 개발
- 결핵관련 국제협력 사업
- 결핵관리(보건소 공중보건 의사, 군의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등) 교육

## 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 민간·공공협력(PPM) 의료기관 모니터링
- 의료인 대상 교육 및 홍보

## &lt; 기관별 역할 &gt;

구분	중앙	시도	보환연	시군구	의료기관, 민간단체
<b>국가결핵관리사업 총괄</b>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		○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				
결핵 연구개발	○				
결핵 국제협력사업	○				
결핵관리반 구성 및 운영	○	○	○	○	○
<b>국가결핵 감시체계</b>					
국가결핵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	○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자료 관리	○	○	○	○	○
결핵 관련 통계 산출 및 관리	○				
<b>결핵환자 관리</b>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입원·격리치료명령, 외국인 결핵관리	○	○		○	○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	○	○		○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운영, 분석, 평가	○	○		○	○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상담, 치료				○	○
<b>결핵 역학조사</b>					
결핵 전문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				
가족접촉자 조사 수행 및 관리	○	○		○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수행 및 관리	○	○	○	○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기술지원, 분석 평가	○	○			
<b>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b>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계획 수립	○	○		○	
결핵 검진사업(기숙사 입소생, 노인 등)		○	○(경남)	○	○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집단시설 종사자 등)		○	○	○	○
<b>결핵 실험실 검사</b>					
결핵 공공실험실 검사 계획 수립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실험실 검사	○		○	○	○
결핵균 분자역학 실험실 감시망 구축	○				
결핵 진단검사 정도관리	○				○
<b>결핵 교육 및 결핵예방 홍보</b>					
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				
보건의료인, 결핵관리담당자 교육	○	○		○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치료대상자 교육	○	○		○	○
대국민 결핵예방 홍보	○	○		○	○



< 주요 조직 역할 및 구성 >

	시·도 결핵관리반	감염병 관리지원단	PPM 의료기관 권역협의회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목 적	시·도 결핵관리 시행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지역사회 내 결핵관리정책 수립 지원	의료기관의 검진 및 치료성공률 향상	지역 여건에 맞는 결핵환자관리 정책 발굴·개선방향도출
운영주체	시·도 (공공)	시·도 (공공)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PPM 사업단)	시·도 (공공)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염병관리팀장</li> <li>결핵관리 의사 (공중보건 의사 포함)</li> <li>결핵관리 담당자 (공무원)</li> <li>결핵역학조사 담당자 (공무원)</li> <li>사례관리요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최소 1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단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PM 의료기관 책임 의사</li> <li>PPM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소장</li> <li>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li> <li>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사업 참여 의사</li> <li>결핵관리 전담 간호사</li> <li>감염병관리지원단</li> <li>대한결핵협회</li> <li>결핵연구원</li> <li>보건환경연구원</li> <li>국립결핵병원</li> <li>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li> <li>관련 민간단체 (다시서기센터, 쪽방 상담소 등)</li> </ul>
역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결핵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li> <li>결핵환자 사례상담 실시 및 복지서비스 연계</li> <li>결핵역학조사 현장 지원 및 관리</li> <li>시·군·구 보건소의 결핵관리사업 기술 지도</li> <li>시·군·구 보건소 및 관할 지역 결핵 관련 담당자 교육</li> <li>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 대책 마련</li> <li>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자료 환류</li> <li>감염병 발생 시 현장 역학조사 지원</li> <li>감염병 관리 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공공협력 (PPM) 의료기관의 기관/권역별 핵심 지표 분석 및 미 도달 지표 개선 방안 도출</li> <li>기관별 사례분석 (비순응, 중단, 사망, 실패 등) 수행 및 대책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핵관리 현황 분석</li> <li>관리 우선 순위 결정</li> <li>결핵환자 치료·연계 체계 구축</li> <li>환자 사례 모니터링</li> </ul>
운영주기 (/연)	상시	상시	분기(4회)	반기(2회)



## 5. 행정사항

### 가. 결핵관리 인력 구성 및 자격기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 관련 업무 담당자를 신규로 임용하고자 할 때 다음의 자격기준 해당자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또한 신규 임용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결핵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결핵관리 담당자의 업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3년간 전보 지양. 전보 시에는 업무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1) 시·도

- 결핵관리 의사
  - 결핵과, 내과, 흉부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 보건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의사
    - ※ 결핵관리의사 부재 시 공중보건의 가능
- 결핵관리 담당자
- 결핵사례관리요원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 사업) 유경험자, 간호사, 보건관련 전공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
- 결핵역학조사담당자

#### 2) 보건소

- 결핵관리 의사
  - ※ 결핵관리의사 부재 시 진료실 의사 또는 공중보건의 가능
- 결핵관리 담당자
- 결핵관리전담요원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 사업) 유경험자, 간호사, 보건관련 전공자 등
- 결핵균검사 담당자 : 임상병리사
- 흉부 X선 검사 담당자 : 방사선사



## 나.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계획 수립

- 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시·군·구는 ‘결핵관리 종합계획 및 지자체 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마다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연간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후 결과 보고

### <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계획 수립 포함 내용 >

- 구성 내용
  - 결핵관리종합계획 또는 지자체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계획
    - ※ 자체 결핵관리사업(현장조사, 자체 특수사업 등) 내용 포함
  - 국가결핵관리사업 모니터링 결과(질병관리본부 발간 ‘결핵관리소식지’ 활용)
  - 결핵관련 인력 배치와 교육 이수 현황 등
- 작성 요령
  - 사업 목표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사업 실적이 저조할 시 원인 파악 및 방해 요인 제거 방안 및 수행한 조치,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및 계획

## 다. 결핵관리실 설치 및 검진 기록의 보관

### 1) 보건소 결핵관리실 설치의 기본원칙

- 채광, 통풍 등 환기가 잘되는 공간
- 타인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결핵환자의 비밀보장이 가능한 공간
- 결핵환자 및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 유도를 위한 편안한 공간

### 2) 검진 기록(X선 필름 포함) 보관사항

- 결핵검진에 관한 각종 기록 및 X선 필름은 진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 결핵환자등(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포함)의 진단 기록 및 X선 필름은 치료 종료로부터 10년간 보관

## 라. 결핵관련 근무 원칙

- 결핵환자와 접촉하는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며, 특히 결핵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항상 마스크(N95)를 착용함

- 결핵환자등(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포함)에게 마스크(일회용)를 착용토록 함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182호, '17.3.3) 제8장 제4절(공기매개 감염노출 위험작업시 조치기준)

#### 마. 교육 (교육주관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결핵 관리 팀장, 결핵관리 담당자 및 결핵관리요원 포함
  - 교육명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결핵관리과정'
  - 대상자 : 결핵 담당 팀장 및 결핵관리 실무담당자
    - ※ 특히, 신규 임용자 및 결핵업무에 신규 배치된 경우 필수 이수
  - 방 식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오송 소재) 집체교육
- 잠복결핵감염 검사(IGRA) 담당자
  - 교육명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호흡기계세균검사분석과정'
  - 대상자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잠복결핵검사 담당자
  - 방 식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오송 소재) 집체교육
- 항산균도말검사 담당자
  - 교육명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결핵검사분석과정'
  - 대상자 : 시·군·구 보건소 결핵 검사 담당자
  - 방 식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오송 소재) 집체교육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 사업) 간호사 교육
  - 교육명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기본/심화교육
  - 대상자 :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 방 식 : 강의식 집체교육
- 보수교육
  - 결핵관리 의사(진료의사, 공중보건 의사, 군의관 포함) : 질병관리본부 및 대한결핵협회 중앙교육원 등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결핵 교육 이수
  - 결핵관리 실무담당자 : 시·도에서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결핵관리 실무담당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결핵관련 교육 실시



바. 결핵 필수재 수급관리 (부록 3절 참고)

- 결핵 필수재의 안정적인 국내수급을 위하여, 수급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진단제 및 국내 생산이 중단된 결핵 치료제를 원활하게 공급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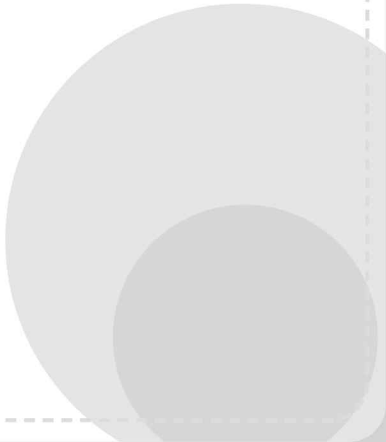
## II

# 결핵 신고·보고·사례조사

---

제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 26

제2절 사례조사 / 40



제 1 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일러두기

결핵환자등 신고·보고는 국가결핵 감시·관리 수행을 위한 첫 단계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신고·보고가 요구된다. 이 절은 국가결핵 감시·관리 체계의 운용을 위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에 대한 내용이다.

1. 개요

가. 감시의 정의

감시란 감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항]

나. 국가결핵 감시체계 기본방향

1)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 가) 결핵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보고
- 나) 관내 의료기관의 신고율 제고
- 다)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식의 충실성 제고
- 라)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자료 검토 등 자료 질관리

2) 결핵 정보 관리를 통한 결핵통계 등 정보의 질 및 유용성 확보

- 가) 결핵 발생현황 모니터링
- 나) 국가결핵통계의 산출
- 다) 행정기관, 의료기관, 학교, 주민들에게 결핵관련 정보 제공

## 다. 국가결핵 감시업무 절차 및 내용

### 1)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및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 2) 신고 의무자

- 가)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 그 밖의 신고자 : 다음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3) 신고·보고시기 : 다음의 경우 24시간 이내

#### 가) 신고

- (1)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경우
- (2)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나) 보고 : 신고 (1)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치료한 결과

### 4) 신고대상

#### 가)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1) 결핵환자 :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
- (2) 결핵의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 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 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1) 검체(객담, 기관지세척액, 채액, 조직)에서 항산균도말 양성
- (2) 검체(객담, 기관지세척액, 채액, 조직)에서 결핵균\* 배양 양성
  - \* 특히 M. bovis는 배양에서 동정이 되어야 확진
- (3) 검체(객담, 기관지세척액, 채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감염병의 진단기준」, [시행 2019. 4. 30.] [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9-3호, 2019. 4. 30.]

## 5) 신고·보고 방법

가) 신고처 : 관할 보건소장

나) 신고방법 : 팩스 및 웹(<http://is.cdc.go.kr>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등의 방법

다) 신고서식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6) 결핵 신고·보고 체계 및 역할

가) 신고·보고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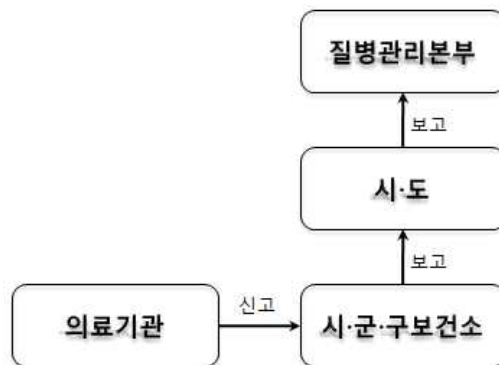


그림 1.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체계도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자료관리는 환자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나) 기관별 역할

### (1) 질병관리본부

- (가)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지침 수립
- (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 운영 및 관리
- (다) 신고·보고자료 검토 및 최종 승인
- (라) 신고·보고자료 분석 및 환류
- (마) 신고·보고관련 홍보 및 교육

### (2) 시·도

- (가) 시·군·구 신고·보고자료 검토 및 보고
- (나) 시·군·구 지도 및 감독
- (다) 신고·보고관련 홍보 및 교육

### (3) 보건소

- (가) 의료기관 신고·보고자료 검토 및 보고
- (나)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 (다) 신고·보고관련 홍보 및 교육

### (4) 의료기관(국·공립, 민간)

- (가) 결핵환자 진단 및 치료
- (나) 결핵환자 발생·사망 시 신고
- (다) 결핵환자 치료결과 보고

## 7) 벌칙조항

결핵예방법 제8조 제1항부터 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핵예방법 제33조]

## 2.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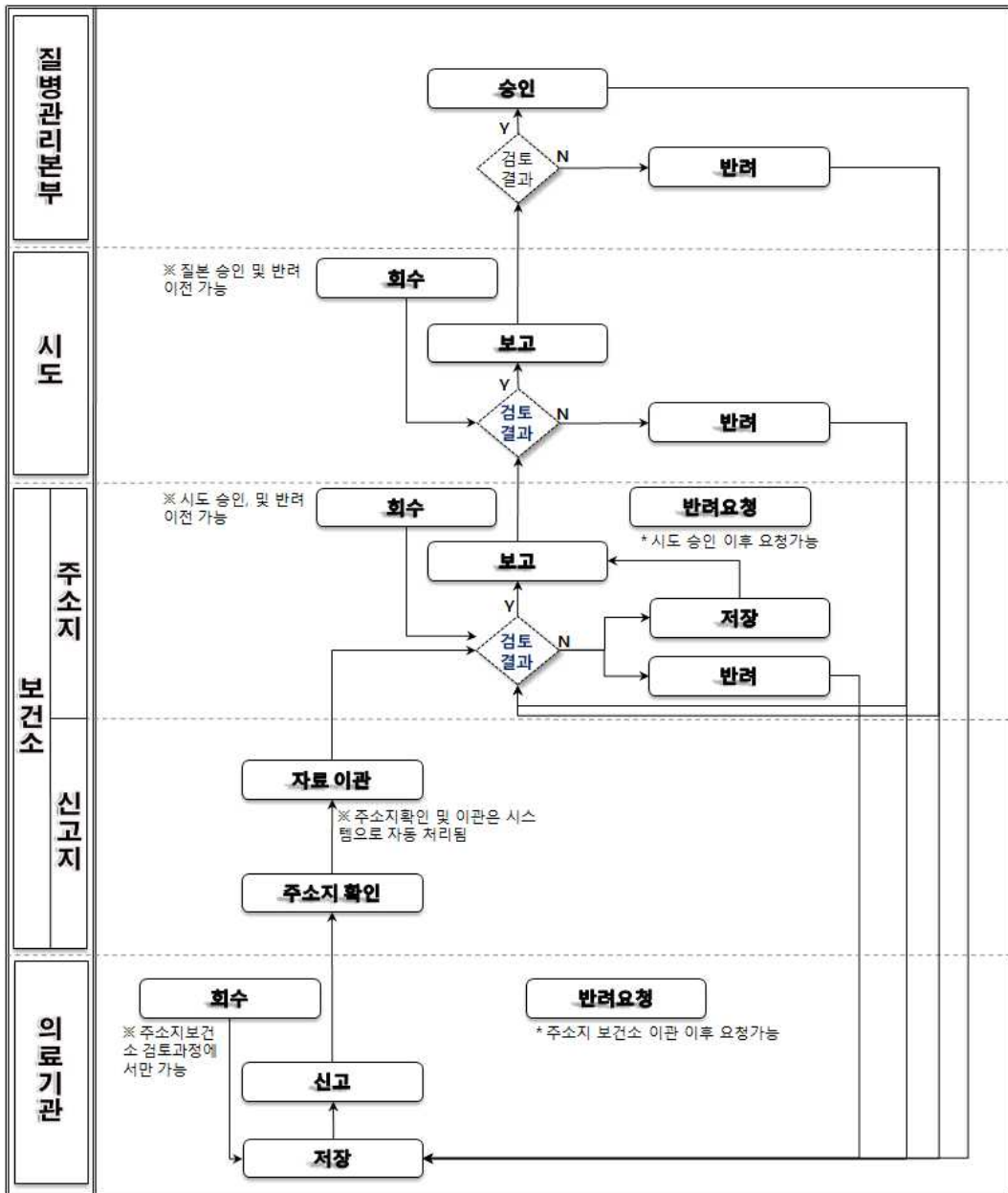


그림 2.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세부절차

## 가. 결핵환자등 발생 신고

-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임상적, 방사선학적, 세균학적, 조직학적 진단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의 환자 인적사항과 검사·진단·치료 정보 중 진단 당시 확인 가능한 항목을 기입하여 의료기관의 관할 행정기관(보건소)으로 신고
  - 환자 및 사망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과 신고·보고자 정보는 필수정보로서 반드시 기입
    - ※ 외국인 결핵환자 신고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통해 인적사항 정보 조회 후 기입
  - 검사·진단·치료 정보 중 신고 당시 미 실시 또는 검사 중인 경우 추후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을 보완신고

## 나. 결핵환자등 사망 신고

- 결핵환자등이 사망 후 사체검안을 통해 발견된 경우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의 결핵환자등 사망·사체검안 항목을 선택 후 사망자의 인적사항등 확인 가능한 항목을 기입하여 의료기관의 관할 행정기관(보건소)으로 신고
  - 결핵환자등이 사망 이전 임상적, 방사선학적, 세균학적, 조직학적 진단이 된 경우 발생보고와 동시에 치료결과를 ‘결핵사망’ 또는 ‘결핵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치료결과를 보고

## 다. 결핵환자등 치료결과 보고

- 결핵환자등의 투약을 종료하였을 경우 투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식 1>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치료결과구분 정의(2쪽)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
  -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신고·보고 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저장’ 이후 ‘승인요청’을 통해 상위기관에 수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라.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작성 방법

표 1.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작성 방법

대분류	번호	항목명	작성 방법
환자의 인적사항	1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 기호나 공백 없이 한글로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영문명으로(공백포함) 기입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공백포함)으로 기입</li> </ul> </li> <li>※ 예시: (HONG(성) GILDONG(이름))</li> </ul>
	2	주민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에 표기된 숫자 13자리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신고 시 성별과 나이는 자동 입력되며, 불명 체크 시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함</li> <li>-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기입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불명일 경우 여권상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를 기입</li> </ul> </li> <li>※ 주민등록번호 불명일 경우 '생년월일-0000000' 등으로 입력하지 않고 '불명'으로 입력</li> </ul>
	3	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기준으로 만 나이 자동 생성되며 수정가능 함</li> <li>- 주민등록번호 불명 시 수동으로 필수 입력</li> </ul>
	4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성별정보(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 기준으로 자동 생성 됨</li> <li>- 주민등록번호 불명 시 수동으로 필수 입력</li> <li>- 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 1,3,5,7 = 남자, 2,4,6,8 = 여자</li> </ul>
	5	국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란에 체크하고, 국적은 표준국가명 조회 항목을 이용하여 기입</li> <li>※ 시스템의 경우 내국인 선택 시 "대한민국" 자동입력 됨</li> </ul>
	6	최근입국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인 경우, 최근 국내에 입국한 일자를 기입</li> </ul>
	7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와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번호 기입</li> </ul>
	8	이동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와 연락 가능한 이동전화번호 기입</li> </ul>
	9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의 실거주지 주소를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 거주지 주소를 모르는 경우 불명으로 기입</li> </ul> </li> <li>• 군인환자 발생 시 주소 입력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란에 '군인' 클릭</li> <li>- (군부대) 주소 : 시설명 및 시설주소에 기입 (기재 범위는 군내부 지침에 따름)</li> <li>- (환자) 주소 : 환자의 (입대 전) 원 주소지 (환자 원 주소지에 대한 접촉자 검진/역학조사 필요)</li> </ul> </li> </ul>

대분류	번호	항목명	작성 방법
	10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핵유행의 조기인지 및 접촉자조사 등 신속한 예방·관리활동을 위한 중요 정보로서, 반드시 기입함</li> <li>서식 상 직업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하고, 이외의 직업인 경우 [기타]에 직업을 직접 기재함</li> <li>선택한 직업에 대한 시설명, 시설주소 등 필수 기재</li> <li>환자와 접촉자 관리를 위한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29]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li> </ul>
결핵 초회검사	13	초회검사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핵환자등을 최초 진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각 검사에 대한 정보를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검사를 2번 이상 실시한 경우(예: 배양검사를 액체배지와 고체배지에서 각각 시행) 전산시스템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기입</li> </ul> </li> </ul>
	14	검사 상태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사 상태와 결과를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흉부 X선 검사의 경우 '결핵의심' 은 '양성'란에, '정상'은 '음성'란에 표시</li> <li>- 배양 검사, TB-PCR 검사 결과 NTM 균으로 확인 된 경우 'NTM' 으로 입력</li> </ul> </li> </ul>
	15	검체 채취일 (또는 검사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한 초회검사에 대하여 검체를 채취하였거나 검사를 실시한 일자를 기입</li> </ul>
	16	검체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객담과 객담외를 구분하여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지내시경으로 채취한 검체의 경우 객담으로 선택 함.</li> </ul> </li> </ul>
진단 및 초치료 약제	17	질병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서식 1&gt;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의 결핵질병코드(4쪽)을 참조하여 작성. 호흡기결핵/기타결핵 및 도말양성 등의 구분을 위해 소숫점 둘째자리까지(최소 첫째자리까지) 입력</li> </ul>
	18	결핵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핵종류를 선택하여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외결핵 포함 시 병변위치 필수 입력 필요</li> </ul> </li> </ul>
	19	환자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서식 1&gt;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의 환자구분 정의(2쪽)를 참조하여 입력</li> </ul>
	20	해당의료기관 에서 치료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핵진단 및 신고 후 해당기관에서 투약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하여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시작(또는 예정)을 선택한 경우 치료시작(또는 예정)일 필수 기입</li> </ul> </li> </ul>



대분류	번호	항목명	작성 방법												
	21	치료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핵환자등의 진단 후 해당의료기관에서 최초 처방한 항결핵 약제명을 아래를 참고하여 기입</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군</th> <th>항결핵제명(약어)</th> </tr> </thead> <tbody> <tr> <td>1군</td> <td>Isoniazid(H), Rifampicin(R), Ethambutol(E), Pyrazinamide(Z), Rifabutin(Rfb), Rifapentine(Rpt)</td> </tr> <tr> <td>2군</td> <td>Kanamycin(Km), Amikacin(Amk), Capreomycin(Cm), Streptomycin(S)</td> </tr> <tr> <td>3군</td> <td>Levofloxacin(Lfx), Moxifloxacin(Mfx), Ofloxacin(Ofx), Gatifloxacin(Gfx)</td> </tr> <tr> <td>4군</td> <td>Prothionamide(Pto), Cycloserine(Cs), <i>p</i>-aminosalicylic acid(PAS), Ethionamide(Eto), Terizidone(Trd), <i>p</i>-aminosalate sodium(PAS-Na)</td> </tr> <tr> <td>5군</td> <td>Linezolid(Lzd), Clarithromycin(Clr), Bedaquiline(Bdq), Delamanid(Dlm), Clofazimine(Cfz), Meropenem(Mpm), Amoxicillin/Clavulanate(Amx/Clv), Imipenem/Cilastatin(Ipm/Cln), High-dose isoniazid(High dose H), Thioacetazone(T)</td> </tr> </tbody> </table>	군	항결핵제명(약어)	1군	Isoniazid(H), Rifampicin(R), Ethambutol(E), Pyrazinamide(Z), Rifabutin(Rfb), Rifapentine(Rpt)	2군	Kanamycin(Km), Amikacin(Amk), Capreomycin(Cm), Streptomycin(S)	3군	Levofloxacin(Lfx), Moxifloxacin(Mfx), Ofloxacin(Ofx), Gatifloxacin(Gfx)	4군	Prothionamide(Pto), Cycloserine(Cs), <i>p</i> -aminosalicylic acid(PAS), Ethionamide(Eto), Terizidone(Trd), <i>p</i> -aminosalate sodium(PAS-Na)	5군	Linezolid(Lzd), Clarithromycin(Clr), Bedaquiline(Bdq), Delamanid(Dlm), Clofazimine(Cfz), Meropenem(Mpm), Amoxicillin/Clavulanate(Amx/Clv), Imipenem/Cilastatin(Ipm/Cln), High-dose isoniazid(High dose H), Thioacetazone(T)
			군	항결핵제명(약어)											
			1군	Isoniazid(H), Rifampicin(R), Ethambutol(E), Pyrazinamide(Z), Rifabutin(Rfb), Rifapentine(Rpt)											
			2군	Kanamycin(Km), Amikacin(Amk), Capreomycin(Cm), Streptomycin(S)											
			3군	Levofloxacin(Lfx), Moxifloxacin(Mfx), Ofloxacin(Ofx), Gatifloxacin(Gfx)											
4군	Prothionamide(Pto), Cycloserine(Cs), <i>p</i> -aminosalicylic acid(PAS), Ethionamide(Eto), Terizidone(Trd), <i>p</i> -aminosalate sodium(PAS-Na)														
5군	Linezolid(Lzd), Clarithromycin(Clr), Bedaquiline(Bdq), Delamanid(Dlm), Clofazimine(Cfz), Meropenem(Mpm), Amoxicillin/Clavulanate(Amx/Clv), Imipenem/Cilastatin(Ipm/Cln), High-dose isoniazid(High dose H), Thioacetazone(T)														
항결핵 약제 내성검사	22	항결핵약제 내성검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결핵환자의 첫 배양분리 군수에 대하여 실시하며, 해당 검사 결과를 선택하여 기입</li> <li>- Xpert MTB/RIF 검사 결과상 MTB로 확인된 경우 검사방법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Xpert MTB/RIF 검사 등)' 으로 선택하여 내성결과 입력</li> </ul>												
	23	항결핵약제 내성검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적인 방법, 신속내성검사,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Xpert MTB/RIF 검사 등) 인지를 선택하여 기입</li> </ul>												
	24	항결핵약제 내성 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결핵약제 내성검사 결과 내성이 있는 약제를 선택 하여 기입</li> </ul>												
	25	항결핵약제 내성 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항결핵 내성 약제 선택 시 다음의 기준으로 자동선택 됨</li> </ul> <table border="1"> <tbody> <tr> <td>- R = 리팜핀단독내성결핵</td> </tr> <tr> <td>- H &amp; R = U84.30(다약제내성결핵)</td> </tr> <tr> <td>- H &amp; R &amp; (Lfx or Mfx or Ofx or Gfx) &amp; (Km or Amk or Cm) = U84.31(광범위약제내성결핵)</td> </tr> </tbody> </table>	- R = 리팜핀단독내성결핵	- H & R = U84.30(다약제내성결핵)	- H & R & (Lfx or Mfx or Ofx or Gfx) & (Km or Amk or Cm) = U84.31(광범위약제내성결핵)									
	- R = 리팜핀단독내성결핵														
- H & R = U84.30(다약제내성결핵)															
- H & R & (Lfx or Mfx or Ofx or Gfx) & (Km or Amk or Cm) = U84.31(광범위약제내성결핵)															
26	검체채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결핵약제 내성검사 실시를 위한 검체 채취일자를 기입</li> </ul>													

대분류	번호	항목명	작성 방법
치료결과	27	치료결과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서식 1&gt;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치료결과구분 정의(2쪽)을 참조하여 투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입. ‘사망’의 경우 원사인을 기준으로 결핵 관련과 결핵 이외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결과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의 경우 서식번호 (20)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실시 여부 중 치료안함을 선택하였다더라도 치료 결과 및 치료결과 판정일을 입력 함.</li> <li>- 치료결과는 치료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판정하도록 함</li> </ul> </li> </ul>
	28	치료결과 판정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결과를 판정한 일자를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결과에 따라 아래의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치’, ‘완료’ : 치료결과 판정을 위한 마지막 객담도말/배양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결과를 판정한 일자.</li> <li>- ‘중단’ : 치료종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일자</li> <li>-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 해당의료기관에서의 마지막 진료일</li> <li>- ‘사망’ : 사망일자로 입력한다.</li> </ul> </li> </ul> </li> </ul>
	29	치료종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기관에서의 투약을 종료한 일자를 기입</li> </ul>
비고	30	특기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실거주지, 과거치료약제, 수정·보완 내역, 특기사항 등 신고서 정보 이외 중요 정보 기입</li> </ul>
신고자	31	신고·보고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발생에 대해 상부로 신고한 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으로 신고시 신고일자는 자동 생성 됨</li> </ul> </li> </ul>
	32	요양기관 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평가원에서 발급하는 의료기관의 고유 식별번호</li> </ul>
		요양기관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하는 요양기관 이름 기입</li> </ul>
		요양기관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 연락처 기입</li> </ul>
	33	담당의사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의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성명 기입</li> </ul>
		의사 면허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기입</li> </ul>
진료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의사의 진료과목 기입</li> </ul>	



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접수(및 자료 이관)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는 환자의 주소지관할보건소\*에서 접수·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환자의 주소지관할보건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1) 의료기관으로부터의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를 접수

의료기관에서 팩스로 신고·보고한 경우, 보건소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결핵관리)에 입력하여 보고

※ 의료기관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결핵관리)으로 신고·보고한 경우, 보건소에서 별도 접수절차 불필요

2) 자료의 이관

환자의 주소지가 신고기관 관할 주소지와 다른 경우 신고기관 관할 주소지보건소는 환자의 주소지관할보건소로 신고·보고서를 이관하며, 환자의 주소지관할보건소는 이관 받은 자료를 접수

가) 자료의 이관 방법

(1) 신고기관 주소지관할 보건소

(가)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접수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 is.cdc.go.kr](http://is.cdc.go.kr) - 결핵관리)을 이용하여 환자주소지보건소로 자료이관

(나) 동 자료이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결핵관리)에서 자료 접수일 24시간 이내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 연계를 통해 환자의 주소지보건소로 자동이관 처리됨

※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환자의 주소지 보건소로 자동이관 처리됨

(다) 단, 외국인 또는 주민등록 불명자는 행정안전부 연계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이관 및 관리 실시

- 주민등록 불명자 : 신고기관의 관할 보건소로 자료이관 및 관리

- 외국인 : 환자의 실거주지 보건소로 자료이관 및 관리

※ 외국인의 경우 실 거주지가 불명일 경우 신고기관의 관할보건소로 자료이관 및 관리 실시



(2) 환자 주소지관할 보건소

(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결핵관리)에서 타 보건소로부터 이관된 신고자료 확인

바.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검토 및 처리(승인 또는 반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결핵관리)에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를 검토하여 상위기관으로 24시간 이내 보고
  - 검토 방법 : 주요 항목의 누락 및 오입력 [표 2.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주요항목 검토 방법]을 참고하여 신고기관에 반려 후 입력요청
  - 보고 방법 : 자료 승인
    - 단, 자료 미비시에는 반려(사유 명시)하여 자료보완을 확인 후 승인
- ※ 자료 승인 시 상위기관으로 자동 보고됨(별도의 보고 절차 불필)
- ※ 상위기관에서 반려할 경우 신고의료기관에서 자료 수정 가능
- ※ 단, 동 자료 검토와 처리로 인해 자료 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24시간 이내' 보고)



표 2.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주요항목 검토 방법

검토항목	검토방법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환자성명의 오입력 여부 확인</li> <li>-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해당 정보 확인</li> </ul>
주민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입력 여부 확인</li> <li>-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해당 정보 확인</li> </ul>
여권번호 (외국인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락 및 오입력 여부 확인</li> </ul>
생년월일 (외국인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해당정보 확인</li> <li>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해당환자의 여권 등을 통해 환자의 생년월일을 확인</li> </ul>
국적 (외국인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권, 비자 등을 통해 해당환자의 국적을 파악</li> <li>-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해당 정보 확인</li> </ul>
최근입국일 (외국인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락 및 오입력 여부 확인</li> </ul>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또는 주소불명체크항목 누락 여부 확인</li> </ul>
결핵초회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된 자료 중 질병코드와 비교하여 초회검사(흉부 X선, 객담도말, 객담배양, 객담의 도말, 객담의 배양, 객담 TB-PCR, 객담의 TB-PCR, 객담 Xpert MTB/RIF, 객담의 Xpert MTB/RIF)를 실시 여부 검토</li> <li>실시한 결핵초회검사 중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한 경우, 검사결과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확인</li> </ul>
약제 감수성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양검사 상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약제감수성검사 입력누락 여부 검토</li> <li>Xpert MTB/RIF 검사상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약제 감수성검사 입력누락 여부 검토</li> <li>약제감수성검사를 실시한 건 중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120일이 경과 하였으나 검사결과 입력 누락 여부 검토</li> </ul>

검토항목	검토방법
결핵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변위치와 질병코드를 확인하여 결핵종류의 적정성 여부 확인</li> </ul>
병변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종류가 폐외결핵 또는 폐결핵+폐외결핵일 경우 부여받은 질병코드와 비교하여 병변위치 적정성 여부 확인</li> </ul>
결핵 질병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초회검사결과, 결핵종류, 병변위치에 따른 질병코드 입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 '&lt;서식 1&gt;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의 결핵질병코드(4쪽)을 참고</li> </ul>
환자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구분 중 과거치료력에 따른 구분(신고서식 2쪽)의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자의 과거이력 조회를 통해 환자구분 검토</li> </ul>
해당의료기관에서 치료 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시작(또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시작일과 비교하여 '치료시작' 및 '치료예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치료예정인 환자가 치료를 시작한 경우 치료시작으로 변경 처리</li> </ul> </li> <li>• 치료안함으로 선택된 자료에 대해서는 환자의 적절한 치료 여부 확인</li> </ul>
치료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시작일자 기준으로 환자구분에 따라 치료여부 등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제내성이 없는 신환자 : 200일</li> <li>- 재치료, 과거치료여부불명확 : 300일</li> <li>- 다약제/광범위약제내성 : 2년</li> <li>- 단일약제내성 : 1년</li> </ul> </li> <li>• 치료안함으로 신고된 경우 신고일자 기준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치료결과가 없는 경우 해당환자의 현재 치료여부 및 다른 기관 전원 여부를 확인</li> <li>•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환자의 경우 전원된 치료기관에서의 신고 여부 확인 * 다른 의료기관 전원 후 신고여부는 관리보건소에서 확인</li> </ul>
신고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의사, 의사면허번호, 진료과목 등 신고자 정보 누락 및 오입력 여부 확인</li> </ul>



## 제 2 절

# 사례조사

### 일러두기

결핵환자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된 모든 환자에 대해 사례 조사를 실시한다. 이 절은 사례 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1. 개요

가. 조사 대상 :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 등으로 신고된 모든 환자

- 제외 대상 : 조사 기한 내 타 질환으로 진단 변경 또는 사망한 자
  - ※ 사례조사 제외 대상도 가족접촉자 조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등록, 가족접촉자 조사 대상이 없는 경우는 '독거' 입력
- 5세미만 소아 결핵환자(폐외결핵포함)는 철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소아 결핵 환자의 배양양성 균주는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
  - ※ IV. 결핵 역학조사 '[표5] 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절차' 참조

나. 조사 담당 :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

-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PPM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환자는 결핵관리전담 간호사가 조사를 실시하며,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 최종 관리

다. 조사 시기 : 신고일 기준 3일 이내

- 주말 및 법정공휴일 제외

### 라. 조사·보고 방법 : 유선 또는 대면 조사

- 조사서식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 보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결핵관리
- 벌칙조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결핵예방법 제31조의 2]

## 2.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작성

### 가. 1차 등록

- 환자의 인적사항, 과거병력 및 치료이력, 가족 및 동거인 정보, 임상특성 등 조사하여 등록
- 과거 결핵발병 여부, 과거 잠복결핵감염 여부, 기저질환 유무 조사
  - 결핵환자 증상 시작 3개월 전부터 소속된 집단시설 정보 조사
  - 호흡기 결핵환자의 경우 환자와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조사
    - \* 주거형태 기타에 시설명 기입 시 소속기관 명칭 및 주소에 동일하게 입력
  - 가족접촉자 : 지표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의 3개월 이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나. 최종 등록

- 환자의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내용을 보완하여 퇴록 시 최종 등록
- 초회 검사 세부 결과 입력 및 치료 결과 입력
  - 환자가 ‘중단’으로 퇴록한 경우 치료 중단 사유 등록



표 1.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작성 방법

대분류	서식 번호	항목명	작성 방법	
가. 인적 사항	1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에서 신고서와 연동되어 자동 생성 됨</li> </ul>	
	2	생년월일		
	3	성별		
	4	나이		
	5	연락처		
	6	주소		
	7	국적		
	8	체류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의 경우, 비자 종류 기입</li> <li>※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체류자격 확인</li> </ul>	
	9	입국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에서 신고서와 연동되어 자동 생성 됨</li> </ul>	
	10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의 직업 기입</li> <li>※ 시스템에서 신고서와 연동되어 자동 생성 됨</li> <li>군인, 보건의료인의 경우 세부 직업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 : 직업군인,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li> <li>- 보건의료인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기타 등</li> </ul> </li> <li>전염성 결핵환자 중 근로자 및 학생은 '업무종사 및 등교 일시제한' 대상임</li> <li>※ 'Ⅲ-제2절-2. 전염성 결핵환자 격리조치(업무종사 및 등교 일시제한)' 참조</li> </ul>	
	11	소속기관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에서 신고서와 연동되어 자동 생성 됨</li> </ul>	
	12	소속기관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가 소속된 기관(직장·입소기관)의 주소 기입</li> </ul>	
	13	생후 24 개월 이하 환자만 작성	출생병원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의 출생병원명 기입</li> <li>신속한 접촉자 조사 등을 위해 출산병원 및 산후조리원 정보 반드시 기입</li> </ul>
	14		출생병원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병원 주소(시·도, 시·군·구) 기입</li> </ul>
	15		분만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만형태 기입</li> </ul>
	16		산후조리원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기입</li> </ul>
	17		산후조리원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후조리원 이용한 경우, 산후조리원명 기입</li> </ul>
	18		산후조리원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후조리원 이용한 경우, 산후조리원 주소(시·도, 시·군·구) 기입</li> </ul>

대분류	서식 번호	항목명	작성 방법
나. 접촉자 정보	19	주변에 결핵환자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 주변 결핵환자 존재 유무 기입</li> <li>주변에 결핵환자가 있을 경우 환자와의 관계, 치료상태 등 기입</li> </ul>
	20	가족 및 동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의 접촉자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포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의 3개월 이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li> </ul> </li> <li>호흡기 결핵환자의 경우, 반드시 접촉자 기입(폐외결핵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코드 A15.00~16.91, A19.0~A19.9</li> </ul> </li> <li>소아(만8세 이하)의 경우, 반드시 접촉자 기입</li> <li>접촉자의 이름, 연령, 성별,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1차 등록 이후 가족 및 동거인 삭제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기입</li> </ul> </li> </ul>
다. 주거 및 생활형태	21	주거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의 주거 형태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에 시설명 기입 시 소속기관 명칭 및 주소(서식 가-11, 12)에 동일하게 입력</li> </ul> </li> </ul>
라. 검사·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22	결핵환자가 느낀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가 느낀 모든 증상 기입</li> </ul>
	23	위의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 증상이 나타난 시기 기입</li> </ul>
	24	키 및 몸무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의 키와 몸무게 기입</li> </ul>
	25	결핵초회검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보고의 초회검사에 따른 아래의 세부 내용 추가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양성결과</li> <li>- 흉부X선 검사의 경우 공동유무</li> <li>- 검사결과 확인일</li> <li>- 배양 검사의 경우 배지종류</li> </ul> </li> <li>※ 기본 정보는 시스템에서 신고서와 연동되어 자동 생성 됨</li> </ul>
	26	약제내성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보고의 항결핵약제내성검사에 따른 아래의 세부 내용 추가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결과 확인일</li> </ul> </li> <li>※ 기본 정보는 시스템에서 신고서와 연동되어 자동 생성 됨</li> </ul>
	27	치료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에서 신고서와 연동되어 자동 생성됨</li> </ul>
	28	치료중단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가 치료를 중단한 경우 중단 사유 기입</li> </ul>



대분류	서식 번호	항목명	작성 방법
마.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29	과거 결핵발병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의 결핵과거력 기입</li> <li>환자가 결핵과거력이 있을 경우, 치료받은 횟수, 최초 진단 받은 년도, 가장 마지막에 치료받은 것에 대한 치료 기간 기입</li> </ul>
	30	과거 잠복결핵 감염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의 잠복결핵과거력 기입</li> <li>환자가 잠복결핵과거력이 있을 경우, 최초 진단받은 년도, 치료 결과 기입</li> </ul>
	31	기저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의 기저질환 유무에 따른 질환의 종류 기입</li> </ul>
	32	흡연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의 흡연 유무 기입</li> </ul>
	33	BCG접종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의 BCG접종 유무에 따른 접종 방법 기입</li> </ul>
	34	진료를 받게 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가 결핵 진료를 받게 된 사유 기입</li> </ul>
바. 특이사항	37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환자에 대한 특이사항 기입</li> </ul>
조사자 정보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에서 신고서와 연동되어 자동 생성 됨</li> </ul>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자의 성명 기입</li> </ul>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li> </ul>
		조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를 실시한 일자 기입</li> </ul>



# III

## 결핵환자 관리

- 제1절 환자 상담 및 교육 / 46
- 제2절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 52
- 제3절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 57
- 제4절 입원명령 / 64
- 제5절 격리치료명령 / 73
- 제6절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 / 75
- 제7절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 92
- 제8절 외국인 결핵 관리 / 103
- 제9절 노인 결핵 관리 / 111
- 제10절 노숙인 등 결핵 관리 / 122
- 제11절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 134

# 제 1 절

## 환자 상담 및 교육

### 일러두기

‘환자 상담 및 교육’은 결핵환자가 치료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복약 확인,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질병 정보 제공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절은 환자 상담 및 교육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1. 개요

가. 대상 : 모든 결핵환자

나. 담당

-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PPM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 보건소 결핵관리요원 및 담당자

다. 상담 주기 : 월 1회 이상

### 2. 내용

가. 상담 및 교육 내용

- 결핵 질환 교육 실시
  - 결핵의 전염 경로(공기 전파) 설명
  - 약제감수성 결핵인 경우 치료 후 2주 정도 지나면 전염성은 거의 소실된다는 것을 설명
    - ※ 단, 내성 결핵인 경우 전염성 소실 기간은 객담검사 결과에 따른다는 것을 강조

- 중도 탈락 없이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
  - 결핵은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하면(최소 6개월) 완치할 수 있음을 설명
  - 균음전된 경우에는 치료가 양호함을 알려 치료의욕 고취
- 복약 확인 및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 항결핵제 복용 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나 결핵관리담당자에게 알릴 것을 강조
  - 복용 중에는 약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금주하고, 흡연은 기침, 가래를 증가시키므로 금연할 것을 권고
  - 약을 복용했다가 멈추기를 거듭하면 결핵균이 약제 내성을 가지게 되어 약효가 떨어지게 되고 치료가 어려워지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꾸준히 복용할 것을 강조
- 환자의 결핵 치료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해결
- 치료 일정 안내 등
- 환자 상담 시 환자에게 「건강지킴이 수첩」 배부하고 활용
  - 건강지킴이 수첩이란? 결핵환자의 치료 및 복약 내용 기록을 통해 꾸준한 복약을 유도하고 부작용을 모니터링하여 결핵 완치를 돕기 위해 활용되는 수첩
  - 활용방법 : 수첩에 결핵검사 결과 및 다음 진료 예정일, 투약사항, 복약 확인 및 부작용 등을 기록, 환자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내소 시 「건강지킴이 수첩」을 지참하도록 안내
  - 제작 및 배포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작 및 배포



1개월째	2개월째	3개월째	4개월째	5개월째	6개월째	7개월째	8개월째	9개월째	10개월째	11개월째	12개월째			
<b>복용 확인</b>						<b>부작용 확인</b>								
항결핵제 (이소니아지드 / 리팜피신 / 에탐부톨 / 피라진아미드 / 기타항결핵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증상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관절염							
							눈이 충혈됨							
							기운이 없음							
							입맛이 없어짐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음							
							배가 쓰러짐이 있음							
							소화가 안됨							
							관목이 붓고 아픔							
							피부에 발진발양이 생김							
							관절이 부치고 아픔							
							손, 발이 저림							
							어지러움							
							기타							
비고						시작(사우주,가짜) / / / / / 처방량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시점에서 일부러라도 부작용이 발생하여, 멈출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항결핵제를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지 관찰하고 부작용 발생 즉시 담당의사에게 알려주고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나. 상담 및 교육 시 유의사항

- 환자는 진단 후 되도록 초기에 첫 면담 시행
- 환자 본인은 물론 가능한 한 환자 가족들도 적극 상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
- 알기 쉬운 말을 사용
- 환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인 수준을 파악하여 환자수준에 맞추어 상담
- 충분한 질문 시간 할애
- 추후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함 및 연락처 제공
- 추구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다. 외국인 결핵환자 상담 및 교육 시 추가 조치사항

- 핸드폰, 직장 전화 등 연락 가능한 방법 및 연락처 수집
  - 치료비순응자인 경우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 받음을 안내
- ※ 치료비순응자 기준은 '제7절 외국인 결핵 관리' 참고

#### < 참고.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

- (주요 내용) 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인, 후송비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료 성공률 향상 및 결핵균 전파 차단('14.3.~)
- (참여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대구의료원
-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결핵안심벨트사무실 (☎ 02-2276-2370)

## 3. 환자 기록 관리

- 결핵환자의 진료 및 추구관리사항(투약, 추구검사, 기타검사, 상담관리 등)을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의 환자관리사항에 입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 기록 내용 >

- 초회 검사 및 추구 검사 내용(검사일, 검사결과 등)
- 투약 내용(결핵약 처방일, 투약상황 등)
- 기타검진 내용(시력검사, 간기능검사 등 기타검사의 검사일, 검사결과 등)
- 진료 소견, 환자 상담 내용 등 환자 치료 및 관리에 관련된 모든 내용

- 환자가 타기관 전원을 원하는 경우 ‘<서식 3> 환자관리 기록카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양식 출력 가능)를 구비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음

## 4. 결핵 산정특례 제도 안내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암, 심뇌혈관 질환 등)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 강화

### 가. 근거법령

#### 1)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 ※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19.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호]

#### 2)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제2항 제1호 라목,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제1항
  - ※ [별표1]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 제3호 라목, 제8조4(의료급여 일수의 산정방법 등) 제1항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시행 2019. 1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27호]

나. 제도 개요

- 1) 지원대상: 결핵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인 환자(상병코드: A15~A19, U84.3)
- 2) 적용범위: 결핵 및 결핵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 3) 특례기간: 적용 시작일로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
  - 적용 시작일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확진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 확진일로부터 30일 초과 신청: 신청일로 소급
      -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하더라도, 결핵 치료를 위한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기간 중 확진되어 입원기간 내 등록 신청했다면,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소급 적용
      - ※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 후 퇴원 후 결핵 확진을 한 경우에는 입원 기간 소급적용

다. 신청 절차 및 방법

1)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대상	내역
확진	요양기관	①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검사 후 결핵 확진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및 결핵환자 신고서 사본 발급
등록 신청	결핵환자	②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신고서를 병의원 또는 공단에 제출
	요양기관	③ 요양기관 EDI 대행 접수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EDI를 통해 공단에 신청 -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 결핵 환자 신고,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여 산정특례 승인
	공단	④ 산정특례 신청서 EDI 또는 공단 방문 접수 확인 후 승인
종료	요양기관	⑤ 결핵치료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 정보마당' 산정특례 종료신청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결핵치료종결 신고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대상	내역
확진	요양기관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결핵·중증화상)’ 상의 의료기관 확인란 작성 및 제공
등록 신청	결핵 환자 및 대리인	②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방문, 팩스, 우편) - 결핵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 각각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받아 등록 처리
	시군구	③ 의료급여사업팀: 행복e음에 산정특례 등록 및 본인부담면제 등록 ④ 통합조사관리팀: 행복e음에서 산정특례 내용 확인 후 산정특례 등록자의 근로능력평가 유예 및 적용기간 입력 - 1종 수급권자: 산정특례 등록자의 근로능력평가 유예 및 적용기간 입력 - 2종 수급권자: 산정특례 등록자에게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나머지 가구원의 근로능력 재평가 ⑤ 의료급여사업팀: 환자 및 나머지 가구원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능력평가 유예 및 적용기간 입력, 가구원별 자격 재책정 ※ 신규 수급권자의 경우 등록신청 절차가 상이함. 공단(지사)에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함
종료	요양기관	⑥ 결핵치료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결핵 치료 종료 정보(완료, 완치, 사망 등)를 전송하면 해당 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서 확인하여 종료 처리

### 라. 기타 문의사항

산정특례 관련 구체적인 사항(재등록, 확진일/종료일 변경, 종료 취소 등)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또는 지사)과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033-736-1817



## 제 2 절

#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 일러두기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는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업무중사 일시 제한 및 최소 2주간의 복약 확인을 시행함으로써, 전염성을 조기 소실시켜 지역사회 결핵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절은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1. 개요

### 가. 관리 대상

전염성 결핵환자 :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결핵예방법 제2조)

\* 객담 도말검사, 배양검사, TB-PCR(X-pert) 검사

### 나. 관리 담당

#### 1) 전염성 결핵환자 격리조치

- 환자의 소속 기관(직장 또는 학교) 관할 보건소
-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2)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관리

-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PPM 의료기관)



## 2. 전염성 결핵환자 격리 조치(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

- 전염성 결핵환자 중 근로자 또는 학생은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을 시행함
-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을 받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전염성 소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 해제’를 통지하고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 이 외의 모든 전염성 결핵환자는 전염성 기간 동안 대중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진료 등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가.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

- (주체) 전염성 결핵환자의 소속 기관(직장 또는 학교)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 (대상) 전염성 결핵환자 중 직장이 있는 자\* 또는 학생을 확인하여
  - ※ 예시) 근로자, 자영업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 (방법) 전염성 결핵환자의 소속 기관장(직장 또는 학교)에게 ‘<서식 4>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 대상자 통보서’를 지체 없이 발급

단, 아래의 경우는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 조치 불필요

- ‘전염성 결핵’ 확인 당시
    - (1) 객담 도말 및 TB-PCR 음성 환자가 치료를 시작한 후에 배양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2) 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 대상 아님’으로 등록하고, (1)에 해당 하는 경우 전염성 소실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 관련 근거를 반드시 확인 및 보관

- (후속 조치)
  - 조치 명령을 받은 소속 기관장은 해당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을 시행
  - 전염성 결핵환자의 소속 기관 관할 보건소는 전염성 환자의 ‘업무중사 및 등교 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 전염성 결핵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는 전염성 환자의 소속 기관에 ‘<서식 4> 업무중사 및 등교 제한 대상자 통보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복약관리 등 관리조치 실시(‘업무중사 및 등교 제한 대상자 통보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소속 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확인·발급 협조 요청)



## 나.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 해제

- (주체) 전염성 결핵환자의 소속 기관(직장 또는 학교)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 (대상)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 대상자에게 담당의사 소견서를 제출 받아 전염성 소실을 확인하고
- ※ ‘IV. 결핵 역학조사’ 참조

### < 전염성 소실의 판정 절차 및 기준 >

-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 절차)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시행 2016.8.4.)」 참조
- 결핵환자의 전염성(infectivity) : 전염성 결핵환자의 전염성 소실 시기로는 2주 이상 효과적인 항결핵제들을 복용하였고 호흡기 증상이 소실되었고,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음전(negative conversion)되었을 때로 판단한다.  
「결핵진료지침(3판)」 참조

- (방법) 전염성 결핵환자의 소속 기관장(직장 또는 학교)에게 ‘<서식 5>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 해제 통보서’를 발급
- (후속 조치) 조치 명령을 받은 소속 기관장은 해당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 해제’를 시행

## 다. 근거법령

-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중사의 일시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 3.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관리

#### 가. (대상) 전염성 결핵환자의 경우

- ※ 제외대상 : 현역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 ※ 주말 및 법정공휴일은 제외

#### 나. (주체)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

- ※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PPM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환자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복약을 확인하며,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 최종 관리

#### 다. (방법) 전염성 기간 동안 가급적 매일 복약관리(최소 2주)

- 복약여부 확인 : 유선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확인

##### < 모바일 DOT(Directly Observed Therapy) >

- 영 상 : 환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이용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결핵ZERO)으로 복약 장면을 촬영·전송하고, 담당자가 환자의 복약 여부 및 부작용을 확인
- 비영상 : 환자가 결핵약 복용 후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이용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결핵ZERO)으로 복약확인을 요청하고, 담당자가 환자의 복약 여부 및 부작용을 확인



- ※ 모바일 DOT 사용매뉴얼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결핵관리 > 정보광장 > 업무용 자료관리 > 결핵ZERO 모바일앱 복약관리 매뉴얼

- (후속 조치)
  - 부작용이 의심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
  - 복약을 임시 중단해야 할 경우 복약확인을 임시 중단하고 그 내용을 기록
    - ※ 임시 중단 후 결핵약 재복용 시 임시 중단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관리

라. 그 외 결핵환자의 경우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복약관리 실시여부 결정

## 제 3 절

#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 일러두기

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는 결핵관리자들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 절은 비순응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절차 및 관리중단자(소재불명 결핵환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1. 개요

### 가. 대상

균 양성\*으로 판정된 병력이 있는 호흡기 결핵환자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치료기관에서 관찰 보건소로 비순응 환자관리를 요청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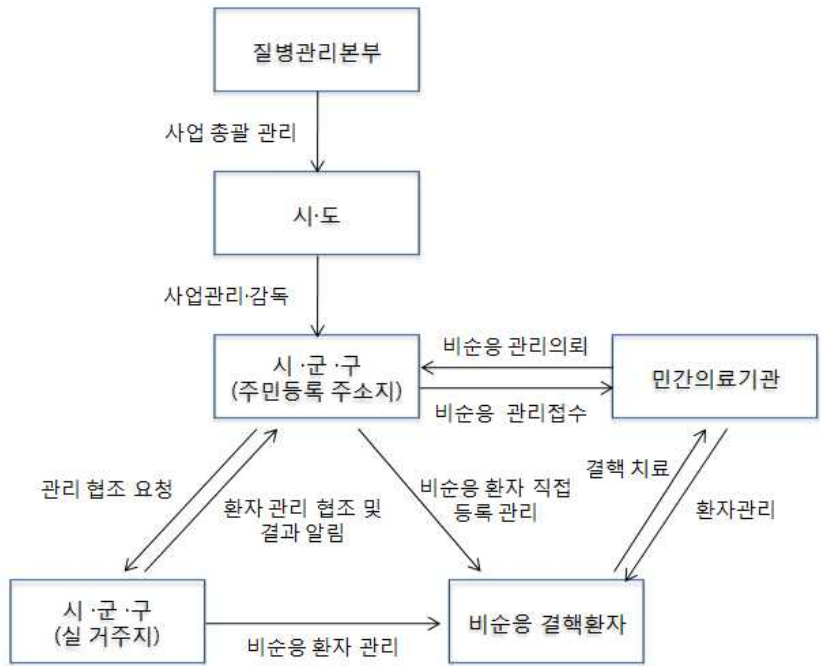
\* 객담 도말검사, 배양검사, TB-PCR(Xpert MTB/RIF)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수약 불협조자 또는 불규칙한 투약자
- 치료중단 또는 연락두절 환자
  - ※ 등록환자가 치료 도중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수약하지 않은 경우
- 거동장애, 독거노인, 치매 등 보건소(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
- 기타(진료의사가 치료 비순응의 위험성이 커서 보건소와 협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 나. 담당 :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다. 관리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치료기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치료 비순응 환자에 대해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비순응 환자관리’ 요청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 결핵환자관리 > 환자관리 > 등록(비순응 의뢰)]를 통해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비순응 관리 의뢰(등록)
  - ※ 비순응 의뢰 및 등록 시 횟수 제한 없음
- (보건소) ‘비순응 환자관리’ 요청을 받은 환자에 대해 연락을 취하여 치료를 독려하고 그 밖의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등 관리 시행
- (시·도) 비순응 환자관리 현황 모니터링

2. 관리방법 및 내용

가. 비순응 결핵환자 의뢰 및 접수

환자관리를 요청 받은 비순응 결핵환자에 대해 환자 의뢰 정보를 확인하고 환자관리 시행. 단,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 거주지 보건소로 관리 협조를 요청하여 실효성 있는 환자관리 도모

- (의뢰기관) 비순응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관리를 요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비순응 환자 관리를 의뢰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관리 의뢰를 받은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담당자는 의뢰 정보를 확인하고 비순응 환자를 접수·관리(참조, '나. 환자관리 내용')
  - (협조 관리 보건소) 협조 의뢰를 받은 실 거주지 보건소 담당자는 협조 의뢰 정보를 확인하고 비순응 환자를 관리(참조, '나. 환자관리 내용')
- ※ 비순응 환자관리를 의뢰받는 경우 반드시 의뢰일로부터 5일(주말 및 법정공휴일 제외) 이내에 접수 완료

## 나. 환자관리 내용

전화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치료권고 및 교육실시가 기본 원칙

- 전화상담은 최소 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등록
  -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 최소 월 2회 이상 시도하고 결과를 등록
- ※ 등록내용 : 통화여부, 환자 만남여부, 조치날짜, 조치내용 등의 관리결과
- 환자가 치료에 동의한 경우 치료기관을 연계하고, 치료를 재개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 담당자와 환자 치료여부 확인

## 다. 기타 관리

- 거동장애, 독거노인, 치매 등 보건소(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관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관리 가능(복약관리 및 항결핵제 전달 가능)
- ※ 관내 복지서비스 예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주야간 보호시설, 돌봄서비스 및 이동서비스(등·하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
- 비순응 결핵환자 중 요양병원 입소가 확인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 소재지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공유



### 3. 관리종료

#### 가.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의 관리 종료

비순응 의뢰 접수(등록) 후 철저한 관리 후 비순응 관리 결과를 입력하고 관리 종료

##### 1) 관리 완료 : 치료동의, 치료거부, 진단변경, 사망

- 치료동의 : 치료를 재개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환자 치료 여부 확인
  - ※ 치료 재개일, 치료 재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명 반드시 입력
- 치료거부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 ※ 접수일로부터 최소 1달까지 관리 후 결과 입력 후 관리 종료
- 진단변경 : 결핵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진단변경
- 사망으로 인한 관리 종료

##### 2) 관리 중단 : 연락두절, 거주지 확인 불가

- 연락두절 : 전화 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자가 아닌 보호자와만 통화가 된 경우(단, 보호자도 환자 본인과 연락두절인 경우)
- 거주지 확인 불가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및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소재지 파악을 하려 했으나 환자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 나. 협조관리 보건소의 관리 종료

- 협조 보건소는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환자관리 결과를 입력(통보)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는 통보 결과를 최종 확인 후 관리 종료



## 4. 관리중단자(소재불명 결핵환자)에 대한 후속조치

### 가. 대상

- 비순응환자관리 종료 사유가 ‘연락두절’ 또는 ‘거주지 확인불가’인 환자(3.가. 2)의 환자)  
 ※ 입원 중 무단이탈 후 소재과약이 안되는 결핵환자도 비순응환자 등록처리 후(연락두절, 거주지 확인불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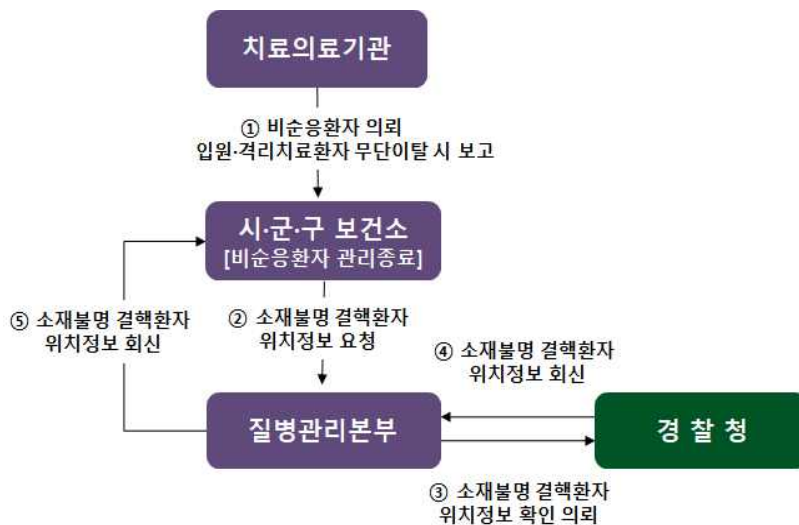
### 나. 담당 :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소재지 보건소

주소지 보건소에서 기본관리 후 실거주지 확인 시 소재지 보건소에 협조관리 의뢰

### 다. 조치 내용

- 경찰청 협조를 통한 위치 정보 확인(※ 휴대전화 소지자)
- 신병 확보 및 병원 이송을 통한 치료 재개
- 입원·격리치료명령 고지 및 수행 조치

### 라. 관리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치료의료기관
  - 환자관리 후 비순응 환자로 확인된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비순응 환자관리’ 의뢰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 결핵환자관리 > 환자관리 > 등록(비순응 의뢰)]를 통해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비순응 관리 의뢰(등록)
  - 관리 보건소와 관할 경찰서에 입원 중 무단이탈 결핵환자 발생을 우선으로 알리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비순응환자 관리’ 의뢰
    - ※ 공중보건과 관련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관할 경찰과 공조 체계 유지
- 관리보건소
  - 질병관리본부에 소재불명 결핵환자 위치정보 요청
    - ※ ‘<서식 93> 소재불명 결핵환자 위치정보 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송부
    - ※ 요청 최소기준 : 3일 동안 1일 1회 이상 연락두절 시 가정방문 시도 → 1주 동안 2회 가정방문에도 소재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비순응 관리내용에 등록 필수)
  -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위치정보 확인 후 환자 신병확보 및 후속조치
    - ※ 신병확보 후 치료연계 또는 격리 조치(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

<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 시 고지의 의무 >

1. ‘<서식 7> 입원·격리치료명령서’에 적시된 법적 근거 및 통보사실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발부
2. ‘<서식 8>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안내문’에 적시된 환자의 의무, 의무 위반 시 받게 될 불이익, 격리 시 받게 될 지원내용 등을 고지하고 성실수행의 협조를 요청, 안내문 제공
3. 입원·격리치료명령과 치료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지 보건소에 문의 가능함을 안내하고 안내문에 보건소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공

- ※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 사용 금지 ,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 조치
- ※ 질병관리본부에 파기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4항)
- 입원 중 무단이탈 환자의 소재지 보건소는 현장 출동하여 필요 시 관할경찰서에 협조 요청 가능(격리치료명령 시 협조요청, 국가결핵관리지침 69쪽)
  -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는 소재지 보건소에 협조공문을 통해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 실시
- 질병관리본부
  - 소재불명 환자 경과 확인 및 경찰청에 위치정보 확인 공문 의뢰

- ※ '<서식 94> 소재불명 결핵환자 위치정보 확인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
- ※ 요청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2항
- 관리보건소에 경찰청으로부터 확인된 위치정보 회신 조치
-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문자 통지 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5항)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 (경찰청) 위치정보 확인 내용을 질병관리본부에 회신
- (소재지경찰서) 입원 중 무단이탈환자 발생 시 공조체계 유지
  - 관할보건소의 공조요청 내용 확인 후 필요 시 현장 출동
  - 경찰관은 보건소 담당자가 환자를 설득하여 구급차에 탑승시키고 출발하는 것을 확인 후 업무 복귀



제 4 절

입원명령

알려두기

입원명령은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 또는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격리 조치하여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절은 입원명령 실시·해제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개요

가. 대상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 신속감수성검사 및 Xpert MTB/RIF 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으로 간주하여 입원명령 실시 가능
- 치료 비순응 환자
- 그 외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는 입원명령 대상에서 제외됨
  - ※ 단, 외국 국적자는 다음의 경우 입원명령 실시 가능

## &lt; 입원명령 실시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 &gt;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자
    - ※ 미성년 자녀는 만 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에 따라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자
  - ※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영주권자(체류자격 : F5)
- 장기비자 소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중점관리대상자’ 중 ‘강제퇴거대상자’(‘제8절. 외국인 결핵 관리’ 참조)

## 나. 담당 :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외국인 강제퇴거대상자: 외국인 관리보건소(‘제8절. 외국인 결핵 관리’ 참조)

## 다. 방법

## 1) 입원명령 실시

- (의료기관) 결핵환자 진료 시 환자가 입원명령 대상자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대상자 알림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알림 통지를 받은 환자가 입원명령 대상자 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 후 입원명령 실시

## 2) 입원명령 해제

- (입원치료기관) 일정 기간 입원치료 후 균음전 등 해제조건이 충족되면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입원명령 해제소견서 발송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입원명령 해제소견서를 확인하여 해당 환자에게 입원명령 해제알림통지서를 발송



## 2. 입원명령 실시 및 해제

### 가. 대상자 알림 및 확인·검토

- (의료기관 및 진료보건소) 결핵환자 진료 시 입원명령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대상자 알림 통지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서식 6> 입원·격리치료명령대상자 알림통지서'를 통해 입원·격리치료명령 대상자 알림 요청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알림 통지를 받은 환자가 입원명령 대상자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입원명령 실시

### 나. 입원치료기관 선정(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1) 입원치료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 (일반 입원명령환자) 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에 입원을 원할 경우 우선 입원 조치
  - 1인실 여부 및 입원·격리치료명령 대상자의 입원실 기준 확인
  -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의 진료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
  - 단, 입원실이 없는 경우 입원 가능한 타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입원 조치
  - 입원명령 대상자가 타 의료기관에 입원할 시 사설 응급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송하며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급
    - ※ '국가결핵예방-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예산 활용
    - ※ 사설 응급차량 사용 시 영수증 증빙 필요(단, 간이영수증 불가함)
- (만성배균 입원명령환자) 국·공립의료기관에 입원을 원칙으로 하되, 병상 유무확인 후 결정
  - 1순위 :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특별시서북병원
  - 2순위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공사 의료원 등
    - ※ 입원명령 기간 동안 '만성배균자'로 전환되어 전원을 요청받은 경우도 동일
-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은 타 의료기관으로 입원명령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원무과 및 담당과 의료진과 협의하여 입원 기관을 선정하고 다음의 서류를 입원명령 의료기관에 제출

-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
- 진단받은 의료기관의 환자 의무기록, 흉부영상의학검사,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검사) 및 약제감수성검사결과 등

## 2) 입원치료기관에 대상자 입원 알림 통지

- 입원치료를 실시할 의료기관이 선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상자 입원 알림 통지  
※ ‘<서식 9>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입원(전원)알림통지서’ 송부

## 3) 입원치료기관에 입원사실 확인 후 입원명령 등록

- 입원명령환자 입원 조치 확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 등록

### 다. 입원명령 통지 및 안내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입원명령 대상자 본인에게 입원명령서를 통지(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이미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통지 가능)  
※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통지받을 수 없어 등기 발송할 경우 반드시 수령 확인, SMS를 통한 입원명령에 대한 안내 실시  
※ 입원·격리치료명령서는 1일 이내 발부하나 금요일 오후(공휴일 전날 오후)에 입원명령대상자가 확인된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공휴일 다음날 오전)까지 발부  
※ ‘<서식 7> 입원·격리치료명령서, <서식 8>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안내문’ 활용
- 대상자(보호자)에게 입원명령 사업 및 비용 지원에 대해 충분히 안내

### 라. 입원명령 해제

- (입원치료기관) 일정 기간 입원치료 후 균음전 및 해제조건이 충족되면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서식 12>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소견서’를 발송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소견서의 결핵균검사결과 및 의사소견 등을 확인하여 해당 환자에게 ‘<서식 13>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알림통지서’를 발송
  - 입원명령 대상자의 퇴원 시(귀가 또는 타 기관으로 전원) 사설 응급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송 가능하며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급
  - ※ ‘국가결핵예방-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예산 활용
  - ※ 사설 응급차량 사용 시 영수증 증빙 필요(단, 간이영수증 불가함)



-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소견서’ 내용 확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해제 등록

<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기준 >

- 최소 2주 이상 입원하고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
  - 1) 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 결과 확인
  - 2) 임상적으로 호전되고
  - 3)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충분히 감소되었고, 퇴원 후 치료에 순응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 ※ 외국인 강제퇴거대상자도 기준 동일. 해제 이후는 강제퇴거 절차에 따름  
(‘제8절. 외국인 결핵 관리’ 참조)
- [객담검사 실시 기준]
  - 결핵 치료 중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후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는 최소 월 1회 이상 시행해야함
  - 첫 음성결과 확인 후 최소 8~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결과 확인함
    - ※ 객담배양검사 : 액체배지·고체배지 결과 모두 인정

### 3. 입원명령환자 전원 시 조치사항

#### 가. 전원 요청 사유

- 입원명령환자가 입원명령기간 동안 ‘만성배균자’로 전환된 경우
- 그 외 현재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어려운 사유(합병증 및 장기입원 등)가 발생한 경우

#### 나.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 절차

- (입원치료 중인 의료기관)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요청
  - ※ <서식 11>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전원요청서’ 활용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전원요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전원 예정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전원 가능 여부 확인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등록 자료에 ‘전원’ 정보 입력



- 사설 응급차량 등을 이용하여 전원 의료기관으로 입원명령환자 이송
  - ※ 전원시 발생한 환자 이송비용은 ‘국가결핵예방-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예산 활용
  - ※ 증빙서류(사설 응급차량 등 사용 영수증) 첨부. 단, 간이영수증 불가
- 전원 의료기관에 ‘<서식 9>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입원(전원)알림통지서’ 송부

## 4. 입원명령 해제 후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직접 복약 확인

###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

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급여 항결핵제를 의미하고, 환자가 입원명령기간 내 해당 약제를 처방받고 직접복약확인예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음(제6절.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 참조)

### 가.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직접복약확인 등록

- 직접복약확인 실시에 대한 안내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담당자는 해당 환자의 입원명령 해제 이후 약제비 지원 가능한 기간 확인
  - 환자에게 직접복약확인을 통한 약제비 지원에 대해 안내
- 직접복약확인 동의여부 확인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담당자는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환자로부터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에 대한 ‘복약확인동의’를 받음
    - ※ 복약확인동이는 ‘<서식 16> 약제비 지원신청서(환자용)’ 작성 시 함께 받음
- 환자 복약관리 등록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복약확인 환자관리」 메뉴에서 ‘대상구분’을 ‘입원명령’으로 선택 후 환자를 조회하여 직접 등록
    - ※ 단, 사전에 ‘입원·격리치료명령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환자 조회 가능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복약확인 환자관리」 메뉴를 통해 복약 관리가 어려운 경우 ‘<서식 26> 환자 복약확인 관리대장’, ‘<서식 27>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증’ 활용



## 나. 환자 복약관리

## &lt; 관리 절차 및 환자 복약 관리의 원칙 &gt;

- 복약확인 방법은 매일 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접복약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복약확인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환자가 자가 복용하도록 함
- 환자의 항결핵제 부작용에 대한 확인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리
- 항결핵제 보관
  - 보건소 내원 직접복약확인 : 직접복약확인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약 보관
  -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 : 의료기관에서 약 보관
  - 모바일 복약확인 : 처방된 약제는 일정기간 동안(2주)의 약을 환자에게 지급 후 나머지 약제는 복약확인 실시 보건소에서 보관

## 1) 환자 보건소 내원 직접복약확인(O-DOT)

- 환자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같은 경우
  - 매일 환자가 보건소 내원하여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는 직접 확인
  - 주 1회 이상 항결핵제의 부작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복약확인 환자관리」 메뉴에 복약관리 내역 등록·관리, 시스템 등록 관리가 어려운 경우 ‘<서식 26> 환자 복약확인 관리대장’에 기록
- 환자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실제 거주지 보건소(보건지소)에 협조 요청하여 환자의 복약확인 실시
  - 실제 거주지 보건소(보건지소)
- 약 보관 및 환자의 복약확인 실시
- 주 1회 이상 항결핵제의 부작용에 대한 사항 확인
  - ※ ‘<서식 26> 환자 복약확인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하고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통보(팩스 등)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지급, 복약 및 부작용 관리기록 보관·관리

## 2)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O-DOT)

입원·격리치료명령이 해제된 환자가 타질환 치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보건소 내원 복약관리가 어려운 경우 실시

- 입원치료기관
  - 입원기간동안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보관 및 관리
    - 단, 치료가 완료되어 환자가 퇴원할 경우 퇴원 시점까지의 복용 및 투여한 약을 제외하고 남은 약의 개수를 환자에게 확인시킴
    - 남은 약은 반드시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반납
      - ※ 보건소로 남은 약제 반납 시 배송 비용은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 부담  
(‘국가결핵예방-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예산 활용)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직접복약확인 실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관리 서식을 통해 환자 복약관리 내역 기록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복약확인 환자관리」 메뉴 활용, 시스템 등록 관리가 어려운 경우 ‘<서식 27>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증’에 기록·관리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환자 복약관리현황 모니터링 및 약제비 지급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복약확인 환자관리」 메뉴 및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서식 27>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증’을 통해 확인

## 3) 모바일 복약확인(M-DOT(영상))

※ ‘제2절-3.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관리’ 내용 참고

## 4) 주사 항결핵제 투여 확인

※ ‘제7절-3. 항결핵주사제 투약 연계 및 비용 지원’ 내용 참고

## 다. 부작용 관리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는 환자가 부작용으로 인해 항결핵제 복용을 중단해야 할 경우 중단기간 동안의 환자의 복용 여부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복약확인관리 메뉴에서 ‘임시 중단’ 처리



- 복약확인 중단에 대해 담당의사의 의사소견서 제출받음
- 환자의 처방받고 남은 약제는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 보관 및 관리

#### 라. 복약확인관리 종결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의 약제비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환자의 복약관리가 종결된 경우, 지원을 종료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복약확인관리 메뉴의 관리상태」에서 ‘관리 완료’를 입력
  - ※ 부작용 등 정상적으로 치료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임시중단 관리’를 선택하고 사유 입력

## 제 5 절

# 격리치료명령

### 일러두기

격리치료명령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입원치료 중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입원 조치하는 것으로, 격리치료명령 집행 시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절은 격리치료명령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1. 개요

### 가. 대상

- 입원명령을 거부한 자
-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담당 :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2. 절차 및 방법

가. ‘대상자 알림 및 확인·검토’, ‘격리치료명령 의료기관 선정’, ‘격리치료명령 통지 및 안내’ 절차는 입원명령 절차와 동일



## 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는 필요시 보건소 관할 경찰서에 격리치료명령 협조 요청

※ ‘<서식 10> 격리치료명령 협조의뢰서’ 참조

### 1)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환자 격리를 위한 보호장비(보건인력 및 경찰 등 업무 지원용 N95 마스크, 환자용 수술용 마스크 등), 구급차 등을 준비하여 현장 출동

### 2) (관할 경찰서)

- 보건소 담당자와 동행하여 환자 방문. 격리치료명령 집행 과정에서 대상자가 (격리치료명령대상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환자 제지 및 보호, 타인(보건소 담당자 및 일반 시민 등) 보호
  - ※ 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한함
  - ※ 현장에서 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없이 구급차 탑승 등 입원·격리치료명령만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관할 보건소에서 추후 고발 조치
- 경찰관은 보건소 담당자가 환자를 설득하여 구급차에 탑승시키고 출발하기까지의 과정에 한하여 임무 수행 후 복귀
  - ※ 주요 사건 발생 또는 112신고 다발 등으로 인해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는 해당 보건소로 유선 통보 → 보건소와 협의하여 추후 동행토록 일정 조정
- 이후 과정에서 위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112 신고를 통해 조치

## 다. ‘격리치료명령 해제’ 절차는 입원명령 절차와 동일

## 라. ‘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직접 복약 확인’ 절차 등은 입원명령 절차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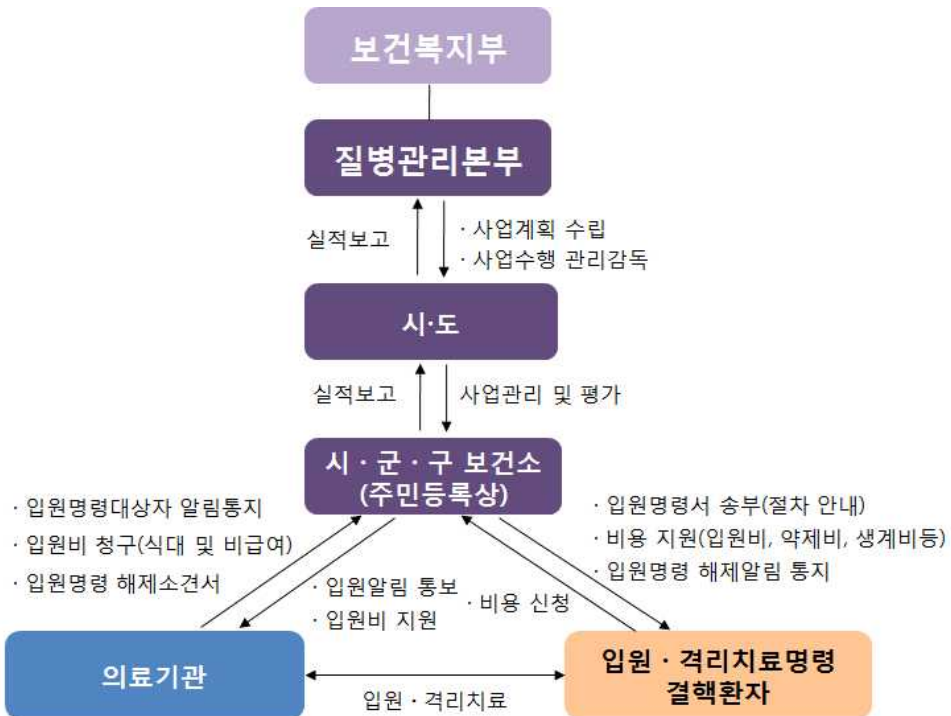
# 제 6 절

##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

### 일러두기

정부는 입원·격리치료명령 대상자에게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비,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간병비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절은 관련 비용 지원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1. 사업 수행체계



## 2. 지원 범위

<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의 비용 지원내용 요약 >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상세내용
입원비	입원·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일부 전액본인부담약제(당해 연도 이전 심사에서 지원 결정자로 최대 2년까지 잔여기간 지원)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간병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환자 (단,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에 한함)	2020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기준에 따름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2017년 9월 1일부터 리네졸리드 비용(전액본인부담약제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지원으로 전환됨

### 가. 입원비

#### 1) 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2) 지원기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일로부터 해제 일까지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입원·격리치료명령대상자알림통지서’ 송부일  
 부터 적용

#### 3) 지원내용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 아래와 같이 연간 지원 상한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결핵관련 비용



- 단, 장기입원 등으로 비급여 연간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환자(의료기관)는 ‘<서식 18> 비급여지원 초과비용 추가지원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보건소 심사 후 추가지원 가능

<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연간 지원 상한액 >

구 분	다제내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등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 ※ 지원항목: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및 검사료,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제증명료 및 수수료, 상급 병실차액료 등
- ※ 만성배균자: 다제내성 결핵환자(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포함)로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균양성인 결핵환자
- ※ 환자별 ‘연간지원상한금액’ 산정은 입원·격리치료명령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입원·격리치료명령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마다 상기 상한 금액만큼 추가됨

- 지원 제외 항목
  -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의 치료 및 검사 비용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
  - 그 외 본인부담액을 보전 받는 지원비용 등
    - ※ 보건소에서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확인하여 지원액 결정

4)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가) 지원신청자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로 자원 봉사자, 방문간호사, 지인 등
  - ※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리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 개요 : 저소득층 결핵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등 입원비 납부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료기관이 직접 시·군·구 보건소에 입원비 지원 신청하여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적용 대상 : 입원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자
- 이용 절차
  - 1)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체계 유지
  - 2) (의료기관) 환자가 입원명령이 해제되어 퇴원 시 발생한 입원비를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연간 지원 상한선 내에서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나머지 금액은 환자에게 청구
    - ※ 단,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
  - 3)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환자의 입원비 지급
    - ※ 해당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통한 입원비 이외에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은 내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급가능 잔액을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나) 신청처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단,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입원비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 전출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전입지 보건소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관련 서류 발송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 이관 요청

다) 신청기한

-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라)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환자(보호자) 신청 시	의료기관 신청 시(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구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서식 14&gt; 입원비 지원신청서(환자) 1부</li> <li>•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 1부(원본)</li> <li>• 입원기간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원본)</li> <li>• 입금통장사본 1부</li> <li>•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서식 15&gt; 입원비 지원신청서(의료기관용) 1부</li> <li>• 입원기간 동안 환자 입원비 영수증 1부</li> <li>• 입원기간 동안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li> <li>• 입금통장사본 1부</li> </ul>

< 신청 구비서류 관련 참고사항 >

-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타 기관 중복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결핵 치료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를 제출
-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1부
  - 전액본인부담(100/100), 비급여 항결핵제 원내 처방내역 확인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발생한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의 진료내역 확인
- 입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 인정

5) 타 제도에 의한 중복 지원 시 처리 방법

가)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 당해 연도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동안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입원비를 감면받은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입원치료비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 환자부담금<sup>1)</sup>인 총 입원비에서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로 납부한 입원비만 지원신청 가능
    - ※ 동 사업의 입원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제<sup>2)</sup>, 의료기관의 부담 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환수 및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
    - ※ 공단 환급금 확인은 민원24([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의 미환급금 찾기를 통해서 확인 가능
    - ※ 보건소 결핵담당자는 차감 내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원·격리치료명령 환자가 입원비 지원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

1) 환자부담금은 급여부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부분 진료비를 의미  
 2)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1월1일~ 12월31일)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에는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

나)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 선지원 받았을 시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입원비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
  - 총 입원비에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긴급의료비, 국가보훈처 지원금(다제내성 결핵, 광범위약제내성 결핵으로 인한 지급 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신청 가능
  -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로 하여금 긴급의료비 등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 내역을 해당 보건소에 고지하도록 안내하고, 타 국가지원금과 입원비 비급여 본인부담금(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환수 또는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
    - ※ 급여 본인부담금의 경우 타 국가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중 결핵 관련하여 치료받은 입원비 전액지원 가능
  - 단, 결핵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타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 긴급의료비 등 타 법률에 근거하여 중복 지원 시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안내하고, 중복 지원내역 발견 시 환수 및 차기 지급분(당해 연도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
    - ※ 보건소 결핵담당자는 타 국가지원금과 차감내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원·격리치료명령 환자가 입원비 지원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 가능

나.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1) 지원대상

- 다음과 같은 내성결핵 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로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 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음과 같은 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 비급여 항결핵제 :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지원 대상
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퀴놀론제(Lfx, Mfx, Ofx) 내성을 포함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2차 주사제(KM, Amk, CPM) 내성을 포함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2) 지원기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최초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 최초 처방일로부터 1년까지 : 최초 처방시 담당의사의 소견서 확인 후 1년간 지원
  - 지원기간 1년 경과 후부터 2년까지 : 지원 1년 시점에서 담당의사의 소견서\* 확인 후 1년 추가 지원
    - ※ 단, 직접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함
    - ※ 해당 약제의 치료 효과 등 치료에 대한 평가를 위해 환자(의료기관)는 보건소에 의사소견서 제출
  - 지원기간 2년 경과 후 : 추가 지원 없음

3) 지원내용

- 처방된 환자본인부담 약제비의 비용 전액

4)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가) 지원신청자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로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지인 등
  - ※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리신청 가능
- 약제비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약국 및 의료기관



< 약제비 지급보증제 >

- 개요  
저소득층 결핵환자의 경우 고가의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에 대한 약제비를 납부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약국 및 의료기관이 직접 시·군·구 보건소에 약제비를 지원 신청하여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적용대상  
약제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자
- 신청방법
  - (약국)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및 입원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명령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신청(Fax 신청 가능)
  -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입원비 신청 절차와 동일

나) 신청처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단,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 진출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전입지 보건소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관련 서류 발송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 이관 요청

다) 신청기간

- 약제비는 1개월 단위 지원 신청이 원칙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처리

라)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환자(보호자) 신청 시	약제비 지급보증제 신청 시
구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견서 1부(※ 확인)</li> <li>• &lt;서식 16&gt; 약제비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li> <li>• 처방 약제비 영수증 1부(원본)</li> <li>•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li> <li>• 입금통장사본 1부</li> <li>•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서식 17&gt; 약제비 지원신청서 (약국 및 의료기관용) 1부</li> <li>• 처방 약제비 영수증 1부</li> <li>•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li> <li>• 입금통장사본 1부</li> </ul>

< 신청 구비서류 관련 참고사항 >

- 의사소견서 1부 : 최초 신청 시, 최초 처방 후 1년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주요사항 변경 시(처방 의료기관 및 처방의사 변경 등) 제출. 제출한 의사소견서에는 반드시 ‘결핵균 검사결과’ 기재
- 입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 인정)
- 매월 신청 시 또는 입원비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동일한 서류는 사본(원본 대조필) 첨부 가능
  - ※ 결핵균검사결과지(객담도말, 배양, 약제감수성검사 등)
    - 환자 및 기관에서 별도 제출하지 않음
    - 보건소는 의료기관에 매월 객담검사 실시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독려하고 시스템을 통해 결과 확인(전월 미실시한 경우는 최근검사결과로 대체하고 매월 검사 실시 독려)

다. 간병비

1)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서식 92&gt; 간병비 지원신청서 1부</li> <li>• 입금통장사본 1부</li> <li>• 의사소견서 1부</li> <li>※ 간병 요구를 평가 후 매월 제출</li> </ul>
• 치매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진단서</li> </ul>
•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등록증 사본</li> <li>• 장애인단서</li> </ul>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li> <li>※ 뇌졸중환자는 병원진단서와 함께 제출</li> </ul>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간병비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일일 최대 15만원까지)\*

※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독실, 공동간병, 중증환자 등)

3) 지원기간

- 입원명령 후 간병 지원 신청일로부터 간병 지원 종료일까지(최대 입원명령 해제일까지)

※ 타 유사 간병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4) 지급 절차 및 방법

## 가) 지원신청자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서식 92> 간병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로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지인 등
  - ※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리신청 할 수 있음
  - ※ 단, 간병비 지급은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 나) 신청처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단,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간병비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 전출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전입지 보건소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관련 서류 발송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 이관 요청
-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간병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간병비' 지급대상자로 선택하고 관련정보 등록
- 매월 지급하되, 지급주기는 간병비 정산 등 필요에 따라 주별 지급 등 조정 가능
  - ※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등 일괄 지급 불가
- 간병비 지원대상 정보 확인 후 환자(보호자)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

## 다) 신청기한

-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 장기 입원자의 경우 매월 지급 가능(전월 생계비를 익월 초 지급)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처리



## 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1) 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0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소득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본으로 함)
    - 상시근로소득<sup>3)</sup>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 일용근로자 소득<sup>4)</sup>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 2020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단위: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3)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연 평균소득을 반영  
 4)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2017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

## &lt; 환자가구에 포함되는 자 &gt;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결핵환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sup>5</sup>)은 제외)로서, 생계<sup>6</sup>)나 주거<sup>7</sup>)를 같이 하는 자
  - ※ 환자의 2촌 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환자가구에 포함
  -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에 포함되는 자의 판단 기준

- 환자가구 가구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환자가구 가구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
  -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
- 입원·격리치료명령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제4절-1-가. 입원명령 대상 중 「입원명령 실시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 참조>

## &lt; 환자가구에 제외하는 자 &gt;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 ※ 단,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sup>8</sup>)은 환자 가구에 포함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 ※ 조사 시점부터 과거 6개월을 의미하며, 9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다음 날임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보장시설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한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 &lt; 환자가구 범위 확정 절차 &gt;

- 동일한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포함될 가구 구성원 추가
-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 지원 제외 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원·격리치료명령 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생계지원)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과 「긴급복지생계지원」 시 급여 선후는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지원」을 우선하여 지급함

## 2) 지원기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시까지

## 3)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 확인하여 ‘2020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매월 지급하고, 30일 기준으로 일 지급함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록 메뉴의 자동산출기를 이용하여 지원비 확인 가능

- 
- 5) 주민등록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처리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6)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부양의무자의 집은 제외)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부양의무자는 제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 7) 주거를 같이하는 자 : 사실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8)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자



< 2020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단위: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 (8인 가구 2,481,920원)

※ 일 단위 계산 가능(1달은 30일 기준)

<예시>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환자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 산출방법(일할계산)

◦ 1인(10일지원) : {2020년 가구별 생계급여(527,158원)/30×10일} 생계비는 175,710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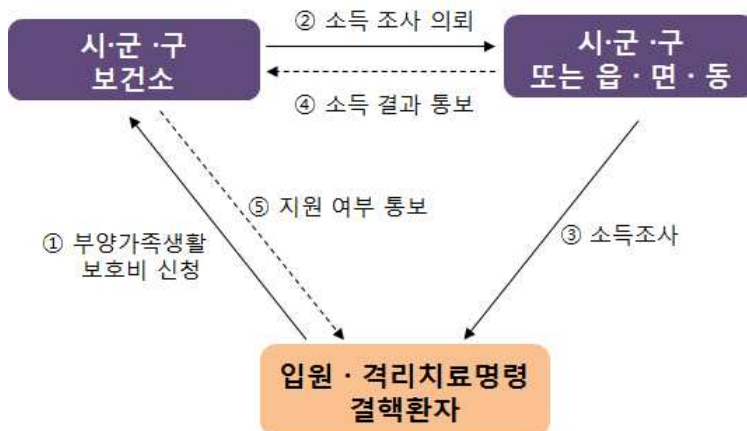
◦ 3인(15일지원) : {2020년 가구별 생계급여(1,161,173원)/30×15일} 생계비는 580,580원임

※ 최종 산출액의 원단위 절사하여 지원(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동 산출)

4) 지원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조사

가) 소득조사 절차 및 방법

- (입원·격리치료명령 환자) ‘<서식 19>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소득조사 의뢰 대상자에 대한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관내 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조사 의뢰  
 ※ ‘<서식 22>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조사의뢰서’ 활용
- (관내 통합조사관리팀) ‘<서식 23>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결과통보서를 보건소에 송부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소득결과통보서를 확인하여 입원·격리치료명령 환자에게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가능 여부 통보 및 지원



## 나) 소득조사 원칙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소득조사를 실시
- 소득조사는 통합조사관리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공적자료를 활용하며, 읍·면·동사무소로부터 통보된 '<서식 23>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결과 통보서'의 결과를 적용하여 시·군·구 보건소에서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
  - 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이용하여 소득조사가 어려운 경우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한 소득 확인(소득금액증명원 등) 및 환자 제출 서류 등을 통해 환자가구에 대한 소득 수준을 파악
- 지원결정 이후에도 지원대상자의 지원 자격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2회(상·하반기) 환자가구의 소득에 대한 정기 재조사와 수시 재조사를 실시함
  - 정기 재조사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기존 지원대상자)의 가구의 소득 수준 조사
    - 조사 시기 : 지원대상자의 소득 정기 재조사는 매년 2번 실시

- 1월~6월 소득 조사대상자 : 매년 상반기(4~5월)에 정기 재조사 실시
- 7월~12월 소득 조사대상자 : 매년 하반기(10월~11월)에 정기 재조사 실시
  - ※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는 매년 2회(상·하반기) 조사수행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소득조사를 요청하고 입원·격리치료명령 환자의 소득 조사 결과를 통보받음

- 조사결과 처리 : 정기 재조사 결과 소득 기준 초과 시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불가(정기 재조사 결과 통보일 기준)
- 수시 재조사
  - 소득이 변동된 가구의 소득 수준 조사
  - 조사 시기 : 수시(해당사항에 한함)
  - 조사결과 처리 : 소득의 변동이 의심되어 수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지원 불가(변동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소득 재조사를 통보받은 날 기준으로 지원 불가)



## 5)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 가) 지원신청자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 참조)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로 자원 봉사자, 방문간호사, 지인 등
  - ※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리신청 할 수 있음
  - ※ 단, 해당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급은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 나) 신청처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단,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 전출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전입지 보건소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관련 서류 발송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 이관 요청

## 다) 신청기한

-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 장기 입원자의 경우 매일 지급 가능(전월 생계비를 익월 초 지급)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처리

라) 신청 시 구비서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 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서식 19&gt;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1부</li> <li>• 입금통장사본 1부</li> <li>• 소득 조사 관련 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서식 20&gt;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li> <li>- &lt;서식 21&gt; 소득 정보 확인동의서</li> <li>- 가구원 및 확인 서류</li> <li>- 소득 확인 서류</li> </ul> </li> <li>• 가족관계증명서<sup>9)</sup> 1부</li> <li>• 주민등록등(초)본 1부</li> </ul>
<p>&lt; 신청 구비서류 관련 참고사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신청할 경우 입원비 신청 시 동일한 서류는 사본(원본 대조필) 첨부 가능</li> <li>• 주민등록등(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24를 통해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 및 출력 가능하므로 환자(보호자)가 제출 생략 가능</li> <li>※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한 소득 확인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li> </ul> </li> </ul> </li> <li>• 가구원 및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li> <li>※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가능함),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은 제출 서류제외</li> </ul> </li> <li>• 소득 확인 서류(소득조사로 소득 확인 불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파악 : &lt;서식 24&gt; 고용·임금 확인서, 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li> <li>- 취업 및 퇴직사실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등</li> <li>- 사업자 소득 파악 : 소득금액증명원</li> <li>- 농업소득 파악 : 소득금액증명원, 농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등</li> <li>- 어업소득 파악 : 소득금액증명원,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자료 등</li> <li>- 임업소득 파악 : 소득금액증명원,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등</li> <li>-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lt;서식 25&gt; 지출실태조사표 등</li> </ul> </li> <li>•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6개월 이내 변동사항(환자가구원 수 변동 등)은 인정하지 않음</li> </ul> </li> </ul>	

9) 직계존속 확인이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의 가구원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징구

제 7 절

##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일러두기**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는 철저한 환자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내성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다제내성 치료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절은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발생 시부터 관리종료 시까지의 등록 및 추구관리 내용과 항결핵주사제 투약 연계 등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 1. 개요

#### 가. 대상

신고기관에서 다제내성 또는 광범위약제내성 결핵으로 진단·신고한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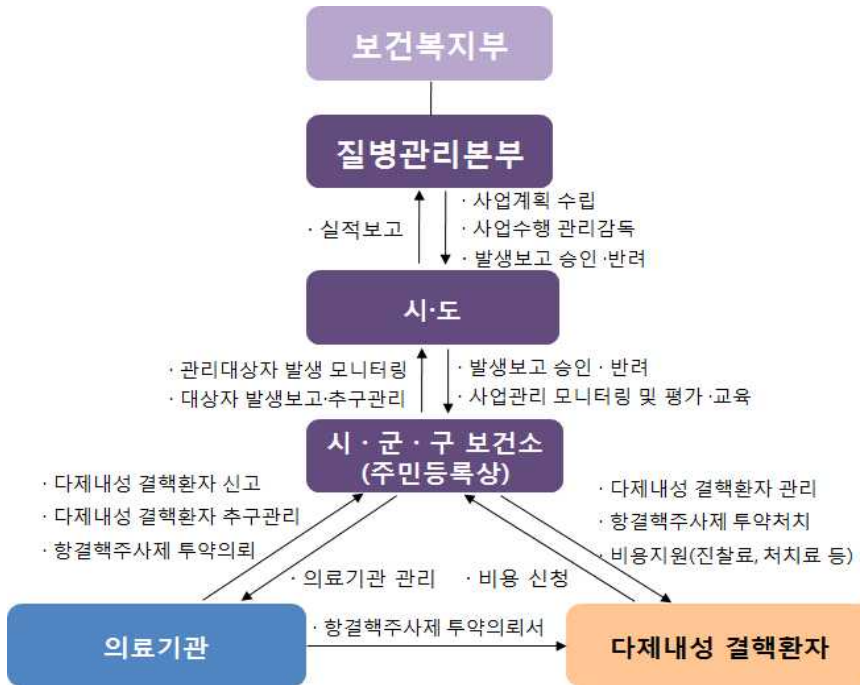
※ 항결핵제 내성코드가 U84.30 또는 U84.31로 신고한 결핵환자

나. 담당 :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및 관할 시·도 관리담당자



## 다. 관리 체계 및 기관별 역할

### 1) 관리체계도



### 2) 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질병관리본부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사업 총괄] • 다제내성 발생보고 확정 최종 승인(반려) • 다제내성 발생 및 관리현황 모니터링 • 다제내성 관리자료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평가 • 다제내성 환자관리 통계 생산 및 지표관리 계획 • 다제내성 관리인력(시·도, 시·군·구) 교육계획 수립 및 수행·평가
시도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인력 지정 및 담당자 교육 참석 • 다제내성 발생보고 승인(반려) • 시·군·구 발생보고 및 관리내용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환류 • 시·군·구 주기적 추구관리 모니터링 및 미실시자 수행 독려
보건소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 다제내성 관리대상자 발생 확인 및 보고 • 확정된 다제내성 결핵환자 추구관리(치료상태, 관리상태, 사업관리 등)



구 분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환자 관리사업(입원명령, 업무종사일시제한, 복약관리 등) 수행</li> <li>• 2차 항결핵주사제 투약연계 및 발생 비용 지원</li> </ul>
의료기관	<p>[다제내성 결핵환자 신고(수정보고) 및 추서관리 등록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제내성(광범위내성) 환자로 진단되는 경우 다제내성 신고 철저(내성검사, 내성약제, 항결핵내성코드 등 누락 없이 등록)</li> <li>• 다제내성 관리대상자 확정 시 추서관리 철저 등록(객담검사 이력, 다제내성 투약이력, 치료결과, 치료종료일 등)</li> <li>• 2차 항결핵주사제 투약 의뢰를 위한 절차 수행(의뢰서 발부 및 환자정보 제공 등)</li> </ul>

## 2. 등록 및 주기적 관리

### 가. 신고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다제내성 결핵이 진단\*된 경우 ‘결핵환자 등의 신고·보고서’를 작성 및 (수정)신고

※ 항결핵제 내성코드가 U84.30, U84.31

※ U84.30, U84.31로 신고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_결핵관리 ‘다제내성관리대상자 알림’ 메뉴 목록에 ‘발생’ 환자로 생성되어 관리보건소의 환자관리 시작됨

### 나. 등록

#### 1) 발생 확인

##### 가) 관리 보건소

신고된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관리 등록 대상자 기준에 적합한지 발생 신고내역의 확인항목 적절성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_결핵관리 ‘다제내성관리대상자 알림’ 메뉴 목록에서 ‘발생자’ 확인

##### 나) 확인항목

신고서의 ‘항결핵약제 내성코드(U84.30 또는 U84.31)’, ‘항결핵약제 약제내성 검사 방법(검사결과 확인일)’, ‘항결핵약제 내성약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_결핵관리\_‘다제내성관리대상자 알림’ 메뉴 목록에서 ‘발생자’ 확인

※ ‘II-제1절-2-라. 표 1.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작성 방법’ 참고

대분류	항목명	작성 방법
항결핵약제 내성검사	항결핵약제 내성검사 결과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결핵환자의 첫 배양분리 균주에 대하여 실시하며, 해당 검사 결과를 선택하여 기입</li> <li>- Xpert MTB/RIF 검사 결과상 MTB로 확인된 경우 검사방법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Xpert MTB/RIF 검사 등)'으로 선택하여 내성결과 입력</li> </ul>
	항결핵약제 내성검사 방법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적인 방법, 신속내성검사,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Xpert MTB/RIF 검사 등) 인지를 선택하여 기입</li> </ul>
	항결핵약제 내성 약제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결핵약제 내성검사 결과 내성이 있는 약제를 선택 하여 기입</li> </ul>
	항결핵약제 내성 코드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항결핵 내성 약제 선택 시 다음의 기준으로 자동선택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 = 리팜핀단독내성결핵</li> <li>- H &amp; R = U84.30(다약제내성결핵)</li> <li>- H &amp; R &amp; (Lfx or Mfx or Ofx or Gfx) &amp; (Km or Amk or Cm) = U84.31(광범위약제내성결핵)</li> </ul> </li> </ul>

## 2) 발생 보고

### 가) 관리 보건소

- 발생 내역 확인결과 다제내성 결핵관리 대상자인 경우 관리정보를 등록하고 시·도에 발생보고 승인요청
  - ※ 다제내성 결핵 발생이 아닌 사례는 '취소(삭제)' 처리 및 <서식 1>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수정 보고
- 다제내성 관리정보는 별도의 독립적인 관리 항목이 대부분이므로 결핵 신고정보 외 추가정보(투약정보, 추구검사 등)는 관리자가 직접 파악한 내용을 입력

### 나) 등록항목

항 목	내 용
신규발생 여부	다제내성 결핵으로 처음 발생보고 되는 환자여부 ; 과거에 다제내성 결핵(U84.30, U84.31)으로 신고·보고되어 치료한 이력이 없는 경우 표시
약제내성 정보	'항결핵제내성코드', '내성검사 결과확인일', '내성 검사방법', '내성약제' ; 발생된 신고에서 확인된(나. 확인항목) 약제내성 정보를 등록



항 목	내 용
전염성여부	<p>발생된 신고 객담검사 내역에서 다제내성 결핵의 '전염성 여부'를 확인하고 전염성인 경우 해당 검사결과 내역을 선택하여 등록(검체채취일 기준)</p> <p>※ 전염성 기간 추가 가능(도말검사→배양검사→TB-PCR 검사 순으로 양성인 검사 종류별 등록)</p> <p>&lt;전염성 시작일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염성 시작일자 : 내성검사 결과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으로 진단된 시점의 전염성인 검사결과를 선택하여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말검사, 배양검사, TB-PCR / Xpert MTB/RIF 검사 중 양성인 경우 순서대로 등록</li> <li>- 음성인 경우 등록 필요 없음</li> </ul> </li> </ul> <p>※ 전염성 종료일자 미입력은 전염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p>
다제내성 치료정보	<p>'치료상태', '다제내성 치료시작일', '치료결과', '치료종료일' ; 발생보고 시에는 현재 치료 여부와 다제내성의 치료시작일*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등록</p> <p>※ '다제내성 치료상태', '다제내성 치료시작일'은 신고서에 별도의 항목이 없으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투약이력에서 다제내성 치료약제 첫 투약일을 확인 후 등록(2차 항결핵제 투약이력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 확인하여 등록 요청)</p>
관리상태	<p>'관리종료 여부', '관리시작일' ; 다제내성 관리시작일과 대상자의 관리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발생보고 시에는 관리시작일 등록</p>
사업관리 정보	<p>다제내성환자 관리시작일 이후 시행한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반영하여 해당하는 사업명을 선택하여 등록</p> <p>※ '비고'에 환자의 주요한 메모사항 등록하여 관리 시 참고내용 활용</p> <p>&lt;다제내성 결핵환자 사업관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중사일시제한 : 'Ⅲ.제2절-2.전염성 결핵환자 격리조치' 참고</li> <li>전염성 복약관리 : 'Ⅲ.제2절-3.전염성 결핵환자 복약관리' 참고</li> <li>비순응 환자관리 : 'Ⅲ.제3절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참고</li> <li>입원·격리치료명령 관리 : 'Ⅲ.제4절 입원명령, 제5절 격리치료명령' 참고</li> <li>외국인 중점관리 : 'Ⅲ.제7절-2.중점관리대상자 관리' 참고</li> </ul> <p>※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관리정보에 표시</p>

다) 시·도 관리 담당자

관리보건소가 승인 요청한 '발생보고' 건의 적절성 확인 후 승인(반려)처리 및 발생보고 지속 모니터링

라) 질병관리본부

시·도가 승인 요청한 다제내성 결핵관리 대상자를 확인하여 최종 (반려)승인 처리

## 다. 추구관리

### 1) 의료기관

다제내성 결핵 신고환자의 환자정보 중 추구관리 항목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누락 없이 입력

※ 특히 항결핵제내성검사, 투약정보(다제내성 치료약제정보), 추구검사 결과는 반드시 입력

### 2) 관리보건소

다제내성 결핵 관리대상자의 관리정보를 주기적으로(매월 마지막 주) 확인하고 변경된 사항을 직접 현행화

※ 특히 다제내성결핵 관리 대상자의 전원이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치료 여부 점검

### 3) 추구관리 항목

항 목	내 용
약제내성 정보	'항결핵제내성코드', '내성 검사방법', '내성약제'; 발생 보고 후 '검사 중'인 신고기관의 내성검사 결과 값이 입력되었을 때 또는 의료기관에서 내성약제 정보 수정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등록
전염성여부	<p>'전염성 있음'으로 등록된 환자의 추구 검사결과에 '음성'인 검사결과가 추가되었을 경우 또는 전염성이 없는 등록 환자의 추구 검사결과가 '양성'인 검사결과가 추가되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전염성 여부'와 검사결과를 등록(검체채취일 기준)</p> <p>&lt;전염성 시작일자, 전염성 종료일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염성 시작일자 : 추구검사에서 다시 전염성인 검사결과를 선택하여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말검사, 배양검사, TB-PCR / Xpert MTB/RIF 검사 중 양성인 경우 순서대로 등록</li> <li>- 음성인 경우 등록 필요 없음</li> </ul> </li> <li>• 전염성 종료일자 : 추구검사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검사결과를 선택하여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말검사 : 최초 음전 후 연속 2회 음성(총 3회 음성)일 때 3번째 음성결과 값 등록</li> <li>- 배양검사, TB-PCR / Xpert MTB/RIF 검사 : 최초 음전된 검사결과를 선택하여 등록</li> </ul> </li> </ul> <p>※ 전염성 종료일자 미입력은 전염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p>
다제내성 치료정보	<p>'치료상태'는 현재 치료 여부를, '치료결과'와 '치료종료일'은 치료를 종료하여 신고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등록</p> <p>※ 다제내성 치료성공률 산출에 활용되므로 철저히 관리 요망</p>
관리상태	다제내성환자로 등록 관리하는 대상자의 관리종료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관리종료 여부 판단하여 등록



항 목	내 용
사업관리 정보	다제내성환자 관리시작일 이후 시행한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반영하여 해당하는 사업명을 선택하여 등록 ※ '비고'에 환자의 주요한 메모사항 등록하여 관리 시 참고내용 활용

4) 시·도 관리 담당자

- 매월 마지막 주 보건소의 관리사항 현행화 진행 여부와 관리내용을 점검하여 결과 환류(치료결과, 관리상태 미처리 환자 발견 시 조치 독려, 결과 확인 등)
- 시·군·구 추구관리 지도 및 추구관리 자료 질 관리 등
  - ※ '다제내성 추구관리 항목의 관리내용'을 참고하여 점검

5) 질병관리본부

- 매월 초 전월에 현행화된 다제내성 등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도 (시·군·구)에 결과 환류(치료상태, 관리상태, 사업관리 현황 파악 후 조치 등)
- 추구관리 질 관리를 위한 자료 분석 및 결과 환류 등

라. 관리 종료

1) 관리보건소

- 관리를 종료하고자 할 때 모든 관리정보 항목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종료사유', '관리종료일'을 입력 후 종료 처리
- 치료 안함, 치료결과 입력 지연(치료중단자, 외국인 귀국 등) 등의 사례 확인 시 조치 독려
  - ※ '관리사유(치료종료, 치료안함, 귀국, 진단변경 등) 구분하여 입력
  - ※ '관리종료' 처리된 환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며 '연도별 다제내성 발생 및 관리현황표'에 반영됨

2) 시·도 관리 담당자

- 매월 마지막 주 보건소에서 보고된 관리종료자 현황 및 관리내용을 점검
- 분석 결과를 관할 시·군·구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운영 시 환류

## 3) 질병관리본부

- 매월 초 전월에 현행화된 다제내성 등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도 (시·군·구)에 결과 환류(치료상태, 관리상태, 사업관리 현황 파악 후 조치 등)
-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질 관리를 위한 자료 분석 및 결과 환류 등

## 3. 항결핵주사제 투약 연계 및 비용 지원

## 가. 대상

치료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리보건소에 항결핵주사제(Km, Am, Cm, S) 투약 연계를 의뢰받은 환자

※ 입원명령 실시 후, 입원명령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나. 절차 및 방법

## 1) 치료 의료기관

주치의는 항결핵주사제 투약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식 29> 항결핵주사제 투약의뢰서(이하 투약의뢰서)’를 작성하여 관리보건소 및 환자에게 각 1부씩 발부, 환자에게는 투약 연계기관(이하 연계기관)에 제출하도록 설명

- (환자 연계 시 원칙) 전염성 소실이 확인된 환자에 한해 투약의뢰서 발부
  - ※ 전염성 소실 기준은 ‘입원명령 해제 기준’을 준용
- (투약의뢰서 발부 주기) 최초 발부 이후 정기 진료를 통해 추가 발부사유기\* 발생했을 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 송부
  - ※ 주사제 용량·용법, 투약기간(종료) 등의 변경, 부작용 인지 후 일시 투약정지 등 소견
- (환자 교육) ‘처방 약제’와 ‘투약의뢰서’를 지참하고 연계기관을 방문하도록 안내. 또한 부작용 발생, 악화 시 치료기관의 진료예약 조정 및 진료 가능함을 안내
  - ※ ‘항결핵주사제 투약연계기관 목록’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지역 연계기관 안내
- (정기 진료) 투약 부작용 등의 관찰 결과 환자에게 별도의 주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관리보건소를 통해 투약 처치기관에 주의사항 공유(투약의뢰서 의사소견 활용)
  - ※ 신독성 증후, 청력 소실 또는 주요 부작용 관련 검사결과 또는 소견 등



## 2) 관리 보건소

환자의 전염성 소실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가 제출한 ‘투약의뢰서’의 용량·용법, 투여방법에 따라 항결핵주사제를 투약하고 부작용 모니터링

- 단, 보건소 내 주사제 투약이 불가능한 경우 관내 1·2차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투약 모니터링 및 비용 지원
- 투약처치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명세서 확인 및 보관
- 지원현황 정기(반기별) 모니터링 실시(지원 건수, 지원액 등) 대비
- 투약의뢰와 관련된 문의 시 안내 및 지역 투약의료기관 발굴 등

## 3) 투약 의료기관

환자가 제출한 ‘투약의뢰서’의 용량·용법, 투여방법에 따라 항결핵주사제를 투약하고 부작용 모니터링

- 투약의뢰서의 부작용 관련 주요 검사결과 등을 확인 후 투약
- 투약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부작용이나 악화소견 등은 소견서를 통해 치료의료기관에 정보 환류
  - ※ 환자를 통해 소견서를 발부하여 치료 의료기관의 정기(또는 추가) 진료 시 진료소견 제공

## 다. 지원 내용

항결핵주사제 투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지원범위) 1·2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건강보험 수가 적용 100% 이내 청구, 건강보험 청구분\*은 제외)
  - ※ 결핵은 산정특례에 의해 건강보험 청구 시 본인부담금 면제
  - ※ 치료의료기관을 통해 ‘<서식 29> 항결핵주사제 투약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진찰료 및 주사료(근육주사 또는 정맥주사), 관련 제증명료
- (지원 방법) 환자가 정산한 의료비 내역을 증빙 받아 환자에게 환급 또는 의료기관이 내역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청구 가능
  -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명세서, 입금통장 사본 등을 정산 근거자료로 활용
- (지원 기간) 항결핵주사제 치료 종료 시까지(투약 의뢰기관 소견에 따름)
  - ※ 국가결핵예방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예산’ 에서 지원(보건소별 지원현황 보관 요망)



## 4. 다제내성 결핵 신약 사전심사제 운영

### 가. 대상

다제내성 폐결핵 환자(18세 이상 성인)을 진료한 주치의가 신약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약 사용 전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 나. 절차 및 방법

다제내성 결핵 치료 신약 2종(베다퀼린, 텔라마니드)은 사용 전 결핵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

- ① (사전심사 요청) 신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으로 심사 요청

#### ※ 구비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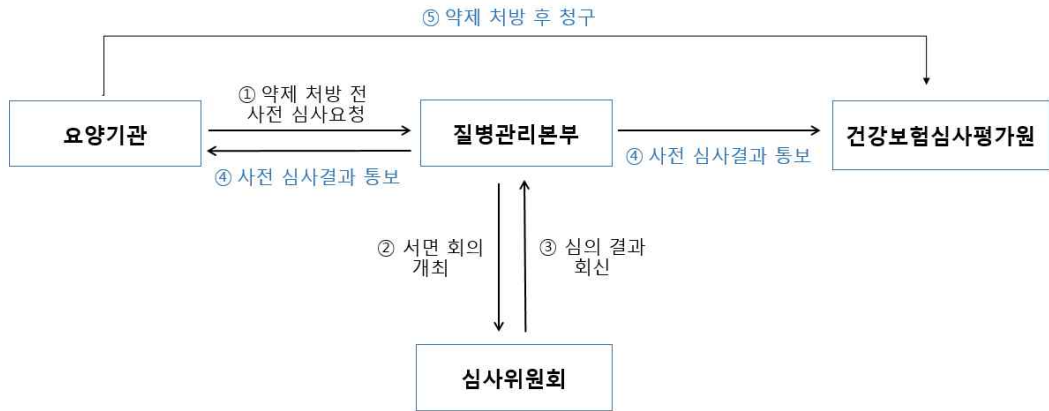
- 사전심사 요청서 1부
- 객담 도말/배양/약제감수성 검사 결과지 1부
- 혈액검사 결과지 1부
- 심전도 검사 결과지 1부
- 흉부 X선 검사, CT 등 영상의학 관련 자료(주요 사진 취합하여 사진형태로 첨부) 1부
- 약제 처방 내역 1부
- 심사 요청에 필요한 의무기록사본 1부
- 약제부작용 및 증상악화 등과 관련된 검사결과지 또는 타과 협의 진료 복사본 1부

※ 구비 서류 및 공문은 질병관리본부 이메일(endtb@korea.kr)으로 제출

- ②,③ (사전심사) 사전심사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후 질병관리본부로 결과 회신
- ④ (사전심사 결과통보) 질병관리본부는 요청 요양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심사 결과' 통보
- ⑤ (사전심사 결과확인 및 청구) 요청 요양기관은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약제 처방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청구



< 다제내성 결핵 신약 사전심사제 운영체계 >



## 제 8 절

# 외국인 결핵 관리

### 일러두기

외국인에 대해서는 결핵검진과 중점관리(입국금지) 등록을 통해 적극적인 결핵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결핵검진은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국내 입국 전 장기 사증 신청 시 또는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신청 시 의무화하고 있고, 중점관리(입국금지) 등록은 전체 외국 국적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비순응이나 치료목적 입국 시 중점관리대상자 및 입국금지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이 절은 외국인 결핵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 1. 외국인 결핵 검진

### 가. 결핵 검진 대상

#### 1) (국내 입국 전) 결핵고위험국가의 국적자가 장기 사증(91일 이상) 발급 시

-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제출 의무화
- ※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장기 사증 발급 제한되며 결핵 완치 증명서류 제출 후 발급 가능
- ※ 법무부의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근거

#### ※ 결핵고위험국가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총 19개,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2) (국내 체류 중)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가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신청 시

가) 단기 사증(91일 미만)에서 장기 사증(91일 이상)으로 변경 신청 시

나) '16.3.2일 이전에 취득한 장기 사증 연장 신청 시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시행('16. 3. 2.) 이전 장기 사증 취득자는 입국 전 결핵 검진을 미 실시하여 사증 연장 시 결핵 검진 실시 대상이 됨

3) 외국인 결핵 검진 의무적용 제외 대상

만 6세 미만 소아, 임신부, 특정한 체류자격 소지자(외교(A-1), 공무(A-2), 협정(A-3))

## 나. 결핵 검진 및 치료 관련

1) 「결핵 검진 확인서」 발급을 위한 결핵 검진

※ '<서식 30> 결핵 (검진·치료경과) 확인서(보건소용)' 참고(PHIS 탑재)

가) 보건소에서 결핵 검진 및 확인서 발급 관련

※ 검사전 확인사항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 추후 결핵 진단 시 외국인 환자관리를 위함

(1) 흉부 X선 검사

(가) 흉부 X선 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결핵환자 아님'으로 확인서 발급

※ 결핵과 무관한 유소견은 '정상'으로 확인

(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활동성 결핵'인 경우 '결핵환자'로 확인서 발급

※ 흉부 X선 검사 실시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서식 31> 접수증'을 발급하여 대상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안내

(2) 객담 검사(TB-PCR, Xpert MTB/RIF)

(가)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유소견'인 경우 객담 검사 실시

※ 객담 검사 실시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서식 31> 접수증'을 발급하여 대상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안내

(나)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결핵균(MTB) 양성인 경우 '결핵환자' 체크하여 확인서 발급

- 결핵균(MTB) 음성인 경우 ‘결핵환자 아님’ 체크하여 확인서 발급
- 결핵균(MTB) 음성이지만 추가 확인(배양검사) 필요 → ‘결핵판정 보류’ 체크하여 ‘결핵 검진 확인서’ 발급
  - ※ 결핵판정 보류인 경우 ‘<서식 30> 결핵 검진 확인서’를 1차 발급하고, 객담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면 ‘<서식 30> 결핵 검진 확인서’를 추가(2차) 발급

(3) 객담 배양검사

(가) 객담 검사(TB-PCR, Xpert MTB/RIF) 결과 ‘결핵판정 보류’인 경우 배양 검사 실시

(나)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객담 배양 양성인 경우 ‘결핵환자’ 체크하여 확인서 발급
- 객담 배양 음성인 경우 ‘결핵환자 아님’ 체크하여 확인서 발급

나) 보건소 외 검사기관에서 결핵 검사 및 확인서 발급 관련

- ※ 보건소 외 검사기관 : 법무부 지정 병원\*(약 600개소)
  - \* 대한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법무부 지정병원에 포함
- ※ 검사 전 확인사항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 추후 결핵 진단 시 외국인 환자관리를 위함

(1) (보건소 외 검사기관) 흉부 X선 검사 실시

(가) 흉부 X선 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결핵환자 아님’으로 확인서 발급 또는 기관 자체 서식 발급

- ※ 결핵과 무관한 유소견은 ‘정상’으로 확인
- ※ ‘<서식 32> 결핵 검진 확인서(보건소 외 검사기관용)’ 참고

(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활동성 결핵’ 또는 ‘결핵이 의심되는 유소견’인 경우 추가 객담검사 실시를 위해서 가까운 보건소에 내원하도록 안내 및 연계

- ※ 흉부 X선 검사 실시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서식 31> 접수증’을 발급하여 대상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안내

(2) (보건소) 보건소 외 검사기관에서 보건소 연계를 안내받은 대상자에게 추가 객담검사 실시 후 ‘결핵 검진 확인서’ 발급

- ※ ‘<서식 30> 결핵 검진 확인서’ 참고

## 2) 「결핵 치료경과 확인서」 발급 관련

※ ‘<서식 30> 결핵 (검진·치료경과) 확인서(보건소용)’ 참고(PHIS 탑재)

## 가) 발급 대상 및 시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핵 검진 확인서’ 상 ‘결핵환자’로 제출한 자료, ‘치료예정서약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징구)를 제출 후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결핵 치료경과 확인서’를 요청받은 자

## 나) 발급 절차

- 치료 중인 경우 치료 순응여부(비순응인 경우 사유 기입) 체크하여 확인서 발급
- 치료 종료인 경우 치료 결과(완치, 완료, 기타) 기입하여 확인서 발급

## 다) 발급 기관 : 환자의 관리보건소

※ 외국인 환자의 관리보건소 기준 : 실거주지 보건소(단, 실거주지가 불명인 경우 신고기관의 관할보건소)

※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환자인 경우 관리보건소에서 치료 상태 확인(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후 보건소에서 발급

## &lt; 외국인 결핵 검진 확인서 발급 기관 &gt;

발급 기관	발급 서류	비 고
보건소 (일부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포함)	<서식 30> 결핵 (검진·치료경과) 확인서(보건소용) <서식 31> 접수증	
법무부 지정병원 (약 600기관, 상시변동) * 대한결핵협회 부설 복잡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포함	<서식 31> 접수증 <서식 32> 결핵 검진 확인서(보건소 외 검사기관용)	기관 현황 <참고> 확인

※ 법무부 지정병원 관련

- 외국인 등록을 위해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법무부용 건강진단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결핵 검진 포함)는 결핵 검진 확인서로 갈음 가능함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 중앙 자주찾는 서비스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3) 행정 사항

가) (무료 검진) '결핵 (검진·치료경과)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결핵 검진은 원칙적으로 무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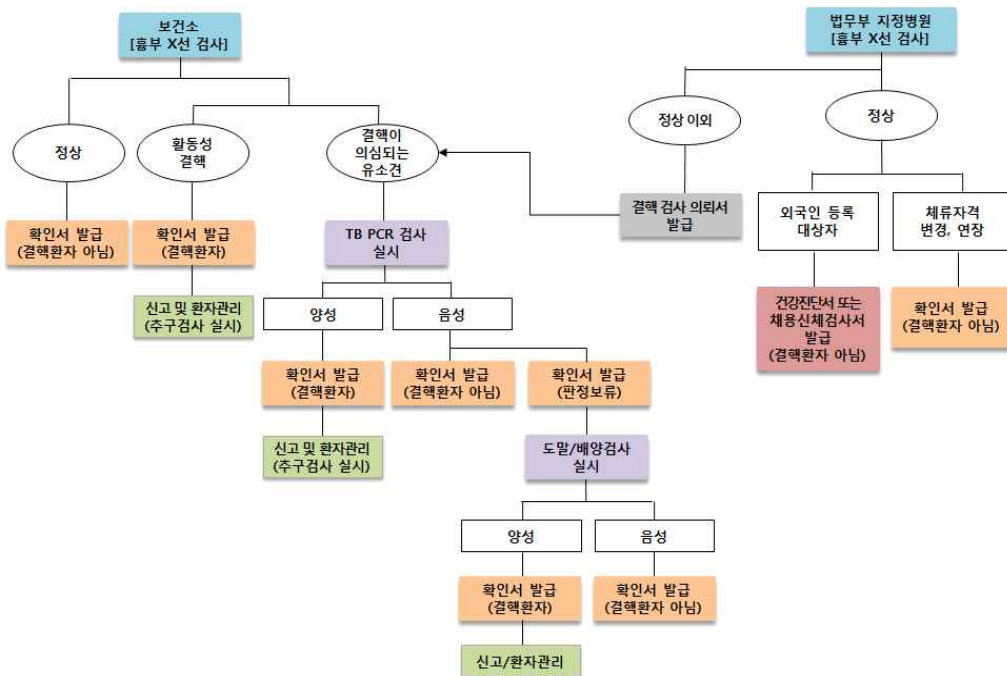
※ 단, 보건소 이외 검사기관에서는 본인 부담 비용 발생

나) (예산 집행)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결핵 검진과 관련한 비용(결핵 검진 위탁사업비, 검사 소모품비, 판독료, 확인서 발급료\* 등)은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 예산에서 집행 가능

※ 단, 결핵 (검진·치료경과) 확인서는 결핵감염여부를 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진단서와 동일한 발급절차를 적용하여 지자체 조례에 의해 비용 징구 여부 결정

다) (확인서 유효기간) 결핵 검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검사일자로부터 3개월(90일 이하)까지 유효

< 보건소 및 그 외 검사기관\*의 외국인 결핵 검진 및 확인서 발급 절차 >



\* 법무부 지정병원(약 600개 기관, 상시변동)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 중앙 자주찾는 서비스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 2.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 관리 주체 : 환자의 실거주지 보건소(실거주지가 불명인 경우 신고기관의 관할보건소)

### 가. 중점관리대상자 등록

#### 1) 대상

##### 가) 치료비순응자

- 치료 거부(수약 불협조자 또는 불규칙한 투약자)
- 치료 중단(연락두절 등 사유로 치료 중단자)
  - ※ 위의 사유로 연속하여 2달 이상 치료가 중단되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중단’으로 퇴록한 자

##### 나) 치료목적입국자

- 다제내성 결핵(광범위내성 결핵 포함)으로 진단 및 신고된 외국인 중 단기사증 소지자 등
  - ※ 위의 사유인 경우 치료순응도 여부와 관계없음

※ 중점관리대상자 등록 제외대상

: 폐외 결핵환자, 특정 체류자격 소지자(외교(A-1), 공무(A-2), 협정(A-3))

#### 2) 등록 절차

##### 가) (보건소) 중점관리대상자 등록을 질병관리본부로 요청

※ 등록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중단’으로 퇴록 처리 후 ‘중점관리대상자’ 등록요청(시·도) 중점관리대상자 등록 명단 확인 가능

##### 나) (질병관리본부) 보건소로부터 요청된 명단 확인 후 법무부에 중점관리대상자 등록요청 명단 통보



## 나. 중점관리대상자 해제

### 1) 적용 대상

- 결핵을 완치 또는 완료한 경우
- 진단이 변경된 경우(결핵 아님)

### 2) 해제 절차

가) (보건소) 중점관리대상자 해제를 질병관리본부로 요청

나) (질병관리본부) 보건소로부터 요청된 중점관리대상자 명단 확인 후 법무부로 해제 명단 통보

## 다. 강제퇴거

### 1) 원칙

- ‘중점관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임
  - ※ 강제퇴거는 환자의 신병확보가 된 상태에서 가능

### 2) 조치 절차

가) (보건소) 국립마산병원으로 입원명령 실시

- ※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대상자에 한해 입원명령 실시 가능 (제4절. 입원명령 참고)
- ※ 입원명령 시, ‘<서식 9>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전원)알림통지서’ 내 [환자구분]-[그외]란에 ‘외국인 강제퇴거대상자’ 추가 작성하여 알림

나) (국립마산병원) 전염성 소실(균 음전) 확인 후, 보건소에 통보

- ※ 전염성 소실 시까지 치료를 원칙으로 함

다)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강제퇴거대상자 공문 알림

라) (질병관리본부) 강제퇴거대상자의 출국사실 확인 후 법무부에 입국금지대상자 등록 요청



### 3. 입국금지대상자 관리

※ 관리 주체 : 환자의 실거주지 보건소(실거주지가 불명인 경우 신고기관의 관할보건소)

#### 가. 입국금지대상자 등록

- 중점관리대상자의 출국(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이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법무부에 입국금지대상자 등록요청 명단 통보

※ 단,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는 입국금지대상자 등록 제외

#### 나. 입국금지대상자 해제

- 입국금지대상자가 결핵을 완치 또는 완료 등으로 해제가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법무부에 입국금지대상자 해제요청 명단 통보

※ 입국금지대상자는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결핵 완치(완료)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하며, 질병관리본부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결핵 완치(완료)자 명단 및 관련 정보를 통보 받아 확인

## 제 9 절

# 노인 결핵 관리

### 일러두기

노인 결핵 검진은 결핵 발생·사망률이 높고 유행 파급력이 큰 전국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연 1회 결핵검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결핵 조기발견 및 타인으로 전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절은 노인 결핵검진 사업 및 유소견자·환자 관리 등 노인 결핵 관리 전반을 담고 있다.

## 1. 노인 결핵검진

### 가. 사업 목적

결핵 발생·사망률이 높고 유행 파급력이 큰 전국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연 1회 찾아가는 결핵검진(실시간판독, 당일 객담검사)을 제공하여 결핵 조기발견 및 타인으로 전파 차단

### 나. 결핵검진 대상

1) 최우선 순위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환자

구분	대상 기준	자료원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 무능력세대,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권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노숙자 그 밖에 생활능력이 없는 자</li><li>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li></ul></li></ul>	2018년 의료급여 통계 참조



구분	대상 기준	자료원
만65세 재가와상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 장기요양급여 3·4·5등급 판정자 중 자택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li> <li>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li> <li>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li> </ul> </li> <li>*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1·2등급 판정자 대상으로 검진 가능</li> </ul>	201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참조

2) 차순위 : 지자체 상황에 따라 독거노인, 건강검진 미수검자, 건강 취약 계층 등 기타 결핵검진 사각지대 노인 우선 검진

구분	대상 기준	자료원
독거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li> </ul>	2019년 장래인구추계 참조
차상위계층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아닌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계층</li> </ul>	차상위계층 통계현황 참조 (’19년 9월)
허약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손상의 결과인 장애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쉽게 장애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이 큰 노인으로, 노인 기능허약평가 6-18점(총20점) 판정자</li> </ul>	
건강취약계층 (건강위험군, 질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중관리군 : 건강위험 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 조절이 안 되는 경우</li> <li>정기관리군 : 건강위험 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li> <li>자기역량지원군 : 건강위험 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li> <li>*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군분류 조건 참조</li> </ul>	2012년 방문관리사업 연보*
기타 검진 사각지대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하위 20% 등</li> <li>사회적 기준 : 북한 이탈주민 등</li> </ul> </li> </ul>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안내

구분	대상 기준	자료원
	- 연령 기준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 - 기타 : 독거노인, 조손·장애인·암·정신질환자 가족 등	
검진 대상기관 만65세 이하 입소자 및 종사자	공동생활을 통한 교차감염 고려, 검진 대상 포함	-

\* 방문건강관리사업 연보는 2012년 이후 연보를 제작하지 않았으며, 2020년부터 재발행 예정

다. 검진 지역 : 전국

라. 검진위탁기관 : 대한결핵협회(☎ 02-2085-0061)

\* 지정 사유 :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업무 위탁

-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결핵 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업무 위탁할 수 있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마. 검진 비용 청구 및 정산

1)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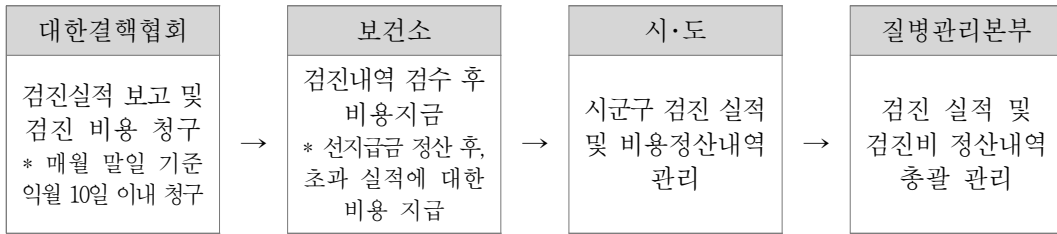
- \* 「국고금관리법」 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1항 :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2) 검진 비용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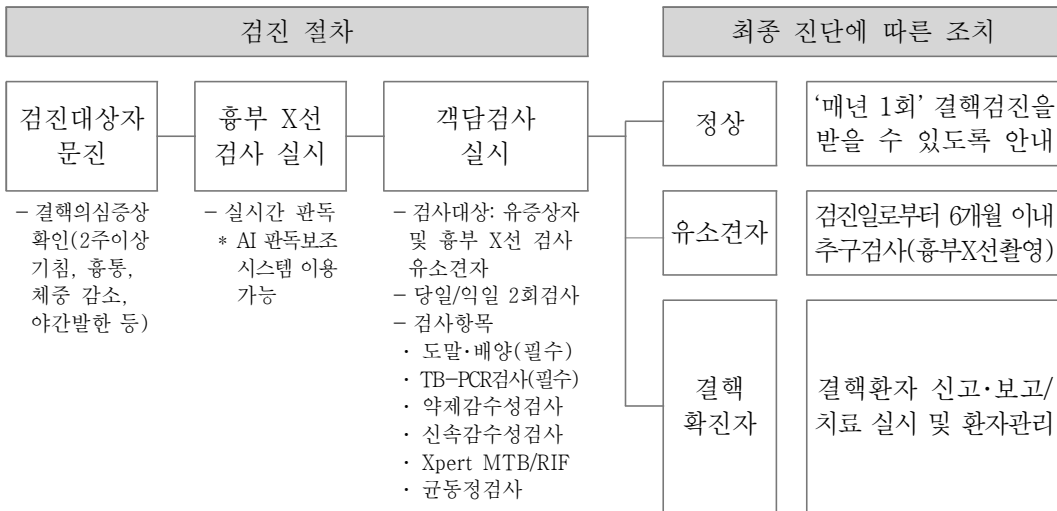
- 선지급 후 계약 잔액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비용 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검진비용 청구 및 정산 절차 >




바. 검진 프로토콜



사. 대상별 검진 방법

구분	검진 방법
거점형 결핵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검진차량(휴대형 X선) 활용</li> <li>- 검진대상자 모이는 공간 타켓팅 필요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li> <li>- 실시간 원격 판독</li> <li>- 결핵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대상으로 객담 채담 및 수거</li> </ul>



구분	검진 방법
방문형 결핵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형 X선 활용</li> <li>- 세대별 직접 방문(거동불편자)</li> <li>- 실시간 원격 판독</li> <li>- 결핵유소건자 및 유증상자 대상으로 객담 채담 및 수거</li> </ul> 

### 아. 검진 방법

- 1) (검진 계획 수립)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검진 계획 수립·시행
  -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재가와상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및 노인 대상 돌봄 프로그램 중심의 검진 사업 운영
  - ※ 검진대상자 및 거주지 확보를 위한 타기관(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 노인 일자리 등 사업 담당 부서) 협조요청 등
  
- 2) (검진 수요조사 및 일정 수립) 검진 수요 조사<서식 95> 후 검진 일정 수립 <서식 96>하여 검진위탁기관에 전달
  
- 3) (검진 당일 사전문진표 및 동의서 작성) 검진위탁기관에서 검진대상자에게 사전 문진표(인적사항 및 건강정보 등) 및 검진 동의서<서식 97> 작성 및 취합
  
- 4) (검진 실시) 검진위탁기관에서 찾아가는 결핵 검진(흉부 X선 검사 등)실시
  - 흉부 X선 검사 및 실시간 영상판독
    - 가) (거점형 결핵검진) 해당 시설 및 검진장소 내에서 흉부 X선 검사 실시
    - 나) (방문형 결핵검진) 거동 불편 검진 대상자에 대해 휴대용 흉부X선 장비를 활용한 직접 방문형 결핵검진 실시
  - (객담검사\*) 유증상자\*\* 및 흉부 X선 판독 결과 결핵 유소건자\*\*\*
    - 자가 객담 배출을 권장하고 필요시 유도 객담 시행(자가 채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채담방법 안내)
    - \* 검사항목 :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한 객담 도말, 배양, TB-PCR검사, 약제감수성검사, 신속감수성검사, Xpert MTB/RIF, 균동정검사



\*\* 유증상자 :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있음이 문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

\*\*\* 유소견자 : 흉부 X선 판독 결과 결핵 의심 소견 또는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

※ (보건소 수행) 채담이 어려운 경우 CT 촬영 권고(비용 미지원) 및 향후 재검을 통한 유소견자 추구관찰

- 1개월 내 객담 검사, 흉부 CT검사 등의 추가검사를 실시하여 활동성 결핵여부 확인
- 추가검사(객담 및 흉부 CT검사)가 어려운 경우 흉부 X선 재검 및 비교 판독
- 검사 결과 결핵환자 확진 시 즉시 신고 및 결핵 치료

#### 5) 최종 진단에 따른 조치

- 정상 소견 조치 : 결핵예방수칙 안내 및 매년 1회 이상 결핵검진 권고 및 독려
- 유소견자 조치 : 유소견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구검사(흉부 X선 검사) 실시하도록 추구 관리 및 결핵예방수칙 안내 [IX. 결핵예방 홍보] 참조
- 결핵 확진자 : 환자 신고·보고, 치료 실시 및 환자관리[III-제9절 3. 노인결핵환자관리] 참고

#### 6) (검진사업 평가) 시·도, 보건소, 검진위탁기관의 사업 운영 및 검진 성과평가

- 검진위탁기관은 검진 결과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해 최종 결과보고

### 자. 노인 대상 결핵 예방 홍보(시·도 및 시·군·구)

- 1) (홍보 방향) 노인 대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보건소에서 무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독려 홍보
- 2) (계획 수립) 연간 결핵 예방 홍보계획 수립 시 노인 대상 홍보계획 수립 포함 [IX. 결핵예방 홍보] 참조
- 3) (홍보 방법) 노인 대상 효과적인 접점 채널을 이용하여 현장 중심의 홍보 시행
  - 노인 이용시설 및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결핵예방 홍보·교육
  - 노인 이용 시설 및 보건·복지프로그램 운영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핵바로알기 홍보·교육 및 결핵 검사 독려
  - 「결핵예방의 날(3.24)」 및 결핵예방주간 전·후로 노인 대상 결핵 검사 독려 등 집중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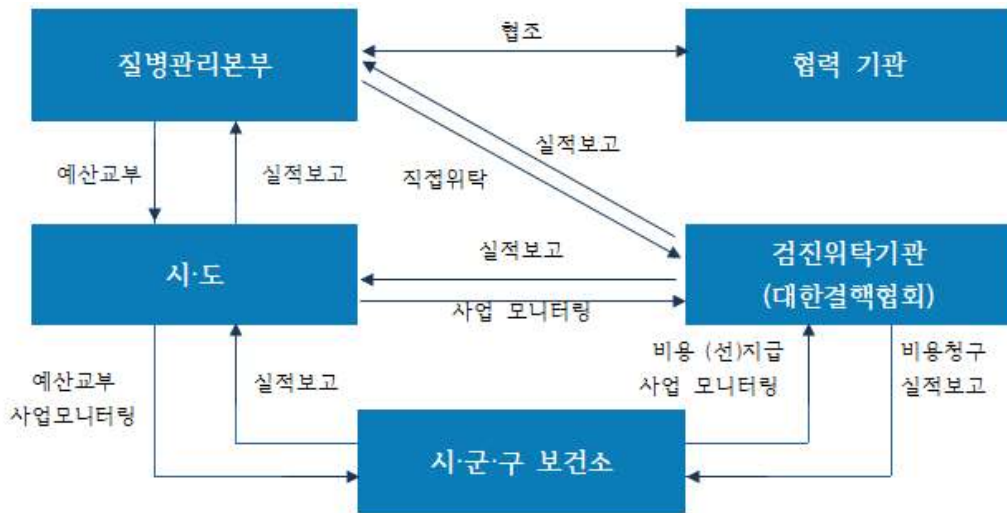


4) (홍보 메시지) 결핵예방 메시지 (참고 안)

※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 결핵예방 홍보 메시지

- 만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보건소에서 무료 결핵검사를 받으세요.
- 결핵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 기침, 가래가 지속될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결핵검사 받으세요.
- 어르신, 기침할 땐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 결핵 신규환자 5명 중 2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 결핵은 매년 약 2.6만명의 환자 발생, 약 1.8천명이 사망하는 질병입니다.
-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결핵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 경제협력국가(OECD) 가입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차. 사업수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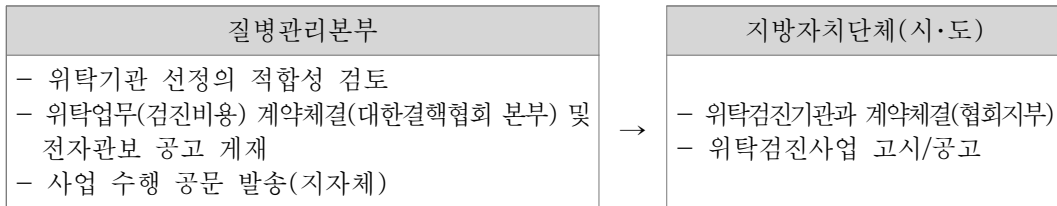


카.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본부

- 검진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설명회 개최
- 검진 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
- 검진위탁기관 계약 체결(대한결핵협회)
- 검진비용 및 위탁업무 등 고시/공고
  - 검진위탁기관 선정 근거 :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검진위탁기관 직접위탁 절차 >



- 사업수행기관 사업운영(예산관리·점검·평가 등) 감독 및 관리
- 지자체 및 사업 유관단체 협조 요청 등

2) 시·도

- 세부사업 계획 수립
-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구성원 : 시도, 보건소장, 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사,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감염병관리지원단,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결핵 병원,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 관련 민간단체[ I - 제2절 국가결핵관리사업 참조]
- 검진위탁기관 계약체결(대한결핵협회 지부)
- 노인 대상 결핵 예방 홍보
- 지자체(시·군·구 보건소) 예산 관리(예산 교부 및 청구 비용 검수)

3) 시·군·구(검진 관할 보건소)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검진 수요조사 및 검진 일정 수립
  - 검진사업 안내<서식 98> 및 사업 운영
  - 검진 결과 관리(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유소견자 조치 및 결핵환자 치료 관리(PPM 의료기관 등 연계)
  - 노인 대상 결핵 예방 홍보 등
  - 청구 비용 검수 및 비용 (선)지급
- 4) 검진위탁기관(대한결핵협회)
- 검진 일정 수립 협의
  - 검진 실시 및 결과 시스템 입력(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검진 실적 보고<서식 99> 및 검진 사업 결과 분석
- 5) 협력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 검진 일정 수립 협조
  - 검진대상자 현황 공유 및 사업 안내(홍보)
  - 검진당일 결핵검진 이동차량 주차 장소 제공 및 검진 진행을 위한 협조

## 2. 노인 유소견자 관리

### 가. 유소견자 조치

- 노인 대상 결핵 검진 결과, 유소견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핵검진(흉부 X선 검사) 권고
  - \* 해당 유소견자는 유증상자 또는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인자 중 객담검사 실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자
- 결핵예방수칙에 대해 설명하며 결핵 증상(2주 이상 기침, 가래 등) 발생 시 즉시 보건소 내원할 것을 안내
  - \* 참고 : <http://www.tbzero.cdc.go.kr>>홍보센터>결핵&기침예절 자료>결핵예방 홍보·교육 자료



## 나. 기관별 역할

- 1) 질병관리본부
  - 유소견자 관리 모니터링
  - 지자체 및 사업 유관단체 협조 요청 등
- 2) 시·도
  - 유소견자 관리 모니터링
  - 지자체 및 사업 유관단체 협조 요청 등
- 3) 시·군·구(검진 관할 보건소)
  - 유소견자 대상 추구검사 안내 및 실시
  - 유소견자 추구검사 결과 관리(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유소견자 대상 결핵예방교육 실시
- 4) 검진위탁기관(대한결핵협회)
  - 유소견자 발견 시 보건소에 통보

## 3. 노인 결핵환자 관리

### 가. 환자 관리 방법

- 1) 환자 신고 :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사환자 발견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 신고[Ⅱ-제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참고
- 2) 전염성 결핵환자 격리 조치 및 복약관리 : 보건소에서 전염성 결핵환자를 확인하여 격리 조치 및 복약관리 실시[Ⅲ-제2절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참고
- 3) 비순응 환자 조치 : 보건소에서 균 양성으로 판정된 호흡기 결핵환자 중 수약 불협조자·불규칙한 투약자·치료중단 환자 등 대상으로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 환자관리 실시 [Ⅲ-제3절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참고

- 4) 입원명령대상 환자 조치 : 보건소에서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치료 비순응 환자 등 대상으로 입원명령 실시[III-제4절 입원명령] 참고

## 나. 기관별 역할

### 1) 질병관리본부

- 결핵환자 치료관리 모니터링
- 지자체 및 사업 유관단체 협조 요청 등

### 2) 시·도

- 결핵환자 치료관리 모니터링
- 지자체 및 사업 유관단체 협조 요청 등

### 3) 시·군·구(검진 관할 보건소)

- 결핵환자 발견 시 치료 및 관리(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4) 검진위탁기관(대한결핵협회)

-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시설 통보



제 10

## 노숙인 등 결핵 관리

**일러두기**

영양결핍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숙인·쪽방거주자는 일반인에 비해 결핵유병률이 매우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통해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관리한다. 이 절은 노숙인 등 결핵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 1. 노숙인 등 결핵 검진

#### 가. 사업 목적

일반인에 비해 결핵 유병률이 매우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숙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실시간관독, 당일 객담검사)을 통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 '19년 쪽방거주자 결핵검진 시범사업 결과, 검진자 483명 중 3명(인구 10만명당 621명) 결핵환자 발견, '18년 국내 전체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명당 51.5명)에 비해 12배 높은 수준

#### 나. 결핵 검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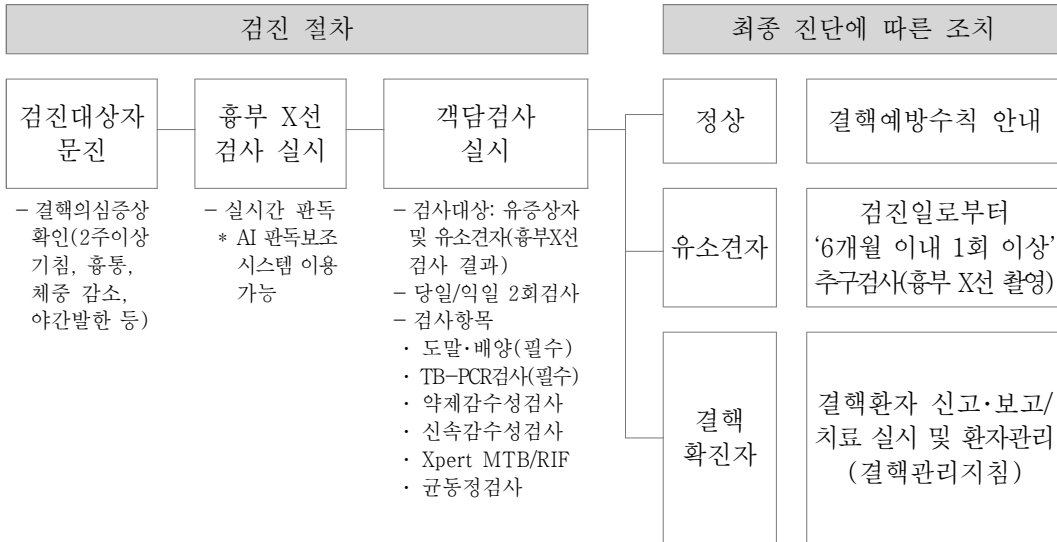
노숙인 등(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거주자)

#### 다. 검진 지역 : 전국

#### 라. 검진위탁기관 : 대한결핵협회(☎ 02-2085-0061)

\* 지정 사유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력 등 특이사항을 고려할 때 공모가 적절치 않은 경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모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결핵 민간경상보조사업지침)

### 마. 검진 프로토콜



### 바. 대상별 검진 방법

구분	검진 방법
거리노숙인* (약 2천명)	- (거점형 검진) 지방자치단체별 現 검진 체계 유지 ※ 이동검진차량 활용 - 실시간 원격 판독 - 결핵유소견자 및 결핵유증상자 대상 객담 채담 및 수거
시설노숙인* (약 9천명)	- 거리노숙인 검진방법 동일
쪽방거주자 (약 6천명)	- (방문형 검진) 세대별 직접 방문 ※ 휴대형 엑스선 장비 활용 - 실시간 원격 판독 - 결핵유소견자 및 결핵유증상자 대상 객담 채담 및 수거

\* 기존 협회-지자체간 거리 및 시설 노숙인 결핵검진 체계 및 인프라 활용



## 사. 검진 방법

- 1) (지역 선정) 시·도 및 시·군·구에서 노숙인 인구 밀집 지역, 쪽방촌 등 우선으로 검진 지역 선정
- 2) (검진 계획 수립)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노숙인 결핵 검진 계획 수립·시행
  - 검진을 향상을 위해 노숙인 시설·쪽방촌 및 노숙인 대상 무료의료진료 사업 등 지자체 복지프로그램 등과 연계 시행 권고
- 3) (노숙인 시설 대상 검진 수요조사 및 검진 일정 수립) 시·군·구에서 노숙인 시설 대상 검진 수요조사 후 검진 일정 수립하여 대한결핵협회에 전달
- 4) (검진 당일 사전문진표 및 동의서 작성) 대한결핵협회에서 검진대상자에게 사전문진표 (인적사항 및 건강정보 등) 및 검진 동의서 작성 및 취합
- 5) (검진 실시) 대한결핵협회에서 찾아가는 결핵 검진(흉부 X선 검사 등) 실시
  - 흉부 X선 검사 및 실시간 영상판독
    - 가) (거점형 결핵검진) 거동가능자를 대상으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흉부 X선 검사 실시
    - 나) (방문형 결핵검진) 거동불가능자 및 거점형 결핵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흉부 X선 검사 장비를 이용한 찾아가는 방문형 결핵검진 실시
  - (객담검사\*) 유증상자\*\* 및 흉부 X선 판독 결과 결핵 유소건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객담 수거
    - 자가 객담 배출을 권장하고 필요시 유도 객담 시행(자가 채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채담방법 안내)
      - \* 검사항목 :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한 객담 도말·배양·TB-PCR·약제 감수성·신속 감수성·Xpert MTB/RIF 및 균 동정 검사
      - \*\* 유증상자 :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있음이 문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
      - \*\*\* 유소건자 : 흉부 X선 판독 결과, 결핵 의심 소견 또는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
      - ※ (보건의료 수행) 채담이 어려운 경우 CT 촬영(비용 미지원) 권고 및 향후 재검을 통한 유증상자 및 유소건자 추구관찰



- 1개월 내 객담 검사, 흉부 CT검사 등의 추가검사를 실시하여 활동성 결핵여부 확인
- 추가검사(객담 및 흉부 CT검사)가 어려운 경우 흉부 X선 재검 및 비교 판독
- 검사 결과 결핵환자 확진 시 즉시 신고 및 결핵 치료

6) 최종 진단에 따른 조치

- 정상 소견 조치 : 결핵예방수칙 안내, 검진일로부터 6개월마다 1회 이상 결핵검진 권고 및 독려
  - \*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의 경우, 영양수준과 건강수준이 낮고 다른 질병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높고, 결핵균 검사 결과 음성에서 양성으로 되는 경우가 일반에 비해 상당히 높아 6개월마다 1회 이상 결핵검진을 권고함(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 유소견자\* 조치 : 노숙인 유소견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구검사(흉부 X선 검사) 실시하도록 추구 관리 및 결핵예방수칙 안내[Ⅲ-제10절 2. 노숙인 등 유소견자 관리] 참조
  - \* 해당 유소견자는 '3) 검진 실시 절차'에 따라 유증상자 또는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인자 중 객담검사 실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자
- 결핵확진자 조치 :결핵환자 신고·보고, 치료 실시 및 환자관리[Ⅲ-제10절 3. 노숙인 등 결핵환자 관리] 참조

7) (검진사업 평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 민간경상보조사업 중간 및 최종평가 실시

아. 노숙인 대상 결핵 예방 홍보(시·도 및 시·군·구)

- 1) (홍보 방향) 노숙인(거리·시설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등) 대상으로 결핵 관련 증상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등)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무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독려 홍보
- 2) (계획 수립) 연간 결핵 예방 홍보계획 수립 시 노숙인 대상 홍보계획 수립 포함 [IX. 결핵예방 홍보] 참조
- 3) (홍보 방법) 노숙인 대상 효과적인 접점 채널을 이용하여 현장 중심의 홍보 시행
  - 노숙인 시설 및 쉼터, 쪽방촌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결핵예방 홍보·교육
  - 노숙인 대상 무료 의료진료소 등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핵바로알기 홍보·교육 및 결핵 검사 독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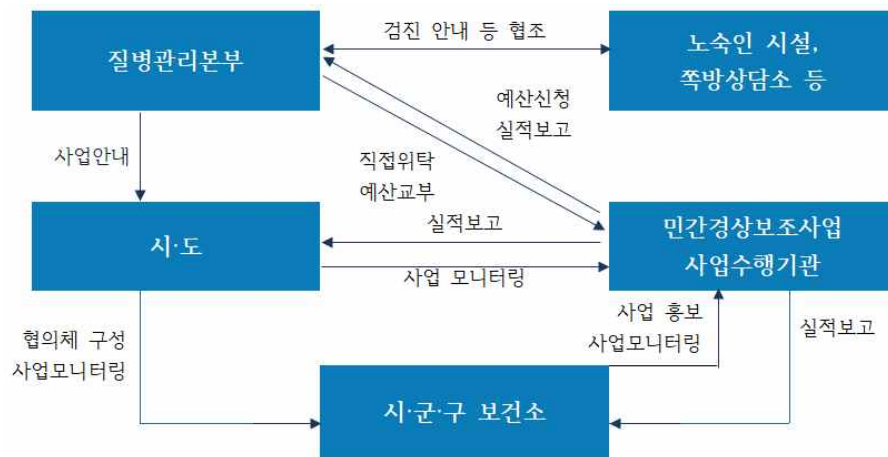


- 「결핵예방의 날(3.24)」 및 결핵예방주간 전·후로 노숙인 대상 결핵 검사 독려 등 집중 홍보

4) (홍보 메시지) 결핵예방 메시지 (참고 안)

- 결핵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 기침과 가래가 지속되면 결핵검사 받으세요.
- 기침할 땐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 결핵은 매년 약 2.6만명의 환자 발생, 약 1.8천명이 사망하는 질병입니다.

자. 사업수행 체계



차.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본부

- 검진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설명회 개최
- 검진 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사업수행기관 계약(결핵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정사업)
- 사업수행기관 사업운영(예산관리·점검·평가 등) 감독 및 관리
- 지자체 및 사업 유관단체 협조 요청 등

## 2) 시·도

- 세부사업 계획 수립
-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구성원 : 시도, 보건소장, 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사,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감염병관리지원단,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결핵병원,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 관련 민간단체(다시서기센터, 쪽방상담소 등) [ I-제2절 국가결핵관리사업 참조]
-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및 보건소 협조 요청
- 노숙인 대상 결핵 예방 홍보 등

## 3) 시·군·구(검진 관할 보건소)

- 세부사업 계획 수립
- 노숙인 시설 검진 수요조사 및 검진 일정 수립
- 검진 결과 관리(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유소견자(정상 포함) 조치 및 결핵환자 치료 관리
- 노숙인 대상 결핵 예방 홍보 등

## 4) 검진위탁기관(대한결핵협회)

- 검진 일정 수립 협의
- 검진대상 사전문진표 및 검진동의서 작성 및 취합
- 검진 실시 및 결과 시스템 입력(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검진 실적 보고 및 검진 사업 결과 분석
- 노숙인 대상 결핵 예방 홍보 등

## 5) 노숙인 시설 및 쪽방상담소

- 검진 일정 수립 협조
- 검진대상 파악을 위한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현황 공유 및 사업 안내
- 검진당일 결핵검진 이동차량 주차 장소 제공 및 검진 진행을 위한 협조
- 신규입소자 발생 통보 등



## &lt; 노숙인 등 시설 현황 &gt;

- 노숙인 이용시설 : 32개소(노숙인급식시설 4개소, 노숙인일시보호시설 8개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0개소, 쪽방상당소 10개소)
- 노숙인 생활시설 : 116개소(노숙인자활시설 59개소, 노숙인재활시설 34개소, 노숙인요양시설 23개소)
- ※ 자료원 :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카. 행정 사항

- 1) (예산) 사업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수행기관(대한결핵협회)으로 국비 직접 교부
- 2) (참고) '20년 결핵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별도 안내)

## &lt; 「2020년 전국 노숙인등 결핵검진 사업」 개요 &gt;

- 사업수행기관 : (사)대한결핵협회
- 검진 지역 : 전국
- 사업예산 : 총 551백만원(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사업 대상 : 약 18,000명
  - \* 노숙인 11,340명(거리노숙인 2,015명, 시설노숙인 9,325명), 쪽방거주자 6,192명
  - \* 자료원 :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16.10.20. 기준)

- 3) (참고) 노숙인 입소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장은 노숙인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함. 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 관련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2. 노숙인 등 유소견자 관리

### 가. 유소견자 조치

- 노숙인 대상 결핵 검진 결과, 유소견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이상 추구검사 (흉부 X선 검사) 권고
  - \* 해당 유소견자는 유증상자 또는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인자 중 객담검사 실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자
- 결핵예방수칙에 대해 설명하며 결핵 증상(2주 이상 기침, 가래 등) 발생 시 즉시 보건소 내원할 것을 안내[IX. 결핵예방 홍보] 참조
  - \* 참고 : <http://www.tbzero.cdc.go.kr>>홍보센터>결핵&기침예절 자료>결핵예방 홍보·교육 자료

### 나. 기관별 역할

- 1) 질병관리본부
  - 유소견자 관리 모니터링
  - 지자체 및 사업 유관단체 협조 요청 등
- 2) 시·도
  - 유소견자 관리 모니터링
  -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및 보건소 협조 요청 등
- 3) 시·군·구(검진 관할 보건소)
  - 유소견자 대상 추구검사 안내 및 실시
  - 유소견자 추구검사 결과 관리(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유소견자 대상 결핵예방교육 실시
- 4) 검진위탁기관(대한결핵협회)
  - 유소견자 발견 시 보건소·노숙인시설 통보
- 5) 노숙인 시설 및 쪽방상담소
  - 유소견자 대상 추구검사 안내 협조



### 3. 노숙인 등 결핵환자 관리

#### 가. 전염성 환자 대상 병원 연계

- 1) (시·도)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를 통한 환자 병원 연계 체계 마련
- 2) (대한결핵협회) 결핵 검진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전염성 환자 별도 표시)
- 3) (시·군·구) 응급차량을 이용한 전염성 결핵환자 이송 및 병원 연계

#### 나. 결핵환자 신고·보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사환자 발견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 신고[Ⅱ-제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참조]

#### 다. 치료 관리

-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의료급여를 통해 무상 치료 실시
- 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신속한 치료를 위해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내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또는 행려자 의료비지원 사업 등을 통해 치료 우선 실시 (지자체 사업담당자 연계)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절차 참고 : 긴급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행려환자 의료비지원 절차 참고 :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문의 : 국립중앙의료원 결핵안심벨트사무실 (☎ 02-2276-2370)

#### 가)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 거리·시설 노숙인 경우 : 검진관할보건소에서 의료급여 수급 절차 안내를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 안내
- 쪽방거주자인 경우 : 쪽방상담소에서 의료급여 수급 절차 안내를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 안내

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 거리·시설 노숙인 경우 : 검진관할보건소에서 주민등록번호 회복 및 의료급여 수급 절차 안내를 위해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 안내
- 쪽방거주자인 경우 : 쪽방상담소에서 환자에게 주민등록번호 회복\* 및 의료급여 수급 절차 안내를 위해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 안내
  - \*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쪽방주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나 미등록된 쪽방주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음
  - ※ 의료급여 신청 절차 참고 :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3) 전반적인 환자 관리 방법

가) (전염성 결핵환자 격리 조치 및 복약관리) 보건소에서 전염성 결핵환자 중 직장이 있는 자 또는 학생을 확인하여 격리 조치 및 복약관리 실시[Ⅲ-제2절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참조]

\* 필요 시 원격 화상복약관리 실시(대한결핵협회)

나) (비순응 환자 조치) 보건소에서 균 양성으로 판정된 호흡기 결핵환자 중 수약 불협조자·불규칙한 투약자·치료중단 환자 등 대상으로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 환자관리 실시[Ⅲ-제3절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참조]

다) (입원명령대상 환자 조치) 보건소에서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치료 비순응 환자 등 대상으로 입원명령 실시[Ⅲ-제4절 입원명령 참조]

라. 주거 지원

1) 노숙인 대상 지자체 주거 지원 사업 연계

\* 긴급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사업안내(국토교통부) 등

2) 임시 주거비 지원 : 주거 연계를 하지 못한 노숙인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에서 사업비를 활용하여 주거비 지원(2개월\*)

\* 주민등록번호 회복 후(약 2개월 소요)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3) 결핵요양시설(미소꿈터(서울), 대구요양원(대구) 등) 연계

< 결핵요양시설 안내 >

가. 미소꿈터

- (입소대상)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노숙인 등 취약계층 중 병원 입원 치료 후 복약을 요하는 결핵환자, 결핵(의심)감염인
- (기관위치)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7-1 미소꿈터
- (문의처) ☎ 02-3272-7975, 0975

나. 대구요양원

- (입소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14세 이상 결핵환자, (2) 결핵으로 요양 및 투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 (3) 재발위험으로 지속적인 투약과 치료, 요양이 필요한 환자, (4) 거동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식당, 화장실, 세면/목욕실 이동 및 이용이 가능한 자)
- (기관위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453 대구요양원
- (문의처) ☎ 053-616-3110, 3111

마.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본부

- 결핵환자 치료관리 모니터링
- 지자체 및 사업 유관단체 협조 요청 등

2) 시·도

- 전염성 결핵환자 병원 연계 체계 마련
- 결핵환자 치료관리 모니터링
-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및 보건소 협조 요청 등

3) 시·군·구(검진 관할 보건소)

- 전염성 결핵환자 이송 및 PPM 의료기관 등 연계
- 결핵환자 발견 시 치료 및 관리(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노숙인 환자 주거 지원 연계
  -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협조 요청 등
- 4) 검진위탁기관(대한결핵협회)
-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노숙인시설 통보
  - 노숙인 환자 주거비 지원, 원격 화상복약관리 등
- 5) 노숙인 시설 및 쪽방상담소
- 결핵환자 격리조치·복약관리 협조 등

## 제 11

##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자원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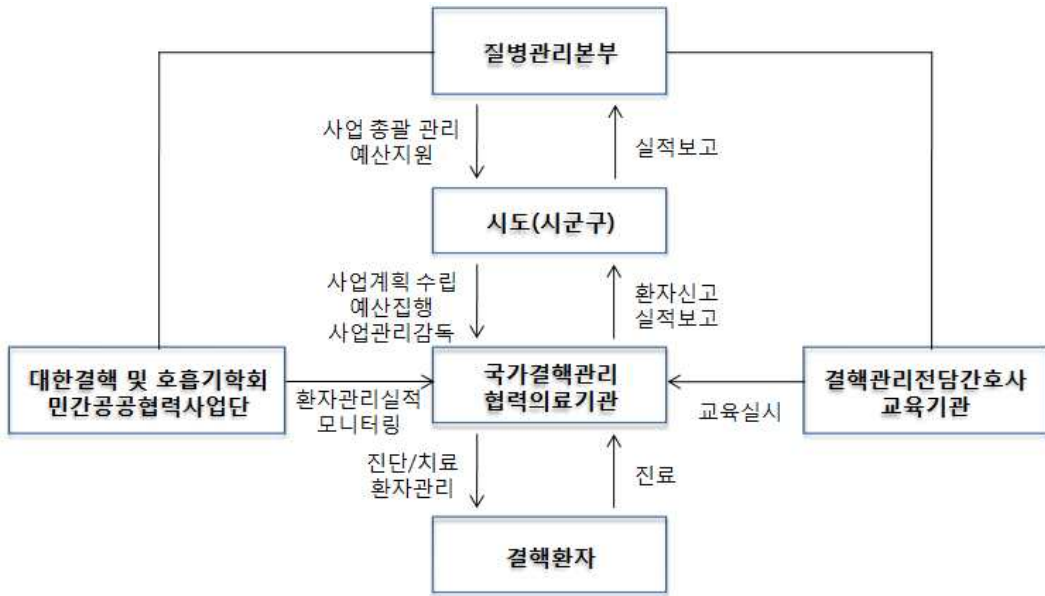
과거 대부분의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되었으나,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점차 많은 결핵환자들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어 현재 우리나라 결핵환자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에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환자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환자 상담 및 복약 확인 등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절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사업 수행 체계 및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결핵환자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 1. 개요

## 가. 사업 목적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치료·관리 질을 높임으로써, 치료 성공률 향상, 다제내성환자 발생 감소, 결핵 사망 감소

## 나. 사업 수행체계



- ※ 결핵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철저한 환자관리 지원
- ※ 지역 여건에 맞는 결핵관리 정책 수립 및 운영을 위해 권역별 민간의료기관과 지방정부의 협력 채널(민간공공협의회) 구축·운영

## 2. 사업 내용

### 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지원

#### 1) 역할

※ PPM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결핵관리사업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고, 병원 일반 업무 수행 금지

- 결핵환자 복약상담 및 관리, 부작용 관리(Ⅲ-제1절. 환자상담 및 교육, 제2절.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참조)
- ※ 환자 내원 시 건강지킴이수첩(환자 관리 수첩)을 활용하여 상담, 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복약확인 등



- 결핵환자등 사례조사 실시(Ⅱ-제2절. 사례조사 참조)
  - 환자 가족 및 동거인을 파악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시행(Ⅳ-제1절. 가족접촉자조사 참조)
  - 잠복결핵감염자 복약 및 부작용 관리(Ⅵ.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참조)
  - 결핵환자 비순응 환자 파악 및 관할 보건소와 협조하여 치료 유도(Ⅲ-제3절.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참조)
  - 입원명령 환자 관리(Ⅲ-제4절. 입원명령, 제5절. 격리치료명령 참조)
  - 다제내성 결핵환자 대상 추서관리 철저(Ⅲ-제7절.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참조)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추서관리 필수 입력

< 환자관리 방법 및 절차(예시) >

과정	내용	방법
관할보건소 연락체계	• 사업관리체계 숙지	•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침 참고 • 공문 수신 및 관리
환자등록	• 결핵환자 진료부서 확인 (의사, 외래/병실 간호사, 감염관리실 담당자 등과 협의) • 매일 오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활용하여 신규환자를 신고(의료기관 내 신고누락된 환자 파악)	• 의료기관내 환자관리시스템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환자연계	• 결핵환자 진료 시 각 부서에서는 결핵 관리전담간호사가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안내	• 진료부서의 의사 또는 외래/병실 간호사가 상담을 연계
환자관리	• 환자에게 결핵치료 등에 필요한 보건 교육(교육자료 제공) • 환자관리 일정 안내 • 투약 및 건강관리 실천 정도 파악 • 사례조사 실시 • 전염성환자 복약확인 실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관리 사항 입력	• 국가결핵관리지침 참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환자관리” 사항 입력
환자 퇴록	• 치료 완결 후 치료결과 입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환자신고 내역”

## 나. 「민간·공공협력(PPM) 의료기관 권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1) 역할

- 민간·공공협력(PPM) 의료기관의 기관/권역별 핵심지표 분석 및 미 도달 지표 개선 방안 도출
- 기관별 사례분석(비순응, 중단, 사망, 실패 등) 수행 및 대책마련

### 2) 민간·공공협력(PPM) 의료기관 권역협의회 전국 조직

- 전국을 16개 대권역(21개 세부권역)으로 나누어 운영
  - ※ 서울(북동, 북서, 남동, 남서), 경기(남동, 남서, 북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관할 지역이 넓어 각각 4개, 3개 세부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

### 3) 구성

- 권역 책임의사, 권역 부책임의사, 권역 책임간호사, 의료기관 책임의사,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 4) 운영

- 분기당 1회 개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권역별로 결정

## 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표 분석회의」 실시

### 1) 개요

-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non-PPM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핵환자 치료 과정과 결핵의 질 관리를 실시

### 2) 대상

- 공공: 시도 보건과장, 시도 담당자, 관할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 담당자
- 민간: 권역 책임의사, 권역 책임간호사, 분석대상 의료기관 의사, 분석대상 의료기관 간호사



3) 운영

- 년 1회에 한하여 시군구의 모든 보건소(256개소) 회의 개최
  - ※ 1개소 이상 보건소가 협력하여 개최 가능
- 해당 지역 보건소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인정(결핵관리지표 반영)
  - ※ 결과보고서, 참석자 방명록 필수 제출

4) 기관별(담당자) 역할

담당	역할
시·도 (결핵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표 분석회의 일정조율 (연간 스케줄 조정)</li> <li>•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표 분석회의 개최 실적 관리</li> <li>•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표 분석회의 개최 실적 질병관리본부 제출</li> </ul>
보건소 (결핵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 내 non-PPM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표 추출</li> <li>• 코호트 분석 대상 non-PPM 의료기관장에게 공문 발송</li> <li>• 코호트 분석회의 참여 대상 의료기관에 회의 참석 공문 발송</li> <li>• 회의실 준비 및 회의 참석 대상자들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조치</li> </ul>
PPM 의료기관 (권역 책임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코호트 분석 대상 의료기관 선정 및 회의 일정 제안</li> <li>• 지자체 코호트 분석회의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한 교육</li> <li>• 코호트 분석회의 진행(개별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지표 분석과 개선 방안 도출)</li> </ul>
PPM 의료기관 (권역 책임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호트 분석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 보조 (방명록 작성 등)</li> <li>• 코호트 분석회의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중앙위원회 제출</li> </ul>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표 분석회의 개최 실적 지자체 환류</li> <li>• 공공과 민간의 의사소통 창구</li> </ul>
PPM 사업단 (중앙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지자체 코호트 분석회의 진행 상황 모니터 및 지원</li> <li>• 코호트 분석회의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문제점 개선</li> </ul>

### 3.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 환자관리 모니터링

#### 가. 수시 모니터링

- 1) 주체 : 질병관리본부, 시·군·구(시·도)
- 2)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환자 관리 내용을 수시로 확인 및 분석, 방문확인 등
  - ※ 의료기관은 시·군·구(시·도), 질병관리본부의 수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 나. 지표 모니터링

- 1) 주체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단)
- 2) 방법 : 22개 결과 지표, 16개 행동 지표 결과를 산출하여 개별 병원에 환류
  - (22개 결과 지표) 질병관리본부 통계 담당자가 분기별로 분석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환류
    - (환자 조기 발견) 가족접촉자조사 후 결핵의심 및 환자비율, 사례조사 실시율, 사례조사 기간준수율
    - (환자 적정관리) 도말양성 환자의 치료성공률, 치료중단율, 치료실패율, 초치료 지침준수율
    - (결핵검사) 객담도말검사 시행률, 객담도말검사 양성률, 객담배양검사 시행률, 객담배양검사 양성률, 전체 약제감수성검사 시행률, 전통방식 약제감수성검사 시행률
    - (가족접촉자 조사) 가족 접촉자 검진율, 잠복결핵감염률,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률, 결핵의심자 객담도말검사 시행률, 결핵의심자 객담도말 양성률, 결핵의심자 객담배양검사 시행률, 결핵의심자 객담배양 양성률, 가족접촉자검진의 최종진단, 평균가족수
  - (16개 사업수행지표) 결핵환자 검사 및 치료 행태 개선을 위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필요한 지표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
    - (신고환자 현황) 신고환자수, 환자구분(신환자, 재치료자 등)별 환자수, 성별 환자수, 평균연령
    - (검사시행 현황) 도말검사 미시행자수, 배양검사 미시행자수, 약제감수성검사 미시행자수, 전통방식 약제감수성검사 미시행자수, 신속약제감수성검사 미시행자수, 흉부 X선 검사 미시행자수



- (지침 준수 현황) 사례조사 미시행자수, 표준진료지침 미준수자수
- (퇴록 현황) 퇴록결과(완치, 완료 등)별 환자수
- (가족접촉자 조사 현황) 가족접촉자 조사 미시행자수 등

## 4.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 가. 인력 구성 및 역할

#### 1) 책임사업자(책임교수)

- 사업 운영 및 관리 총괄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관리

#### 2) 결핵관리전담간호사

- 결핵환자 관리
-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조사 및 관리
- 입원·격리치료명령 지원사업 관련 제반 업무
- 국가결핵관리사업 관련 행정 업무 지원

### 나.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자격기준 및 관리

#### 1) 자격 기준

-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임상경력 또는 지역사회 보건사업 2년 이상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
  - 상기의 조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간호사
    - ※ 사업기관 소속 간호사로 기존 정규직 및 계약직 간호사 가능

#### 2)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된 인력은 사업 기관 소속으로 사업기관이 인사권 행사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4대 보험 가입 필수
    - ※ 사립학교의 경우, 국민연금을 사학연금으로 대체 가능



- 자격조건을 갖춘 간호사 채용
- 인력 교체 시에는 '<서식 33> 사업 수행인력 변경사항 보고'를 활용하여 시·군·구(시·도)에 통보

### 3) 근무 규정

-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제50조) 준수
- 휴가는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제60조) 준수
  - 휴가는 가급적 담당주치의의 진료일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산전·후 휴가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군·구(시·도)에 보고
- 책임사업자는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하여 중단 없이 사업 운영
- 대체인력의 근무규정은 기존 인력과 동일하게 적용
  - ※ 병원 내 간호사가 겸임으로 일시적 투입되는 경우 업무대행수당(20만원/월) 지급 가능
-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관련 환자관리 업무 수행
  - ※ 결핵환자관리에 주력하고 병원 일반 업무 등의 수행을 금지

### 4) 교육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기본교육을 수료(60점 이상시 수료증 발급)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심화교육 매년 필수 참석
  -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기본 및 심화교육 반드시 이수
- 당해연도 중간에 입사하여 기본교육 미이수 시 수시교육을 통해 기본교육 학습 후 다음연도에 기본교육 반드시 수료
  -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교육 수행기관 (대한결핵협회 중앙교육원 ☎ 02-6929-3281)

## 다. 상담실 설치 및 운영

### 1) 상담실 설치의 기본 조건

- 채광, 통풍 등 환기가 잘되는 공간(환풍기, 창문 등 구비)
- 타인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환자의 비밀보장이 가능한 공간
  - ※ 상담실의 출입문 개폐 시 내담자의 노출이 우려될 때는 파티션 설치



- 환자 및 환자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 ※ 기본적인 상담실 시설 : 컴퓨터, 이동전화기, 상담테이블, 복합기(팩스, 프린터 등),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 보관함, 파티션(필요시)

2) 전염성 결핵환자 면담 시 주의사항

- 의료진은 면담 시 N95 마스크 착용
- 환자는 일반 마스크(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장

## 5. 행정사항

### 가. 질병관리본부(결핵조사과)

- 사업비 교부 및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력배치
- 매년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 대한 현원 파악

### 나. 시·도(보건담당과)

- 매년 말 당해 연도 사업 실적 및 다음해 사업 계획을 시군구에 요청, 이를 취합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 매년 말 당해 연도 사업 실적 및 다음해 사업 계획을 시군구에 요청, 이를 취합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 다. 시·군·구(보건소)

-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 민간·공공협력(PPM)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지도 감독
  - ※ 시·군·구(보건소)는 상하반기 2회 실시 후 시도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에 결과 보고

### 라. 민간·공공협력(PPM)사업 의료기관

-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 사업기관은 차기년도 '<서식 34> 사업계획서'를 사업 개시 이전 년도 12월 15일까지 해당 시·군·구(시·도)에 제출
- 사업기관은 '<서식 35> 최종보고서'를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시·도)에 제출
- 사업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서류(영수증 등) 일체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시·군·구(시·도),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 제출요구 시 제출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
    - 계산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시·군·구(보건소) 현장점검 시 원활한 지도 점검을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수행
- 정보보호
  - 사업기관 및 시·군·구(시·도)는 책임사업자 및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 누설 금지(「의료법」 제19조, 「결핵예방법」 제29조)와 관련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지된 내용을 확인 한 후 '<서식 36> 사업수행인력 보안서약서' 제출

## 6. 예산 기준

### 가. 예산의 집행 및 정산

#### 1) 예산 집행의 원칙

- 예산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군·구 보건소장이 지도·감독해야 함
  - ※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따름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 인건비, 회의수당 등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그 외 예산의 집행은 기관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카드의 사용을 자제함

## 2) 사업(예산)계획 변경

- 사업기관은 사업(예산)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에 ‘<서식 39>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집행
  - ※ 단, 변경 사항이 미미한 경우 지자체 판단하에 시·군·구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기관의 변경 통보’로 갈음 가능

## 3)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인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조금 교부기관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미충족한 경우
    - ※ 허위의 신청, 보조금 타용도 사용 확인 시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결정의 취소뿐만 아니라 교부금에 대한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4) 예산의 교부신청

- 사업기관은 시·군·구(시·도)부터 통보받은 교부계획에 따라 ‘<서식 37> 교부신청서’ 예산교부서류를 작성·제출
  - 예산교부서류
    - 교부신청공문
    - ○○○○년 ○반기 국민건강기금 ○○○○비(사업명) 교부신청서
    - 입금용 통장사본(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포함)
    - 사업자등록증
      - ※ ○○○○년 자금 소요계획서, 입금용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교부 시에만 제출
- 시·군·구(시·도)는 교부금 신청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교부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교부액을 교부

## 5) 예산의 정산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전문 정산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받은 후 ‘<서식 38> 정산보고서’를 시·군·구(시·도)에 제출
- 사업기관은 사업종료일까지 사업비의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고, 정산기간 내 국민건강증진 기금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전액(사용 잔액+이자)을 불용 처리하여 반납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환수 조치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나. 자료보관 및 관리

### 1) 자료보관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증빙서류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
  - ※ 시·군·구(보건소)에서 상하반기 현장점검 시 관련서류 요청할 경우 응해야함

### 2) 영수증 관리

-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되, 가급적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은 받지 않도록 함
- 법인카드 결제 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부서를 명기하고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함

### 3) 증빙서류

- 사업기관은 모든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
  - ※ 예시: 해당 공문(회의 및 행사 개최, 출장 공문 등), 계획서, 보고서, 방명록, 교통비 영수증 등

## 다. 예산 항목별 편성·집행기준

### 1) 예산 항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 예산항목별사업비 집행기준은 소속 의료기관 규정을 따름
  - ※ 단, 의료기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록-제1절.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집행기준’ 참조



2) 예산 항목별 설명

비목명	세목명	내역
인건비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등</li> </ul>
	일용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li> </ul>
운영비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용품 구입비</li> <li>• 인쇄비 및 유인비</li> <li>•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li> <li>• 소모성 물품 구입비</li> <li>• 비품수선비</li> <li>•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li> <li>• 광고료 및 광고료</li> <li>•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li> <li>•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li> </ul>
	공공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요금, 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li> <li>• 전기, 가스, 상·하수도, 폐기물 수거(실험실에 한함) 비용</li> <li>• 법령에 의해 지불 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li> <li>•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li> </ul>
	피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제복비</li> </ul>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행사 등 사업추진시 소요되는 장소 및 장비 대여비</li> </ul>
	시설장비 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li> </ul>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 상 필요하거나 결핵 검진에 지원되는 시약초자 및 소모품 등 구입비</li> </ul>
	복리후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li> </ul>
여비	국내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과 관련된 국내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li> </ul>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교육, 워크숍 등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식비, 다과 및 소모품 등 비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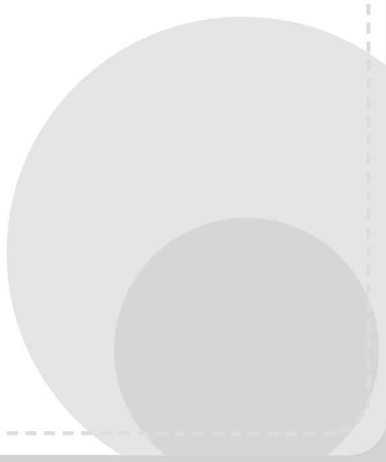


# IV

## 결핵 역학조사

제1절 가족접촉자조사 / 148

제2절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 168



## 제 1 절

## 가족접촉자조사

## 일러두기

결핵은 기침, 대화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 및 동거인에게 결핵균을 전파하기 쉽다. 가족접촉자의 결핵 발병 위험은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약 17배 높기 때문에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절은 ‘가족 접촉자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 1. 개요

## 가. 조사 목적

- 결핵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추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 추가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 방지
  -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통한 결핵 발병 예방

## 나. 조사 담당 : 지표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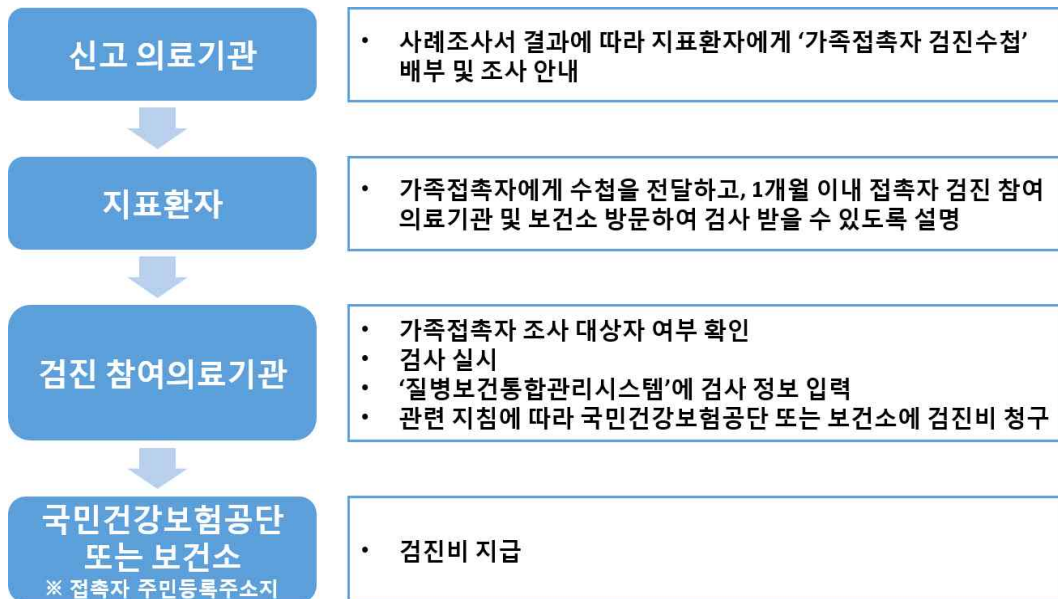


## 2. 조사 절차 및 방법

### 가. 조사 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호흡기 결핵 환자 질병코드 : A15.00~A16.91, A19.0~A19.9
- 만 8세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경우 초회 감염 결핵일 가능성이 높아 가족 중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해 접촉자조사 시행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접촉자는 제외
- 사례조사 제외 대상도 가족접촉자가 있는 경우 포함 가능
- 가족접촉자조사 대상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독거' 입력

### 나. 조사 내용



< 가족접촉자조사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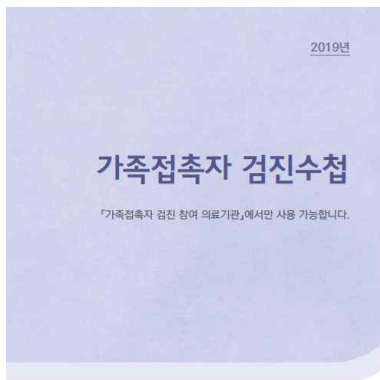


1) 사례 조사를 통해 호흡기 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가족접촉자검진관리’ 접촉자 등록 및 정보 입력
  - 지표환자 선택 후 사례조사서에 입력된 가족 및 동거인 등록
    - ※ 향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관계 확인하는 체계 마련 예정
  - 가족접촉자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나이, 주소, 의료보장종별, 연락처, 증상 유무, 과거력, 고위험군 여부, BCG 접종 여부 및 형태, 잠복결핵감염 검사법 등) 입력
    - ※ ‘가족접촉자검진관리’에서 가족접촉자 이름을 수정할 경우 ‘사례조사서’도 함께 수정
    - ※ 외국인 접촉자는 반드시 건강보험가입 시 동일한 한글 이름으로 등록해야 연계가능
- 접촉자 등록 완료 후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게 기입
  - 단, 사망, 중복입력, 해외체류, 중증질환자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관리보건소에서 ‘<서식 100> 가족접촉자 명단 변경 요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2) 가족접촉자 대상 검진수첩(무료 쿠폰) 배부 및 조사 안내

- 접촉자검진 참여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의료기관에서,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보건소에서 검진수첩 배부
- 보건소에서 신고된 결핵환자의 접촉자에 대해서도 검진수첩 배부
  - ※ 검진수첩은 배포 시 수첩 일련번호 기재하지 않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시 자동번호 부여 후 입력



05
접촉자 관련 정보

▶ 기본 정보(본인이 직접 작성)

결핵환자 성명		결핵환자 주민등록번호	-
접촉자 성명		접촉자 주민등록번호	-
접촉자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접촉자 나이	만 세
접촉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신생아(*작성)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input type="checkbox"/> 면역저하자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불명	결핵환자와 관계	<input type="checkbox"/> 조부 <input type="checkbox"/> 조모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손자·손녀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신도성명		*신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지	실가주지	
의료 보장종별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자상위 <input type="checkbox"/> 포괄 및 선도골 적용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종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2종 <input type="checkbox"/> 유양병원 입원자 <input type="checkbox"/> 보훈	
연락처	Tel: H.P:	SMS수신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이 장서는 결핵예방법 제43조(결핵환자등 발생시 조처, 제19조(연방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구하의 정보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주민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59조(연방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민정보 제공 요청 등에 근거)에 수집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관리사업 및 통계작성에 활용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가족접촉자 검진수첩 >

### 3) 검사 및 결과 관리

#### 가) 결핵 검사

- 흉부 X선 검사 : 접촉자 초회 및 추구 검사 시행
  - 활동성 결핵 배제하기 위한 흉부 X선 실시
    - ※ 임신부가 흉부X선 거부할 경우 흉부X선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잠복결핵감염 검사 가능
-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PCR) :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 의심 또는 비활동성 결핵이거나, 기침 등 임상적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
  - ※ 객담검사는 최대 3회, 결핵균핵산증폭검사는 1회 시행

#### 나)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검사 방법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 5세 미만은 TST 검사
    - 5-18세는 TST 검사 권장
      - ※ 면역결핍이 있는 소아청소년에서 LTBI 진단을 위한 첫 검사는 TST로 시행하고, 이 경우 TST 결과 음성일 경우 IGRA 추가 실시 가능
      - ※ 아래의 TST 제외대상자는 IGRA로 대체 가능
    - 1) 주사부위가 TST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화상, 피부감염 등)
    - 2) TST가 피부를 심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간 질환자, 전신성홍반루푸스, 백혈병, 심한 아토피, 켈로이드 피부, 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
    - 3) BCG를 1세 이후에 접종하였거나, 2회 이상 접종 받은 경우
  - 19세 이상은 TST와 IGRA 단독, TST/IGRA 병합 검사 사용 가능
    - ※ 면역저하자는 IGRA 단독 혹은 두 검사 병합법 사용, 두 검사 병합법 사용 시 하나라도 양성이면 감염 판정
- 기타사항
  - 과거 '활동성 결핵' 혹은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 받았거나, 치료한(또는 치료 중) 경우 잠복결핵감염 검사 미실시
  - BCG를 1세 이후 접종 받았거나, 2회 이상 접종 받은 경우 IGRA 검사 실시

#### 다) 검사 결과 등록 및 관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촉자의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 등 결과 등록



- 검사 결과 등록 후 최종 결과(정상, 활동성결핵, 잠복결핵감염, 타질환) 반드시 입력
  - 최종 결과 입력 후에는 흉부 X선 추구 검사만 등록 가능
  - 최종 결과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는 검사 결과 수정 및 삭제 가능
-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관리
  - 잠복결핵감염자의 과거력, 치료 여부, 치료 방법 등을 확인하여 치료 동의자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잠복결핵감염 치료정보(치료법, 치료 시작일, 치료 완료 여부, 치료 완료일 등) 입력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잠복결핵감염통합관리 > 사업구분 '가족접촉자' 선택 > 검진자 선택 후 치료 시 시행하는 일반혈액검사(CBC), 간기능검사(AST/ALT/빌리루빈), 신장 기능 검사(BUN, Creatinine) 등 결과 시스템에 입력

#### 라) 잠복결핵감염 검사 확인서 및 결과서 발급 가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잠복결핵감염 통합관리에서 출력
  - ※ 보건소에서 검사한 경우만 출력 가능, 병원에서 검사한 경우는 병원에서 발급

## 3. 기관별 역할

### 가. 신고 기관

#### 1) 가족접촉자조사 대상자 입력

- 결핵환자 사례조사 후 가족접촉자조사 대상이 있을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대상자 정보 입력
  - \* 만5세(60개월) 미만 소아 결핵환자의 경우 근원환자 조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배양양성 균주를 요청 시 적극 협조

#### 2) 가족접촉자 검진 수첩 배부

-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결핵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참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신고된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수첩 배부
- 수첩 배부 시 1개월 이내에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조회>

결핵 ZERO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 → 결핵정책 → 의료기관에서 검색

## 나. 검진 참여의료기관

### 1) 가족접촉자 대상 검진 실시

- 가족접촉자 방문 시 수첩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 확인하고, 무료 검진 수첩 미 소지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가족접촉자 검진관리’ 에서 대상자 확인 후 검진 실시
  - ※ 접촉자가 타의료기관에서 기 시행한 검진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사례조사서에 미등록된 접촉자인 경우 환자 관리보건소와 협의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가족접촉자 검진관리’ 창에서 등록(접촉자) 클릭하여 추가 등록 가능

### 2) 검진 및 치료 결과 입력

- PPM 의료기관에서 검진 한 경우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입력
- PPM 외 의료기관에서 검진 한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검사 수첩 및 증빙자료를 송부하고, 보건소 담당자가 접촉자 검진 및 치료 결과 입력

### 3) 가족접촉자 검진비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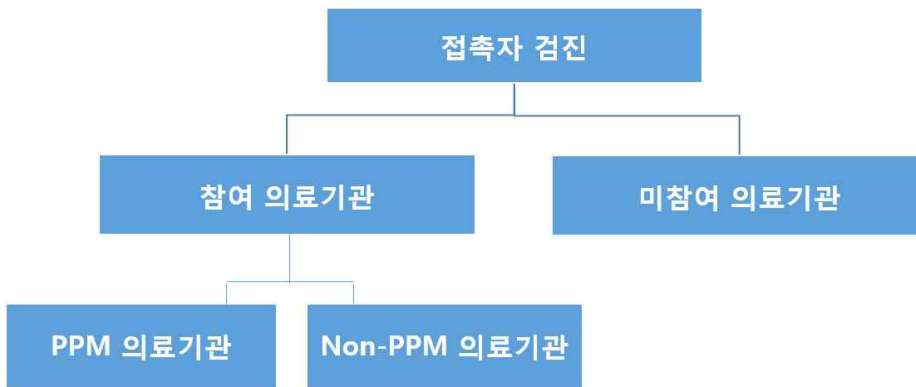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그 외 자격자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 요양급여 총액을 접촉자의 주소지 보건소에 검진비 청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검진비 조회’ 권한 신청하고, [검진비지급요청관리] 메뉴 이용
    - ※ 검진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진 시 비용 청구 불가능, 참여의료기관으로 등록 전 실시한 검진비를 소급하여 청구 불가능



다. 보건소

1)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관리 및 ‘가족접촉자조사’ 안내

- 관내 소재 의료기관 중 가족접촉자조사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면, ‘<서식 43>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받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시스템관리 > 기관관리 > 기관 선택 > 상세보기 > 접촉자검진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등록
-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의료기관에 ‘<서식 44> 가족접촉자조사 사업 안내문’ 배포
- 기 참여의료기관 중 폐업, 병원 사정 등으로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시스템관리 > 기관 선택 > 상세보기 > 접촉자검진사업 > 접촉자검진 사업목록 삭제 조치



< 의료기관 구분 >

- 2) ‘가족접촉자 무료 검진수첩’ 수요 파악, 관내 검진 참여의료기관에 수첩 배포·재고관리
- 3) 접촉자검진 참여 의료기관에 PPD(Purified Protein Derivative) 시약 배포·재고관리
- 4) 보건소 또는 검진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에게 무료 검진 수첩 배부
- 5) 가족접촉자가 PPM 의료기관 외 의료기관(Non-PPM)에서 검사한 경우 ‘접촉자 주소지 보건소’에서 접촉자 정보 및 검사 결과, 치료정보 등 시스템에 입력

- 6)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외 자격자 대상 검진비용 지급
- 7)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접촉자 검진 예탁금(위탁수수료 포함) 관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접촉자관리 > 검진비정산관리에서 해당 연도 공단 예탁금을 포함한 총 예산 금액을 입력하고, 월별 예탁금 및 보건소 예산에서의 지출 확인하여 검진비에 대한 예산, 잔액, 지출 관리 가능
- 8) 가족접촉자 검진 대상자 모니터링 및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독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가족접촉자관리 > 가족접촉자검진대상자관리 > 접촉자검진 실시여부 ‘미실시’에서 접촉자 검진 미실시자 명단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결핵 지표관리>소식지 관리에서 월별 가족접촉자 검진율, 가족접촉자 잠복결핵 치료시작률 및 치료완료율 확인
- 9) 만 5세(60개월) 미만 소아 결핵환자는 근원환자 조사를 위해 배양양성 균주를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
  - IV.결핵 역학조사-[표5]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절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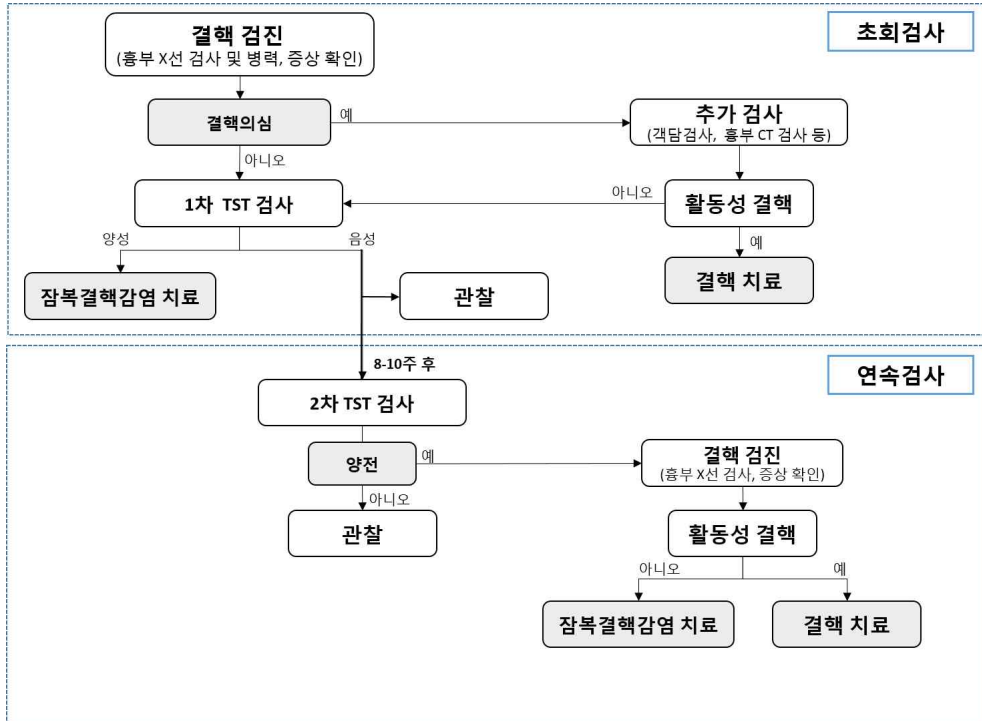


## 4.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

### 가. 잠복결핵감염 검사

#### 1) TST 검사법

- 활동성 결핵을 배제하기 위한 결핵검진(흉부 X선 검사 및 병력, 증상 확인) 실시
- 초회검사(1차 TST)에서 양성인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 초회검사(1차 TST)에서 음성인 경우, 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 기준으로 8-10주 이후 연속검사(2차 TST)시행
- 2차 TST에서 양전(positive conversion)된 경우 결핵검진을 시행, 활동성 결핵인 경우 결핵치료, 활동성 결핵이 배제된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행
- 2차 TST에서 양전(positive conversion)되지 않은 경우 관찰
  - ※ 단, 초회검사 시점이 환자의 치료시작시점 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에 가까운 경우, 주치의 등의 판단에 따라 8주가 경과하기까지 기다린 후 초회검사만 시행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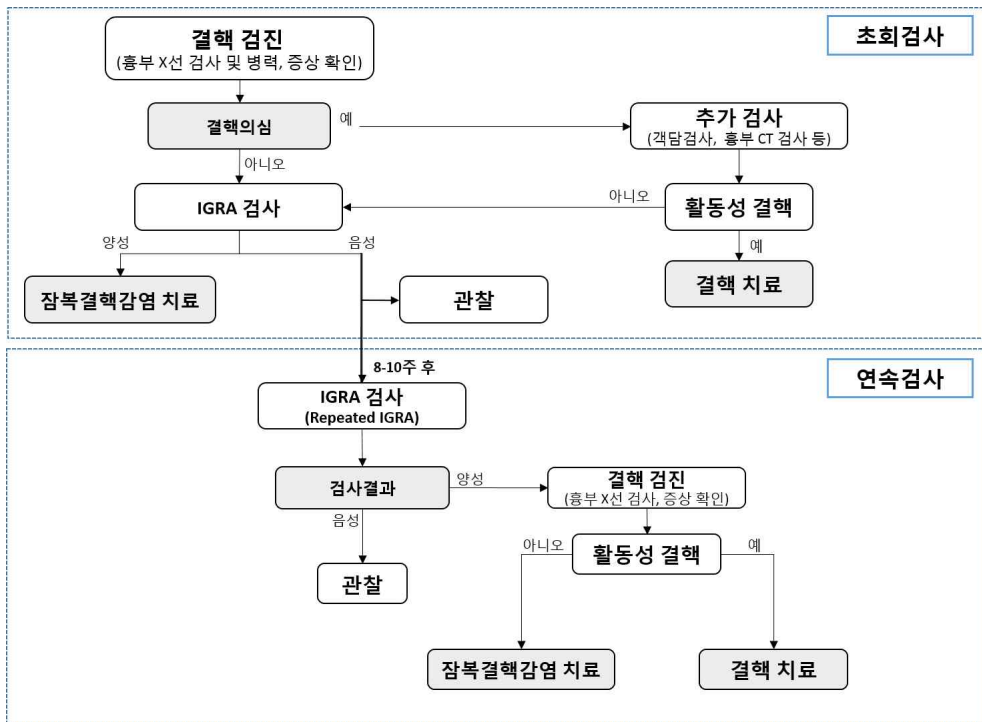


< TST 검사법 >



## 2) IGRA 검사법

- 활동성 결핵을 배제하기 위한 결핵검진(흉부 X선 검사 및 병력, 증상 확인) 실시
- 초회검사(IGRA)에서 양성인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 초회검사(IGRA)에서 음성인 경우, 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 기준으로 8-10주 이후 연속검사(연속 IGRA)시행
- 연속 IGRA에서 양성인 경우 결핵검진을 시행, 활동성 결핵인 경우 결핵치료, 활동성 결핵이 배제된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행
- 연속 IGRA에서 음성인 경우 관찰
  - ※ 단, 초회검사 시점이 환자의 치료시작시점 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에 가까운 경우, 주치의 등의 판단에 따라 8주가 경과하기까지 기다린 후 초회검사만 시행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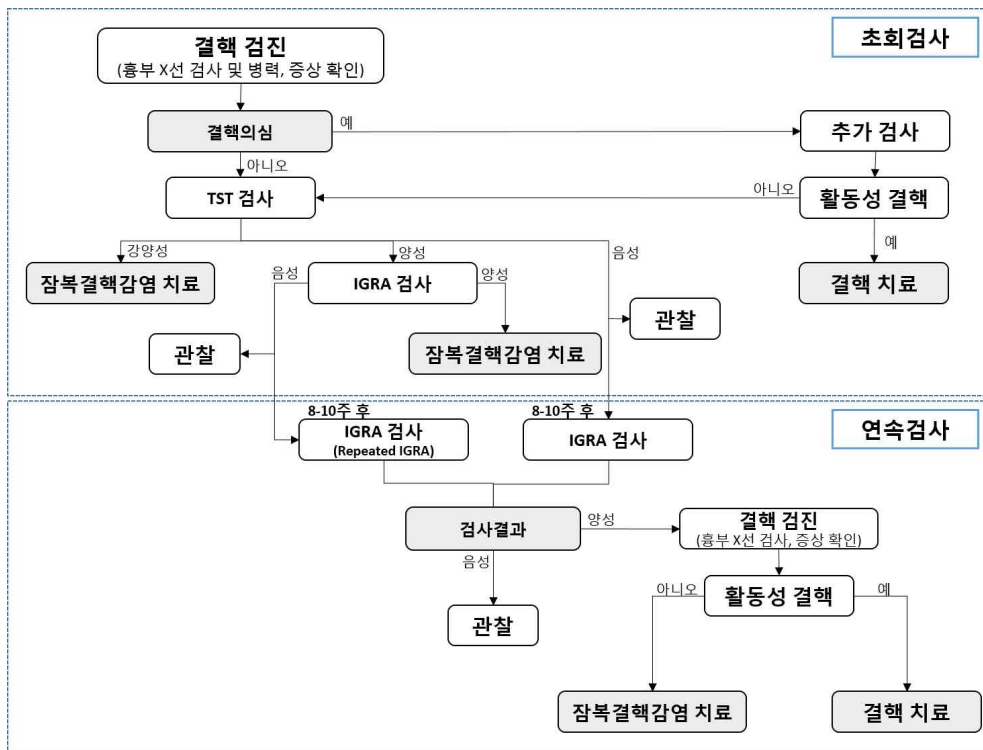


< IGRA 검사법 >



3) TST/IGRA 병합 검사법

- 활동성 결핵을 배제하기 위한 결핵검진(흉부 X선 검사 및 병력, 증상 확인) 실시
- 초회 TST 검사에서 강양성인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 초회 TST 검사에서 양성(10-14mm)인 경우 IGRA 검사를 추가로 실시, IGRA에서도 양성인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 초회검사 결과 ‘TST 음성’ 또는 ‘TST 양성 & IGRA 음성’인 경우 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 기준으로 8-10주 이후 연속검사(IGRA 또는 repeated IGRA)시행
  - ※ 단, 초회검사 시점이 환자의 치료시작시점 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에 가까운 경우, 주치의 등의 판단에 따라 8주가 경과하기까지 기다린 후 초회검사만 시행가능
  - ※ IGRA 혈액 채취는 TST를 시행하고 4일 이상이 경과되지 않도록 TST 판독하는 날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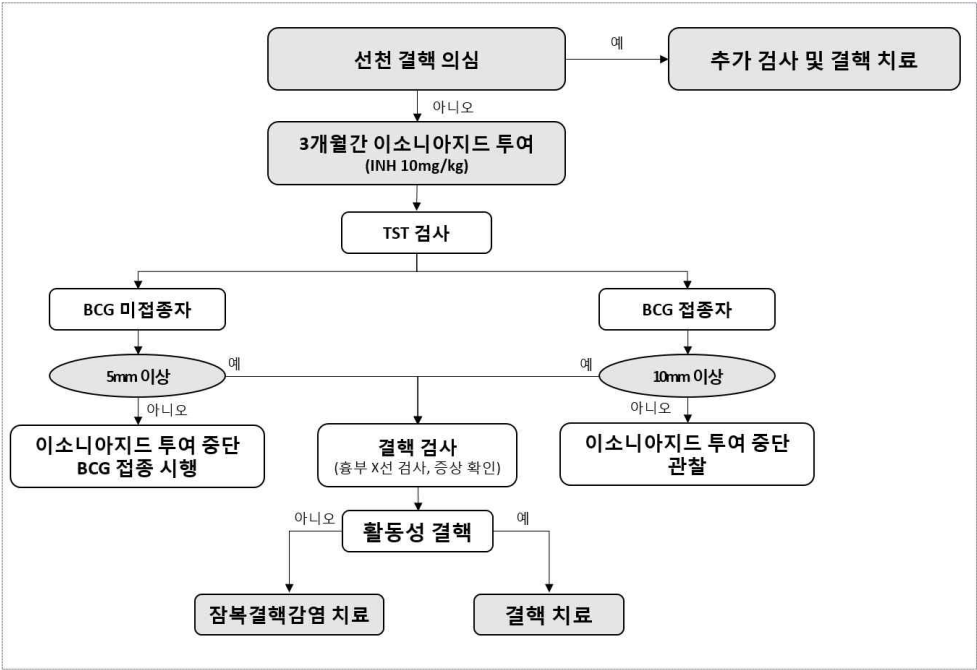
< TST/IGRA 병합 검사법 >

#### 4) 신생아(생후 4주 미만) 검사법

- 임상적으로 선천성결핵을 확인, 의심이 되면 추가 검사 시행 후 확진 시 결핵치료
- 선천성결핵이 의심되지 않으면 최소 3개월 이상 INH (10mg/kg) 복용 후 TST 검사 실시
- TST 양성이면 활동성 결핵을 배제하기 위한 결핵검진(흉부 X선 검사 및 병력, 증상 확인)을 실시하고, 활동성 결핵인 경우 결핵치료를 실시하고 활동성 결핵이 배제된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
  - ※ BCG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 후 BCG 접종 하지 않음
- TST 음성이면 INH 복용을 중지하고 BCG를 접종하지 않은 신생아는 BCG 접종

< 신생아 TST의 양성 기준 >

- BCG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경결이 5 mm 이상
- BCG 접종한 경우는 경결이 10 m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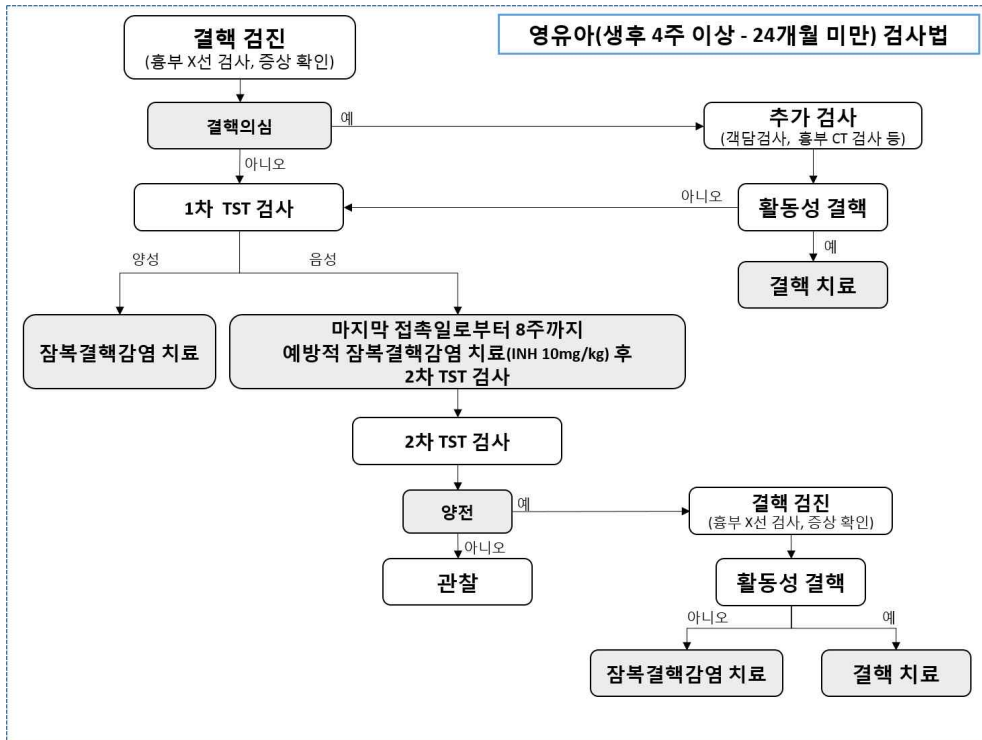


< 신생아(생후 4주 미만) 검사법 >



5) 영유아(생후 4주 이상~24개월 미만) 검사법

- 활동성 결핵을 배제하기 위한 결핵검진(흉부 X선 검사 및 병력, 증상 확인) 실시
- 1차 TST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 1차 TST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8주 이후 2차 TST 시행. 단, 2차 TST 시행 전까지 예방적 잠복결핵감염 치료(INH 10mg/kg) 유지
  - ※ 1차 TST 검사 실시 예정일이 환자와의 마지막 접촉 후 곧 8주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TST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8주가 되는 시점까지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하다가 TST 시행 가능. 이 경우 2차 TST는 불필요
- 2차 TST에서 양전(positive conversion)된 경우 결핵검진을 시행, 활동성 결핵인 경우 결핵치료, 활동성 결핵이 배제된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
- 2차 TST에서 양전(positive conversion)이 되지 않은 경우, 예방적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중단하고 관찰



< 영유아(생후 4주 이상~24개월 미만) 검사법 >

## 나. 잠복결핵감염 치료

### 1) 잠복결핵감염 치료 전 확인 사항

- 잠복결핵감염 진단자의 활동성 결핵 배제
- 지표환자의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확인
- 잠복결핵 치료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 및 동의 후 시작  
※ <서식45> 잠복결핵감염 치료 동의서(영문 포함)

### 2) 치료 전 검사

- 간기능검사(AST/ALT/빌리루빈), 일반혈액검사(CBC), 신기능검사(BUN/Cr) 시행  
※ 소아의 경우(초등학생 포함) 특별한 간질환 병력이 없고, 담당 진료의사(보건소 진료의사)의 임상적 관찰에서 특이 소견이 없는 경우 검사 생략 가능

### 3) 치료 방법

- 대상자의 연령, 지표환자의 약제 감수성결과, 간독성 위험인자 등을 고려하여 치료 방법 결정
  -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9H),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 요법(3HR), 리팜핀 4개월 요법(4R)

### 4) 추구관리

-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약제를 중단하고 주치의 상담을 받도록 교육  
※ 부작용 증상 : 오심, 구토, 복통, 황달, 전신 쇠약감, 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쉽게 발생하는 멍, 출혈증상, 심한 피부발진 등
- 매달 병력 청취 및 진찰
  - 잠복결핵감염 치료자는 복용 및 부작용 관리를 위해 ‘<서식 46>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기본 문진표’, ‘<서식 47>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 작성
- 정기적인 추구검사 실시
  - 추구검사 : 간기능검사(AST/ALT/빌리루빈), 일반혈액검사(CBC), 신기능검사(BUN/Cr)
  - 검사 시기 : 치료 시작 이후 2주, 4주 및 이후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검사 실시  
※ 소아는 일률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1개월마다 진료의사의 임상적 관찰은 해야 함



- 치료 전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간질환의 위험의 인자가 있는 경우 등 치료 부작용 관련 요 관찰군\*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간기능 검사 시행
  - \* 간질환 과거력, 알코올 중독, 만성간질환, 임신부
- 추구 흉부 X선 검사 시행
  -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인 자 : 치료시작 및 종료시점에 추구 검사 시행(2회)
  - 잠복결핵감염 치료 미실시자 및 중단자 : 미실시 또는 중단 시점으로부터 1년간 3개월 간격으로 3, 6, 9, 12개월 후에 추구 검사 시행(4회)
    - ※ 단, 3개월 이전이라도 결핵 의심 시 조기 검사
  - 다재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 진단자 : 접촉자조사 시점으로부터 2년간 3, 6, 9, 12, 18, 24개월 후 추구 검사 시행(6회)
- 부작용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진료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제 중단 등을 조치함
  - ※ 단, 주치의의 판단에 따른 발병위험도에 따라 검사 기간 및 간격은 조절 가능

#### 5) 치료 부작용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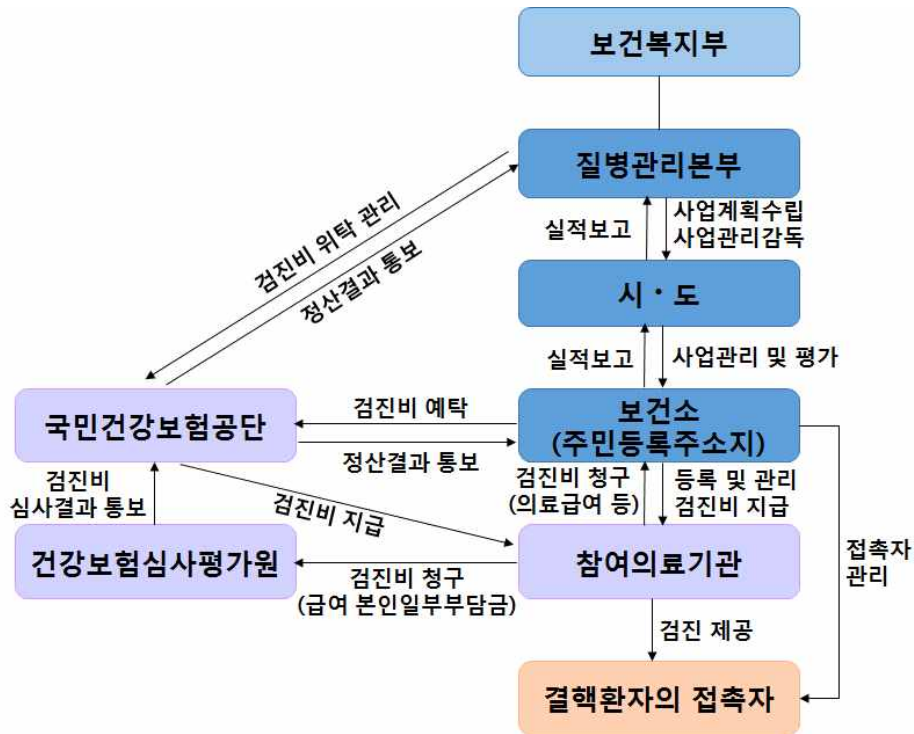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VI-제2절-잠복결핵감염 치료-5. 치료 부작용 관리> 참조

#### 6) 치료 정보 및 추구관리 시스템 입력

- 최종 검사결과가 잠복결핵감염일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정보 입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가족접촉자검진관리 > 최종검사결과 ‘잠복결핵감염’ 선택 시 잠복결핵감염 치료정보(치료법, 치료시작일, 치료완료여부, 치료완료일 등) 입력
- 잠복결핵감염 치료정보 입력 후 투약정보 및 추구관리 입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잠복결핵감염통합관리 > 사업구분 ‘가족접촉자’ > 대상 선택 후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에 기록된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투약정보, 추구 흉부 X선 검사, 혈소판 검사, 간기능 검사 입력

## 5.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가. 사업 수행체계



### 나. 지원 범위

#### 1) 결핵 검사

- 흉부 X선 검사 : 3년 이내 실시한 검사에 대해 최대 11회 지원(추구 흉부X선 검사 포함)
  - ※ 흉부 CT검사는 지원 대상 아님
- 객담 검사 : 흉부 X선 검사 상 유소견자(결핵의심 또는 비활동성결핵)나 유증상자인 경우 지원
  - 도말검사 : 항산균검경, 항산성 집균도말, 항산성 형광염색 집균도말(3회)
  - 배양검사 : 항산균 고체배양, 항산균 액체배양(3회)
  -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PCR)(1회)



2)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 검사(TST)
- 인터페론감마분비 검사(IGRA)
- ※ 2회 지원가능하나 검사 결과가 판독불능인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3) 처방 및 판독 시 진찰료 등

- 접촉자 검사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진찰(상급종합병원 진찰료 포함), 처방 및 관련 검사의 판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부합한 진찰료 외에 재료대, 가산금, 의료질평가지원금, 의약품관리료 등 부대비용도 지원

다. 검진비 청구 및 지급 방법

1) 청구 및 지급 기관

청구기관	지급 기관	내용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기관	접촉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그 외 자격자의 요양급여* 총액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보장(건강보험, 의료급여) 미가입자 - 포괄, 신포괄 대상자, 요양병원 검진자, 보훈 등

\*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총액을 보건소에 청구

2) 청구 및 지급 절차

가) 건강보험가입자(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건)

- 청구
  - 등록된 접촉자 검진 건 공단 연계 여부(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 검사정보 등록 후 2~3일 경과 후 연계 여부 결과(연계완료, 건강보험가입자 아님) 확인
  - ※ 이름, 주민등록번호 오입력 또는 의료보장종별을 잘못 등록한 경우 연계 여부 [건강보험가입자 아님], [연계대상 아님]으로 표시



- 청구기호 : 상병코드 Z20.1(결핵에의 접촉 및 노출)
- 특정기호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2(특정기호)'란에 F009를 기재함
  -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6호) 참조
  - ※ 가족접촉자 검사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가족접촉자 검사 진료분이 발생하는 경우 분리 청구함
- 지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대상자'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요양기관에 심사결정액을 집행함
- 청구항목 및 심사기준

항목	코드	명칭	세부사항
진찰료		각 진찰료 적용 _가산금 등도 청구가능	•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위해 타과에서 협진 의뢰된 경우 타과 진찰료도 인정
의료질 평가 지원금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분야(외래) 교육수련 분야(외래) 연구개발 분야(외래)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외래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지원
진단	G2101~5	흉부 직접 촬영 _매수 제한 없음 (관련 재료대 포함)	• 신고된 지표환자의 접촉자인 경우 3년 이내 실시한 검사에 대해 최대 11회 지원
	D604101 D604201 D604202	결핵균핵산증폭검사	• 결핵이 의심1)되어 신속한 결핵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지원
검사	E7113	피부반응검사(일반검사) _결핵(PPD)	• 흉부 X선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동시 실시한 경우도 인정 • 신고된 지표환자의 접촉자인 경우 2회 지원 (단, 검사 결과가 판독불능인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D6020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경우2) 요양급여 인정 • 위 요양급여 인정 대상자 이외 시행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항목	코드	명칭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흉부 X선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동시 실시한 경우도 인정</li> <li>• 신고된 지표환자의 접촉자인 경우 2회 지원 (단, 검사 결과가 판독불능인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li> </ul>
	D6001	미생물현미경검사 (일반염색)_항산균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흉부 X선 검사 상 유소견자3)나 유증상자인 경우 인정</li> <li>• 신고된 지표환자의 접촉자인 경우 지원횟수 항목별 각 3회로 제한</li> <li>• 항산균검경과 항산성집균도말검사 동시 청구 시 항산균검경은 제외</li> </ul>
	D6002	미생물현미경검사(일반염색)_항산성집균도말검사	
	D6003	미생물현미경검사(형광염색)_항산성 집균 도말검사	
	D6011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항산균배양 및 동정검사)_고체배지	
	D6012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항산균배양 및 동정검사)_액체배지	
약제	482030BIJ	Purified Tuberculin (의약품관리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보건소에서 배포하므로 시약비 청구 불가</li> </ul>

- 1)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상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
- 2)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 $\alpha$  inhibitor)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투석 중인 환자,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규폐증,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 3) 흉부 X선상 결핵의심 또는 비활동성결핵

나) 그 외 자격자(접촉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청구 건)

- 청구
  - 의료기관 청구 관련 부서에서 의료보장 중별, 의료기관 중별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여 검진비 산출
    - ※ 단, 의료기관 청구 담당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상에서 청구권한 요청, 질병관리 본부의 승인 후 청구 가능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권한/부가정보관리 > 에이즈결핵관리 > 결핵관리 User(검진비조회))
  - 의료기관 청구 관련 부서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촉자관리' 폴더의 '검진비 지급요청관리' 창에서 청구금액 입력

- ※ 검진비 지급요청의 보건소 승인 후 지급요청 내역은 수정 불가,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반려 요청 후 수정 가능
- 접촉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영수증'과 '진료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
  - 청구하고자 하는 비용은 반드시 급여란에 기입(비급여로 청구 시 지급불가)
  - 검진비는 각각의 검사 항목과 비용을 명시하여 청구
  - 검진비에 대한 가산금 등이 부과될 경우 이를 반드시 명시

< 보건소 청구 순서 >

결핵관리 > 접촉자관리 > 검진비지급요청관리 > 접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해당 접촉자를 클릭한 후 우측 상단에 '검진비지급요청' 클릭 > '접촉자 검진비 지급요청 등록' 창에서 접촉자 성명, 청구일자, 청구액 및 의료기관 정보 등 입력 > '첨부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 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저장

- 지급
  -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증빙 자료 등을 확인하고 요양기관에 검진 비용을 지급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상 주소지가 없으면 실제 체류지 관할 보건소, 실제 체류지도 없으면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서 지급
  - 접촉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는 의료기관에서 검진비를 청구한 날로부터 15~30일 이내에 검진비 지급
    - ※ 청구한 날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시스템 상 청구요청일,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검사관련 증빙자료를 보건소가 수취한 날로 같음
  - 검진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의 검진비 보정 요청을 확인하고 과지급분을 환수하거나 부족분을 추가 지급
- 청구항목 및 심사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과 동일



## 제 2 절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 알려두기

학교, 직장,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접촉자는 결핵발병 위험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약 5배 높아 결핵역학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치료하는 것은 결핵 전파 차단과 결핵 발병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장은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에 대한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다.

## 1. 개요

## 가. 결핵역학조사의 목적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결핵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결핵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발견·치료

- 결핵환자 치료와 추가 결핵환자 발견을 통해 결핵 전파 차단
-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통한 결핵 발병 예방



< 결핵역학조사 목적 >

## 나. 결핵역학조사의 구성

결핵역학조사는 '지표환자 조사' 및 '접촉자조사'로 구성

- 지표환자 조사 : 지표환자의 전염성 여부 등 임상 상태를 조사하여 접촉자조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전염성 있는 경우 환자를 집단으로부터 격리 조치
- 접촉자조사 : 지표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 다. 결핵역학조사의 시행

집단시설 관할 보건소 주관

- 관할 보건소 내 집단시설 소속 결핵환자가 통보된 경우 '지표환자 조사' 즉시 실시
  - \* 「결핵예방법」 제10조, 제19조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역학조사를 실시
  - \* 지표환자 주소지 보건소(관리 보건소)는 결핵환자 신고 시 해당 환자의 실제 집단시설 소속 여부 및 시설 상세 정보 확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결핵환자신고서에 해당하는 사항 입력



## 2. 결핵역학조사 방법 및 절차



< 결핵역학조사 절차 >

## 가. 지표환자 조사 및 격리 조치

### 1) 지표환자 조사

가) 집단시설 소속 결핵환자 확인 시 시설 관할 보건소에서는 ‘지표환자 조사’ 시행

#### (1) 지표환자 발생보고

: 지표환자의 사례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표1]의 조사 항목을 참고하여 발생보고

##### [표1] 지표환자 조사 항목

- 발견 경위 : 주증상, 증상 시작일, 증상 기간, 가족력, 과거 결핵 발병 여부 및 치료 여부, 과거 잠복결핵감염 진단 여부 및 치료 여부 등 포함
- 진단 이전 검진 이력 : 결핵 진단 이전 병원 진료 이력, 최근 건강검진 이력, 평상시 건강 상태, 기저질환 유무

#### (2) 지표환자의 결핵 검사 결과

: 결핵역학조사에 필요한 검사(표2)의 시행 여부 및 결과를 확인하고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시행하도록 조치(표3, 표4 참조)

##### [표2] 지표환자 결핵 검사 확인 항목

- 객담(또는 기관지세척액) 항산균 도말 및 배양검사
- 객담(또는 기관지세척액) 핵산증폭검사(TB-PCR 검사, Xpert MTB/RIF 포함)
- 약제감수성검사(신속감수성검사, Xpert MTB/RIF 포함)
- 결핵균 유전형 검사(배양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균주 확보 협조 요청)
  - ※ 항산균 도말 양성 검체는 반드시 PCR 검사 및 신속내성검사 결과 확인

##### [표3] 누락 객담검사에 대한 조치 방법

-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검사 시행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누락 시 결핵역학 조사와 관련됨을 통보하고 누락된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
- 병·의원에서 시행이 어려운 경우 지표환자가 보건소에 내소하도록 하여 객담을 채취하고 위의 검사 시행



[표4] 객담검사를 보건소에서 시행할 경우 검사 소요시간 및 의뢰기관

검사 종류		검사 소요시간	검사 의뢰기관
Xpert MTB/RIF		4시간	검사수탁기관
항산균 도말검사		1일 이내	보건소, 검사수탁기관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3일 이내	검사수탁기관
배양	액체	2주~6주	검사수탁기관
	고체	3주~8주	검사수탁기관
신속감수성 검사		3일 이내	검사수탁기관
약제감수성 검사		액체배양 양성 확인 후 2주 고체배양 양성 확인 후 3주~4주	검사수탁기관
결핵균 유전형 검사		액체 or 고체 배양양성 확인 후 8주	질병관리본부

## (3) 지표환자 영상의학검사 결과

- 흉부 X선 검사 : 결핵 진단 여부 및 공동 유무
- 흉부 CT 검사 : 결핵 진단 여부 및 공동 유무

나) 지표환자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집단시설 관할 보건소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조사 정보 [표1] 내용을 입력 후 발생보고 승인 요청

- ‘집단시설소속환자관리’ 창에서 ‘등록(발생보고)’ → 환자 정보 입력(저장) → 발생보고 승인 요청 → 시·도 승인 및 질병관리본부 보고 → 질병관리본부 승인
- 승인 요청한 환자 정보 승인 시 자동으로 발생보고가 완료되며 ‘결핵역학조사 발생 보고서’ 출력 가능

다) 시설 관할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및 시·도 보건(위생)과(결핵관리 의사 등)와 상의 후 결핵역학조사에 대한 ‘실시’ 또는 ‘보류’ 등의 여부를 판단하고,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즉시 ‘결핵역학조사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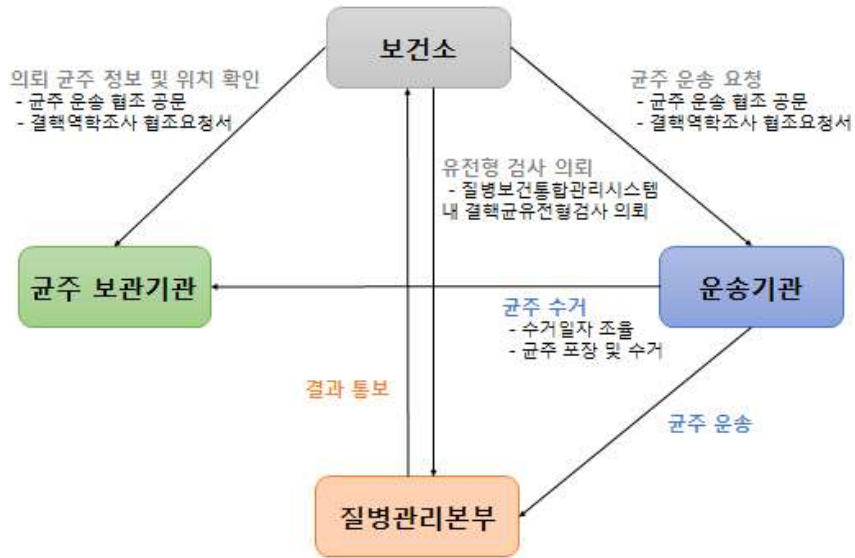
라) 결핵역학조사 관련 환자의 배양 양성 균주는 전수 결핵균 유전형 검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

- 만 5세(60개월) 미만 소아 결핵환자(폐외결핵 포함)는 근원환자(source case) 조사를 위해 배양양성 균주를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



[표5] 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절차

- 보건소는 해당 병원(또는 검사기관) 및 운송기관에 결핵균 유전형 분석을 위한 ‘<서식 48> 결핵역학조사 협조 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
- 보건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 운송기관은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라 세균분석과에 검체 발송
  - ※ 단, 균주가 있는 병·의원이 타 보건소 관할일 경우 역학조사 시행 보건소에서 세균 분석과로 균주 송부를 의뢰(균주가 결핵연구원에 있는 경우 공문 생략 가능)



2) 지표환자 격리 조치

- ‘Ⅲ-제2절-2. 전염성 결핵환자 격리 조치’ 참조

나. 접촉자조사

1) 접촉자조사 실시 기준

가) 지표환자의 객담을 포함한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표6] 접촉자조사 실시 기준

- 항산균 도말(AFB smear) 검사 양성
-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Xpert MTB/RIF 검사 포함) 결과 MTB 양성
- 항산균 배양(AFB culture) 검사 양성

•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항산균 배양검사 결과를 확인 후 접촉자조사 여부 결정  
 - ‘도말 양성, TB-PCR 음성’이면서 주치의의 임상 소견상(영상의학 소견 포함) NTM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지표환자의 객담을 포함한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나, 흉부 X선 상 공동이 확인된 경우

다) 폐외결핵을 포함한 만 5세미만 결핵환자가 발견된 경우

- 가족 내 결핵환자 유무 우선 파악
- 밀접접촉자 중 성인(교사 등) 대상 흉부 X선 검사 시행

라) 집단(역학적으로 전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염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활동성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접촉자조사 시행

- 접촉자조사 범위 및 방법은 현장조사를 통해 결정

2) 현장조사

가) 지표환자 조사 후 ‘접촉자조사’를 실시하는 사례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조사 실시

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경우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은 접촉자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을 결정

- 방문조사 시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이, 유선조사 시 보건소 소속 조사반원이 현장 조사서를 작성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다) 현장조사 시 보건소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행정조치 등 수행
- 라) 환자 집단시설 소속 확인 및 발생보고 후 7일 이내 역학조사 착수

### 3) 접촉자조사 범위 결정

#### 가) 접촉자조사 우선 대상자

- 밀접접촉자(Close contacts)
  - ※ 조사 시행 시 환자의 가구원에 대한 가족접촉자조사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하지 않은 경우 시행하도록 조치
- 일상접촉자(Casual contacts)는 아래와 같은 경우 조사 대상자에 포함
  - 면역저하자 등 결핵감염 시 발병의 위험이 높은 경우
  - 밀접접촉자의 조사 결과 추가환자가 발견되거나 잠복결핵감염률이 높은 경우 등 전염의 강도가 높아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 조사범위는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이 검토·결정

#### 나) 접촉자조사 범위 결정 시 고려 사항

##### (1) 지표환자 특성에 따른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 기간

- 지표환자의 특성에 따른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 기간을 추정하기 위해 결핵 증상 및 객담 도말검사 결과, 흉부 X선 검사상 공동 유무 고려

해당사항 (체크)	지표환자 결과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 기간
	결핵 증상	객담 도말 양성	흉부 X선 공동	
예	예 또는 아니오	예 또는 아니오	예 또는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상 시작 3개월 전부터</li> <li>• 객담 도말 및 흉부 X선 검사일 중 가장 앞선 날짜 이전 3개월 시점부터</li> </ul>
아니오	둘 중 하나 이상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담 도말 및 흉부 X선 검사일 중 가장 앞선 날짜 이전 3개월 시점부터</li> </ul>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담 도말 및 흉부 X선 검사일 중 가장 앞선 검사일 이전 4주(28일) 시점부터</li> </ul>



## (2) 지표환자와 접촉 시간

-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 기간 동안 지표환자와 밀폐된 좁은 실내 공간에서 연속해서 하루 8시간 이상 접촉했거나 누적 기준 40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 우선적으로 포함

## (3) 지표환자와 접촉자들이 접촉한 공간 특성

- 밀폐 여부(출입문, 창문 등의 개폐 상황), 공간 크기, 환기시스템 설치 여부, 구성원 밀집도, 채광 여부 등 확인

## (4) 접촉자 특성

- 면역저하자, 5세 미만의 소아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 접촉자는 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

## 다) 접촉자 명단 관리

- 보건소는 현장조사 후 조사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접촉자 명단을 지체없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이 검토

## 4) 접촉자조사 검사 방법

## 가) 접촉자조사 일정 수립

- 현장조사를 마친 후 역학조사 범위, 일정 등이 결정되면, 보건소는 ‘<서식 51> 역학조사 시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기관에 발송하여 검사 일정 공지
  - ※ 방학, 시험 등 학사일정과 관계없이 신속한 역학조사 시행
- 설명회를 시행하는 경우 시·도에서 주관하고, 상세 일정은 집단시설의 장과 협의

## 나) 접촉자 설문조사

- ‘<서식 58~59> 접촉자조사 설문지’를 접촉자(보호자)에게 배부하고, 보건소는 ‘<서식 60> 접촉자 설문조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접촉자검사 전 설문 결과 확인

## 다) 결핵 검사

## (1) 흉부 X선 검사

- 접촉자조사 대상자 전원 시행
  - ※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 등 필요에 따라 흉부 CT 검사, 기관지내시경 등 추가 정밀검사 실시 가능
  - ※ 영·유아 및 소아 접촉자 시설, 군부대 등 흉부 X선 검사 시 질병관리본부 신속대응차량 이용 가능(공문 : 결핵조사과-126(2019.1.11)호 참조)

## (2)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검사)

- 흉부 X선 검사에 결핵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시행
- 흉부 X선 검사가 정상이라도 결핵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시행

## 라) 잠복결핵감염 검사

-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능한 보건소 내에서 시행
- 접촉자 중 영유아 및 소아(초등학교 이하) 대상 TST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이 지원 가능
- 결핵전문역학조사반과 상의 후 관내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사 가능  
※ 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사법은 「IV. 제2절-5.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사」 참조

## [표7] 잠복결핵감염 검사 시 응급상황 대비

- 응급상황 대비 아래 물품 준비
  - \* 혈압계, 청진기, 베개, 매트, 응급처치세트 등
  - \* TST 검사 시 주의사항 안내문
- 주사 후 과민반응(needle shock) 시에는 하지 거상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혈압 확인
  - \* 인후의 폐쇄, 호흡곤란 등 발생 시에는 병원 후송 조치 후 즉시 시·도 및 결핵전문역학조사반에 유선 보고



## [표8] TST 검사 시 확인해야 할 백신 접종력

- 생백신 접종이 TST 결과에서 위음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생백신 접종 4주 이후 TST 시행
  - \* 단, 접종과 검사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
- TST 시행 전 확인해야 할 최근 4주 이내 백신 접종력
 

○ MMR백신	○ 대상포진백신	○ 일본뇌염백신 중 생백신
○ 수두백신	○ 황열백신	○ 인플루엔자백신 중 생백신(비강분무)
- 모든 사백신과 경구용 생백신(예, 로타바이러스)은 백신 접종과 TST 시행 간격을 고려할 필요 없음



마) 추구검사

- 잠복결핵감염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후 추구 흉부 X선 검사
- 추가 결핵환자 발생 등 조사결과에 따라 추구 검사 연장 가능

바) 보건소는 ‘<서식 53~55> 집단시설역학조사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진행 사항 점검

5) 접촉자조사 검사 결과 등록 및 관리

가)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등록

-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확인 후 3일 이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과 등록

나) 잠복결핵감염 관리

- 잠복결핵감염자의 과거력과 치료 여부, 치료 방법 등을 확인하여 치료 동의자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는 필요시 작성
- 잠복결핵감염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경우, 보건소는 치료 결과 확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치료 결과 입력
-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거부·중단한 자는 추구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거부중단자가 근무지 변경 시 치료 관리 보건소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및 추구관리

다) 접촉자 추구 검사 결과 등록

- 추구검사(흉부 X선) 결과 확인 후 3일 이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등록

6) 결핵역학조사 종료보고서 작성

가) 접촉자조사 완료 시점으로 하며 3개월 추구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 ‘<서식 66> 결핵역학조사 종료보고서’ 작성

- 방문조사 사례의 종료보고서는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이 작성, 유선조사 사례 종료 보고서는 보건소가 작성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관리 상세보기」 내 일정 관리의 첨부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 7) 결핵역학조사 중 아래와 같이 중점사례로 확인된 경우 보건소는 시·도 및 결핵조사과에 보고

- <서식 101> 결핵역학조사 중점사례 보고서(예시)' 활용

#### [표9] 중점사례

- 영·유아 결핵노출 사례
- 지표환자와 연관성 있는 추가환자가 발견된 사례
- 지표환자가 다제내성결핵(MDR/XDR)으로 도말 양성인 사례
- 언론보도 가능성 있거나 보도된 사례

## 3. 결핵역학조사 기관별 역할

### 가. 집단시설

- 1) 시설장은 ‘가), 나)’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서식 56> 결핵환자 발생 및 발견 통보’를 작성하여 시설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가) 건강검진 결과, 집단시설 구성원이 결핵환자나 결핵 의심자로 통보 받을 때  
나) 결핵으로 진단 받거나 또는 치료 중인 소속원(학생, 직원, 입소자 등)을 발견했을 때
- 2) 시설장은 결핵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역학조사 해당 범위의 소속원의 명단을 ‘<서식 57>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 3) 시설장은 접촉자조사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식 58~59> 접촉자조사 설문지’와 ‘<서식 61~64>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을 배부
- 4) 시설장은 접촉자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52> 역학조사 대상기관 초기 유선(문자) 안내 예시’를 참고하여 배포
- 5) 시설장은 집단시설 역학조사 시 그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  
(결핵예방법 제19조 참고)



## 나. 보건소

1) 보건소장은 보건소에 신고된 환자가 집단시설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되면 아래와 같이 조치

- 특히 집단시설 소속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
  - 모든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집단시설 소속 여부
  - 소아, 특히 영유아를 접하는 직업 여부(의료기관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 교직원, 보건의료인, 학생, 군인, 항공기 객실승무원, 선박승무원 여부
- ※ 직업, 직장명 등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밝혀진 경우 결핵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역학조사)

관할 보건소가 타 지역보건소에 접촉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의뢰한 경우 해당 보건소는 반드시 협조

### 가) ‘집단시설 소속 결핵환자’의 관리 보건소

- 환자가 소속된 집단시설의 기관명과 기관 주소를 확인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신고 승인 및 결핵환자 사례조사 실시)
- 결핵환자 치료 내용, 가족접촉자 검사 여부 등 확인
- 결핵환자 소속 집단시설이 타 보건소 관할이면 접촉자조사 시행을 위해 해당 시설 보건소에 지체 없이 통보

### 나) ‘집단시설 소속 결핵환자’가 소속된 기관의 관할 보건소

- 결핵환자의 치료 내용 등 ‘지표환자 사례 조사’ 항목[표 1]에 해당하는 검사[표2]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실시인 경우 실시될 수 있도록 신고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집단시설 소속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발생 보고
- 집단시설 소속 결핵환자의 사례 조사 및 접촉자조사 등 역학조사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추구검사 시행
- 결핵환자의 주소지가 타 보건소 관할이면 가족접촉자 검사를 위해 결핵환자의 관리 보건소로 지체 없이 통보



- 2) ‘집단시설 소속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시·도 및 결핵조사과에 보고
- 관할 보건소는 지표환자 사례조사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지표환자 조사 정보를 <서식 49>에 입력하고 시·도에 발생보고 승인 요청
  -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은 시·도에서 승인된 내용 검토 후 최종 승인
  - <서식 65> 결핵역학조사 발생보고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3)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시행 시 ‘결핵역학조사반’ 구성 및 조사 전반의 업무 수행
- 총괄 책임은 보건소장이 담당
    - 보건소 : 보건소 진료 의사(보건소장), 결핵실 담당자
    - 시·도청 : 결핵관리과, 결핵업무담당자, 감염병관리지원단
    - 질병관리본부 : 결핵조사과 결핵전문역학조사반
    - 시설 : 시설장, 보건 담당자(예, 학교 - 학교장, 보건교사)
    - 집단시설 관할 기관 부서 담당자(예, 학교 - 교육(지원)청 담당자, 사업장 - 지방고용노동청)
  - 필요시 보건소에서 ‘결핵역학조사 상황실’ 운영
- 4) 결핵역학조사 시행 시 환자에 대한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조사 실시
- 가) 환자 정보
- 개인 정보
    - 이름, 성별, 나이, 국적, 입국일(외국인의 경우), 진단명, 진단일, 건강보험 종류
  - 발견 경위
    - 결핵을 진단 받기까지의 경위를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술
    - 주증상, 증상 시작일, 증상 기간, 가족력, 과거 결핵 발병 여부 및 치료 여부, 과거 잠복결핵감염 진단 여부 및 치료 여부 등
  - 진단 이전 검진 이력
    - 결핵 진단 이전 병원 진료 이력, 최근 건강검진 이력
    - 진단 이전 결핵 검사 결과(흉부 X선 검사, 객담 및 객담외 도말검사, TB-PCR, Xpert MTB/RIF, 배양검사, 약제 감수성검사, 검사일 및 검사 기관 등)
    - 평상시 건강 상태, 기저질환 여부 등



## 나) 기관 정보

- 기관명, 기관 주소, 기관 보건 담당자 및 연락처
- 기관 특성(업태, 업종, 과거 기관 내 결핵 발생 이력, 특이사항 등)
- 기관 규모(기관 전체 인원 수, 동일 부서 인원 수)
  - 예) 지표환자가 생활(근무)한 장소: 약 330㎡ 규모로 100명이 생활(근무)하고 있음
- 근무 기간(입사일/퇴사일, 입원일/퇴원일, 휴학 기간, 업무종사 일시제한일(마지막 접촉일))
- 소속 부서(팀) 및 직책
  - 지표환자의 세부 소속 부서(팀) 인원 수
  - 학우 및 동료 관계
- 근무 형태(사무직/현장직 등, 근무 시간)
- 기타사항(기숙사, 동아리, 보충 학습, 학원, 통근 버스, 정기적 회의, 학우 및 동료 관계, 소아 및 면역저하자 접촉여부 등)
- 지표환자가 시설(요양원 등) 입소자의 경우
  - 거동 여부, 프로그램 참여 유무, 재활 치료 여부, 기타 특이사항 등

- 5) 전염성 결핵환자의 경우 'Ⅲ-제2절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에 의거하여 격리 조치 시행
- 6) 접촉자조사를 시행하는 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및 설명회가 필요한 경우 시·도와 협의하여 시행
  - 유선 현장조사 사례는 보건소가 '결핵역학조사 현장조사서'를 3일 이내(근무일 기준) 작성·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하고, 시·도 검토 및 결핵전문역학조사반 승인
  -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접촉자 명단은 지체없이 입력
- 7) 접촉자조사에 필요한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추구검사 시행
  - ※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관할 보건소가 타 지역보건소에 접촉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의뢰한 경우 해당 보건소는 반드시 협조

## 8) 접촉자조사 자료 관리 철저

- 접촉자 검사 결과(초회 흉부 X선 검사, TST 검사, 결핵균 유전형 검사 등)는 검사 결과 확인 후 3일 이내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접촉자 추구검사 결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잠복결핵감염 진단자의 치료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치료 시작 전 잠복결핵감염 치료 설명회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유선 현장조사 사례의 경우 보건소가 '<서식 66> 결핵역학조사 종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접촉자조사 시 이상 소견 확인 및 추가 확대조사가 필요한 경우 결핵전문역학조사반에 즉시 보고

## 9)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접촉자조사 결과 및 치료 결과, 추구검사 결과 등을 회신 받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10) 결핵역학조사를 통해 진단된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lt;VI-제2절-5.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 관리&gt;'에 의거하여 보고

## 다. 시·도 보건과

## 1) 관내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대한 행정 관리 총괄

- 예산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 행정기관(지방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협의체 운영

## 2) 지자체 결핵역학조사 계획 수립 및 평가

## 3) 관내 보건소의 집단 내 결핵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수행 및 관리

- 집단 내 결핵 발생 시 '결핵역학조사반' 운영
- 결핵역학조사 현장조사 및 중점사례 관리, 언론대응
- 접촉자조사 시 관내 의료기관 연계 지원



- 결핵역학조사 현장조사서 및 종료보고서 검토 및 관리
  -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모니터링
- 4) 결핵역학조사 관련 교육 및 설명회
- 5) 관내 보건소 결핵역학조사 자료 질 관리 및 통계 산출
- 조사결과 입력률, 접촉자 검진율, 잠복결핵치료시작율 등 모니터링
  - 결핵역학조사 월 통계
- 6) 결핵역학조사 관련 사업지표 모니터링
- 결핵관리 지표
  - 행안부지자체 합동평가지표

#### 라. 보건환경연구원

-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IGRA검사)를 시행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결과값(수치) 및 판정값 입력 등 결과 통보
- ※ 검체 접수 7일 이내에 통보. 단, 보건소에서 incubation 등 전처리를 한 경우 접수 5일 이내에 통보

#### 마.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 1)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지침 수립 및 기반 강화
- 2) 결핵 전문역학조사반 운영
  - 가) 집단시설 내 결핵 발생에 따른 접촉자조사 및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 나) 집단시설 내 결핵발생 일일 모니터링 및 사례 관리
  - 다) 결핵발생 기관 현장조사 지원
  - 라) 결핵역학조사 기술·교육 지원
    - TST 교육·평가 및 정도 관리 등 기술 지원

- 결핵 발생 기관 및 보건소 담당자 교육 등
  - 신속대응차량 운영(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군부대, 집단발생지역 등 우선 지원)
- 마) 결핵역학조사 결과 검토·확인 등 관리
- 보건소(시·도)에서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종료보고서 확인
  - 접촉자조사 결과 모니터링
  - 결핵역학조사를 통해 진단된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결과·부작용 모니터링 및 관리
- 3) 결핵역학조사 자료 질 관리
- 가) 결핵역학조사 현황 일일 상황보고
- 나) 결핵역학조사 검사결과 모니터링
- 다) 결핵역학조사 통계 및 조사 결과 분석 등
- 라) 결핵역학조사 자료 정비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마) 결핵관리지표 점검·평가 등 관리, 결과 환류
- 4) 결핵역학조사 역량 증진
- 가) 결핵전문역학조사반 세미나
- 나)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시행
- 다) 결핵역학조사 관련 연구활동
- 5) 중점사례 관리
- 가)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주요 사례집 발간
- 나) 언론 모니터링
- 다) 중점사례 심층 분석 및 향후 정책 근거 마련
- 6) 임상·역학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자문회의 정례화



바.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

1) 결핵역학조사 관련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의 결핵균 검사 수행

가) 검사 종류

- 결핵균 유전형 검사
- 중요 결핵역학조사 사례와 관련하여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이 요청하는 검사

나) 검사 결과 통보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

2) 잠복결핵감염 검사 지원 (IGRA 검사 교육 및 정도관리 등)

사. 기타 결핵 검사 수탁기관

1) 보건소에서 의뢰한 흉부 X선 검사 및 객담 검사(도말, 배양검사 및 기타 의뢰된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는 즉시 보건소장에게 통보

2) 결핵역학조사와 관련된 환자의 배양양성 결핵균주는 결핵균 유전형 검사를 위해 세균분석과에 제공

## 4. 대상 기관별 결핵역학조사

### 가. 신생아 관련 시설

####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 가) 역학조사의 시행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핵환자의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시행

##### 나) 역학조사의 범위

현장조사 결과에 따름

#### 2) 접촉자조사 방법

##### 가) 결핵 검사 : 흉부 X선 검사

##### 나) 잠복결핵감염 검사

(1) 신생아 및 영아 : TST를 이용하여 진단

: 「신생아(생후 4주 미만) 검사법」, 「영유아(생후 4주 이상~24개월 미만) 검사법」 참조

(2) 종사자

: 「접촉자 IGRA 검사법」 또는 「접촉자 TST/IGRA 병합 검사법」 참조

#### 3) 신생아·영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종사자 중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례에 따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접촉자조사 여부 및 방법 결정 가능

#### 4) 설명회

가) 대상 : 접촉자(신생아·영아)의 보호자

나) 내용 : 역학조사 실시 배경 및 조사 내용 설명

#### 5)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접촉자조사

- 접촉자(신생아·영아)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에서 접촉자조사에 필요한 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 가) 접촉자조사 의뢰 가능 검사 항목

- 흉부 X선 검사(필요시 흉부 CT 검사)
- 객담검사(항산균 도말검사, 배양검사, TB-PCR, Xpert MTB/RIF, 약제 감수성검사 등)
- 잠복결핵감염 검사(TST 검사)

## 나) 잠복결핵감염 진단자 관리

- (1)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진료비, 약제비 등) 및 부작용 관리 비용(모니터링 검사 및 부작용 치료 등)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불
- (2) 사전에 협의된 검사 및 치료 항목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불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비용으로 지원 가능

## 다)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 의뢰 협조 및 요청 사항

- 보건소는 '<서식 67> 소아청소년 접촉자 진료 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할 의료기관에 공문으로 발송
- 신속한 검사 요청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진단 시 지침(국가결핵관리 및 결핵 진료지침) 준수 요청
- 의료기관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보건소장에 즉시 통보 요청

## 6) 조사 대상 기관 역할

가) 기관장은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집단시설 접촉자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나) 기관장은 결핵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역학조사 해당 범위의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57>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다) 기관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교육 시행



## 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 가) 역학조사의 시행

- (1) 결핵으로 신고된 교직원의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접촉자들에 대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시행
- (2) 원아가 활동성 결핵환자일 때(폐결핵 및 폐외결핵 모두 포함)
  - 가족 중 결핵환자 유무 확인
  - 가족 중 결핵환자 없으면 기관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사 실시
    -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역학조사 실시
      - \* 역학조사 및 가족접촉자에 속하지 않은 추가 접촉자 명단은 질병관리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5세 미만 결핵환자관리'에 등록

#### 나) 역학조사의 범위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범위(밀접/일상접촉자) 선정

### 2) 접촉자조사 방법

#### 가) 결핵 검사 : 흉부 X선 검사

#### 나) 잠복결핵감염 검사

- (1) 원아 : TST를 이용하여 진단
  - 원아가 만 2세 미만인 경우
    - : 「영유아(생후 4주 이상~24개월 미만) 검사법」 참조
  - 원아가 만 2세 이상인 경우
    - : 「접촉자 TST 검사법」 참조
  - 원아가 BCG를 1세 이후에 접종 받았거나 2회 이상 접종 받은 경우
    - : 「접촉자 IGRA 검사법」 참조
- (2) 교직원 : 「접촉자 IGRA 검사법」 또는 「접촉자 TST/IGRA 병합 검사법」 참조



## 3) 설명회

가) 대상 : 접촉자(원아)의 보호자 및 교직원

나) 내용 : 역학조사 실시 배경 및 조사 내용 설명

## 4)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접촉자조사

- 접촉자 중 원아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에서 접촉자조사에 필요한 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등 가능(업무 협약 형태)

## 가) 접촉자조사 의뢰 가능 검사 항목

- 흉부 X선 검사(필요시 흉부 CT 검사)
- 객담검사(항산균 도말검사, 배양검사, TB-PCR, Xpert MTB/RIF, 약제 감수성검사 등)
- 잠복결핵감염 검사(TST 검사, IGRA 검사\*)

※ 아래의 TST 제외대상자는 IGRA로 대체 가능

- 1) 주사부위가 TST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화상, 피부감염 등)
- 2) TST가 피부를 심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간 질환자, 전신성홍반루푸스, 백혈병, 심한 아토피, 켈로이드 피부, 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
- 3) BCG를 1세 이후에 접종하였거나, 2회 이상 접종 받은 경우

## 나) 잠복결핵감염 진단자 관리

- (1)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진료비, 약제비 등) 및 부작용 관리 비용(모니터링 검사 및 부작용 치료 등)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불
- (2) 사전에 협의된 검사 및 치료 항목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불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비용으로 지원 가능

## 다)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 의뢰 협조 및 요청 사항

- 보건소는 소아·청소년과에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서식 67> 소아청소년 접촉자 진료 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할 의료기관에 공문으로 발송
- 신속한 검사 요청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진단 시 지침(국가결핵관리 및 결핵 진료지침) 준수 요청
- 의료기관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를 보건소에 즉시 통보

## 5) 조사 대상 기관 역할

- 가) 기관장(원장)은 원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집단시설 접촉자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 나) 기관장(원장)은 결핵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역학조사 해당 범위의 접촉자 명단을 ‘<서식 57>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 다) 결핵역학조사 대상자들의 학부모에 대한 설명회 개최 시 설명회 알림, 장소 제공 및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 ※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 ※ 학부모에게 ‘<서식 58> 접촉자조사 설문지, <서식 61>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 라) 기관장(원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 마) 기관장(원장)은 결핵환자 접촉자조사를 외부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건소와 협조
- 바) 기관장(원장)은 결핵환자 접촉자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다. 초·중·고등학교

###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 가) 역학조사의 시행

- (1) 결핵으로 신고된 학생 또는 교직원 중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시행
- (2) 6개월 이내에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역학조사의 범위

발생 구분	접촉자조사 대상	검사
결핵으로 신고된 학생 또는 학급 수업에 들어가는 교직원 1명의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학급(반)생 (교직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 검사</li> <li>• 잠복결핵감염 검사</li> </ul>
교직원 또는 학생에 관계없이 한 학교에서 6개월 이내 활동성 결핵환자 2명 이상	해당 학교 전원 (교직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 검사</li> <li>• 잠복결핵감염 검사 (지표환자 밀접접촉자)</li> </ul>

#### (1) 지표환자가 1명인 경우

- 밀접접촉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시행
  - \* 같은 교실을 사용하는(같은 반 또는 이동수업 반 등) 접촉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 조사 결과 추가환자가 발견되거나, 잠복결핵감염률이 높은 경우 범위 확대 실시
  - \* 단, 접촉자조사 대상 범위는 지표환자의 전염성 강도 등 고려

#### (2) 6개월 이내에 결핵환자가 2명이 발생한 경우(전염성 여부 상관없음)

-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검사
  - \* 연관성 없는 결핵환자 2명이 발생한 경우 전체 결핵검사는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의 판단에 따라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잠복결핵감염 검사 : 2명의 결핵환자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환자의 전염성 및 접촉 강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 확대 가능
  - \* 서로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결핵환자의 접촉자 대상 검사

## 2) 접촉자조사 방법

가) 결핵 검사 : 흉부 X선 검사

나) 잠복결핵감염 검사

(1) 초등학교

- 학생 : 「접촉자 TST 검사법」 참조
- 교직원: 「접촉자 IGRA 검사법」 또는 「접촉자 TST/IGRA 병합 검사법」 참조

(2) 중·고등학교(학생 및 교직원)

- 「접촉자 IGRA 검사법」 또는 「접촉자 TST/IGRA 병합 검사법」 참조

## 3) 설명회

가) 대상 : 접촉자(학생)의 보호자 및 교직원

나) 방법 : 조사 안내문 배포로 대체

## 4) 조사 대상 기관 역할

가) 학교장은 학교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집단시설 접촉자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나) 학교장은 결핵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역학조사 해당 범위의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57>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다) 결핵역학조사 대상자들의 학부모에 대한 설명회 시 적극 협조

- \*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 \* 학부모에게 ‘<서식 58~59> 접촉자조사 설문, <서식 61~63>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라) 학교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교육 시행

마) 보건교사와 학급의 담임교사는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라. 대학교

##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 가) 역학조사의 시행

- (1) 결핵으로 신고된 학생 또는 교직원의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시행
- (2)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연관의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같은 수업을 듣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자주 접촉하거나 기숙사 등 공통된 실내공간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 나) 역학조사의 범위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범위(밀접/일상접촉자) 선정
  - 밀접접촉자 : 강의실을 오랫동안 공유하는 경우(예, 의과대학 등), 동아리, 기숙사 및 친한 친구 등 고려
- 추가환자가 발견된 경우, 추가환자의 밀접접촉자로 조사 범위 확대 가능

## 2) 접촉자조사 방법

## 가) 결핵 검사 : 흉부 X선 검사

## 나) 잠복결핵감염 검사

: 「접촉자 IGRA 검사법」 또는 「접촉자 TST/IGRA 병합 검사법」 참조

## 3) 조사 대상 기관 역할

가) 기관장(대학 총장 및 학과장)은 학교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집단시설 접촉자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 나) 기관장(대학 총장 및 학과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 역학조사 해당 범위의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57>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 결핵역학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설명회 및 접촉자조사를 학교에서 개최 시 적극 협조
  - \* 설명회·접촉자조사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접촉자조사 시 필요한 준비 등

다)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62~63>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 및 <서식 59> 접촉자 설문지' 배부

- 접촉자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건소로 방문하여 조사 받도록 안내
-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라) 기관장(대학 총장 및 학과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 마. 군부대

###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 가) 역학조사의 시행

- (1) 결핵으로 신고된 부대원의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시행
- (2)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연관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3) 의무경찰은 군부대 기준에 따라 조사 시행

#### 나) 역학조사의 범위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범위(밀접/일상접촉자) 선정
- 추가환자가 발견된 경우, 추가환자의 밀접접촉자로 조사 범위 확대 가능

### 2) 접촉자조사 방법

가) 결핵 검사 : 흉부 X선 검사

나) 잠복결핵감염 검사

: 「접촉자 IGRA 검사법」 또는 「접촉자 TST/IGRA 병합 검사법」 참조

### 3) 조사 대상 기관의 역할

가) 기관장은 아래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상병 건강검사’ 및 ‘간부 건강검사’ 결과, 결핵환자나 결핵 의심자로 통보 받았을 때
  - (2) 야전의무부대 또는 군병원로부터 결핵환자를 통보 받았을 때
  - (3) 민간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단 받거나 또는 치료 중인 부대원을 발견했을 때
- 나) 기관장은 2주 이상의 심한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등 결핵이 의심이 되는 부대원에게 군 의료시설 또는 보건소로 방문하여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를 시행하도록 지도
- 다) 기관장은 결핵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역학조사 해당 범위의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57>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 \*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62~63>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 및 ‘<서식 59> 접촉자 설문지’ 배부
- 라) 기관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교육 시행
- 마) 기관장은 부대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결핵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 (1) 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시 복약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조
  - (2) 접촉자조사를 시행하는 부대의 해당 부대장과 보건 담당자(군의원, 간호장교 등)는 해당 보건소의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잠복결핵감염 진단, 치료 및 부작용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
- 바) 접촉자조사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훈련소의 경우 타 지역으로 자대 배치)하는 경우 해당 부대장 및 보건 담당자(군의원, 간호장교 등)에게 통보하여 접촉자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사) 국군의무사령부 및 군 사령부는 해당 역학조사 시행 협조 및 관리

## 바.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 교정시설

-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 가) 역학조사의 시행



- (1) 결핵으로 신고된 시설에 소속된 사람(종사자, 입소자, 재소자 등 모두 포함) 중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시행
- (2)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연관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역학조사의 범위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범위(밀접/일상접촉자) 선정
- 추가환자가 발견된 경우, 추가환자의 밀접접촉자로 조사 범위 확대 가능
-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 '결핵 전문역학조사반'의 판단에 따라 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실시 가능

### 2) 접촉자조사 방법

#### 가) 결핵 검사 : 흉부 X선 검사

#### 나) 잠복결핵감염 검사

: 「접촉자 IGRA 검사법」 또는 「접촉자 TST/IGRA 병합 검사법」 참조

### 3) 조사 대상 시설의 역할

가) 시설장은 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집단시설 접촉자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 나) 시설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 역학조사 해당 범위의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57>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 \*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62~63>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 및 '<서식 59> 접촉자 설문지' 배부
- 접촉자조사를 시설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 접촉자조사 시행 장소 제공
- 기관 내 추가 결핵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 결핵환자 접촉자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사. 직장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가) 역학조사의 시행

- (1) 결핵으로 신고된 직장에 소속된 사람 중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시행
- (2)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연관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역학조사의 범위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범위(밀접/일상접촉자) 선정
- 추가환자가 발견된 경우, 추가환자의 밀접접촉자로 조사 범위 확대 가능
-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 '결핵 전문역학조사반'의 판단에 따라 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실시 가능

2) 접촉자조사 방법

가) 결핵 검사 : 흉부 X선 검사

나) 잠복결핵감염 검사

: 「접촉자 IGRA 검사법」 또는 「접촉자 TST/IGRA 병합 검사법」 참조

3) 조사 대상 기관(사업주)의 역할

가) 사업주는 직장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집단시설 접촉자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나) 사업주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 역학조사 해당 범위의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57>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 \*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62~63>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 및 '<서식 59> 접촉자 설문지' 배부

- 결핵역학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설명회 개최 시 설명회 알림, 장소 제공 및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 접촉자조사를 현장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제공
  - 접촉자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건소 방문하여 조사 받도록 안내
  -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다) 사업주는 기관 내 추가 결핵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 아. 의료기관

###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 가) 역학조사의 시행

- (1)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으로 신고되어,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표10]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 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법」 제78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단,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따라 결핵역학조사 시행  
 ※ 의료기관 종사자 외 결핵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조사 및 관리 실시  
 (「결핵 진료지침(3판)」 pp.201~204 참조)

- (2) 전염성 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서로 연관성 있거나 연관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역학조사의 범위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범위(밀접/일상접촉자) 선정
- 추가환자가 발견된 경우, 추가환자의 밀접접촉자로 조사 범위 확대 가능



## 2) 접촉자조사의 주체

### 가) 종합병원급 기관

- 기관이 자체적으로 접촉자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조사 시행 전 ‘<서식 68> 의료기관 결핵 접촉자조사서(1~5번)’를 작성 후 관할 보건소에 제출
  - ※ 관할 보건소는 서식 검토 후 협의된 범위 내에서 조사 비용 지원
- 기관은 접촉자조사 완료 후 ‘<서식 68> 의료기관 결핵 접촉자조사서(6~7번)’를 작성 후 7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제출
- 관할 보건소는 조사 결과를 받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관련 비용 지급

[표11]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이상의 전문의가 있는 병원

### 나) 의원 및 ‘가)’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 관할 보건소와 결핵조사과에서 역학조사 시행 및 관리

## 3) 접촉자조사 방법

### 가) 결핵 검사 : 흉부 X선 검사

### 나) 잠복결핵감염 검사

: 「접촉자 IGRA 검사법」 또는 「접촉자 TST/IGRA 병합 검사법」 참조

## 4)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역할

가) 의료기관장은 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집단시설 접촉자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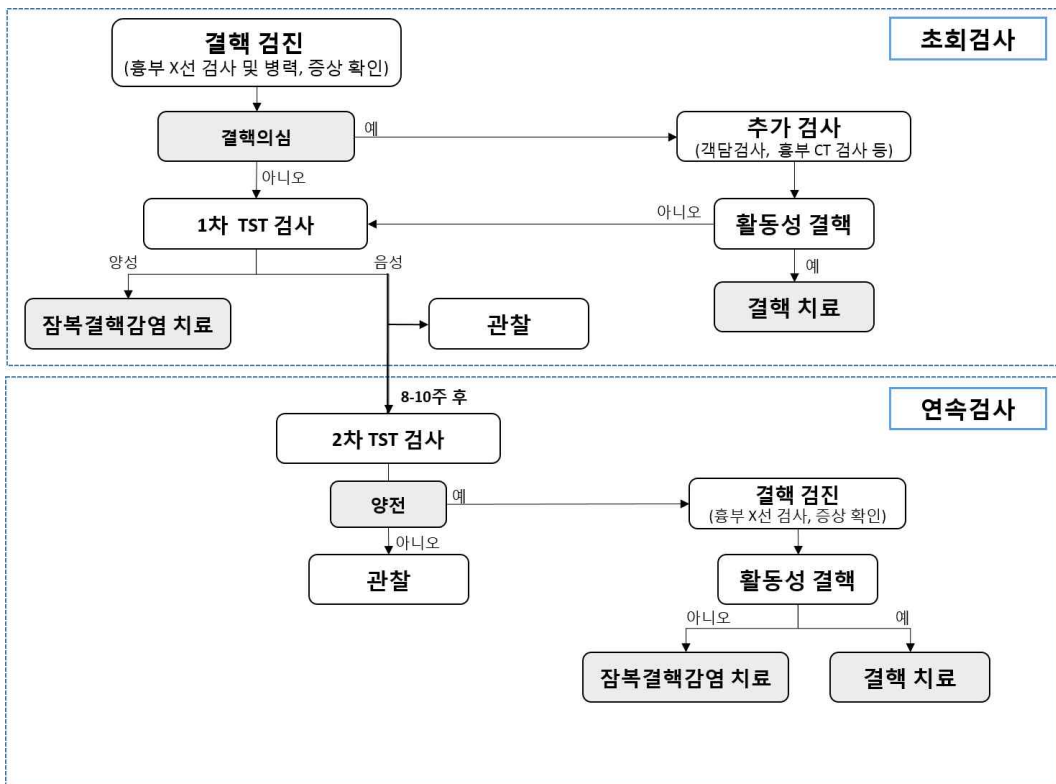
### 나) 의료기관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보건당국에 의뢰하는 경우)

- 역학조사 해당 범위의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57>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 \*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62~64>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 및 ‘<서식 59> 접촉자 설문지’ 배부

- 접촉자조사 시행 장소 제공
- 기관 내 추가 결핵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 결핵환자 접촉자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접촉자조사 관련 자료 보건당국에 제출 협조

## 5.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사

### 가. 접촉자 TST검사법



- 1) 모든 접촉자조사 대상자에 대해 활동성 결핵을 배제하기 위한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및 병력, 증상 확인) 실시



## 2) '객담 도말 양성 환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조사 즉시 초회검사(1차 TST) 실시

가) 초회검사(1차 TST)에서 양성인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나) 초회검사(1차 TST)에서 음성인 경우, 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 기준으로 8-10주 이후 연속검사(2차 TST) 시행

※ 단, 초회검사 시점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가 가까운 경우에는 8주까지 기다린 후 초회 검사만 시행 가능

다) 2차 TST에서 양전(positive conversion)된 경우 결핵 검사를 시행하고, 활동성 결핵인 경우 결핵 치료, 활동성 결핵이 배제된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행

라) 2차 TST에서 양전(positive conversion)되지 않은 경우 관찰

## [표12] TST 양전 (positive conversion)

① 1차 TST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접촉자가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을 기준으로 8주 이상 지난 시점에 시행한 2차 TST 결과로 판정

\*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 지표환자의 치료 시작일(또는 진단일), 객담검사 시행일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② 2차 TST에서도 음성이면 결핵균 감염을 배제할 수 있음

③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양전을 판정하며 이는 최근 감염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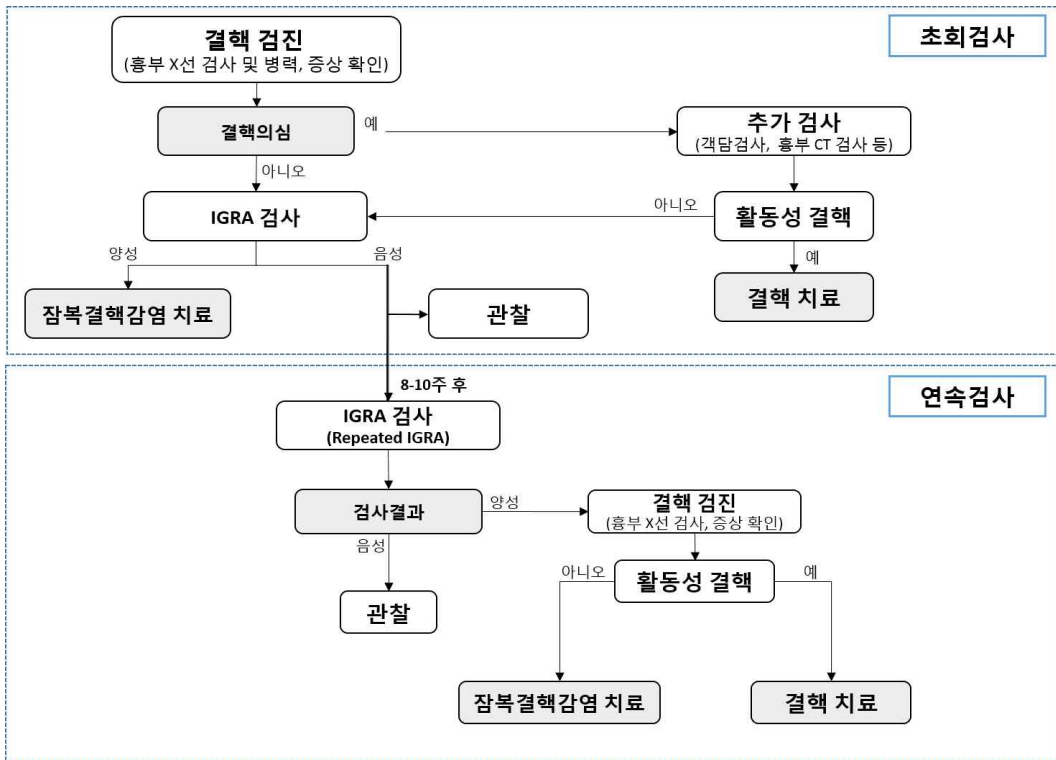
구분	2차 검사 결과	양전 예시
5세 미만, 면역저하자	1차 결과보다 6mm 이상 증가한 모든 경우	3mm → 9mm (○)
5세 이상, 정상면역자	10mm 이상이면서 1차 결과보다 6mm 이상 증가한 경우	6mm → 12mm (○)
	7mm → 12mm (×) : 2차 결과값이 10mm 이상이나 6mm 이상 증가하지 않음 3mm → 9mm (×) : 6mm 이상 증가했으나 2차 결과값이 10mm 미만	

\* BCG 미접종자는 첫 번째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5mm 이상이면 양성(양전)으로 판정

## 3) '객담 도말 양성 환자의 일상접촉자(Casual contacts)' 또는 '도말 음성 환자의 접촉자'

가) 결핵환자의 치료 시작 시점 또는 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을 기준으로 8주가 경과할 때까지 기다린 후 초회검사(1차 TST)만 시행 가능

## 나. 접촉자 IGRA검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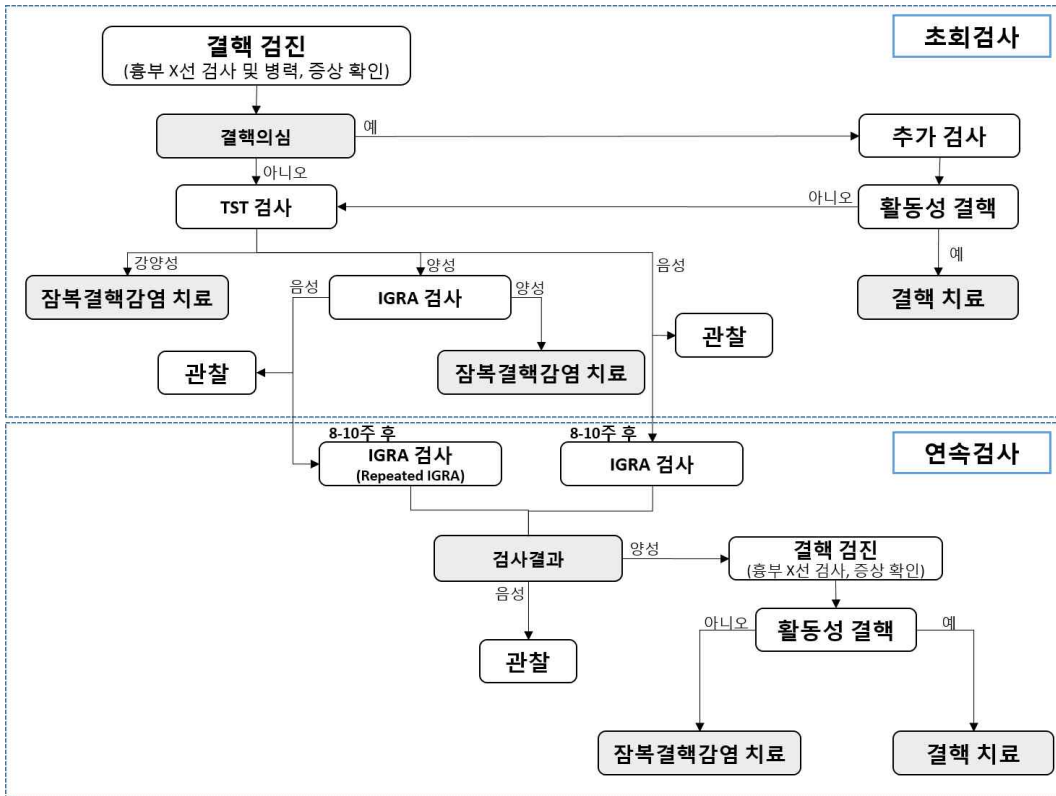


- 1) 모든 접촉자조사 대상자에 대해 활동성 결핵을 배제하기 위한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및 병력, 증상 확인) 실시
- 2) ‘객담 도말 양성 환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조사 즉시 초회검사(IGRA) 실시
  - 가) 초회검사(IGRA)에서 양성인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 나) 초회검사(IGRA)에서 음성인 경우, 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 기준으로 8-10주 이후 연속검사(repeated IGRA) 시행
    - ※ 단, 초회검사 시점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가 가까운 경우에는 8주까지 기다린 후 초회 검사만 시행 가능
  - 다) 연속검사의 IGRA 검사 양성인 경우 결핵 검사를 시행하고, 활동성 결핵인 경우 결핵 치료, 활동성 결핵이 배제된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행
  - 라) 연속검사의 IGRA 검사 음성인 경우 관찰



- 3) ‘객담 도말 양성 환자의 일상접촉자(Casual contacts)’ 또는 ‘도말 음성 환자의 접촉자’  
 가) 결핵환자의 치료 시작 시점 또는 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을 기준으로 8주가 경과할 때 까지 기다린 후 초회검사(IGRA)만 시행 가능

다. 접촉자 TST/IGRA 병합 검사법



- 1) 모든 접촉자조사 대상자에 대해 활동성 결핵을 배제하기 위한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및 병력, 증상 확인) 실시
- 2) ‘객담 도말 양성 환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조사 즉시 초회검사 실시
  - 가) 초회 TST 검사에서 강양성인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 나) 초회 TST 검사에서 양성(10-14mm)인 경우 IGRA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IGRA 검사에서도 양성인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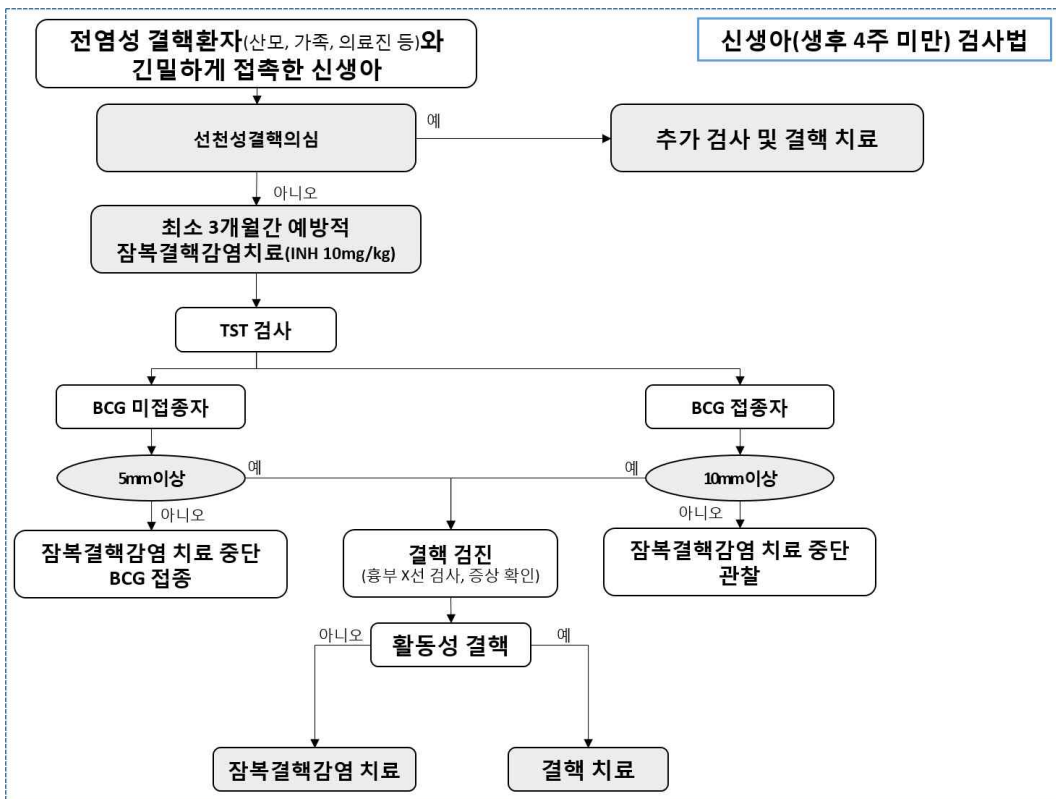
다) 초회검사 결과 'TST 음성' 또는 'TST 양성 & IGRA 음성'인 경우 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 기준으로 8-10주 이후 연속검사(IGRA 또는 repeated IGRA) 시행

※ 단, 초회검사 시점이 환자의 치료 시작 시점 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에 가까운 경우, 주치의 등의 판단에 따라 8주가 경과하기까지 기다린 후 초회검사만 시행하고 연속검사는 생략 가능

3) '객담 도말 양성 환자의 일상접촉자(Casual contacts)' 또는 '도말 음성 환자의 접촉자'

가) 결핵환자의 치료 시작 시점 또는 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을 기준으로 8주가 경과할 때 까지 기다린 후 초회검사(IGRA)만 시행 가능

라. 신생아(생후 4주 미만) 검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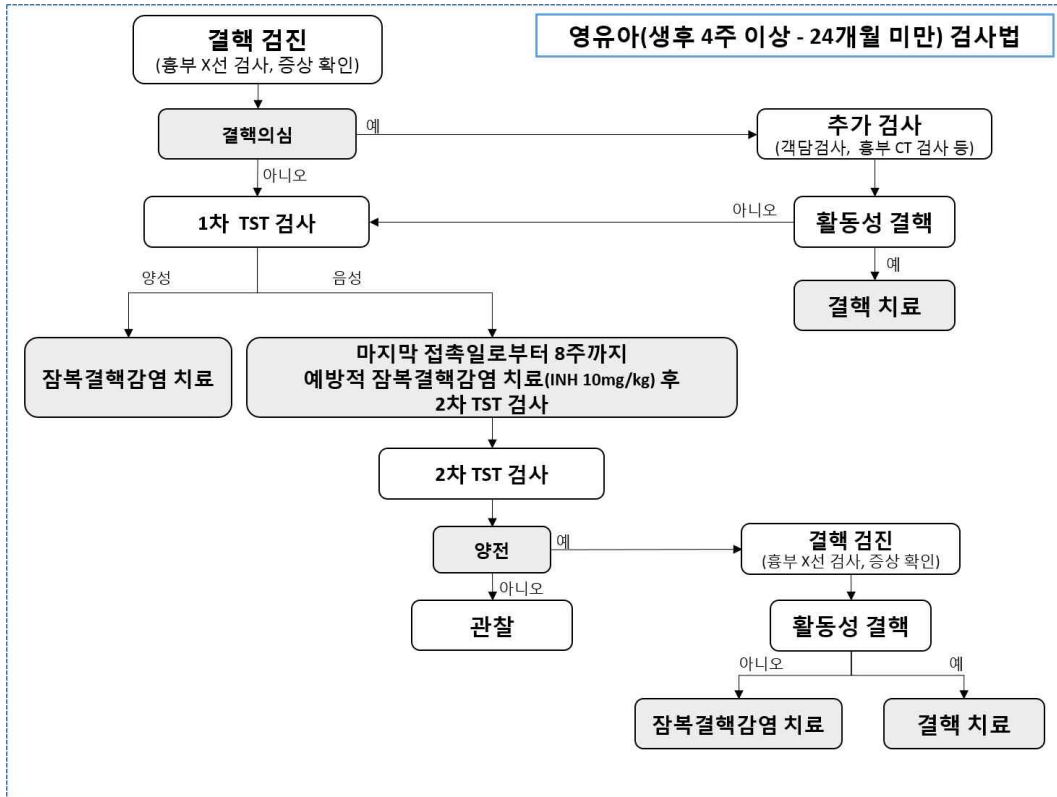


## &lt; 신생아 TST의 양성 기준 &gt;

- BCG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경결이 5mm 이상
- BCG 접종한 경우는 경결이 10mm 이상

- 1) 전염성 결핵환자(산모, 가족, 의료진 등)와 긴밀하게 접촉한 신생아는 임상적으로 선천 결핵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추가 검사 시행 후 확진 시 결핵 치료
- 2) 선천 결핵이 의심되지 않으면 최소 3개월 간 이소니아지드 투여(10mg/kg) 후 TST 검사 시행
- 3) TST 양성이면 활동성 결핵을 배제하기 위한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및 병력, 증상 확인)을 실시하고, 활동성 결핵인 경우 결핵 치료를 실시하고 활동성 결핵이 배제된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유지
  - ※ BCG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 후 BCG 접종하지 않음
- 4) TST 음성이면 이소니아지드 복용을 중단하고 BCG를 접종하지 않은 신생아는 BCG 접종

마. 영유아(생후 4주 이상~24개월 미만) 검사법



- 1) 활동성 결핵을 배제하기 위한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및 병력, 증상 확인) 실시
- 2) 1차 TST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 3) 1차 TST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지표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8주 이후 2차 TST 시행. 단, 2차 TST 시행 전까지 이소니아지드 투여(INH 10mg/kg)
- 4) 1차 TST 검사 시점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에 가까운 경우에는 8주가 되는 시점까지 이소니아지드를 투여하다가 1차 TST시행 가능
- 5) 2차 TST에서 양전된 경우 결핵 검사를 시행하고, 활동성 결핵인 경우 결핵 치료, 활동성 결핵이 배제된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
  - \* TST 양전은 접촉자 TST 검사법 참조
- 6) 2차 TST에서 양전이 되지 않은 경우, 이소니아지드 투여를 중단하고 관찰



## 6.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관리

### 가. 잠복결핵감염 치료 전 확인 사항

#### 1) 잠복결핵감염 진단자의 활동성 결핵 배제

- 가) 활동성 결핵을 배제하지 않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행한 경우 내성결핵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활동성 결핵 배제
- 나) ‘흉부 X선 검사 유소견자’ 또는 ‘결핵 관련 유증상자’는 객담검사 추가 실시
- 다) 필요 시 추가 검사(흉부 CT 검사, 기관지내시경 검사 등) 시행

#### 2) 지표환자의 약제감수성검사 결과 확인

##### 가) 지표환자의 신속감수성검사 결과(Xpert MTB/RIF 포함)

- (1) 지표환자가 재발환자인 경우, 또는 객담 도말검사 양성인 환자인 경우 반드시 신속감수성검사 결과 확인
- (2) 결핵역학조사와 관련된 지표환자가 민간병원에서 신고된 경우, 병원에 신속감수성검사 실시 협조 요청
  - 필요시 보건소에서 신속감수성검사 실시

##### 나) 지표환자의 배양검사 및 약제감수성검사 결과

- (1) 지표환자의 배양검사 및 약제감수성검사 결과 확인
  - 특히 지표환자의 신속내성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 약제감수성검사 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 (2) 배양검사 결과 확인 시 비결핵항산균(NTM) 여부 확인

#### 3) 치료 동의 절차

-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 및 동의 후 시작
  - ※ <서식45> 잠복결핵감염 치료 동의서(영문 포함)

## 4) 치료 전 검사

가) 간기능검사(AST/ALT/빌리루빈), 일반혈액검사(CBC), 신기능검사(BUN/Cr) 시행

- (1)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기준 값 확인을 위해 치료 전 검사 시행
- (2) 소아의 경우(초등학생 포함) 특별한 간질환 병력이 없고, 담당 진료의사(보건소 진료의사)의 임상적 관찰에서 특이 소견이 없는 경우 검사 생략 가능

## 나.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

- 대상자의 연령, 지표환자의 약제 감수성 검사결과, 간독성 위험인자, 흉부 X선 소견 등을 고려하여 치료 방법 결정

## 1) 지표환자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 방법

가) 감수성결핵 : 치료 순응도 등을 고려하여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

- (1)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9H)
- (2)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 요법(3HR)
- (3) 리팜핀 4개월 요법(4R)

## 나) 내성결핵

- (1) 이소니아지드(INH) 단독 내성 결핵 : 4R 요법
- (2) 리팜핀(RIF) 단독 내성 결핵 : 9H 요법
- (3) 다제내성 결핵
  - (가) 추천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은 없음
  - (나) 잠복결핵감염자(또는 보호자)에게 결핵 증상 등을 알려주고 증상 발현 시 조기에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결핵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육 시행
  - (다)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추적하여 발병 여부 감시(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추구 흉부 X선 검사 시행)
  - (라) 소아 및 면역저하자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경우 결핵 관련 전문의에게 의뢰



2) 지표환자의 약제감수성검사 결과 확인 전 또는 확인 불가인 경우

가) 진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

나)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 후 지표환자의 약제감수성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 내용 점검

※ 예) 3HR로 치료 중 INH 내성이 확인되면 INH 중단, RIF만 유지(4R로 치료 방법 변경)  
→ 치료 시작 시점으로부터 4개월째 치료 완료

다. 추구 관리

1)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약제를 중단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도록 교육

※ 부작용 증상 : 오심, 구토, 복통, 황달, 전신 쇠약감, 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쉽게 발생하는 멍, 출혈증상, 피부발진 등

2) 매달 병력 청취 및 진찰

- 잠복결핵감염 치료자는 복용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해 ‘<서식 69>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기본 문진표’ 작성
-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진료 시 추구검사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서식 71>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는 필요 시 작성)

3) 정기적인 추구검사 실시

가) 추구검사 : 간기능검사(AST/ALT/빌리루빈), 일반혈액검사(CBC), 신기능검사(BUN/Cr)

나) 검사 시기 : 치료 시작 이후 2주, 4주 및 이후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검사 실시

※ 소아는 일률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1개월마다 진료의사의 임상적 관찰을 확인

4) 치료 전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간질환의 위험의 인자가 있는 경우 등 치료 부작용 관련 요관찰군\*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간기능 검사 시행

※ 요관찰군 : 간질환 과거력, 만성 간질환, 기저 간기능검사 이상, 알코올 중독, 임신부 등

## 5) 추구 흉부 X선 검사 시행

## 가)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인 자

-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 및 종료 시점에 추구 흉부 X선 검사 시행

## 나)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

- 잠복결핵감염 치료 미실시 또는 중단 시점으로부터 1년간 3개월 간격으로 추구 흉부 X선 검사 시행

※ 단, 3개월 이전이라도 결핵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검사

## 다)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 진단자

- 접촉자조사 시작 시점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추구 흉부 X선 검사 시행

※ 단, 주치의의 판단에 따른 발병 위험도에 따라 검사 기간 및 간격은 조절 가능

## 6) 부작용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진료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함

## 라. 치료 결과

## 1) 완료

- 정해진 잠복결핵감염 치료 기간 동안 복약을 완수하여 치료가 종료된 경우

치료요법	복용 기간(횟수)	복용 주기
3개월 이소니아지드+리팜핀(3HR)	4개월 이내 90회	매일
4개월 리팜핀(4R)	6개월 이내 120회	매일
9개월 이소니아지드(9H)	12개월 이내 270회	매일

## 2) 중단

- 정해진 잠복결핵감염 치료 기간 및 복약을 완수하지 못하여 치료가 종료된 경우
- 부작용(피부/간기능/혈소판이상/기타) 발생으로 주치의 판단 하에 치료가 종료된 경우



## 3) 다른 기관으로 전원

-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 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기관으로 치료를 의뢰하여 전원된 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
  - ※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타 지역으로 이동 시 전출지 보건소에 '<서식 70>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전원 협조 요청서'를 작성하고, '<서식 71>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를 첨부하여 송부
- 보건소는 전원된 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 결과를 회신 받아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 마.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 관리

※ 자세한 내용은 <VI-제2절-5. 치료 부작용 관리> 참조

## 1)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 발생 시 조치

- 부작용 증상 발생 시 즉시 투약 중단 후 주치의 상담을 받도록 안내
  - 담당 주치의가 반드시 진찰 후 치료 지속 여부 결정

## 2) 부작용 발생 보고

## 가) 경증 부작용

: 경과 관찰 또는 치료 중단으로 증상 완화 및 검사수치 정상화 등이 가능한 경우

- 주치의 진료 후 투약 중단 등의 조치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발생 보고
  - ※ 참고 '<서식 83>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경증) 보고서'

## 나) 중증 부작용

: 부작용 관리를 위해 입원 등의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발생 즉시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로 유선 보고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중증 부작용 발생 보고
  - ※ 참고 '<서식 84>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중증) 보고서'



## 7.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현황(잠정통계)

- 2019년 11월 기준으로 접촉자 12만여명 대상 접촉자 검사결과 추가결핵환자 133명, 잠복결핵감염자 9,914명 조기 진단

< 집단시설별 결핵역학조사 현황 >

구 분	조사시행 (건)	접촉자 (명)	추가결핵환자 (명, %)	잠복결핵감염 검사자(명)	잠복결핵감염자 (명, %)
계	4,134	117,435	133(0.1)	51,642	9,914(19.2)
학 교	482	32,907	21(0.1)	18,592	1,339(7.2)
어린이집	37	1,519	0(0.0)	1,112	142(12.8)
유치원	22	1,230	0(0.0)	661	95(14.4)
초등학교	53	2,284	0(0.0)	1,364	163(12.0)
중학교	45	4,304	0(0.0)	2,821	159(5.6)
고등학교	101	12,501	7(0.1)	6,786	386(5.7)
대학교	216	10,207	14(0.1)	5,349	338(6.3)
기타	8	862	0(0.0)	499	56(11.2)
의료기관	723	23,983	24(0.1)	7,795	2,122(27.2)
군부대	44	1,655	2(0.1)	948	125(13.2)
경 찰	17	519	0(0.0)	149	29(19.5)
사회복지시설	853	26,229	40(0.2)	5,937	1,794(30.2)
교정시설	46	862	0(0.0)	380	161(42.4)
직 장	1,760	26,643	34(0.1)	14,754	3,973(26.9)
기 타	209	4,637	2(0.0)	3,087	371(12.0)

\* 자료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환자 기준(2019.11월 기준, 잠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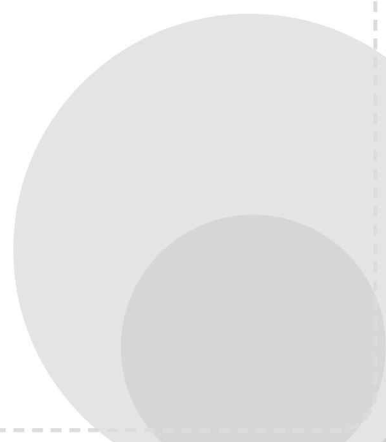


V

## 결핵 검진 및 치료

제1절 결핵 검진사업 / 216

제2절 결핵 치료(결핵진료지침 권고요약 일부 발췌) /  
226



# 제 1 절

## 결핵 검진사업

### 알려두기

결핵 검진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절은 ‘흉부 X선 검사’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지자체의 ‘결핵 검진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결핵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접촉자 역학조사’는 해당 지침 참고

## 1. 결핵 검진 개요

### 가. 대상

#### 1) 결핵 발병의 고위험군

-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관련 유소견자
- 만65세 이상 노인 전체
- 면역저하자 및 만성질환자
- 결핵 발생률이 높은 국가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 노숙인 등 취약계층
- 결핵 관련 증상이 있는 자 (2주 이상 기침, 가래 등)

※ 특히 다음의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이동검진 실시를 적극 고려

-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수용자(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여성 등 다문화가정
- 의료이용접근이 어려운 자(무직자, 일용직 노동자,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거주자)
- 결핵 고위험군(광부,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 노숙인, 이탈주민) 등

- 2)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효과가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 종사자·교직원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 기숙사 입소생 등
- 3)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아 결핵 검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 나. 검진 방법

- 1) (대상자 선정) 결핵 발병의 고위험군 또는 결핵 발생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효과가 큰 결핵 검진 대상 집단 선정
- 2) (검진 계획 수립) 시·도별, 시·군·구별 결핵 검진 계획 수립
  - ※ 원활한 사업 수행과 치료 연계 등을 위하여 지자체 보건복지프로그램 등과 연계 시행 권고
- 3) (검진 실시) 보건소 방문 또는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흉부 X선 검사
  - ※ 임신부 또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자는 가능한 한 X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객담검사만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방사선을 차폐하는) 납치마를 착용한 후 복부를 가리고 촬영 실시
  - ※ 흉부 X선 검사의 2차 판독 필요 시 영상의학과, 결핵과, 내과 전문의 등에 의뢰

## 다.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1) 정상소견 : 결핵예방수칙 안내([IX. 결핵예방홍보] 참조)

- 2) 유소견자 : 유증상자\* 또는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 객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구검사(흉부 X선 검사) 실시하도록 추구관리 및 결핵예방수칙 안내([IX. 결핵예방홍보] 참조)

\* 유증상자 :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있음이 문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

\*\* 유소견자 : 흉부 X선 판독 결과, 결핵 의심 소견 또는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

### 3) 결핵확진자

- (활동성 결핵인 경우) 결핵환자 신고·보고 치료 실시 및 환자관리
  - ※ 관련 행정 조치 실시 : 결핵환자등(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II-제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및 III. 결핵환자 관리] 등 시행
- (활동성 결핵이 아닌 경우) 과거 결핵 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에 해당되는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 \* 주치의 판단에 따라 추가 잠복결핵감염 검사 실시 가능

####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 (Spontaneously healed TB lesion)

흉부 X선 검사에서 유소견이면서, 활동성 결핵이 배제되고, 과거 결핵(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없는 경우로,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 결핵 발병의 상대위험도가 6~19 배 높으므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권고함

(자료원 : 결핵진료지침(3판))

## 라. 행정사항

- 1) (무료 검진) 지자체에서 보건소 내소자 및 이동검진을 통해 실시하는 결핵 검진은 지자체별 국가결핵예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료로 실시
- 2) (예산 집행) 보건소의 결핵 검진과 관련한 비용(결핵 검진 위탁사업비, 검사 소모품비, 판독료 등)은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음
  - ※ '취약계층 이동검진'의 경우 기 활용 중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 검진 관리 > 취약계층검진관리(등록)' 메뉴 이용(검진 의뢰, 결과 입력) 가능

## 2. 대상별 검진 사업

### 가. 지자체별 자체 노인 대상 결핵 검진 및 홍보

#### 1) 목적

결핵 발생·사망률이 높고 유행 파급력이 큰 전국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외 지자체 여건에 따라 연 1회 결핵검진 제공을 통해 결핵 조기발견 및 타인으로 전파 차단

#### 2) 대상

만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

※ 노인 인구 밀집 지역·취약 지역 거주자, 환자 발견율 높은 시설·기관 이용자 우선 검진

#### 노인 대상 이동결핵검진 우선순위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재가와상 노인(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자택 거주자)
- 독거노인
- 건강검진 미수검자
- 기타 결핵검진 사각지대 노인

#### 3) 결핵 검진 방법

가) 검진 내용 : 결핵검진(흉부 X선 검사 및 객담 검사)

나)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정상 소견 등 : 결핵예방수칙 안내[IX. 결핵예방 홍보] 참조 및 연 1회 이상 결핵검진 독려
- 유소견자 : 유증상자\* 또는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 객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구검사(흉부 X선 검사) 실시하도록 추구관리 및 결핵예방수칙 안내[IX. 결핵예방 홍보] 참조
  - \* 유증상자 :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있음이 문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
  - \*\* 유소견자 : 흉부 X선 판독 결과, 결핵 의심 소견 또는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



- 결핵확진자 : 결핵환자 신고·보고 치료 실시 및 환자관리
- ※ 관련 행정 조치 실시 : 결핵환자등(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Ⅱ-제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및 Ⅲ. 결핵환자 관리] 등 시행

다) 추진 방법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노인 결핵 검진 계획 수립·시행

- 흉부 X선 검사 실시 후 결핵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대상으로 객담 검사를 실시하고 검체 수집의 누락 방지
- 발견 환자 치료 및 유소견자 추구관리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검진을 향상과 치료 연계 등을 위해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등 지자체의 노인 대상 보건·복지프로그램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행 권고

4) 노인 대상 결핵 예방 홍보

가) (홍보 방향)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 결핵 관련 증상(2주 이상의 기침, 가래 등)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독려 홍보

나) (계획 수립) 연간 결핵 예방 홍보계획 수립 시 노인 대상 홍보계획 수립 포함 [IX. 결핵예방 홍보] 참조

다) (홍보 방법) 노인 대상 효과적인 접점 채널을 이용하여 현장 중심의 홍보 시행

- 지역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결핵예방 홍보·교육
-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 방문 시 결핵바로알기 홍보·교육 및 결핵 검사 독려
- 「결핵예방의 날(3.24)」 및 결핵예방주간 전·후로 노인 대상 결핵 검사 독려 등 집중 홍보
- 65세 이상 노인 대상 맞춤형 홍보물(가독성, 간결성 등 고려) 개발·보급

라) (홍보 메시지)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 결핵예방 메시지 (참고 안)

※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 결핵예방 홍보 메시지

- 만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보건소에서 무료 결핵검사를 받으세요.
- 결핵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 기침, 가래가 지속될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결핵검사 받으세요.
- 어르신, 기침할 땐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 결핵 신규환자 5명 중 2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 결핵은 매년 약 2.6만명의 환자 발생, 약 1.8천명이 사망하는 질병입니다.
-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결핵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 경제협력국가(OECD) 가입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 5) 행정 사항

- 가) (무료 검진) 보건소 내소자 및 이동 검진을 통해 검진을 실시하며, 검진비는 무료
- 나) (예산 집행) 보건소의 결핵 검진과 관련한 비용(결핵 검진 위탁사업비, 검사 소모품비, 판독료 등)은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 예산에서 집행 가능

## 나.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

### 1) 목적

기숙사 입소학생의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학교 내 결핵 전파 차단

### 2) 대상 및 시기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입소 예정 학생 포함)은 연 1회(입소 시)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함

※ 기숙사 입소 시에 결핵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입소 중(빠른 시일 이내)에 받도록 권고함

※ 타검진으로 결핵 검진(흉부 X선 검사)을 실시한 경우, 중복해서 검사할 필요 없음

#### < 학교 기준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 중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 대학교 : 대학 및 전문대학
- 이외 중등·대학교 과정의 비인가 학교 포함

### 3) 결핵 검진 방법

- 가) (대상자 확인) 보건소는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결핵 검진 필요성을 홍보하고, 입소 학생(입소 예정 학생 포함)의 결핵 검진 수요 파악



- 검진 대상자 선정 시 보건소와 학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함
- 특히, 결핵 고위험 국가\*에서 온 외국인유학생은 대상자 확인과 결핵 검진 철저

\* 결핵 고위험 국가(19개국) :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나) (결핵 예방 교육) 결핵의 증상, 결핵예방수칙(기침예절), 결핵 증상이 있을 시 결핵 검진, 연 1회 기숙사 결핵 검진(흉부 X선 검사) 등

※ 결핵예방교육 표준교육자료 : 결핵ZERO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tbzero> ‘결핵 자료’, ‘홍보센터’ 참고)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다) (결핵 검진 실시) 보건소와 학교는 협의하여 기숙사 입소학생에 대한 연 1회 흉부 X선 검사 실시

※ 타검진으로 결핵 검진(흉부 X선 검사)을 실시한 경우, 중복해서 검사할 필요 없음

#### 4)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가) 정상 소견 등 : 결핵예방수칙 안내[IX. 결핵예방 홍보] 참조

나) 유소견자 : 유증상자\* 또는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 객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구검사(흉부 X선 검사) 실시하도록 추구관리 및 결핵예방수칙 안내[IX. 결핵예방 홍보] 참조

\* 유증상자 :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있음이 문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

\*\* 유소견자 : 흉부 X선 판독 결과, 결핵 의심 소견 또는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

다) 결핵확진자 : 결핵환자 신고·보고 치료 실시 및 환자관리

※ 관련 행정 조치 실시 : 결핵환자등(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II-제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및 III. 결핵환자 관리] 등 시행

라) 전염성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해당학생에게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을 시행하며 치료를 통해 전염성이 소실된 이후 기숙사 입소하도록 권고, 해당 기숙사 결핵역학조사 시행

5) 행정사항

가) (무료 검진) 지자체에서 보건소 내소자 검진 및 이동검진을 통해 실시하는 결핵 검진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실시

※ 단, 결핵 검진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 규정에 따름

나) (예산 집행) 보건소의 결핵 검진과 관련한 비용(결핵 검진 위탁사업비, 검사 소모품비, 판독료 등)은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 예산에서 집행 가능

다) (결과 보고) 보건소는 학교로부터 전달받은 검진 결과를 '<서식 72>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검진 결과보고'에 따라 연말(1회)에 시·도로 보고

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증 판정자 추구 검진

1) 대상

일반건강검진(직장 및 지역 건강검진 등) 결과 폐결핵 의증(폐결핵 의심자)으로 판정된 자

※ '19년부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만20세 이상으로 확대됨

2) 내용 및 방법

< 업무 절차 >

업무수행기관	업무내용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 폐결핵 의증(폐결핵 의심자) 판정자의 명단을 질병관리 본부에 통보	
질병관리본부	• 통보받은 폐결핵 의증(폐결핵 의심자) 판정자의 명단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명단관리(등록)
보건소 (검진기관소재지)	• 관할 일반건강검진기관에 명단확인 및 검진대상자 등록 요청	명단확인관리
일반건강검진기관	• 명단 확인하여 신고 여부 등록 □ 결핵신고 □ 검진자등록 □ 신고대상아님	
일반건강검진기관	• 검진대상자 상세정보 등록 및 보건소(주민등록주소지) 의뢰	검진대상자관리
보건소 (주민등록주소지)	• 검진대상자 추구관리 - 객담검사 독려 및 결과 확인 - 결핵환자일 경우 결핵신고	검진자관리



## 가) 명단 통보

##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증(폐결핵 의심자)판정자의 명단을 받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검진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월 1회)

## 나) 명단 확인 및 검진대상자 등록

## • 일반건강검진기관 소재지 보건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결핵관리 > 검진자관리 > 명단확인관리’ 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관할 검진기관에 객담검사가 필요한 검진대상자 등록을 독려

## • 일반건강검진기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결핵관리 > 검진자관리 > 명단확인관리’ 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객담검사가 필요한 검진대상자를 등록

※ 등록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 검진자관리 > 명단확인관리’ 페이지의 ‘검진기관 신고여부’ 항목(결핵신고, 검진자등록, 신고대상아님 등) 중 선택

※ 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미보유 검진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검진대상자 등록은 검진기관 소재지 보건소에서 대신 입력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검진대상자관리’ 페이지에서 검진대상자에 대한 상세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추가 입력하고 검진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의뢰

※ 단,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중 통보된 명단에 누락된 경우 직접 추가 등록 가능

## 다) 검진대상자 추구관리 및 결과 등록

## • 검진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검진자 관리’ 페이지에서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 의뢰한 검진대상자 명단을 확인

- 검진대상자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객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선 등으로 안내하고 추구관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객담검사 결과 입력

※ 보건소,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 객담검사 시행할 경우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그 외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행 시 보건소가 확인하여 시스템에 대신 입력

※ 추구검진 결과 결핵환자로 확진되면 반드시 신고

## 라) 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검진자 관리’ 페이지에 등록된 자 중 객담 도말 및 배양검사를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자
  - ※ 객담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한 경우 검진대상자가 검진비 지원 신청 불필요함.
- 지원 내용 : 객담검사비 및 진찰료 본인부담금
  - ※ 객담검사비는 최대 3개 검체까지 지원 가능
  - ※ 검진비 지원은 국가결핵예방 예산 활용
- 신청 방법
  - 검진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객담검사를 받고 검진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보건소가 상환
  - 제출 서류 : 객담검사 결과지(도말 및 배양검사), 결핵검진(객담검사) 지원비 지급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 ‘<서식 73> 결핵검진(객담검사) 지원비 지급 신청서’ 참조



## 제 2 절

## 결핵 치료 (결핵진료지침 권고요약 일부 발췌)

## 일러두기

이 절은 결핵 진료지침(3판) 'II.결핵의 치료', 'IV. 특수한 상황에서의 결핵 치료'의 권고요약 부분을 일부 발췌하고 2020년 3월 발간·시행 예정인 결핵 진료지침(4판)의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의 개정사항' 중 일부를 선반영 하였으므로, 결핵 치료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결핵 진료지침(3판)을 함께 참고하고, 추후 결핵진료지침(4판)을 참고하도록 한다.

\* 결핵 진료지침(4판) 약제내성 결핵의 치료는 결핵전문위원회 조건부승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방향성만을 담고 있다.

## 1. 결핵의 치료

## 가. 결핵 초치료

- 결핵 초치료의 표준처방은 2HREZ/4HR(E)이다. 약제감수성 결과 이소니아지드 및 리팜핀에 감수성 결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치료 2개월 후부터 에탐부톨의 중단을 고려한다(IIB).
- 결핵 초치료 환자에서 치료 시작 시 흉부 X선에서 공동이 있고, 치료 2개월 후 시행한 객담 배양이 양성인 경우에는 유지 치료 기간의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IIB).

## 1) 치료 전 검사

- 결핵 치료 전 병력 청취를 통해 항결핵제에 의한 부작용 발생 위험을 평가하고 시력 검사 등의 기저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IIIA).
- 치료 전에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등을 확인하고 가임 여성의 경우 임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IIIA).

## 2) 추구 검사

### 가) 객담검사 및 약제 감수성 검사

- 결핵균 양성(도말 혹은 배양 양성) 폐결핵 환자의 경우, 치료 시작 후 도말과 배양 검사가 2회 연속 음성이 나올 때까지 매달 객담 도말 및 배양 검사를 시행하고, 치료 종결 시점에 마지막 객담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IIIA).
- 임상적으로 치료 실패가 의심되는 경우 객담 도말 및 배양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야 한다(IIIA).
- 치료 시작 시 얻은 배양 양성 결핵균에 대해 약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IIIA).
- 치료 실패 시 얻은 배양 양성 결핵균에 대해 약제 감수성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야 한다(IIIA).

### 나) 흉부 X선 검사

- 흉부 X선 검사 단독으로 치료 반응을 평가하지 않는다(ID).

## 나. 결핵 치료 중 부작용의 발생 시 대처방법

-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혈청 알라니아미노전달효소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5배 이상 증가했거나 간염의 증상이 동반되면서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즉시 간독성이 의심되는 항결핵제들을 중단해야 한다(IIIA).
- 혈소판이 감소된 경우에는 리팜핀의 과민반응이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이므로 리팜핀을 중단하고 주기적으로 혈소판 수치를 검사해야 하며 정상으로 회복되더라도 리팜핀을 재투여하지 말아야 한다(IIIA).
- 피라진아미드에 의한 관절통은 투약을 계속하면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투여할 수 있으나 통풍이 발생하면 피라진아미드를 중단하여야 한다(IIIA).



## 2. 결핵 재치료 및 약제내성 결핵의 치료

### 가. 결핵의 재치료

#### 1) 재발 결핵의 치료

- 과거에 원칙대로 결핵 초치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종결한 후에 결핵이 재발한 경우 과거에 치료했던 약제로 재치료를 시행한다(IIIA).
- 초치료 종결 후 2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재치료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을 권고한다(IIIA).
- 결핵균이 동정되면 신속내성검사를 시행하여 다제내성 결핵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이 결과에 따라 처방을 재조정하는 것을 권고한다(IIIA).

#### 2) 초치료 실패 결핵의 재치료

- 치료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한 자세한 병력을 청취하여야 한다(IIIA).
- 치료 실패가 발생하면 일차 항결핵제와 이차 항결핵제에 대한 약제 감수성검사를 시행하고,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대한 신속내성검사를 하여야 한다(IIIA).
- 치료 실패 후 재치료 처방에 새로운 항결핵제를 한가지씩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IIIE).
- 치료 실패 결핵의 재치료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고한다(IIIA).

### 나. 이소니아지드 내성 결핵의 치료

- 이소니아지드 내성을 진단한 시점으로부터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레보플록사신으로 6개월간 치료한다(IIA).

### 다. 다제내성(multidrug-resistant: MDR) 결핵의 치료

#### 1) 치료의 일반 원칙

- 신속 감수성 검사에서 리팜핀 내성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면 통상 감수성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제내성 결핵 권고 처방으로 치료한다(IIA).



- 효과있는 약제를 선정하기 위해 과거 결핵 치료력과 약제감수성검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III A).
- 항결핵효과가 강력한 군에 포함된 약제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처방을 구성한다(III A).
- 적극적인 부작용 관리, 치료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적절한 환자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III A).
-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고한다(III A).

## 2) 치료 처방의 구성 원칙

- 치료 처방을 결정할 때 퀴놀론 내성을 먼저 파악해야 하며, 퀴놀론 감수성 결핵은 권고 처방으로 퀴놀론 내성 결핵은 개별화된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한다(III A).
- 개별화된 치료 처방은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III A).

### 가) 퀴놀론 감수성 다제내성 결핵

- 집중치료기 권고 처방은 최소 4가지 효과적인 항결핵제들로 구성하며, 이는 A군의 퀴놀론, 베다퀼린, 리네졸리드 3가지와 B군의 시클로세린과 클로파지민 중 최소 1가지를 포함한다(III A).
- 권고 처방은 A군, B군, C1군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약제를 선택한다(III A).
- A군 3가지 약제는 금기가 없다면 집중치료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A군 3가지 약제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면 개별화된 처방을 구성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III A).
- 퀴놀론은 치료의 전 기간 사용한다(II A).
- 베다퀼린은 6개월 사용을 권고하며,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III A).
- 리네졸리드는 부작용이 없는 한 치료의 전 기간 사용한다(III A).
- 유지치료기는 퀴놀론을 포함한 최소 3가지 효과적인 항결핵제로 구성한다(III A).

### 나) 퀴놀론 내성 다제내성 결핵

- 집중치료기 처방은 개별화된 처방을 구성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III A).



- 집중치료기의 개별화된 처방은 최소 5가지 효과적인 항결핵제들로 구성하며, 이는 A군의 베다퀼린, 리네졸리드와 B군인 시클로세린, 클로파지민, 그리고 C1군에서 최소 1가지를 포함한다(IIIA).
- 개별화된 처방은 A군, B군, C1군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약제를 선택한다(IIIA).
- 베다퀼린과 델라마니드의 동시 혹은 연속 사용은 A군, B군, C1 군만으로 효과적인 처방 구성이 어렵거나, 그 외 필요한 경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IIIA).
- 베다퀼린은 6개월 사용을 권고하며, 전문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IIIA).
- 리네졸리드는 부작용이 없는 한 치료의 전기간 사용한다(IIIA).
- 유지치료기는 최소 4가지 효과적인 항결핵제로 구성한다(IIIA).

### 3) 치료 기간

- 집중치료기는 6개월을 권고한다(IIIA).
- 총 치료기간은 18-20개월을 권고하며, 배양 음전시기와 치료 반응, 치료약제의 종류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IIIB).

### 4) 다제내성 결핵의 수술적 치료

-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다제내성결핵의 경우, 병변이 국소적이며 환자의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리고 감수성 약제가 2-3개 남아있는 경우 병변의 수술적 제거를 권고한다(IIIA).
- 치료 시작 2-3개월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해야 한다(IIIA).
- 병변이 성공적으로 제거되더라도 균 음전 후 12-17개월간의 항결핵제의 투여가 필요하다(IIIA).

### 5) 단기 다제내성 결핵 치료 처방(Shorter MDR-TB treatment regimen)

- 단기 다제내성 결핵 치료 처방은 국내 표준 처방으로 권고하지 않지만, 적절한 환자 선택 조건하에서 개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IA).

### 3. 특수한 상황에서의 결핵 치료

#### 가. 임신 및 모유 수유 시 결핵 치료

- 결핵 치료 전 가임 여성에 대해 임신 여부 및 임신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III A).
- 임신한 결핵환자의 초치료 시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및 피라진아미드의 표준치료(2HREZ/4HRE) 또는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9개월 치료(9HRE)를 권고한다(III A).
- 일차 항결핵제로 치료하는 산모는 모유 수유를 중단할 필요가 없으며 산모와 수유부에게 이소니아지드를 사용할 시에는 피리독신을 같이 복용하여야 한다(III A).

#### 나. 간 질환 환자의 결핵 치료

- 간질환 환자에서 결핵 치료 시 간질환 및 결핵의 중증도에 따라 항결핵제를 선택한다(III A).
- 간손상이 심하지 않은 만성 간질환이 있는 결핵 환자는 간기능을 정기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9개월간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로(9HRE) 치료할 수 있다(III A).
- 중증 간질환 및 불안정한 간기능의 변화를 보이는 만성 간질환이 있는 결핵 환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권고한다(III A).

#### 다. 신부전 환자의 결핵 치료

- 신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및 목시플록사신은 용량 조절 및 투여 간격의 변화 없이 사용가능하며 기타 약제의 경우 신장 기능에 따라 투약 간격을 늘리거나 일일 투여량을 변경한다(III A).
- 투석 중인 환자는 모든 항결핵제를 투석 직후 투여한다(III A).



## 참고. 근거 수준과 권고 수준의 정의

근거 수준(quality of evidence)이란 특정 의료행위가 어느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권고 수준(strength of the recommendation)이란 이러한 의료행위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권고할 것인가를 나타냄. 결핵 진료지침(3판)은 미국흉부학회(ATS)에서 채택한 권고 방법을 따름.

- 근거 수준 (Quality of evidence supporting the recommendation)
  - I. 하나 이상의 잘 고안되고 해석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At least one properly randomized trial with clinical end point)
  - II. 무작위 배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집단에서 시행된 임상시험  
(Clinical trials that either are not randomized or were conducted in other populations)
  - III. 전문가 의견 (Expert opinion)
  
- 권고 수준 (Strength of recommendation)
  - A. 일반적으로 권고되어야 한다 (Preferred : should generally be offered)
  - B. 대체 방법으로 권고될 수 있다 (Alternative : acceptable to offer)
  - C. 일반적 또는 대체 방법으로 권고된 방법을 쓸 수 없을 경우 권고될 수 있다  
(Offer when preferred of alternative regimens cannot be given)
  - D.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아야 한다 (Should generally not be offered)
  - E. 절대로 권고되지 않아야 한다 (Should never be offered)

# VI

##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제1절 잠복결핵감염 검진 / 234

제2절 잠복결핵감염 치료 / 247

제 1 절

## 잠복결핵감염 검진

**알려두기**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치료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절은 지자체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결핵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가족접촉자 조사' 또는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는 지침의 해당 부분을 따름

### 1. 기본 원칙

- 가. 검진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검진 실시
- 나. 불필요한 중복 검사 방지
- 다. 잠복결핵감염으로 인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 라.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제3자 제공 불가 (개인정보보호 철저)

### 2.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가.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 효과가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 종사자·교직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는 지역보건법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므로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의료원의 종사자도 해당함

#### 나.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아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 3. 검진 방법

#### 가. 검진 안내 및 동의 구득

검진대상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 내용 및 절차 안내 후 동의서 구득  
※ <서식 74> 잠복결핵감염 검진 안내문' 및 <서식 75>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정보 이용 동의서' 활용

#### 나. 검진 대상 확인 및 검진 실시

##### 1) 검진대상 확인

사전조사에서 채혈 공포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과거 '활동성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고 치료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자(또는 치료 중인 자), 과거에 시행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자는 검진 제외  
※ 결핵진료지침(3판, 2017) 참조

##### 2)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사용  
※ 검진의 방법은 TST 단독 검사, IGRA 단독 검사, 또는 TST/IGRA 병합 검사(TST 양성자에 한해 → IGRA 추가 실시) 사용 가능



## 4. 검진 결과 통지 및 증빙서 발급

### 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통지

- 1) 발급 기관 : 검진을 실시(주관)한 보건소
- 2) 발급 대상 : 검진대상자 등
  - 검진대상자에게 ‘<서식 76>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개인용>’ 발급
    - ※ 검진 결과 통지의 방식은 검진 대상자 개인별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함. 단,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통지 방식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잠복결핵감염 통합관리에서 검진 결과서 출력 가능
  - 기관별 단체검진의 경우 기관장에게 ‘<서식 77> 단체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기관용>’ 발급
    - ※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양성/음성/불명)는 검진대상자 본인 이외 제3자에게 제공 불가하며, 기관용 검진확인서 통지 시 개인별 ‘수검여부’와 단체검진결과(검진자 수, 양성자, 양성률)만을 기재하고, 개인별 검사결과 (양성/음성/불명)는 포함하지 않음
  -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에게는 ‘<서식 79> 잠복결핵감염 치료 안내문’을 배부

### 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발급

- 1) 발급 기관 : 전국 보건소
- 2) 발급 대상 : 검진대상자
  - 수검자가 기관 제출 등의 목적으로 요청 시 ‘<서식 78>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발급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잠복결핵감염 통합관리에서 결과 확인서 출력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하며 개인별 ‘수검여부’만을 기재(검사결과는 포함하지 않음)



## 5. 결과등록관리

### 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내용 등록

- 1) 대상 : 보건소 주관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 2) 시점 : 수시
- 3) 내용 : 검진대상자 기본정보,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최종진단결과 등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4) 등록위치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결핵관리 > 잠복결핵감염 검진 | 치료관리’ 내 대상자별 메뉴
  - ※ 희망내소자의 경우 ‘기타(그 외 보건소내소자)’에 등록

## 6. 행정사항

### 가. 지자체 주도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은 지자체의 예산규모와 예산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추진

- ※ 유학, 외국체류 등의 목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증명서 발급을 위해 내소할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증명 발급 수수료 및 검진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 나. 필요 시 보건소의 잠복결핵감염 검사 관련 비용(검사 소모품비, 시약비, 실험실 진단비, 잠복결핵감염 검사 수탁비, 진료비, 약제비 등)은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음



참고. 결핵균 감염 검사 방법 (TST, IGRA)

1.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

가. 기본원칙

- 1) PPD 주사와 판독 모두 반드시 교육 훈련을 받은 자가 시행
- 2) 판독일에 올 수 없다는 이유로 수검자 또는 보호자가 대신 판독 불가
- 3) PPD 주사 후 72시간 이내 판독하지 않을 경우 재검사 실시
- 4) 최근 1개월 이내 생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생백신 접종 4~6주 이후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행(생백신 접종과 동시 시행은 가능)
- 5) 과거 1세 이전의 BCG 접종력은 고려하지 않음

[참고] TST와 백신

- 생백신 접종이 TST 결과에서 위음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생백신 접종 4주 이후 TST 시행 단, 접종과 검사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
- TST 시행 전 확인해야 할 최근 4주 이내 백신 접종력
  - MMR 백신      ○ 대상포진백신      ○ 일본뇌염백신 중 생백신
  - 수두백신      ○ 황열백신      ○ 인플루엔자백신 중 생백신(비강분무)
- 모든 사백신과 경구용 생백신(예, 로타바이러스)은 백신 접종과 TST 시행 간격을 고려할 필요 없음

나. TST 제외 대상자 : IGRA로 대체

- 1) 주사부위가 TST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화상, 피부감염 등)
- 2) TST가 피부를 심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 \* 간 질환자, 전신성홍반루푸스(SLE),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백혈병, 심한 아토피, 켈로이드 피부, 조절 되지 않는 당뇨 등
- 3) BCG를 1세 이후에 접종하였거나, 2회 이상 접종 받은 경우

## 다. 검사 방법 (Mendel-Mantoux Test)

### 1) 검사 준비

가) PPD 시약 개봉 전 라벨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약 개봉 시 개봉일시 및 담당자 이름을 라벨에 기록

\* 2~8℃ 온도로 어두운 곳에 냉장보관하며, 개봉한지 오래(개봉 후 24시간 이상 경과)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은 폐기처리함

[참고] PPD (purified protein derivative)

• 결핵균 배양액의 단백질 침전으로 제조하는 TST 피내주사(intradermal injection)용 결핵균 항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TU의 PPD RT 23을 사용

※ PPD RT 23 2TU(tuberculin unit) = 0.1ml

나) 일회용 주사기는 0.01ml 단위의 눈금이 있어야 하며, 26 또는 27 Gauge 바늘 사용

다) 밝고, 바닥이 평평한 장소에서 수검자의 팔을 약간 구부린 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위치

라) 왼팔 팔꿈치관절에서 약 2~4인치(5~10cm) 아래 주사부위 표면 확인하여 근육 주변, 털이 많은 곳, 정맥, 상처 또는 흉터가 있는 곳은 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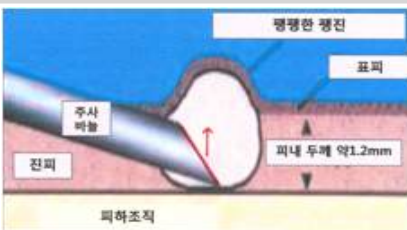
### 2) 검사 시행

가) 수검자의 주사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팽팽하게 당김

나) 주사바늘의 경사면을 위로 향하게 위치하고 피부 바로 아래(피내)에 주사바늘을 5~15° 각도로 표피를 통과하여 약 3mm정도(바늘 경사면이 피부로 덮일 만큼) 천천히 찔러 넣음

\* 정확한 각도로 바늘을 삽입한 경우 피부 표면 바로 아래 바늘 경사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다) 피부를 당기고 있던 손을 풀고, 0.1ml 시약을 천천히 주입하여 직경 6~10mm 크기의 팽팽하고 창백한 팽진이 형성되도록 함



- 라) 주사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지 않고 바늘을 천천히 뺨(주사기는 폐기함)
  - 마) 팽진의 크기가 6mm 이하\* 또는 시약이 밖으로 많이 흘러나오는 경우\*\* 반대쪽 전박에 다시 실시하거나, 같은 쪽이면 이전 주사부위에서 5cm를 띄어 다시 실시
    - \* 바늘이 너무 깊게 들어갔거나 적당한 양의 시약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 발생
    - \*\* 바늘의 경사면이 덮일 만큼 충분히 삽입되지 않은 경우 발생
  - 바) 주사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하며, 접착식밴드(반창고 등)를 붙이지 않음
- 3) 검사 부위 이상반응 대처
- 가) 수포가 크게 잡힌 경우는 터트리지 않고 보건소 또는 병원 방문하여 처치하도록 안내(수포가 터진 경우 폼드레싱 제제를 사용하여 처치)
    - \* 심하지 않은 발적이나 물집은 처치 없이 관찰하며, 수검자가 자가처치 하지 않도록 교육
  - 나) 검사부위를 긁어서 낸 상처에 열감이 있는 경우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호전이 없는 경우 전문의료기관으로 연계

라. 판독 방법

- 1) 경결 측정 및 크기 측정
  - 가) 경결 유무와 관계없이 주사 후 48~72시간 사이에 나타난 반응을 확인
  - 나) 경결 없이 부어오르면서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홍반, 발적)는 측정하지 않음
  - 다) 경결이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측정하여 경결을 찾음
  - 라) 팔의 주행과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경결의 가장 긴 지름을 측정



[올비름] 팔의 주행에 직각으로 정확히 경결만 측정

[틀림] 팔의 주행에 직각으로 측정했지만 붉은 부분까지 모두 측정함

[틀림] 팔의 주행 반대방향으로 측정

## 2) 판독 결과 기록

가) 측정 즉시 mm단위로 기록 (양/음성 또는 cm단위로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음)

나) 수포나 괴사 등의 반응이 있으면 반응의 크기(mm) 뒤에 영어 대문자를 추가하여 기록

\* (예) 18B : Bullae(수포), 20V : Vesicle(소수포), 25N : Necrosis(괴사)

### [참고] Blister(수포)

- 피부에 맑은 액체를 포함하면서 둥글게 올라온 부위
- 표피층(epidermis) 사이, 또는 표피와 진피(dermis) 사이가 벌어질 때 생기며, Blister는 크기에 따라 직경이 5mm 미만일 때 vesicle(소수포), 이상일 때 bullae(수포)로 분류

다) 1회 판독을 원칙으로 하되, 주사 후 48~72시간 사이에 판독한 값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최대값을 반영

## 3) 결과 판정

\* TST 양전(positive conversion)의 기준은 「IV. - 제2절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참고

가) 강양성 (strong positive) : 경결이 15mm 이상이거나, 측정값에 상관없이 수포(B), 소수포(V), 괴사반응(N)이 있는 경우

\* (예) 17mm, 8V

나) 양성 (positive) : 1차 검사에서 경결(induration)이 10mm 이상인 경우

(BCG를 접종하지 않은 신생아는 경결이 5mm 이상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

### [참고] 이상반응 관찰

- 주사바늘에 대한 공포심으로 쇼크(needle shock)가 드물게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휴식 후 혈압과 의식이 회복되나, 넘어지면서 2차 외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 (검사 전) 주사 쇼크와 관련한 과거력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곳 주변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도록 조치(needle shock는 대개 이전에도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음)
  - (검사 중) 이상반응 발생 시 불안감, 과호흡으로 인한 졸도나 기절,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구분하여 조치, 넘어지면서 머리 등 2차 외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실로 이송
  - (검사 후) TST 후 고열은 드물지만 다른 원인 질환이 없다고 판단되면 발열 시 해열제 사용 가능하며, 소아청소년의 경우 아스피린을 제외한 해열제 사용



## [참고] 실신, 과호흡, 아나필락시스의 감별 및 대처방법

	실신	과호흡	아나필락시스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고 의식 소실과 함께 땅바닥에 쓰러지거나 주저앉음</li> <li>경련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음</li> <li>창백함과 발한 증상 수분 간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사 후 수분 내 호흡이 빨라지고 적은 양의 호흡이 힘들게 이루어짐</li> <li>어지러움, 시력장애, 의식저하, 심하면 실신하기도 함</li> <li>팔, 다리 감각이상, 경련, 마비 되는 느낌 등이 나타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갑작스러운 의식소실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li> <li>수분 간에 걸쳐 여러 신체 부위에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의식소실이 동반됨</li> <li>흔히 피부, 호흡기, 순환기 등의 증상*이 나타남</li> <li>* 호흡곤란, 목 선소리, 천명(쌩쌩거림), 두드러기, 창백함, 빠른 심장박동, 현기증 등</li> </ul>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즉시 양와위를 취한 상태(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하지를 올려주면 1~2분 내 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한 빨리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li> <li>* 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li> <li>환자를 안심시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해주고, 최대한 숨을 참거나 천천히 쉬도록 옆에서 격려</li> <li>* "괜찮다", "죽지 않는다", "좋아질 것이다" 등의 말로 안심시키고, 숨을 천천히 쉬면 증상이 호전됨을 설명해주는 것이 좋음</li> <li>휘파람을 불듯이 입술을 모아서 숨을 쉬거나 입과 한쪽 콧구멍을 손으로 감싸고 나머지 한쪽 콧구멍으로만 숨을 쉬도록 도움</li> <li>현장에서의 조치 이후 정확한 진단과 추가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진료는 반드시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전문의료기관에 의료보조 등 지원 요청</li> <li>* 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li> <li>즉시 양와위를 취한 상태(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하지 거상</li> <li>기도 유지</li> <li>액상 epinephrine 1:1000, 0.01 ml/kg(최대 0.5 ml)를 즉각 근육(피하)주사</li> <li>피하주사는 초기나 증상이 경한 경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근육주사 시행</li> <li>* 검사 부위와 다른 사지에 주사</li> <li>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약 20분 이내에 다시 주사</li> <li>활력징후 지속 측정</li> <li>보조요법으로 검사한 사지에서 심장에 가까운 쪽을 tourniquet으로 묶어 약제 성분의 흡수 속도 지연</li> <li>* 3분간 묶은 후 1분간 풀어 주는 것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li> <li>주사 부위에 추가(추가는 1회만 가능)로 액상 epinephrine 1:1000 0.005 ml/kg(최대 0.3ml)을 주사</li> <li>전문의료기관으로 환자이송</li> </ul>

## 2.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가. 기본원칙

채혈, 배양, 이송 절차를 숙지하여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도록 함

### 나. 검사의 종류

1) QuantiFERON® - TB Gold In-Tube test (QFT-GIT)

2) SPOT® TB test (T-Spot)

	QFT-GIT	T-Spot
결핵균 항원	ESAT-6, CFP-10, TB7.7	ESAT-6 and CFP-10
측정	IFN-gamma 농도	IFN-gamma 형성 세포 (spots)
판독	양성, 음성, 판독불명(indeterminate)	양성, 음성, 판독불명(indeterminate)

### 다. 검사 방법

[QFT-GIT 기준]

#### 1) 검사 준비

가) 튜브(blood collection tubes)는 4℃~25℃에서 보관하고, 검사 시행 시 17℃~25℃ 온도로 유지

\* 별도의 장치 없이 실온 보관할 경우 25℃가 넘어가면 폐기해야 하므로 일정하고 안전하게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안전

나) 유통기한은 15개월로 사용 전 튜브의 유통기한 확인

다) 수검자 1명당 튜브 3개 준비, 각 튜브에 수검자 인적정보 기재

#### 2) 채혈

가) Nil(회색), TB-Ag(빨강), Mitogen(보라) 튜브 순으로 라벨의 검정색 마크까지 (약 1ml) 차도록 천천히 혈액 주입



나) 튜브에 혈액을 주입한 후 튜브 벽면에 코팅된 항원이 혈액에 녹을 수 있도록 10번 이상 조심스럽게 흔들 (세게 흔들면 겔이 망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

다) 채혈한 튜브는 16시간 이내로 배양을 시작해야하고, 그때까지 실온(17°C~25°C) 보관



3) 채혈 후 배양 및 혈장 분리

가) 배양 전 튜브를 다시 10번 이상 조심스럽게 흔들

나) 튜브를 세워서 37°C 배양기에서 반드시 16~24시간(20시간 추천) 배양

다) 혈장 분리 : 배양한 튜브는 1500~2000 RCF(g)에서 5~15분 동안 원심분리

4) 배양 후 검사기관 이송 (20시간 배양 후 원심분리한 튜브 기준)

가) 혈장이 분리된 상태에서 냉장(2~8°C)에서 4주 동안 보관 가능

나) 냉동(-20°C~-70°C)에서 12주 동안 보관 가능

다) 배양 전인 경우 채혈한 튜브는 17~27°C(실온)상태에서 16시간 이내로 이동

[T-Spot 기준]

1) 검사 준비

가) CPT(Cell Preparation Tube) tube 또는 heparin tube를 준비

나) 튜브에 표시된 유통기한 확인

다) 수검자 별 튜브를 확인하고 각 튜브에 수검자 인적정보 기재

라) 32시간 이내 T-Cell Xtend 시약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혈시간을 기록

2) 채혈

가) 검사에 충분한 수의 단핵구(PBMC,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확보를 위해 아래의 지침에 따라 채혈



- \* 어른과 10세 이상 어린이 : 8mL 1개의 채혈관 또는 4mL 2개의 채혈관을 사용하여 채혈
- \* 2세-9세 어린이 : 4mL 1개의 채혈관을 사용하여 채혈
- \* 2세 미만 어린이 : 2mL paediatric 채혈관을 사용하여 채혈

나) 채혈 후 튜브 벽면에 있는 항응고제와 잘 섞일 수 있도록 천천히 8-10번 뒤집어 혼합

### 3) 검체 저장방법

가) 채혈 후 즉시 흔들어서 실온에서 보관하며, 채혈 후 8시간 이내 검사를 개시

나) 검체 내 과립구와 적혈구에 상호결합하여 이들의 밀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림프구의 분리 순도를 높이는 T-Cell Xtend 시약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렇게 처리된 검체는 10~25°C에서 32시간까지 보관 가능

### 4) 검사기관 이송

가) T-Cell Xtend 시약 처리는 검사기관에서 세포 분리 직전 수행

나) 32시간 이내 검사실 또는 검사기관에서 검체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채혈시간을 고려하여 이송

## 라. 결과 판정

가) IGRA 검사는 양전의 개념 없고, 2번 이상 검사를 시행한 경우 독립적 판정

나) IGRA 검사에서 음성이었던 사람이 '연속 IGRA(repeated IGRA) 검사'를 받은 경우 이전 검사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검사한 값만으로 판정

### [QFT-GIT 기준]

Nil [IU/mL]	TB Antigen minus Nil [IU/mL]	Mitogen minus Nil [IU/mL]	QuantiFERON®-TB
≤ 8.0	< 0.35	≥ 0.5	음성(Negative)
	≥ 0.35 and < 25% of Nil value	≥ 0.5	
	≥ 0.35 and ≥ 25% of Nil value	Any	양성(positive)
	< 0.35	< 0.5	판독불명 (Indeterminate)
≥ 0.35 and < 25% of Nil value	< 0.5		
> 8.0	Any	Any	



[T-Spot 기준]

1) Nil Control spots 수 < 10

2) Positive Control spots 수 ≥ 20

위 두 조건을 만족한 경우,

가) 양성(Positive): (Panel A- Nil Control spot 수) 또는 (Panel B- Nil Control spot 수)의 모두 혹은 어느 하나의 spot 수가 6 이상인 경우.

나) 음성(Negative): (Panel A- Nil Control spot 수)와 (Panel B- Nil Control spot 수)가 모두 5 이하인 경우.

위 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다) 미확정(판독불명, Indeterminate): Nil Control spot 수가 10 이상이거나 Panel A 또는 Panel B의 결과가 Reactive라 하더라도 Positive Control에서 20 이하일 때 재검사

라) 경계값(Borderline): (Panel A- Nil Control spot 수) 또는 (Panel B- Nil Control spot 수)의 결과가 5~7인 경우 재검 고려. 재검 결과가 여전히 borderline일 경우, 다른 진단검사나 역학정보를 사용하여 결핵감염여부를 진단

※ 자세한 검사 방법은 「결핵검사지침Ⅱ-Ⅱ. 잠복결핵감염의 진단」 참고

[참고]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의 급여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호-265호, '18.1.1 시행)

1.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다.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라. 중양피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바. 투석 중인 환자

사.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아. 규폐증

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2. 상기 1. 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제 2 절

# 잠복결핵감염 치료

### 일러두기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는 잠복결핵감염자를 치료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절은 지자체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 결핵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가족접촉자 조사' 또는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는 지침의 해당 부분을 따름
- \* 별도 사업 지침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 원칙을 명시한 경우 해당 지침을 따름
- \* 이 밖의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의학적 원칙과 방법은 '결핵진료지침(3판)'을 참고함

## 1. 기본 원칙

- 가. 잠복결핵감염 진단자 대상 맞춤형 보건교육 실시
- 나. 충분한 사전설명과 자발적 동의에 의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
- 다. 안전한 치료 및 철저한 부작용 관리
- 라. 무료 치료 제공

## 2. 치료 대상

-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은 자
  - ※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은 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 면역저하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결핵 발병 시 과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 시행을 권고



[참고]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잠복결핵감염(LTBI) 치료 권고 요약

[자료원: 결핵진료지침(3판)]

- LTBI로 판명된 아래의 경우에는 LTBI 치료를 시행한다(결핵발병 고위험군).
  - HIV 감염인
  -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 흉부 X선상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경우
  - 모든 연령에서 최근 2년 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TST 또는 IGRA 양성이 확인된 경우)
- LTBI로 판명된 아래의 경우에는 LTBI 치료를 고려한다(결핵발병 중등도 위험군).
  - 규폐증
  -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중이거나 사용예정자  
(15 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 당뇨병
  - 두경부암 및 혈액암
  -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LTBI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LTBI 치료를 시행한다.
  - HIV 감염인
  -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으며 위의 중등도 위험군인 경우에는 LTBI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양성인 경우 LTBI 치료를 시행하고, 음성인 경우라도 LTBI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참고] 잠복결핵감염(LTBI) 치료 제외 대상

- 과거 결핵이나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를 완료한 자 (단, 최근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주치의 판단에 따라 재치료할 수 있음)
- MDR 또는 XDR 결핵환자의 접촉자
- 이 외 간 질환, 간기능 이상, 간염 등 치료 위험 질환이 있는 자는 치료 전 검사 결과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하여 치료 여부 결정

### 3.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

-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는 보건소와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등에서 가능하며, 치료 대상자가 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단, 보건소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으로 연계)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경험이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 (결핵제로홈페이지(<http://tbzero.cdc.go.kr>)에서 목록 확인 가능)

#### 가. 잠복결핵감염 최종진단

- 잠복결핵감염 치료 전 흉부 X선 검사 등 결핵검진 실시, 활동성 결핵 배제  
※ 치료시작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실시한 흉부 X선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인정 가능(중복검사 불필요)

#### 나. 잠복결핵감염 치료 안내

-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치료 과정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 안내  
※ ‘<서식 79> 잠복결핵감염 치료 안내문’ 활용  
※ 특히 미치료자의 경우 결핵예방교육과 증상 자가 모니터링 및 주기적 결핵검진 등 실시 안내

#### 다. 치료 동의 구득

- 잠복결핵감염 치료 여부는 본인의 희망(동의)에 따라 결정  
• 치료 동의할 경우 ‘<서식 45>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정보이용 동의서’ 구득



## 라. 치료 전 검사 및 사전문진

- 1) 기저검사 : 간기능 검사(AST/ALT/빌리루빈), 일반혈액검사(CBC), 신기능 검사(BUN/Cr)
- 2) 사전문진 :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유무를 확인하고, 기저 질환 등 질병 상태 문진
- 3) 치료연계 : 보건소 치료관리가 어려운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연계
  -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목록은 결핵제로(<http://tbzero.cdc.go.kr>) 홈페이지 참조
  -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치료연계 전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서식 80>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뢰서’에 대상자의 진료내용을 상세히 기재(‘<서식 82>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 참고)하여 송부, 연계 후 치료 모니터링 철저히 시행

## 마.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 실시

-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고, 치료 시작 이후 2주, 4주 및 이후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구 검사 실시
- 1) 치료 방법 :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 요법(3HR), 리팜핀 4개월 요법(4R),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9H) 중 선택
  - 2) 정기 진료 : 복약 확인, 부작용 증상 모니터링 등 실시
  - 3) 정기 검사 : 정기 진료 시 간기능 검사(AST/ALT/빌리루빈), 일반혈액검사(CBC), 신기능검사(BUN/Cr) 등을 실시 (특히, 치료 부작용 관련 요관찰군은 필요에 따라 주치의 진료 및 검사의 횟수와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
    - ※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 실시하고, 치료 시작 이후 2주, 4주 및 이후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구 검사 실시

## 4. 결과등록관리 및 증빙서 발급

### 가. 잠복결핵감염 치료 내용 등록

#### 1) 대상 : 보건소 치료관리 대상자

- ※ 보건소 치료관리대상자를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으로 연계한 경우 치료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보건소에서 치료내용을 등록관리함 (최소 치료시작 시점과 완료(중단) 시점에 등록)
- ※ 일부 대상자의 검진 및 치료정보는 행정업무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정보를 미·오입력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치료 정보는 병무행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

#### 2) 시점 : 수시

#### 3) 내용 : 잠복결핵감염 치료내용, 추구검사 결과 등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4) 등록위치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결핵관리 > 잠복결핵감염 검진 | 치료관리’ 내 대상자별 메뉴

### 나. 치료확인서 발급

#### 1) 내용 : 잠복결핵감염 치료자가 요청 시 발급(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 ※ 치료 확인서에는 치료자 정보와 치료 계획이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치료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용도를 확인한 후 발급

#### 2) 절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본인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결핵관리)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 정보를 확인하여 서식에 기입

#### 3) 서식 : ‘<서식 81> 잠복결핵감염 치료 확인서’



## 5. 치료 부작용 관리

### 가. 기본원칙

- 1) 치료 전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발적 동의에 의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 2) 정기적 복약 상담 및 부작용 발생 상시 모니터링
- 3) 치료 부작용 발생 시 즉시 투약 중단 후 주치의 상담 및 치료
- 4) 중증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 나. 관리 대상

-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발생한 모든 부작용\*
  - \* 정의 : 의약품을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
    - (경증) 경과 관찰 또는 치료 중단으로 증상 완화 및 검사수치 정상화 등이 가능한 경우
    - (중증) 부작용 관리를 위해 입원 등의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다. 부작용 발생 보고

#### 1) 경증 부작용

- 주치의 진료 후 투약 중단 등의 조치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발생 보고
  - ※ 참고 '<서식 83>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경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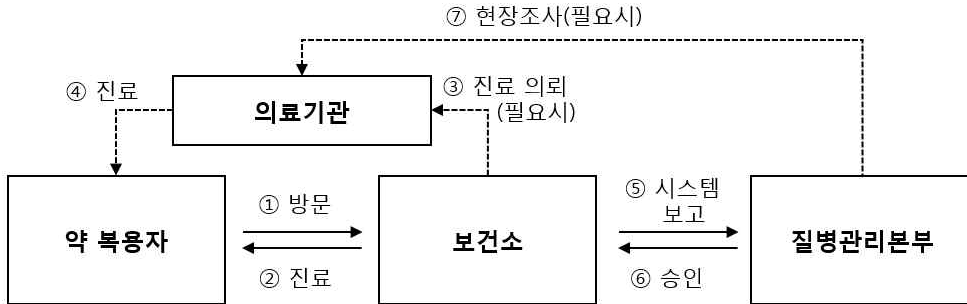
#### 2) 중증 부작용

- 발생 인지 즉시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로 유선 보고 후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중증 부작용 발생 보고
  - ※ 참고 '<서식 84>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중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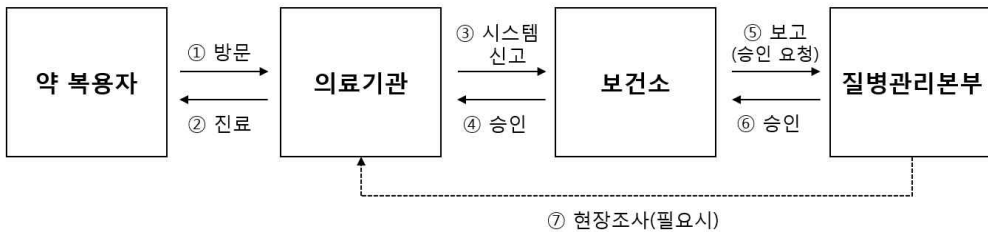
## 라. 부작용 발생 시 절차

### 1) 보건소에서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 담당 주치의가 반드시 진찰 후 치료 지속 여부 결정
-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 관련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 보건소 담당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부작용 발생 보고
- 필요시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 관련 역학조사 실시
  - ※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에서 부작용 관련 역학조사 실시를 결정하면, 보건소 담당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역학조사가 실시됨을 알리고, 역학조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함

### 2)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 담당 주치의가 반드시 진찰 후 치료 지속 여부 결정
-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부작용 발생 신고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권한이 없는 경우 <서식 83>, <서식 84> 참조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 유선 신고
- 보건소 담당자는 신고 의료기관에 부작용 관련 정보 확인 및 승인
- 보건소 담당자는 중증 부작용 발생 인지 즉시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로 유선 보고



마. 치료비 지원

-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의 치료비 관련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참조
  -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2~3인실)에 대하여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 검토 후 지원 가능

[참고] 부작용 발생 시 대처

※ 부작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결핵 진료지침(3판)」 참고

1.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

- (이소니아지드를 포함한 요법) 손발 저림, 피부발진, 가려움증, 구역, 구토, 설사, 복통, 간독성(간효소 수치 상승, 황달)
- (리팜핀을 포함한 요법) 피부발진, 독감유사(flu-like) 증상(고열, 오한, 어지러움 등), 가려움증, 구역, 구토, 설사, 복통, 간독성(간효소 수치 상승, 황달), 혈소판 감소증 등

2. 세부 사항

가. 위장장애

- 증상 : 항결핵제 복용 후 수 시간 정도 속이 불편하고 메스꺼움
- 대처 방법
  - (경증) 항결핵제를 복용할 때만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한 증상인 경우 복용법을 바꾸어 주거나 1주 정도 경과 관찰
  - (중증) 구역, 구토, 식욕저하 등이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 간기능 검사 시행
  - (간독성과 무관한 위장장애) 항결핵제를 중단하지 않고 복용법 변경\*을 고려하거나 위장관계 약제 투여
    - ※ 식후 30분에 복용, 취침 전 복용, 성분이 다른 약제를 각각 아침·저녁으로 나누어 복용 가능하나 리팜핀은 공복 시 복용이 약제 흡수에 효과적임

나. 간독성

- 증상 : 대개의 경우 무증상, 구역, 구토, 전신 쇠약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측 상복부 불쾌감, 가려움증, 황달 소견 등
- 발생 위험인자 : 고령, 알코올 중독, 특히 간 질환자(간염 기왕력, 간경변, 간암 등)에서 간독성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주의

• 평가 기준: ALT를 기준으로 평가(AST보다 약제에 의한 간독성을 직접적으로 반영)

• 대처 방법

- (ALT 수치 상승) 정기 모니터링 시 대상자가 증상을 호소하거나 간기능 검사 수치가 상승하면 약 복용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항결핵제를 1주일분 이내로 처방하면서 간기능 검사를 통해 간수치 관찰

※ 약복용자의 지방간 여부 확인, 알코올 섭취 여부를 확인하여 금주 조치

※ ALT 정상범위 : 0-40 IU/L

- (무증상이면서 ALT가 정상치의 5배 이하로 상승) 항결핵제 복용 지속하면서 임상 소견 및 간수치 변화 관찰

-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ALT가 정상치의 5배 이상 증가/증상 동반되면서 ALT가 정상치의 3배 이상 증가하거나 황달 발생)

◦ 즉시 간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항결핵제 투여 중단

◦ 간독성의 다른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 실시(A형·B형·C형 바이러스 검사, 간독성 유발 가능한 다른 약제 복용력, 음주력, 한약제의 복용 여부 등)

◦ 지방간 등 간독성의 위험인자 있을 시 의료기관 의뢰

다. 피부 부작용

• 증상 : 단순 가려움증, 피부발진, 피부가 검어지는 증상, 여드름, 스티븐-존슨 증후군, 드레스 증후군 등 다양한 형태

• 대처 방법

- (국소부위 피부발진과 동반된 가려움증) 항결핵제 지속 투여, 항히스타민제 사용한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원인 약제를 찾아 교체

- (리팜핀 복용자의 자반이나 점상출혈을 동반한 발진)

◦ 혈소판 감소증을 시사하므로 혈소판 수치 확인

◦ 혈소판이  $50 \times 10^9/L$  (=50,000/ $\mu L$ ,  $mm^3$ ) 이하로 감소된 경우 리팜핀 중단

◦ 정상치로 회복될 때까지 주기적 검사 시행(리팜핀 재투여 금지)

◦ 약제를 중단했다가 재복용할 경우 혈소판 감소증 발생 가능성이 높음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

- (전신에 홍반성 발진이 있으면서 점막 침범, 피부 벗겨짐 및 발열 동반)

◦ 스티븐-존슨 증후군이 의심되므로 모든 약제 즉시 중단



[참고]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

-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
-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사업 운영체계 및 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참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 상담 전화 1644-6223

## 6. 행정사항

가. 보건소에서는 검진 사업 등을 통해 잠복결핵감염자를 확인하면 치료를 안내하고 독려함

- ※ 국가 및 지자체 사업으로 진단받은 잠복결핵감염자의 경우 검진 시행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함(단, 병역판정대상자의 경우 치료를 희망하는 보건소 또는 주소지보건소에서 치료관리함)
- ※ 관리보건소와 실제 치료보건소가 상이한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대상자 치료정보는 공유 가능함

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지자체별 국가결핵예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료로 함

다. 보건소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검사 소모품비, 시약비, 실험실 진단비, 검사 수탁비, 진료비, 약제비 등)은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음

라.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음

- ※ [7.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참조

마. 잠복결핵감염자가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 잠복결핵감염은 외부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로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업무중사 일시제한이나 업무전환 배치 등의 조치가 불필요함



## 7.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 가. 목적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결핵 발병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함

### 나. 근거 법령

- 결핵예방법 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 다. 지원 내용

#### 1) 지원 대상

- 특정 사업 대상자(접촉자 검진사업,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등) 여부에 관계없이 잠복결핵감염 진단 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 그 외 결핵 진료지침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결핵 진료지침(3판) ‘Ⅶ. 소아청소년 결핵’, ‘Ⅷ. 잠복결핵감염’ 참고

#### 2) 지원 범위

-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 중 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의 전액  
(단,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2~3인실) 제외)
  - 치료 전 활동성결핵 배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치료 중 기저검사 및 정기 추구검사(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등)
  - 치료 관련 진찰료, 약제비, 조제료 등
  -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의 치료 관련 비용

## 라. 치료비 청구 및 지급방법

### 1) 청구 및 지급기관

청구 대상	청구·지급기관	내용
요양기관 (단, 요양병원,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치료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및 '의료급여기금'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청구 절차에 따름

### 2) 청구 및 지급 절차

#### 가)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1) 청구

- 치료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기관에서 무료로 치료 받고, 요양기관은 치료 대상자에게 공제한 금액을 포함한 요양급여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상병코드 : R76.80(잠복결핵) 기재
  - 특정기호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2(특정기호)'란에 F010 기재
    -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 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1호) 참고
-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특정기호 F010을 기재하고, 약국에서는 특정기호 확인 후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2) 심사 및 지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 심사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포함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고 지원금 집행 실적을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치료대상자 ↔ 보건소(주민등록주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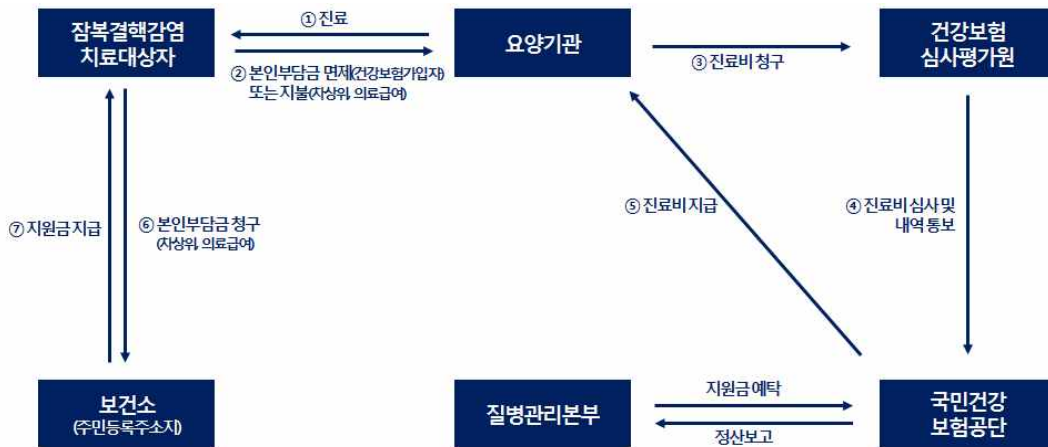
(1) 청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선지불하고,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본인부담금을 청구
- 제출 서류 : ‘<서식 85>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2) 심사 및 지급

- 보건소 담당자는 치료대상자로부터 청구된 치료비 내역(진료내역,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고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 지급

마. 사업수행체계



참고. 기관별 연락처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급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1577-1000
-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1644-2000



# VII

## 결핵의 실험실 검사

1. 결핵의 실험실 검사 / 262
2. 결핵균 유전형 검사 / 267
3. 결핵검사 정도관리 / 268

**알려두기**

결핵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내성결핵 진단과 비결핵항산균과의 감별진단, 유전형 분석 등은 결핵환자 진단·치료, 역학적 연관성 규명 등 결핵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 장은 결핵의 실험실 검사, 유전형 검사, 검사의 정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다.

\* 결핵 실험실 검사의 원칙과 방법은 ‘결핵검사지침 I, II(질병관리본부)’를 참고하도록 한다.

## 1. 결핵의 실험실 검사

### 가. 대상

- 1) 결핵 유증상자
- 2)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 유소견자

### 나. 검사의뢰

#### 1) 객담수집

- 가) 결핵관리 담당자는 결핵 유소견자가 양질의 검체 채취를 위하여 하부기도에서 배출되는 객담을 받도록 유도해야 함

< 채담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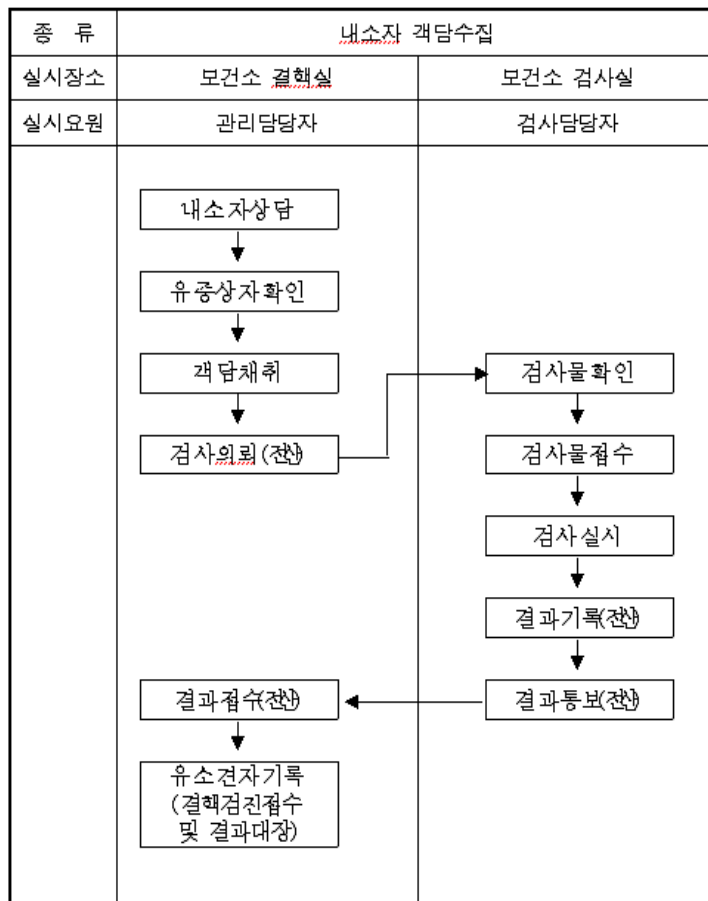
- (1) 음식물,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 입안을 헹구어 낸다.
- (2) 두 번 깊게 숨을 들이쉬 후 서서히 내쉰다.
- (3) 깊게 숨을 들이쉬 후 세게 숨을 내쉰다.
- (4) 깊게 숨을 들이쉬 후 기침을 하면서 객담을 채담통에 충분한 양(3ml 이상)을 모은다. 이 때 침이나 콧물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5) 집에서 보관 시에는 냉장 보관토록 하며 객담통을 휴지로 감싸서 햇빛에 노출 안 되도록 한다.
- (6) 보건소에 가져오기까지 객담통을 휴지에 감싸도록 한다.

- 나) 채담은 채담실이나 적절한 환기(통풍)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실시
- 다) 초회 객담은 객담 검체 최소한 2개, 가능한 3개를 수집하고, 전입 및 요관찰자의 객담은 검체 2개를 수집
- ※ 1회 - 즉석 채담  
2회와 3회 - 재가 채담(아침 기상 후 즉시 채담)

2) 검사 및 의뢰방법

가) 검사 접수

- (1) 결핵관리담당자는 결핵 의심환자의 객담 검체를 받은 즉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을 이용하여 접수하고 보건소 검사실에 도말검사를 위해 검체 의뢰



## 나) 보건소의 객담 도말 검사 및 결과 통보

- (1) 결핵균 검사담당자는 접수된 객담검체로 도말검사를 실시하여 접수 후 24시간 (근무 일 기준)이내에 결핵관리담당자에게 도말검사결과를 통보
- (2) 결핵관리 담당자는 결핵의심환자의 객담 도말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해당 부서 기관에 통보
- (3) 결핵관리담당자는 객담 검체를 받은 즉시 다음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메뉴) 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이용하여 결핵균 검사 의뢰
  - (가) 초회검사
    - 보건소내소  건강검진  이동검진  치료 과거력  밀접접촉(가족 등)
  - (나) 이탈주민
  - (다) 외국인
  - (라) 인수공통감염병
  - (마) 결핵역학조사
    - 학교  군부대  교정시설  산업체  기타시설
  - (바) 전입환자
  - (사) 요관찰자
  - (아) 추구검사
  - (자) 재채담 (1회 ~ 최대 4회)

## 다) 의뢰 방법

- (1) 검사의뢰서 비고란에 '횟수' 표기를 반드시 기재하여 의뢰
- (2) 초회검사(보건소내소자, 건강검진 등), 외국인, 인수공통감염병 등은 결핵협회 등 결핵검사기관에 의뢰

## 3) 검체 보관 및 운송

가) 객담검체물은 냉장고(2~8℃)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 (1) 객담 운송을 위한 포장은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본부, 2018)에 준하여 실시
- (2) 아이스팩과 함께 운송 상자에 넣어 잘 포장

나) 보건소에서는 객담검사가 필요한 검체를 지체 없이 결핵검사기관에 운반

※ IGRA 검사를 위한 혈액 검체는 IGRA 검사시약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운송

### 다. 검사종류

검사 방법	검사 요약
도말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결핵 의심환자 및 치료 중인 결핵환자의 객담 등 검체</li> <li>• 결핵 의심환자의 객담 최소 2개, 가능한 3개를 채취하여 검사 수행</li> <li>•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내에 통보</li> </ul>
배양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결핵 의심환자 및 치료 중인 결핵환자의 객담 등 검체</li> <li>• 채취한 검체는 고체배지와 액체배지 각각에 접종</li> <li>• 항산균이 배양되면 결핵균과 비결핵항산균 감별검사 수행</li> </ul>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결핵 의심환자의 객담 등 검체</li> <li>• 도말 및 배양검사와 함께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를 초회검사에 한해 환자 당 1회 실시</li> </ul>
Xpert MTB/RI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결핵 의심환자의 객담 등 검체</li> <li>• 도말 및 배양검사와 함께 Xpert 검사를 초회검사에 한해 환자 당 1회 실시</li> <li>• Xpert MTB/RIF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도말검사 양성/Xpert MTB/RIF검사 음성인 검체는 핵산증폭검사를 통한 비결핵항산균(NTM) 감별 필요</li> </ul>
신속감수성검사 (rapid D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도말양성 검체 또는 배양분리균주</li> <li>• 모든 결핵환자의 객담(도말검사 및 핵산증폭검사 양성인 검체에 한함) 또는 첫 배양분리균주에서 약제감수성검사 수행 - 신속감수성검사는 초회검사에 한해 환자 당 1회 실시</li> <li>• 3개월 이상 치료에도 배양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치료실패가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다시 시행</li> </ul>
약제 감수성검사 (phenotypic D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결핵환자 배양분리균주</li> <li>• 모든 결핵환자의 첫 배양분리균주에서 약제감수성검사 수행</li> <li>• 3개월 이상 치료에도 배양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치료실패가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다시 시행</li> </ul>
균 동정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비결핵항산균 배양균주</li> <li>• 최소 2회 이상 항산균배양검사서 비결핵항산균 양성을 보인 경우에 균 동정검사를 실시하여 비결핵항산균 감염질환 진단</li> </ul>

\* 결핵의심환자: 결핵 유증상자 또는 방사선상 유소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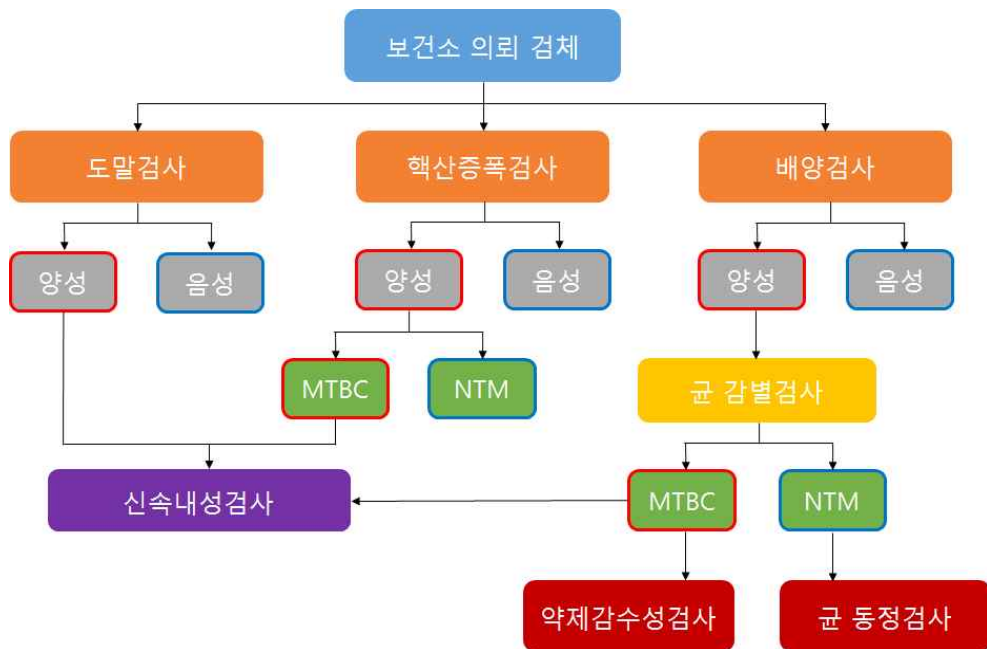


라. 결과통보

- 검사결과 통보 및 확인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메뉴 이용

마. 기타

- 보건소 의뢰와 관련한 결핵균 검사기관은 약제 감수성 검사가 완료된 균주를 관련 기록과 함께 매월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로 이송



MTBC (*Mycobacterium tuberculosis* bacilli complex): 결핵균  
 NTM (Non-Tuberculosis Mycobacteria): 비결핵항산균

< 결핵 실험실 검사 체계도 >

## 2. 결핵균 유전형 검사

### 가. 목적

- 결핵 집단 발병 사전 인지 및 확산 차단, 감염원 확인 추적
  - 역학조사 관련 결핵 전과경로 및 집단발생 사례 파악
  - 일반적인 역학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감염사례(결핵 집단발생) 인지
  - 결핵환자 재발 및 재감염 확인 등
- 해외유입 결핵 등 국내 유행 결핵균 유전형 확인

### 나. 대상

- 결핵 역학조사관련 배양양성 균주
- 다제내성결핵 중 배양양성 균주
- 보건소를 방문한 외국인 결핵환자 중 배양양성 균주
- 만 5세(60개월) 미만 소아 결핵환자(폐외결핵 포함)의 배양양성 균주

### 다. 검사의뢰

- 결핵균 배양 양성판정이 된 환자 중 결핵균유전형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를 추가의뢰
  - 결핵역학조사 관련 유전형 검사
    - IV-제2절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표5] 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절차에 따라 검사 의뢰
  - 보건소를 방문한 외국인 결핵환자 유전형 검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뢰 및 해당 의뢰건에 대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세균 분석과로 유선통보(043-719-8325, 8346)
      - \* 보건소 수탁검사기관(결핵연구원 등) 약제감수성검사(DST)번호
      - \*\* 보건소 검사과정에서 분리된 균주는 매월 1회 세균분석과로 일괄 이송되므로 별도 균주 운송은 필요치 않음
      - \*\* 배양 균주의 배지는 액체와 고체 모두 가능하나 액체의 경우 최소 1ml 이상을 보내도록 함



### 3. 결핵검사 정도관리

#### 가. 검경슬라이드 보관 및 정도관리

- 1) 결핵검사 담당자는 검경을 완료한 후 현재 검사일 기준으로 2달 전 검경된 슬라이드 전량을 검사 일자별로 보관
- 2) 슬라이드 번호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메뉴) 내 번호와 일치하게 기록
- 3) 필요시 보건소에 현장방문 및 보관된 슬라이드 점검

#### 나. 도말검사 정도관리

- 1) 목적 : 결핵 검사 품질 관리
- 2) 대상 : 보건소 등
- 3) 수행주기 : 년 1회 이상
- 4) 주관 : 세균분석과

#### 다. 잠복결핵검사 정도관리

- 1) 목적 : 결핵 검사 품질 관리
- 2) 대상 :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3) 수행주기 : 격년 수행
- 4) 주관 : 세균분석과



# VIII

## 인수공동결핵관리

1. 목적 / 270
2. 기본방향 / 270
3. 행정단위별 역할과 기능 / 270
4. 인수공동결핵 관리 및 접촉자 검사 / 272

**일러두기**

가축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농장주 등 접촉한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결핵치료를 통하여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은 가축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접촉자 역학조사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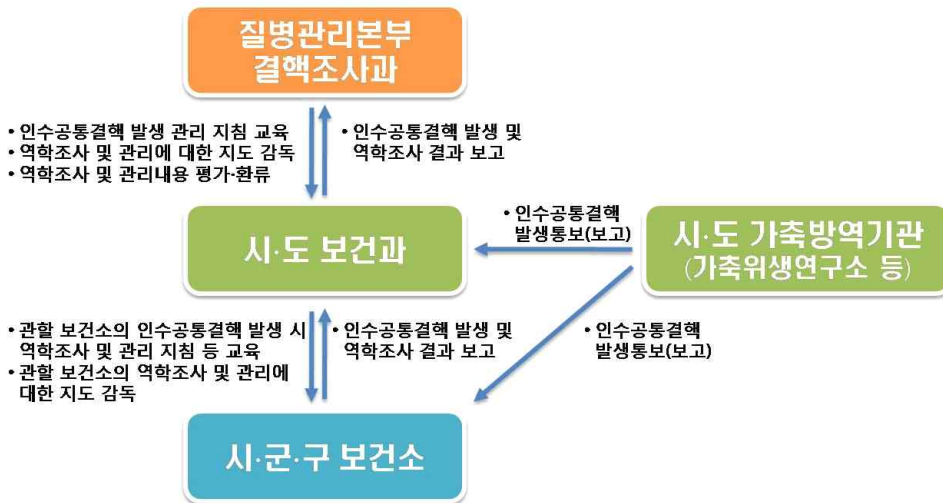
### 1. 목적

- 지역 내 소, 사슴 등 가축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농장주 등 접촉한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결핵치료를 통하여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

### 2. 기본방향

-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 3. 행정단위별 역할과 기능



< 인수공통결핵관리 행정단위별 기능 >

### 가. 시·군·구 보건소

- 1) 관내 인수공통결핵 발생 시 시·도 보건과에 발생 보고 ‘<서식 86> 인수공통결핵 의심 시 발생 보고’
- 2) 인수공통결핵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결과를 시·도 보건과에 보고 ‘<서식 87> 인수공통결핵 의심 시 역학조사 결과 보고’

### 나. 시·도 보건(위생)과

- 1) 관내 인수공통결핵 발생 보고 및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 ‘<서식 86> 인수공통결핵 의심 시 발생 보고’ 및 <서식 87> ‘인수공통결핵 의심 시 역학조사 결과 보고’
- 2) 관할 보건소의 인수공통결핵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 3) 관할 보건소의 인수공통결핵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관리 지침 등에 대한 교육

### 다. 질병관리본부

- 1) 인수공통결핵 발생 관리 지침 교육
- 2) 시·도의 인수공통결핵 역학조사 및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 3) 인수공통결핵 발생 자료 구축
- 4) 인수공통결핵 발생 역학조사 및 관리 내용 평가 및 환류



## 4. 인수공통결핵 관리 및 접촉자 검사

### 가. 인수공통결핵 발생 사례 조사 내용

#### 1) 사례 조사 내용

##### 가) 인수공통결핵 발생 가축관련 자료

- 발생기관(농장 등) 주소 등 연락처, 축종(품종), 사육두수, 검사두수, 발생두수, 폐사두수, 발견일자 기재

##### 나) 접촉자 조사 : 해당 기관 내 생활자 등

- 접촉자의 정의 : 인수공통결핵 발생 가축과 접촉한 농장주, 직원 및 주변인
  - 접촉자 분류 : 가축과의 접촉 정도에 따라 밀접 혹은 기타 접촉자로 분류하되 역학조사를 실시한 담당의사(결핵관리 의사) 또는 결핵관리요원이 결정(밀접 혹은 기타 접촉자 분류는 새로운 정보가 얻어짐에 따라 변동 가능)
  - ※ 밀접 접촉자 : 농장에서 매일 인수공통결핵 발생 가축과 접촉한 농장주 및 직원 등

### 나. 접촉자 검사 및 추서관리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해당 지자체 조사기관에서 인수공통결핵 발생 통보 시 해당 농장에 대해 7일 이내 접촉자 검사 실시

#### 1) 방법

##### 가) 흉부 X선 검사

- 접촉자 모두에게 실시

##### 나)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 흉부 X선 사진에 결핵 의심 소견이 있는 자는 객담검사를 실시
- 흉부 X선 사진이 정상이라도 결핵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객담검사를 실시
- 객담검사 절차 및 방법은 환자의 객담 확보에 기술된 바에 따름

## 2)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및 추구관리

- 가) 결핵검진에서 결핵환자로 진단된 사람은 『결핵관리지침』에 따라 치료 및 추구관리를 실시
- 나) 결핵으로 진단 받지 않은 사람은 결핵 증상 등에 대해 주지시키고 결핵 증상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도록 교육

## 다. 객담검사 및 배양검사 의뢰

- 1) 환자와 접촉자의 객담검사는 결핵관리지침의 환자 발견 및 등록환자 관리에 따라 시행
- 2) 배양 의뢰 시 의심환자로부터 채취한 객담검체 3개(즉석 1개, 재가 2개)를 모두 의뢰하도록 하고 객담검사의뢰서 비고란에 “인수공통결핵”으로 기입하여 의뢰
- 3) 배양 양성인 경우 필히 결핵균 유전형검사를 의뢰
- 4) 환자가 타 의료기관이나 검사기관에서 이미 객담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조사하고 만약 배양 양성인 경우 그 균주를 검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결핵균 DNA검사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로 송부

## 라. 결과보고 및 자료 보관

- 시·도 보건(위생)과는 인수공통결핵 발생 및 역학조사(접촉자 조사) 결과를 매월 10일 이내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 ※ ‘<서식 86> 인수공통결핵 의심 시 발생 보고’ 및 ‘<서식 87> 인수공통결핵 의심 시 역학조사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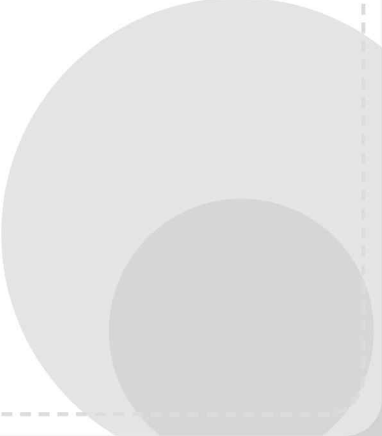
마.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53호)」 제15조(감염소 등에 대한 조치)



# IX

## 결핵예방 홍보

1. 추진개요 / 276
  2. 결핵예방의 날 / 281
  3. 홍보자료 활용안내 / 282
- 

일러두기

결핵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사업 추진과 함께 국민 인식개선 및 결핵검사, 기침예절 실천 등 예방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국민 홍보사업의 병행이 필수적이다. 이 절은 결핵예방 홍보사업에 대한 목적과 방향, 홍보 콘텐츠 활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 1. 추진개요

### 가. 목적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결핵, 잠복결핵감염,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경각심 제고 및 검사와 치료, 기침예절 실천 등 행동변화를 위한 홍보 시행으로 결핵 발생률 감소에 기여

### 나. 기본방향

-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비전으로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인구 10만명당 4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2030년까지 결핵 조기 종식을 목표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등 관련 홍보 시행

비전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목적	결핵 발생률 감소				
홍보 목표	결핵·잠복결핵감염인식개선   2주 이상 기침 시 검사   기침예절의 실제적 실천				
인식개선 및 행동변화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 향상 : 결핵,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li> <li>▪ 인식 개선 : 경각심 제고</li> <li>▪ 행동 변화 :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검사</li> <li>▪ 배려 문화 : 올바른 기침예절의 실제적 실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자치단체 연계 현장 홍보 강화</li> <li>▪ 관계 부처·기관·단체 홍보 체계 강화</li> <li>▪ 대상별 메시지 개발 등 맞춤형 홍보</li> <li>▪ 검진 및 치료 안내 홍보 등</li> </ul>		
<p>핵심 메시지      △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p>					
채널	Mass Media (TV·라디오 등)	인쇄·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행사 (주간행사, 공모전 등)	언론 (보도자료, 설명회 등)	SNS (대학생 홍보단 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li> <li>▷ 노인 등</li> <li>▷ 청소년</li> <li>▷ 검진대상자</li> <li>▷ 이해관계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청소년</li> <li>▷ 일반인, 노인 등</li> <li>▷ 보건의료인</li> <li>▷ 검진대상자</li> <li>▷ 이해관계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 노인 등</li> <li>▷ 어린이·청소년</li> <li>▷ 이해관계자</li> <li>▷ 초·중·고</li> <li>▷ 대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 노인 등</li> <li>▷ 검진대상자</li> <li>▷ 이해관계자</li> <li>▷ Opinion leader</li> <li>▷ 보건의료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국민</li> <li>▷ 1020세대</li> <li>▷ 보건의료인</li> <li>▷ Opinion leader</li> </ul>
등향	상시적 언론 모니터링 및 이슈 관리 등				

< 결핵예방 홍보 비전-목적-목표-추진전략 도식도 >





## 다. 기관별 역할

### 1)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 위기소통담당관실)

- 결핵, 잠복결핵감염, 다제내성 결핵 관련 홍보계획 등 수립과 시행
- 대상별 홍보 자료 개발 및 보급
- 시·도 및 보건소 등에 홍보자료(각종 홍보물, 홍보물품 등) 지원
-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결핵예방주간 지원
- 시·도 및 보건소 등 연간 홍보사업 현황 파악(제출 요청 등) 및 분석 등

### 2) 시·도 (보건정책과 등)

- 시·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관련 홍보계획 수립과 운영
- 지역주민 등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홍보자료, 홍보물품 등 개발과 보급
-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홍보·교육사업 시행
- 중앙정부에서 배포한 각종 홍보자료 관리와 지역사회 배포
-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홍보사업 현황 파악(상·하반기) 및 제출 등

### 3) 시·군·구 (보건소)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관련 세부 홍보계획 수립과 운영
- 지역주민 등 대상별 홍보자료, 홍보물품 개발과 보급 등
- 정부 및 시·도에서 배포한 각종 홍보자료 관리와 지역사회 배포
-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홍보·교육·검진 사업 시행
- 정부 및 시·도에서 요청하는 홍보사업 현황 파악(상·하반기) 및 제출 등

## 라. 세부방향

### 1) 세부 추진 방향

- 결핵, 잠복결핵감염, 다제내성 결핵 관련 국민 인식개선,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적 홍보 시행



- 결핵취약계층(어르신, 외국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홍보 자료 개발과 보급
-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검사 독려,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유도 및 기침예절 실천 등 행동변화 홍보
-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협력 홍보로 효과 극대화
- 언론(보도자료 등), 광고(TV, 라디오, 교통매체 등), SNS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참여형 홍보(공모전, 홍보부스 운영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시행
- 매년 「결핵예방의 날(3.24)」을 계기로 기념행사 개최 및 결핵예방주간 운영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결핵검사 등 시민참여 유도

## 2) 소통 메시지 방향

### 가) 인식개선 메시지 (참고 안)

- 경각심 제고 등 인식개선
  -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에서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 1위
  - 대한민국 매년 약 2만6천 명의 결핵환자 발생, 약 1천 8백 명이 결핵으로 사망
  - 대한민국 국민의 1/3이 결핵균 보유
  - 결핵신환자의 2/5가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사망자의 4/5가 65세 이상 어르신
  - 결핵,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 대한민국 결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시 이미지)



## 나) 예방행동 변화 메시지 (참고 안)

- 예방행동 변화
  -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 65세 이상 어르신, 아무 증상이 없어도 매년 1회 결핵검진
  - 2주 이상 기침, 가래,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침할 땐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 ※ 잠복결핵감염 및 다제내성 결핵 관련 메시지를 2020년에 개발 예정

(예시 이미지)



다) 새 학기 청소년 대상 결핵예방 메시지 (참고 안-가정통신문)

2가지 결핵예방수칙 잘 지켜 건강한 학교생활 보내기

-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아, 결핵으로부터 안심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핵예방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 결핵은 호흡기로 전파되므로 학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가지 결핵예방수칙

- 【 하나 】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검진 받기
- 【 둘 】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침예절 실천하기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방법

-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침예절은 이렇게!
- ☞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2. 결핵예방의 날

### 가. 결핵예방의 날

-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3월 24일(세계 결핵의 날)을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 등을 운영

#### • 결핵예방법(제4조)

-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결핵예방의 날」 정부 기념행사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적극 참석 등 협조

### 나. 결핵예방주간

- 「결핵예방의 날」을 전·후로 7일간의 “결핵예방주간”을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결핵예방 홍보 등 현장 중심 캠페인활동 전개

#### • 결핵예방주간 운영 방향

- 참여 : 시·도 및 보건소, 유관 기관, 단체 등
- 기간 : 매년 「결핵예방의 날(3.24)」 전·후 7일간(월~일요일) 운영
- 내용 :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결핵예방 캠페인(검진 캠페인, 결핵예방 교육, 거리 행사 등) 시행 등

### 다. 기관별 역할

- 질병관리본부
  - 계획수립 및 시행
  - 기념행사 개최, 각종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등



- 시·도 및 보건소
  - 계획수립 및 시행
  - 추진 계획 및 결과 제출
  - 기념식 참여, 행사 개최, 캠페인(검진, 거리 행사 등), 홍보자료, 홍보물품 개발·보급

### 3. 홍보자료 활용안내

#### 가. 결핵ZERO 홈페이지

- 결핵 관련 각종 홍보·교육 자료 활용방법

- 결핵ZERO 홈페이지 (<http://tbzero.cdc.go.kr>)
  - '결핵예방 & 기침예절 홍보·교육자료 다운로드'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잠복결핵감염 홍보·교육자료 다운로드'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나. 질병관리본부 및 결핵ZERO SNS 채널

- 질병관리본부 유튜브 : <http://www.youtube.com/c/질병관리본부KCDC>
- 결핵ZERO 유튜브 : <http://www.youtube.com/user/StoptheTB>
- 결핵ZERO 블로그 : [http://blog.naver.com/kcdc\\_stoptb](http://blog.naver.com/kcdc_stoptb)

# X

## 국가결핵관리사업 감시 및 평가

1. 목적 및 추진방향 / 284
2. '20년 결핵관리 지표 / 285
3. 모니터링 자료의 환류 / 288

**일러두기**

국가결핵관리사업을 통해 결핵퇴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 사업 수행 체계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목표 선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절은 국가결핵관리사업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와 환류에 대한 내용이다.

## 1. 목적 및 추진방향

### 가. 목적

- 국가결핵관리사업 및 지자체 결핵관리사업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그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국가결핵관리사업의 내실화 도모 및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나. 추진 방향

#### 1) 공통지표 마련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도모

- 대표지표 : 결핵관리 종합계획 및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대표 성과지표 및 추진과제별 성과지표
- 사업관리지표 : 국가결핵관리사업 확대 및 결핵예방관리 강화 대책 수립에 따른 신규·변경사업에 대한 사업별 지표
  - ※ 변경되는 지표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 상황을 평가·환류하기 위한 지표

#### 2) 분기별 자료 환류로 효과적·효율적 사업 관리 도모



## 2. '20년 결핵관리 지표

### 가. 대표지표(12개)

- I-① 결핵 발생률 : WHO에 보고하는 우리나라 신고 결핵 신환자수를 바탕으로 WHO가 발표하는 추정치로 국가단위 지표
- I-② 신고 결핵 신환자율 : 신고 결핵 신환자수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누어 10만명당 신고 결핵 신환자율 산출
- I-③ 결핵 사망률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결핵 사망자 수를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누어 10만명당 결핵 사망률 산출
- I-④-1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중 검진을 실시한 비율(가족 검진완료율)과 가족검진 대상자가 있는 도말양성 결핵환자 중 1명 이상 가족검진을 한 비율(가족검진참여율)을 곱하여 산출
- I-④-2 호흡기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 중 검진실시한 비율(가족 검진 완료율)과 가족검진 대상자가 있는 호흡기 결핵환자 중 1명 이상 가족검진을 한 비율(가족검진참여율)을 곱하여 산출
- I-⑤-1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 다제내성결핵을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환자 중 치료성공자(완치+완료)의 비율
- I-⑤-2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 다제내성결핵을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신환자 중 치료성공자(완치+완료)의 비율
- I-⑤-3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 다제내성결핵을 제외한 사업 전년도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중 치료성공자(완치+완료)의 비율
- I-⑤-4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 사업 전전년도 다제내성 결핵환자 중 치료성공자(완치+완료)의 비율
- I-⑥ 결핵환자 관리율 : 결핵환자 신고 건 중 사례조사를 실시한 건수의 비율
- I-⑦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건수 : 해당년도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건 수
- I-⑧ 검진 의지율 : 결핵 인식 및 캠페인 효과조사 대상자 중 검진 의지가 있는 답변자 수의 비율



나. 사업관리지표(16개)

- II-①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성공률 : 전염성 결핵환자 비순응 관리 의뢰 건 중 치료동의 또는 입원명령한 비율
- II-② 도말양성 결핵환자 복약확인율 :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초기 2주간 평균 복약확인율
- II-③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실시율 : '18~'19년 결핵안심국가 검진 사업 양성자의 치료실시율
- II-④-1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 집단시설종사자 사업대상자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자의 비율
- II-④-2 집단시설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율 : 집단시설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 양성자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자의 비율
- II-④-3 집단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율 : 집단시설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자 중 치료 완료자의 비율
- II-⑤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 : 집단시설 내 전염성 결핵환자 대상 역학조사 실시 건수
- II-⑥-1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률(실시율) : 결핵역학조사를 통해 진단된 잠복결핵 감염자 중 치료를 시작한 비율
- II-⑥-2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 : 치료를 시작한 잠복결핵감염 자 중 치료완료자의 비율
- II-⑦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 호흡기결핵환자 가족접촉자 및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자 수(접촉자 연령은 65세 이하로 한정)
- II-⑧-1 가족접촉자 잠복결핵 치료시작률 : 가족접촉자 검진을 통해 진단된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시작한 비율
- II-⑧-2 가족접촉자 잠복결핵 치료완료율 : 치료를 시작한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완료자의 비율
- II-⑨ 노인결핵검진 수검률 : 노인결핵검진 사업 목표 인원 중 결핵검진 실시자의 비율
- II-⑩ 폐결핵유소건자 결핵검진 실시율 : 건강검진 폐결핵 유소건자 중 2차검진 실시자의 비율
- II-⑪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표 분석회의 실시율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표 분석회의를 실시한 보건소 비율
- II-⑫ 결핵담당자 교육 이수 여부 : 지자체 결핵담당자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결핵관리과정' 교육을 수료하였는지 여부

## 다.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3개)

- Ⅲ-①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 다제내성결핵을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신환자 중 치료성공자(완치+완료)의 비율
- Ⅲ-②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실시율 : '18~'19년 결핵안심국가 검진 사업 양성자의 치료실시율
- Ⅲ-③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 호흡기결핵환자 가족접촉자 및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접촉자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자 수(접촉자 연령은 65세 이하로 한정)



### 3. 모니터링 자료의 환류

#### 가. ‘결핵관리소식지’ 발간

##### 1) 발간 시기 및 주기 : 4회 발행

구분	발행월	내용
결핵관리소식지 1호	4월	1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결핵관리소식지 2호	7월	2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결핵관리소식지 3호	10월	3사분기 지표 실적 현황
결핵관리소식지 4호	익년 2월	해당년도 지표 실적 확정

##### 2) 배부처 및 발간

- 배부처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내 관련부서, 전국 시·도(시·군·구), 결핵관리사업 관련 기관 및 의료기관
- 발간 : 웹사이트 게재
  - ※ 웹사이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결핵ZERO홈페이지(<http://tbzero.cdc.go.kr>) 등

##### 3) 수록내용

- 결핵관리지표 실적
- 결핵관리지표 산식

#### 나. 활용방안

- 지자체 시행계획의 추진 경과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등의 실적자료로 활용
- 결핵관리지표 실적을 통한 미비점을 확인하여 대책 강구
  - ※ 지표 실적 향상을 위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예산배정, 사업선정, 포상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표 1. 결핵관리지표 산출 방법

지표명	산식	자료원 및 시기
<b>■ 대표지표</b>		
I-① 결핵 발생률	WHO에 보고하는 우리나라 신고 결핵 신환자수를 바탕으로 WHO가 발표하는 추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O report</li> <li>익년 10월 발간</li> </ul>
I-② 신고 결핵 신환자율	$(A / B) \times 100,000$ A : 질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수 B : 주민등록연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관리본부</li> <li>익년 7월 발간</li> </ul>
I-③ 결핵 사망률	$(A / B) \times 100,000$ A : 통계청 제공 결핵 사망자 수 B : 주민등록연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청</li> <li>익년 10월 발간</li> </ul>
I-④-1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A / B) \times (C / D) \times 100$ A : B 중 검진실시 인정자 수 B :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검진 대상자 수 C : D 중 1명 이상 가족검진을 한 도말양성 결핵환자 수 D : 가족검진 대상자가 있는 도말양성 결핵환자 수 ※ C/D: 가족검진참여율, A/B: 가족검진완료율 ※ 다음의 경우 검진실시자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5세 초과 : 검사(흉부X선검사, 또는 TST, 또는 IGRA)를 시행한 경우</li> <li>65세 이하 : 흉부X선검사와 TST, 또는 흉부X선검사와 IGRA를 시행한 경우</li> <li>흉부X선검사 또는 객담검사를 시행하였고 최종검진결과가 '활동성결핵'인 경우</li> <li>신생아는 흉부X선 또는 TST시행, 임산부는 TST 또는 IGRA, 과거(잠복) 결핵진단자는 흉부X선검사를 시행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신고일기준 당해년</li> <li>익년 1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li> </ul>
I-④-2 호흡기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A / B) \times (C / D) \times 100$ A : B 중 검진실시 인정자 수 B :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검진 대상자 수 C : D 중 1명 이상 가족검진을 한 호흡기 결핵환자 수 D : 가족검진 대상자가 있는 호흡기 결핵환자 수 ※ C/D: 가족검진참여율, A/B: 가족검진완료율 ※ 다음의 경우 검진실시자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5세 초과 : 흉부X선검사, 또는 TST, 또는 IGRA를 시행한 경우</li> <li>65세 이하 : 흉부X선검사와 TST, 또는 흉부X선검사와 IGRA를 시행한 경우</li> <li>흉부X선검사 또는 객담검사를 시행하였고 최종검진결과가 '활동성결핵'인 경우</li> <li>신생아는 흉부X선 또는 TST시행, 임산부는 TST 또는 IGRA, 과거(잠복) 결핵진단자는 흉부X선검사를 시행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신고일기준 당해년</li> <li>익년 1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li> </ul>



지표명	산식	자료원 및 시기
I-⑤-1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A / B) \times 100$ A : B 중 치료성공자(완료+완치) 수 B : 다제내성결핵을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환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신고일기준 전년</li> </ul>
I-⑤-2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A / B) \times 100$ A : B 중 치료성공자(완료+완치) 수 B : 다제내성결핵을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신환자 수 ※ 지자체 평가시 B 중 사망을 제외하고, B에 따른 가중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신고일기준 전년</li> </ul>
I-⑤-3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A / B) \times 100$ 수 A : B 중 치료성공자(완료+완치) 수 B : 다제내성결핵을 제외한 사업 전년도 도말양성 결핵 신환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신고일기준 전년</li> </ul>
I-⑤-4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A / B) \times 100$ A : B 중 치료성공자(완료+완치) 수 B : 사업 전전년도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신고일기준 전전년</li> </ul>
I-⑥ 결핵환자 관리율	$(A / B) \times 100$ A : B 중 사례조사를 실시한 건수 B : 결핵환자 신고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신고일기준 당해년</li> </ul>
I-⑦ 입원·격리 치료명령 실시 건수	A A : 해당년도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명령일기준 당해년</li> </ul>
I-⑧ 검진 의지율	$(A / B) \times 100$ A : B 중 검진 의지가 있는 답변자 수 B : 조사 대상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핵 인식 및 캠페인 효과조사</li> <li>격년 12월 발표</li> </ul>

지표명	산식	자료원 및 시기
<b>■ 사업관리지표</b>		
II-①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성공률	$(A / B) \times 100$ A : B 중 치료동의 또는 입원명령한 건수 B : 전염성 결핵환자 중 비순응 환자관리 의뢰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의뢰일기준 당해년</li> </ul>
II-② 도말양성 결핵환자 복약확인율	A, B A : 도말양성 결핵환자 중 복약확인 대상자 수 B :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초기 2주간 평균 복약확인율 ※ 치료시작일이 없어 복약관리 상태값이 치료 전인 환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신고일기준 당해년</li> </ul>
II-③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실시율	$[(A / B) \times 100] + [(e / f) \times 100 \times 0.1]$ A : B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실시자 B : 2019년 검진 사업 양성자 e : f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실시자 또는 추구 검사자 f : 2018년 검진 사업 양성자 중 미치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검진일 기준 '18-'19년)</li> <li>국민건강보험공단</li> </ul>
II-④-1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A / B) \times 100$ A : 당해연도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자 수 B : 당해연도 잠복결핵감염 사업 대상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익년 1월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li> </ul>
II-④-2 집단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치료실시율	$(A / B) \times 100$ A : B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자 수 B : 전년도 잠복결핵감염 검진 양성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국민건강보험공단</li> <li>익년 1월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li> </ul>
II-④-2 집단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	$(A / B) \times 100$ A : B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자 수 B : 전년도 잠복결핵감염 검진 양성자 중 치료 실시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국민건강보험공단</li> <li>익년 1월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li> </ul>



지표명	산식	자료원 및 시기
II-⑤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	A A : 집단시설 내 전염성 결핵환자 대상 역학조사 실시 건수 ※ 지표환자 치료결과 '진단변경'인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보고일기준 당해년</li> </ul>
II-⑥-1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률	$(A / B) \times 100$ A : B 중 치료시작한 사람 수 B : 잠복결핵감염 진단자 수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대상자 중 잠복결핵감염 진단자만 해당 ※ B에서 '치료전 검사(간기능/혈소판/신기능)결과 이상자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자' 제외 ※ 지표환자가 다제내성 결핵 또는 진단변경 된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보고일기준 당해년</li> <li>익년 1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li> </ul>
II-⑥-2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	$(A / B) \times 100$ A : B 중 치료완료여부의 '완료'자로 입력된 사람 수 B : 잠복결핵감염 진단자 중 치료 시작한 사람 수 ※ B에서 '치료 부작용(간기능이상/피부이상/혈소판이상)으로 치료를 중단한 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치료완료예정일기준 당해년</li> <li>익년 1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li> </ul>
II-⑦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text{㉞}) \times 0.6] + (\text{㉟}) \times 0.4] \times \text{㉠}$ ㉞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 $(A/B) \times 100$ • A =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자 수 • B =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 수 ㉟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 $(C/D) \times 100$ • C =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자 수 • D =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 수 ㉠ 검진대상자 수가 상위 5%인 경우 5% 가중치 부여(1.05), 그 외는 1 ※ B, D : 신고일 또는 보고일이 당해년인 결핵환자 접촉자(65세 이하) 중 잠복결핵감염검사 대상자 ※ A, C : B, D 중 잠복결핵감염검사('TST' 또는 'IGRA')를 시행하여 검사 결과가 입력된 자 * 제외기준 : 지표환자 치료결과가 진단변경인 경우, 접촉자가 과거 (잠복)결핵 진단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신고일기준 당해년</li> <li>익년 1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li> </ul>





지표명	산식	자료원 및 시기
II-⑧-1 가족접촉자 잠복결핵 치료시작률	$(A / B) \times 100$ A : B 중 치료시작한 사람 수 B : 잠복결핵감염 진단자 수 ※ 가족접촉자검진 대상자 중 잠복결핵감염 진단자만 해당 ※ B에서 '치료전 검사(간기능/혈소판/신기능)결과 이상자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자' 제외 ※ 지표환자가 다제내성 결핵 또는 진단변경 된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신고일기준 당해년</li> <li>익년 1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li> </ul>
II-⑧-2 가족접촉자 잠복결핵 치료완료율	$(A / B) \times 100$ A : B 중 치료완료여부의 '완료'자로 입력된 사람 수 B : 잠복결핵감염 진단자 중 치료 시작한 사람 수 ※ B에서 '치료 부작용(간기능이상/피부이상/혈소판이상/기타)으로 치료를 중단한 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치료완료예정일기준 당해년</li> <li>익년 1월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li> </ul>
II-⑨ 노인결핵검진 수검률	$(A / B) \times 100$ A : 만65세 이상 결핵검진 실시자 수 B : 노인결핵검진 사업 목표 인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취약계층검진관리</li> <li>노인결핵검진사업 결과보고서</li> </ul>
II-⑩ 폐결핵유소견자 검진 실시율	$(A / B) \times 100$ A : 2차검진 실시자 수 B : 건강검진 폐결핵 유소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검진자관리</li> <li>국민건강보험공단</li> </ul>
II-⑪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표 분석회의 실시율	$(A / B) \times 100$ A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표 분석회의 실시 보건소 수 B : 지자체 보건소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공공협의회의의 결과보고서</li> </ul>
II-⑫ 결핵담당자 교육 이수 여부	해당 지자체 결핵담당자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결핵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보고서</li> </ul>



지표명	산식	자료원 및 시기
<b>■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b>		
III-①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A/B) \times C \times (1+D) \times 100$ <p>A = B 중 결핵치료 성공자(완치+완료) 수                      B = 다제내성결핵 및 사망자를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 신환자 수                      C = B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그 외는 1 (시군구만 해당)                      D =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A, 그 외는 1                      ※ 제외대상 : 해당년도 7월 1일 이후 치료를 시작한 리팜핀 단독내성 환자, '중단' 퇴록한 사유가 '외국인(귀국)'인 '외국인'환자, 출입국기록 제출을 통해 해외체류 사실이 확인된 재외국민/유학생/주재원 등, 기평가자 주치의 판단으로 평가기준일 이후까지 치료하는 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신고일 기준 전년</li> </ul>
III-②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실시율	$[(A / B) \times C \times 100] + [(D) \times 10\%]$ <p>A = B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실시자 수                      B = 2019년 검진 사업 양성자                      C = [시·군·구] B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그 외는 1                      [시·도] 보건소 당 관리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그 외는 1                      D = 2018년도 검진 대상자(치료 미실시자)에 대한 관리 가중치 부여                      • D = <math>(e/f) \times c \times 100</math>                      • e = f 중 2020년도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자 수 및 검진일 기준 1년 후 추구검사(흉부 X선 검사) 실시자 수                      • f = 2018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양성자 중 치료 미실시자                      • c = [시·군·구] f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그 외는 1                      [시·도] 보건소 당 관리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그 외는 1                      * 결핵환자, 사망자, 과거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 정당한 의학적 사유로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임신, 65세 이상 고령, 치료위험인자 보유자 등)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검진일 기준 ('18-'19년)</li> <li>국민건강보험공단</li> </ul>
III-③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㉑ \times 0.6) + (㉒ \times 0.4)] \times ㉓$ <p>㉑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 <math>(A/B) \times 100</math>                      • A =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자 수                      • B =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 수                      ㉒ 결핵역학조사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 <math>(C/D) \times 100</math>                      • C = 결핵역학조사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자 수                      • D = 결핵역학조사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 수                      ㉓ 검진대상자 수가 상위 5%인 경우 5% 가중치 부여(1.05), 그 외는 1                      ※ B, D : 신고일 또는 보고일이 당해연인 결핵환자 접촉자(65세 이하) 중 잠복결핵감염검사 대상자                      ※ A, C : B, D 중 잠복결핵감염검사('TST' 또는 'IGRA')를 시행하여 검사 결과가 입력된 자                      * 제외기준 : 지표환자 치료결과가 진단변경인 경우, 접촉자가 과거(잠복)결핵 진단자인 경우                      ※ 고의로 접촉자 명단을 변경한 것이 발견 될 경우 '0'점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결핵관리</li> <li>신고일기준 당해년</li> <li>익년 1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된 자료로 확정</li> </ul>

# XI

## 부 록

제1절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집행지침 / 296

제2절 결핵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 및 예산의 집행 / 313

제3절 결핵 필수재 수급관리 / 343

제4절 「결핵예방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 349

제5절 자주 묻는 질문 / 378

제6절 서식 / 388

# 제 1 절

##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집행지침

### 일러두기

2019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예산의 교부조건, 집행기준, 내역변경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행방안 등을 잘 숙지하여 예산을 적정 집행하도록 한다.

## 1. 개요

### 가. 사업목적

- 학교 등 집단 결핵발생, 결핵환자들의 접촉자검진 등 감염자 발견사업,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사업 등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결핵 확산 방지 및 전과차단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 나. 관련근거

- 사업 근거
  -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법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법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법 제11조(결핵검진 등), 법 제15조(입원명령), 법 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법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법 제20조(결핵환자 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 비용 지원 근거

- 결핵예방법 제26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법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법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시행령 제12조(국가 및 시도의 보조금)

#### 다. 예산구분

- 회계구분 : 국민건강증진기금
- 세부사업명 : 국가결핵예방(091-4800-4844-303)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라. 적용대상 기관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 2. 예산의 집행 및 정산

### 가. 집행관련 법규

- 본 사업은 그 수행과 예산의 집행·정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함
  -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나. 예산 집행 및 정산

### 1) 보조금 교부조건

#### [일반사항]

- 가)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나)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국가결핵예방」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다)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물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라)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마)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함
- 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수행시]

- 가)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1)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2)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정산시]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라)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1)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2)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마)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바)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1)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조금 교부기관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미충족한 경우
  - ※ 허위의 신청, 보조금 타용도 사용 확인시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결정의 취소 뿐만 아니라 교부금에 대한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3) 예산 집행의 원칙

- 인건비, 회의수당 등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그 외 예산의 집행은 기관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카드의 사용을 자제함
- 전년도 지원 예산 부족 또는 익월 청구방식에 따른 미지급금(전년도 사업분)은 당해년도 국가결핵예방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함

### 4) 예산의 정산

#### 가) 상반기 집행실적 보고

- 사업 집행실적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상반기 집행실적(6월말)을 7월 20일까지 ‘<서식 88> 000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상반기 집행실적 보고’에 따라 작성·보고함
- ※ 집행실적 : 시도에서 교부한 예산이 아닌 기관에서 실제로 집행한 금액(시도에서는 보건 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PPM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실집행액을 취합하여 제출할 것)



## 나) 정산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산시 제출서류 : ‘<서식 89> 000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 ‘<서식 90>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비는 사업종료일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고, 당해년도 말 국민건강증진 기금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전액 및 이자는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 다)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산 정정 보고

- 기 보고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산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서식 91>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정내역’에 따라 작성·보고함
- ※ 정정사항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 보고함

#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방지 대책 세부실행 방안

## 가. 적용대상 사업범위

- 1) 회계별 구분 :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모든 재정사업
- 2) 사업별 구분
  - 자치단체이전
    -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중 지자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민간보조기관(시설, 단체, 대학교, 병원 등)에 지급하는 경상적 보조금  
예시) 민간의료기관,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결핵요양시설 등



-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중 지자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민간보조기관(시설, 단체, 대학교, 병원 등)에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

## 나. 세부실행 방안

### 1) 보조사업 관리자 등 교육 강화

- (조치사항) 지침교육은 사업운영 등 관련사항 외에 부정수급방지 및 적발될 경우 조치사항 등 반영하여 지자체 주관으로 민간보조사업자 교육 실시

### 2) 보조사업자 선정 세부기준 및 절차 준수

- 사전검토 사항
  -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지방비·법인 등의 재원 부담능력 유무
  - 회계연도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추가)
  - 사업계획의 허위작성시 불이익
  - 보조금 지원의 중복성
  - 보조사업 선정시 제3자 부당개입 방지
  - 보조사업 수행실적 등
- 법인·단체 등 보조사업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은 보조사업자간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심사후에 선정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
  - 경쟁적 수행기관(단체)이 없는 단일 사업기관인 경우
  - 매년 공모·평가를 진행하기보다 장기적 성과를 추구해야 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 사업이거나 해당기관(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력 등 특이사항을 고려할 때 공모가 적절치 않는 경우

### 3) 부정수급 책임 처벌 강화

- (이행계획) 보조금 법령의 근거규정 상 절차에 따라 이행

- (조치사항)
  - 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지급 중단 등의 조치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교부통지 실시
  
- 4) 보조사업 집행 점검 강화
  - (조치사항) 보조금 교부조건 및 자부담 이행상황, 당초 사업 목적대로 집행 여부, 사업 착수 지연 여부, 부정수급 현황 등을 수시 점검
  
- 5)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 (현황) 목적외 사용, 증빙서류 위조, 영수증 중복사용 등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정 사례 발생
  - (이행계획)
    - 보조금·출연금 사업비 카드의 부적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카드’ 사용승인 제한 대상 업종은 카드사용 금지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지출은 예금통장 이용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자거래로 이행
  - (조치사항) 상기 이행계획을 집행점검 시 확인
  
- 6) 보조사업 정산절차
  - (조치사항) 보조사업 정산 및 이자 반납, 사업실적 보고 등을 명확히 전달

- 주요내용
    - 보조사업 실적 보고 :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 보조사업 실적 제출 : 보조사업 완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보조금법시행령 제12조)
    - 자료 보관기간: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
    - 보관 대상 자료 :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계산서)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증거서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4. 예산의 변경 및 조정

### 가. 내역사업 현황

- '19년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 내역사업은 아래 4개 사업(1~4번)으로 이루어졌음

1.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 결핵요양시설 운영지원
3. IGRA 검사지원(보건환경연구원)
4.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 4-1)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 4-2)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 4-3)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 4-4) 결핵역학조사 등
  - 4-5)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 4-6)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및 잠복결핵감염 관리
5.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시설 구축지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나. 예산 조정

- 보건소결핵관리사업(상기 4번 참조)내의 세내역사업들은 보건소내에서의 국가결핵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종의 성격이므로 세내역사업간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4-1)~4-6) 사업간에 지자체가 자체 변경(조정) 가능함
- ※ 단 4-1)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의 경우,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조정은 가능하나, 부족액 발생시 다른 사업에서 충당할 수 없음

## 5.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집행기준

### 가. 공통사항

- 자치단체 경상보조 : 경상적 경비만 집행 가능
  - ※ 책상, 컴퓨터 등 자산 성격 집행 불가능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자본적 경비만 집행 가능

### 나.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집행기준

#### 1)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 지원내용 :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운영비 포함)
- 지원대상 기관 : 시·군·구(의료기관)
  -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비 집행은 1회계연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인력관리 운영에 참고
- 국고보조율 : 국고 100%
- 집행가능 범위 : 인건비, 운영비(사무용품 구입비, 홍보비, 여비 등 경상경비)
  - ※ 상세사항은 본 지침 중 'Ⅲ-제8절.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참조

#### ① 보수

- 확정 내시 단가 범위 내/년(본인부담 보험료 및 체세, 상여금 등 수당, 퇴직금 포함)
- 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교부된 예산범위 안에서 차등지급 가능하며 연차별 차등지급 상한액은 구간(1년 단위)별 60만원
  - ※ 1년차 간호사와 5년차 간호사의 인건비 차등지급 상한액: 240만원(연봉)
  - ※ 차등지급 상한액 기준은 9급 공무원 호봉 기준으로 구간별 차액의 평균
- 퇴직금 : 12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반드시 사업종료 시(매년) 정산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고 그 근거(납입증명서, 신고서, 계약서 등)를 보관함
-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되 사업수행기관 자체 제정 규정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인 경우 따로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 당해 연도 사업비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사 1년 미만이라도 반드시 퇴직금 적립
  - ※ 전년도 퇴직금 발생 분은 다음 년도 예산에서 지급 불가
- 퇴직금 적립은 사업수행기간의 방침에 따르되 가능한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
- 퇴직금 관련 구체적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용

### ② 상여금(명절수당)

상여금은 연간 8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설·추석 명절마다 각각 40만원 한도 내 지급

※ 단,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의 특성 혹은 의료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초과집행 가능

### ③ 위험수당

직접 결핵환자를 대하여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결핵관리인력에 대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 가능(을종, 병종 지자체 판단)

※ 관련 법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

## 2) 결핵요양시설 운영지원

- 지원내용 : 결핵요양시설 운영비
- 지원대상 기관 : 대구광역시(결핵요양시설)
- 국고보조율 : 국고 50%
- 집행가능 범위 : 인건비, 운영비
  - ※ 해당 기관 사업계획서에 따른 집행

## 3) IGRA 검사지원(보건환경연구원)

- 지원내용 :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기타 취약계층(학교 밖 청소년, 보건소 내소자 등) IGRA 검사비
- 지원대상 기관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국고보조율 : 국고 50%
- 집행가능 범위 : 재료비(IGRA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초차류 구입), 잠복결핵감염 검사 인력 인건비\*, IGRA 검사관련 장비유지비, 시약 배송비
  - ※ 보수(보건소 결핵관리전담요원 지급기준 준용), 사업장 부담 보험료 포함

- 잠복결핵검사 인력 기준
  - 진단검사 유경험자 또는 보건관련 전공자 등
    - \* 잠복결핵감염 검사인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인력(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

#### 4)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 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 지원내용 : 보건소 등 결핵관리전담요원 인건비, 운영비
- 지원대상 기관 : 시·도, 시·군·구 보건소, 시립병원
- 국고보조율 : 국고 50%
- 집행가능 범위 : 인건비, 운영비\*(교육비, 여비 등)
  - \* 운영비 : 결핵관리사업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함
  - 보수 : 35,360천원(또는 17,200천원) 범위내/년(본인부담 보험료 및 제세, 상여금 등 수당, 퇴직금 포함)
    - \* 상기 보수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도로 통보한 기준이므로 각 기관별 인건비는 시도로부터 안내받은 기준에 따름
    - 퇴직금 : 12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반드시 사업종료 시(매년) 정산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고 그 근거(납입증명서, 신고서, 계약서 등)를 보관함
    - 수당 : 지급여부 및 금액은 각 지자체 규정 혹은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 ① 상여금(명절수당)

상여금은 연간 8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설·추석 명절마다 각각 40만원 한도 내 지급

※ 단,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의 특성 혹은 지자체 자체규정에 따라 초과집행 가능

##### [지급방법]

- 1년 이상 근무자는 年 80만원, 6개월~1년 미만 근무자는 年 40만원 한도 내 차등지급하되 명절(설, 추석)을 기준으로 연 2회 지급
  - \* 설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자 40만원, 6개월~1년 미만 근무자 20만원 지급
  - \* 추석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자 40만원, 6개월~1년 미만 근무자 20만원 지급
  - (※ 근무기간 : 당해 사업장에서의 결핵관리전담요원으로서 최초 근무기간시부터 산정)



## ② 위험수당

직접 결핵환자를 대하여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결핵관리인력에 대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 가능(을중, 병중 지자체 판단)

\* 관련 법령

## 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8의 지급구분과 별표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별표8(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 월지급액 (을중) 50,000원, (병중) 40,000원

※ 별표9(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부문) 2.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을중) 나. 결핵·한센병·감염병·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사람  
(병중) 가. 결핵·한센병·감염병·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정액급식비

연간 1,560천원(130천원\*12월) 이내 정액급식비 지급 가능

※ 단,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의 특성 혹은 지자체 자체규정에 따라 초과집행 가능

## ④ 복지포인트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연 400천원 이내 차등 지급

- 사업장 부담 보험료 : 사업장은 결핵관리전담요원에 대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연가보상비 :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기타(인력운영 사항 등)

- 결핵관리전담요원 자격기준 : 민간공공협력 유경험자, 간호사, 보건관련 전공자 등
- 결핵관리전담요원 업무 범위 : 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직접복약확인, 입원명령지원, 결핵환자 가족검진(밀접접촉자검진), 관내 의료기관 결핵관리 등 결핵관리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 결핵관리 이외 업무 절대 불가)

나)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 지원내용 : 입원명령대상 환자 입원비(약제비 포함),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 지원대상 기관 : 지자체(시·도 혹은 시·군·구 보건소)
- 국고보조율 : 국고 50%
- 집행가능 범위 : 입원명령대상 환자 입원비(약제비 포함),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 지원내용 : 보건소 결핵환자 객담검사비, 판독비
- 지원대상 기관 : 지자체(시·도 혹은 시·군·구 보건소)
- 국고보조율 : 50%



- 집행 가능 범위 : 객담 검사비, 2차 판독비
  - ※ 검사기관 선정은 지자체 결정사항임
  - ※ 검사별 단가 : 의원급 급여액의 80% 수준으로 책정

#### 라) 결핵역학조사 등

- 지원내용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관련 비용
- 지원대상 기관 : 시·도, 시·군·구 보건소
- 국고보조율 : 국고 50%
- 집행 가능 범위
  - 접촉자조사 검사관련(흉부 X선,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잠복결핵감염 검사비, 검사 부작용 치료비, 재료비, 검체 배송비,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등)
  - 소아청소년 전문의료기관을 통한 조사비용에서 사전에 협의된 검사 및 치료항목 중 비급여 항목
  - 결핵역학조사 운영비(홍보비, 여비, 교육비 등)
  - 그 외 역학조사 등 결핵업무 수행 관련 비용

#### 마)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 지원내용 : 접촉자 등 가족검진비
- 지원대상기관 : 시·군·구 보건소
- 국고보조율 : 국고 50%
- 집행가능 범위
  - 접촉자 검진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접촉자 검진 예약금(위탁수수료 포함)

#### 바)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관리

- 지원내용 : 취약계층 결핵 관리시설 운영비,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관리비
- 지원대상 기관 : 시·도, 시·군·구 보건소
- 국고보조율 : 국고 40%~100%
- 집행 가능 범위

- 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서울시만 해당)
  - 노숙인 결핵시설(미소꿈터) 운영비, 취약계층 결핵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노숙인 직접복약관리비
- 노인 결핵검진
  - 흉부 X선, 객담 도말 및 TB-PCR검사비용 등
- 결핵 고위험군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 치료(모든 시·도 해당)
  - 집단시설 종사자 및 취약계층 등 대상 잠복결핵감염 진단, 치료에 소요되는 검사비, 시약 및 소모품비, 약제비 등(경상 경비)

5)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시설 구축지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내용 : 총23병상, 결핵 및 정신질환자 전용병동(폐쇄병동 외) 리모델링\*, 음압시설, 전용 엘리베이터, 기타 편의시설
  - \* 동관 1개 병동 개조 및 재배치
- 지원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국고보조율 : 국고 50%



## 6. 인력관련 사항

### 가. 인력의 관리

- 본 사업의 인력은 사업기관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채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정기적 보수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관리하며, 예상되는 문제발생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 나. 인력의 채용

- 인력의 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된 인력의 인사권은 사업기관에 있음
  -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되 해당 인사서류의 원본은 사업기관에서 일괄 보관하도록 함
  - 인사 관련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서 각 1부, 경력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채용건강진단서 1부 등

### 다. 급여

- 급여의 지급
  - 사업비 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만을 지급하도록 함
  - 급여는 사업인력 각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그 근거를 보관함
-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지급대상은 해당사업에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며 매년 사업종료시 반드시 정산하여 개인퇴직연금 등으로 운영
  - 퇴직 시에 본인통장으로 지급하고 근거를 보관함

### 라. 인력의 근무규정 및 직무내용

- 투입된 인력에 따른 업무 및 역할, 근무규정 등을 내부분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사업 수행 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 2 절

# 결핵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 및 예산의 집행

### 알려두기

이 절은 국가가 지원하는 결핵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질 향상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 및 예산집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수하고, 질병관리본부(사업부서)의 지도·감독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지침의 해당 부분을 따름

※ 사업 수행을 위한 서류 작성 시 필요한 서식은 계약체결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 1. 사업관리

### 가. 사업 운영 관련 법규

- 1) 사업의 수행과 예산의 집행·정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근거에 의함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
  -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2) 보조사업자는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지도에 따름
  - ※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



## 나. 보조사업자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 1)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간단체 중 법인(민법에 명시된 법인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결핵관련 사업 의지가 있는 기관
-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분야 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2) 선정방법

- 질병관리본부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 방식으로 하여야 함
  - ※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 접수기간은 15일 이상 부여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모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선정 가능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상기 규정 이외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아래 참조)

- 경쟁적 수행기관(단체)이 없는 단일 사업기관인 경우
- 매년 공모·평가를 진행하기보다 장기적 성과를 추구해야 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 사업이거나 해당기관(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용이하게 판단 가능한 경우
- 이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력 등 특이사항을 고려할 때 공모가 적절치 않은 경우

※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중 차목

-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다.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 1) 사업 계획보고

-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및 보조금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서\*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 별도 제공하는 지정 서식 사용
-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시 업무추진비 및 여비의 과도한 편성 지양

### 2) 사업 결과보고

- (중간결과) 사업기간 1/2이 되는 시점에 ‘중간보고서\*’ 제출
- (최종결과) 보조사업 완료 시 또는 폐지 승인 시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  
※ 별도 제공하는 지정 서식 사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따라 제출 기한 준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기타

- 인쇄본은 좌철 본드 제본 (스프링, 스템플러 제본 지양)
-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번호나 기호를 사용하여 육하원칙에 의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
- 공동수행단체(지회, 지사 등)와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



## 라. 점검 및 평가

### 1) 서면점검

#### 가) 월 실적 점검

-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을 ‘월 실적보고서’에 작성하여 매달 5일까지(당월 실적을 익월에 보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 주요 내용 : 사업별 당월 실적 및 익월 계획, 예산집행, 사업인력 교체, 국내·외 출장계획 및 결과, 회의·교육계획 및 결과, 공무항공 마일리지 현황(분기별) 등
  - ※ 별도 제공하는 지정 서식 사용
  - ※ 민원발생, 감사나 국회관련 사항, 업무추진 상 중요한 문제발생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 나) 반기별 자가점검(Self-check)

- 사업운영 실태 및 예산사용 내역의 적절성 점검
- 상반기 점검결과는 6월 5일까지, 하반기 점검결과는 11월 5일까지 제출
  - ※ 별도 제공하는 지정 서식 사용

#### 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 부정징후 보조사업 점검

- 질병관리본부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부정징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점검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반기별)
- 보조사업자는 조치결과(또는 소명자료·증빙서류)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 2) 현장점검

#### 가) 점검기간 : 5~6월, 10~11월, 필요 시 수시

#### 나) 점검내용 : 사업운영 실태, 예산사용 내역 점검, 물품 구비현황 및 기록물 보관상태 등

#### 다) 기타 :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점검 시 관련 서류(사업 추진 관련 자료 일체, 예산 집행 및 관리 대장 등)를 준비하여 현장점검에 응하여야 함

### 3) 기타 모니터링·평가·감사

- ※ 상기 외 사업운영 실적 및 성과, 예산집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요청할 경우 응하여야 하며, 적정기관에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탁할 수 있음



#### 4) 실적 및 성과평가

가) 중간평가 : 6~7월 실시

나) 최종평가 : 11월~12월 실시

※ 사업평가는 보고서 검토를 통한 서면점검 혹은 실적보고회로 대체 가능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 대상사업, 방법 및 시기 등 조정가능

#### 5) 결과 환류

- 질병관리본부는 점검 종료 후 1개월 이내 점검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보조사업자는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검토 및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 질병관리본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의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과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마. 사업의 운영

#### 1) 회의·교육·행사 관리

가) 계획보고 : 추진 계획(행사명, 일시, 장소, 참석자, 목적, 안건 등 포함)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기관장에게 보고

나) 결과보고 :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장에게 결과(향후계획 등 포함) 보고

※ 별도 제공하는 지정 서식 사용

#### 2) 출장관리

가) 계획보고

- 국내 : 출장 전 출장계획(출장명, 일시, 장소, 출장자, 목적, 주요 확인사항 등 포함)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기관장에게 보고
- 국외 : 출장 전 출장계획(출장명, 일시, 장소, 출장자, 목적, 일시별 계획, 소요예산, 출장자별 업무분장 등 포함)을 수립, 사업수행기관장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 ※ 국외 출장계획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 공지해야 함(전자메일, 전화 등)
  - ※ 별도 제공하는 지정 서식 사용



## 나) 결과보고

- 국내 : 출장 7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장에게 결과(향후계획 등 포함) 보고
- 국외 : 귀국 후 3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장과 질병관리본부에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보고
- ※ 별도 제공하는 지정 서식 사용

## 3)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참조

가) 범위 : 2016. 10. 5일 이후 공무출장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나) 기간 :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

다) 활용방법 :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

## 라) 보고사항

- 계획 시 : 항공운임 신청 전 본인이 보유한 마일리지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가 기재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계획서에 포함
- 귀국 14일 이내 : 보조사업자는 출장자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무 항공마일리지 신고서'에 마일리지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 매 분기 :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인력의 개인별 '공무 항공마일리지 보유 현황'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 ※ 신청서, 신고서, 현황보고는 별도 제공하는 지정 서식 사용

## 4) 연구용역 관리

※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내 연구용역사업 수행 가능

가) 계획보고 : 연구사업에 대한 당위성 등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 내 명시

나) 과제선정 : 자체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 당위성이 질병관리본부와 논의되어야 함

※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거나 방향을 대폭 수정하여 효과성 및 효율성이 전문가에 의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나) 수행기관 선정 : 일반경쟁(공모)을 통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는 내용의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정하여야 함

#### 라) 결과보고

- 보조사업자는 용역사업수행자로 부터 최종보고서, 연구수행 집행실적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 및 검사조서를 작성
- 보조사업자는 최종보고서에 해당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해 사업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 5) 개인정보 관리

가) 원칙 : 근거 없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여권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나) 개인정보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주민번호 미수집시 법령 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예. 금융실명거래,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 등을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업무처리 기간 동안은 수집 가능
  - ※ 단, 개인정보 동의 시 보관기간을 명시하고,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자료 즉시 파기

###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
- 재물목록표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
  - ※ 별도 제공하는 지정 서식 사용
- 변동 현황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함께 보고하고, 처분 등은 질병관리본부의 승인 필요



## 7) 사업계획 변경

## 가)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보조사업 수행 중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비목·세목의 신설, 비목 간 전용, 비목예산의 30%를 초과하는 세목간의 전용)
  - ※ 비목예산의 30% 미만으로 세목 간 전용하는 경우, 사전에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자체조정 결과 보고
  - ※ 업무추진비 증액 조정 지양(총 사업비 변경 시, 업무추진비 구성비 증액 조정 지양)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책임자급 이상 인력 혹은 인건비 수령 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인력의 사업 참여율 변동으로 개별 인건비 지급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 ※ 그 밖의 인력 변동은 월 실적보고 시 보고

## 나)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서, 변경 사업계획서(변경내용 표시)

- ※ 별도 제공하는 지정 서식 사용

## 다) 신청 및 보고기한

- 사업 내용 변경 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 후 추진
- 예산변경 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 혹은 자체조정결과 보고 후 집행
-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자체조정 결과보고는 사업종료일 30일전까지 가능
  - ※ 불가피하게 기간 내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소 사업종료 20일 전에 사업기간 연장 신청가능

## 라)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 또는 인지된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바. 정보공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참고)

## 1) 적용범위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2) 공시기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

※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또는 관련 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시

3) 공시내용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보고서(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만 적용)
- 그 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사. 기록물 및 증빙서류 보관

- 1)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서류 일체, 「계산증명규칙」 제2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
- 2) 보조사업자는 자료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시 감점 및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아. 결과 및 산출물 활용

- 1) 사업내용 활용, 이를 적용한 국내·외 논문, 학회 발표 등은 질병관리본부의 사전승인 필수
  - ※ 별도 제공하는 지정 서식 사용
- 2) 사업 산출물(보고서, 책자, 리플릿 등)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수가 필요하며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질병관리본부와 사업기관에 있음
- 3) 발행기관은 질병관리본부와 사업기관의 기관명·로고를 동시에 기재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제작된 것임을 명시
  - ※ 예시 : 이 책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2. 보조금 관리

### 가. 보조금 교부

#### 1) 교부신청

-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 시 통보받은 교부 계획에 따라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 교부신청서는 별도 제공하는 지정서식 사용

#### 2) 교부조건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 ※ 허위 신청, 보조금 타용도 사용 확인 시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결정의 취소뿐만 아니라 교부금에 대한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조금 교부기관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교부방법

-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는 형태로 교부

- 최소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되, 2회부터의 교부는 전 회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 나. 보조금 집행

### 1) 별도계정 설정

-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 계정(計定) 설정하고, 자체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 변경 불가
-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 사용 원칙
  - ※ 다만 보조사업에 따라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조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

### 2) 보조금 사용 기준

-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의 직접 계좌 이체 또는 보조사업 전용카드 사용만 인정
- 보조금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 ※ 단,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 후 수행기관장의 승인(내부 결제) 필요
-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 원칙
  - ※ 다만, 보조사업 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 다만, 세무서 등이 사후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 집행금액에 포함
-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며, 수기 작성한 영수증 인정 불가
- 예산 집행 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
  - ※ 지출요청서 :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수행기관에서 지출 시 작성하는 서류로 결제자란 반드시 포함
  - ※ 근거자료: 입금내역, 해당 공문, 계획서, 보고서, 방명록 등 e-나라도움 등록



3) 카드의 사용 및 제한

-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2개 이상 발급하여 사용 가능
- 아래 의무적 제한업종 가맹점에서는 보조사업 전용카드 사용불가
  - ※ 의무적 제한업종(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월)」,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10월)」,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월)」에 따라 선정한 업종)

업종	세부 내용
1.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2.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3.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4.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아래의 자율적용 제한 업종에 대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카드 사용 허용 가능

• 자율적용 제한업종(총 55종)

주류판매(유통), 상품권판매, 복권판매, 카바레, 운동경기/레저용품, 극장식당, 산후조리원, 총포류 판매, 남·여 기성복, 양품점, 골동품/예술품, 학습지, 회원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화랑/표구사, 관광민예/선물용품, 헬스클럽/테니스장, 볼링장, 스키장, 수영장, 인형 및 완구 아동용자전거, 악세서리, 복합레저타운/놀이동산, 수제용품점, 음식점, 결혼(가례)서비스, 혼수전문점, 장의사, 이벤트, 상담실(결혼 등), 장례식장, 묘지(납공공원), 레포츠(스포츠)클럽, 온천장, 화방, 공연장/극장, 운동경기관람, 유선TV, 주차장, 피아노 대리점, PC 게임방, 종교상품점, 피부미용실, 자석요, 악기, 스포츠마사지, 체형관리, 대중목욕탕, 학교등록금, 유치원, 종교단체, 무속/철학관, 메리야쓰, 아동복

- 보조사업 성격·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은 보조사업 전용카드 사용 불가



-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 포함)와는 거래 불가
  - ※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1만원 이상 집행 시 카드 사용,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은 5만원 이상 집행 시 계좌이체 활용
  -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1만원 이상 집행 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집행액(카드, 현금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집행 세부내역 첨부
- 법인카드 결제 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부서를 명기하고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 4) 보조사업 관련 계약

- 구매 계약 등은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에 따라 계약·집행

#### 5)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
  - ※ 예외 :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함),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 다. 보조금 이월

- 1)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불가
- 2)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가능하나, 이월한 경우라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 불가

### 라. 보조금 정산 (세부사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집행 지침’ 참고)

- 1)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 가) 수행주체 : 보조사업자



나) 시점·기한 :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다) 제출서류 (별도 제공하는 지정서식 사용)

- 보조사업 정산보고 총괄표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이 완료된 보고서)
  - ※ 포함내용 : 일반현황, 보조사업 개요,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라) 제출처 : 질병관리본부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삭감

-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 2) 정산보고서 검증

가) 검증주체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검증기관

※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나) 검증기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기한(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

※ 부득이한 경우 2개월 범위 내 연장가능, 보조사업자는 질병관리본부에 검증업무 기한 연장 요청가능

다) 제출서류 (별도 제공하는 지정서식 사용)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 마. 회계감사 (세부사항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참고)

### 1)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 예외적용 가능 대상 : 특정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보조금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다시 교부·지급하여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그 외 사업자의 특성 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내용 :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

다) 기타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감사 보고서로 갈음 가능

※ 다만, 보조사업 회계감사보고서 주식양식(별도 제공하는 지정서식)을 첨부하여 제출

-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감사인 선임 및 회계연도 보고서 작성, 제출 생략 가능

### 2) 감사인 선임 및 선임보고

가)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

※ 감사인 자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나) 감사인 선임, 변경선임 또는 선정 시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감사계약서 사본, 사업자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 질병관리본부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지정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음

### 3) 회계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

가) (보조사업자→감사인)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나) (감사인→보조사업자)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제출

다) (보조사업자→질병관리본부) 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 3. 예산항목별 설명

비목명	세목명	내역
인건비	보수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등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일반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용품 구입비</li> <li>• 인쇄비 및 유인비</li> <li>•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li> <li>• 소모성 물품 구입비</li> <li>• 비품수선비</li> <li>•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li> <li>-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li> <li>- 검정료, 감정료, 위탁정산수수료 등</li> <li>- 물품의 보관·운송료·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li> <li>- 변호료·수임료</li> <li>- 각종 회의참석 사례비 및 전문가 활용비</li> <li>- 교육훈련시 초빙강사료</li> </ul> </li> <li>• 광고료 및 광고료</li> <li>•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li> <li>•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li> </ul>
	공공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요금, 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li> <li>- 전기, 가스, 상·하수도, 오물 수거료</li> </ul> </li> <li>•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의해 지불 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li> <li>-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li> </ul> </li> </ul>
	피복비	•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제복비
	임차료	• 교육 및 행사 등 사업추진시 소요되는 장소 및 장비 대여비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재료비	• 사업수행 상 필요하거나 결핵 검진에 지원되는 시약초자 및 소모품 등 구입비
	복리후생비	•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여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 사업과 관련된 국외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 회의, 교육, 워크숍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식비, 다과 및 소모품 등 비용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li> <li>• S/W 개발경비(감리비 포함)</li> </ul>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비목·세목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계획하여 집행



## 가. 인건비

- 1) 적용범위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급여, 퇴직금, 수당
- 2) 집행원칙
  - 사업에 참여·수행하는 인력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
  - 은행계좌 입금 원칙
- 3) 세부기준
  - 사업계획서에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사업참여율,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수당 포함) 기준이 명시된 규정(내규 등)을 작성·비치
  - 인건비는 총 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의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
    - ※ 단, 인건비 초과분을 사업기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예외
  - 출산휴가급여 지급 시 기관 의무 지급기간인 60일을 준수하고, 기간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음
    - ※ 단, 기관 의무기간 초과분을 보조사업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경우는 예외
- 4)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인건비 지급 관련 공문, 통장입금증 등

## 나. 운영비

### 1) 일반수용비

#### 가) 적용범위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소모성 물품은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다음의 물품 포함
  -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하며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비품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등 사업 수행 관련 사무용 비품 수선비
  -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물품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감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 보관·운송료(운송을 위한 포장비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주차·차고료
    - 전문회계법인에 지급하는 위탁정산수수료(사업 수행 예산의 집행·정산 관련 업무 위탁)
- ※ (참고) 정산보고서 검증 수수료 표준액(안)

사업비 규모	수수료 표준액
5,000만원 미만	314천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366천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418천원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470천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523천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627천원
10억원 이상	784천원

- 사업 수행과 관련된 회의, 자문 등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검토비
- 교육훈련 시 초빙강사료
  - ※ 초빙강사료는 고용계약 없이 강의회수에 비례하여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며, 고용계약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 후 임금을 고정지급하는 경우 인건비에서 집행

- 광고료 및 광고료 : TV, 인터넷,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 및 광고료
- 기타 업무수행과정 중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나) 집행원칙

- 사업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집행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 원칙
- 계약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관련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비교·평가

다) 세부기준

- 회의 및 자문수당

구분	회의참석수당	자문수당	평가수당
내용	사업수행과 관련한 회의 참석	법률·정책·특허 등 외부 자문	과제 등 심사 및 평가
지급기준	최초 2시간 10만원 초과 1시간 5만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1시간 5만원	기본 1개 과제 10만원 추가 과제 당 3만원
서면진행	7만원	7만원	기본 1개 과제 7만원 추가 과제 당 1만원
지급상한	15만원	15만원	30만원 (서면은 15만원)
기타	-	변호사 법률자문은 건당 50만원 이내 (공문 등 서면자문)	채용전형 서류 10만원 면접 15만원

- 국가결핵관리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 또는 회의주관단체 소속 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사업운영팀 자체회의 시 지급불가
- 부득이 전문기관에 자문(소송, 법률자문 등) 의뢰 시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 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
  - ※ 예시 :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 (법무부 훈령)의 변호사 수입보수
- 원거리에서 회의·평가(5개 과제 이하) 시 교통비 실비 지급 가능
  - ※ 교통비는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에서 처리하며, 계획 수립 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문에 명기
- 동일한 과제로 동일한 수량인에 대하여 이중 지급 불가



• 강사료(상한액)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상한액
특별강의	대학총장(급), 사회적 저명인사로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시간	40만원
		초과 1시간	20만원
일반강의 (I)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및 이에 준하는 인사, 단체 임원, 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1시간	20만원
		초과 1시간	10만원
일반강의 (II)	상기 이외의 강사	1시간	12만원
		초과 1시간	6만원

- 각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단가 하향 조정 가능
  - ※ 상향 조정하여 지급 필요 시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 후 사업계획서 상 명시하여 집행
- 총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1시간 초과 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간주
- 계약이체가 불가능한 외빈초청연자는 외화송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가능
- 질병관리본부 및 사업수행기관 소속 직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간 당 5만원(일 7만원 한도)이하로 지급 가능
  - ※ 소속기관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 인원의 1/2 이상 차지
  - ※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기관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므로 별도 경비 지급 불가

• 원고료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12,000원 / A4 1면	
지급한도	A4 15매	상한매수 초과하는 경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 후 120% 범위 내 지급 가능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

※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므로 원고료 지급 불가

라)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 지급명세서, 방명록(성명,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금액, 서명), 구매 및 제작관련 2개 이상 견적서, 물품사양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료 및 운송대금 납부 고지서,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 단, 계약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단일 견적서 가능

## 2) 공공요금 및 제세

### 가) 적용범위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소기 등의 회선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 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은 고용부담금(320-09)목에 계상

### 나) 집행원칙

- 은행계좌 입금 원칙
- 납기 내에 우선적으로 납부하여 과태료 발생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납부청구서(영수증) 등

## 3) 피복비

### 가) 적용범위

- 업무 수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

### 나) 집행원칙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 원칙
-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만 지급
- 계약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관련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비교·평가

###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 구매 및 제작관련 견적서, 물품사양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공문 등



## 4) 임차료

## 가) 적용범위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등

## 나) 집행원칙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 원칙
- 계약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관련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비교·평가

##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 5) 시설장비 유지비

## 가) 적용범위

- 사업수행 중 사용되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용 기구 유지비

## 나) 집행원칙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 원칙
- 계약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관련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비교·평가

##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 견적서, 물품사양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공문 등
- ※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집행 불가

## 6) 재료비

## 가) 적용범위

- 결핵균 검사 및 임상연구 등에 필요한 시약 초자 및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집행원칙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 원칙
- 시약초자 및 소모품 구입 시 2개 이상의 관련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비교·평가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 견적서, 물품사양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공문(구매계획서) 등

7) 복리후생비

가) 적용범위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나) 집행원칙

- 사업에 참여·수행하는 인력에 대하여 비용 집행하며, 은행계좌 입금 원칙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비용 지급관련 문서

다. 여비

1)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 사업수행과 관련된 국내출장 시 발생하는 운임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나) 집행원칙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 및 출장비를 산출  
 ※ 단, 자체 여비규정이 있는 경우 준용가능하나, 공무원 여비규정 범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 원칙

다)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 세부기준

-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  
 - 위 지급 외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 여비 지급 불가

- 1일 내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하더라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 초과 불가
- 공용차량 또는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만원 감액 지급
- 왕복 2km이내(사업기관 기준 출장지까지 거리)의 근거리 출장은 교통비 실비 지급 가능
  - ※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 ※ 출장목적, 소요금액 등 명시한 시내출장비(교통비) 사용대장(별도 지정 양식) 또는 근무상황부 기록·보관 필수

라) 근무지 외 출장여비 지급 세부기준

- 아래 지급표에 따라 각 호 구분하여 지급(관련 규정 변동 시 변동된 규정적용)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총장, 이사장 이상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만원	실비 (상한 : 12만원)	2만5천원
총장, 이사장 미만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만원	실비 (상한 : 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기타지역 5만원)	2만원

- 관용차량 이용 시 운임은 미지급하고, 일비는 1/2 감액하여 지급
- 단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은 출장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 적용
  -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 지급 불가
- 부득이 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료비, 통행료 지급 가능

지급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li> <li>•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li> <li>•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2인 이상 동승 등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li> <li>• 장애인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li> <li>• 중이 무거운 수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li> <li>• 기타 위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행할 경우 총장, 이사장 이상 결재를 득하는 경우</li> </ul>
----------	-------------------------------------------------------------------------------------------------------------------------------------------------------------------------------------------------------------------------------------------------------------------------------------------------------------------------------------------------------------------------

지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행료) 실비지급(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제출 시 지급)</li> <li>• (자동차 연료비) 출장 시작일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한 유가를 적용하여 자동차 연료비를 지급</li> </ul>				
	< 연료비 지급기준 : 출장거리×유가÷연비 >				
	구분	출장거리	유가	연비(km/L)	산출식
	휘발유	도로공사 또는 민간제공 거리계산 방법 활용	유가 (opinnet.co.kr)	10.06	출장거리×유가 ÷연비
	경유			10.16	
LPG	7.87				

- 거주지·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 시 거주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 지급가능
  - ※ 단,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음
- 운임과 숙박비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
  -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 또는 개인카드 등 사용 가능(관련 영수증 첨부)
- 항공수단 이용 시 가급적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 이용
  - ※ 제주도 지역 이외 운임을 항공으로 이용하는 경우 출장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 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 적용
- 근무지 외 출장명령을 받은 자가 동일 일자에 다른 목적으로 근무지 내 출장명령을 받았을 경우 근무지 외 출장여비만 지급
-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
- 출장목적상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비의 1/2 감액 지급

마)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출장경비 영수증\*, 출장자 운임산출내역서\*, 시내 출장비(교통비)사용대장\*, 자가 차량 사용 사유서\*, 근무지-출장지 운임거리, 유가 기준자료(자가 이용 시) 등
  - ※ 별도 제공하는 지정서식 사용



## 2) 국외여비

## 가) 적용범위

- 국내 출장을 제외한 사업수행과 관련된 국외 출장 시 발생하는 운임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외교활동(국가 간 협약체결 등), 국제회의·행사 등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나) 집행원칙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 및 출장비를 산출
  - ※ 단, 자체 여비규정이 있는 경우 준용가능하나, 공무원 여비규정 범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 원칙
- 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합리적으로 비용 절감 가능한 방법으로 구매 노력

## 다) 세부기준

- 국제학회 참석 등을 위한 출장 시 참석비나 등록비 납부가 필요한 경우 질병 관리본부와 사전 협의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금액을 명시
- 국외출장 명령을 받은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하여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 가능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금액을 명시
  - ※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 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단순 정보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일 경우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이용하고 최대한 국외출장 자제
- 출장기간 중 발생하는 통신비는 별도 지급 불가(일비에서 충당 사용)
- 국외출장 일정에 포함된 국내 운임 여비 지급 불가
- 출장 명령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정 상 조기 귀국 또는 지연출국 하는 경우 반드시 여비 차액 반납
- 숙박비는 실비정산 원칙, 그 외 일비 및 식비는 정액 지급

- ※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를 초과하여  
여비 지출 시 숙박비 및 식비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지급 가능
-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외출장 여비기준표(붙임 양식)참고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항공운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운임 기준
- 숙박비 등

구분	1인당 단가
숙박비	주빈 25만원 / 수행원 75천원
식비	주빈 5만원 / 수행원 3만원

-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는지를 의미
- ※ 연회비 등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라)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통장입금증, 법인(개인)카드 사용영수증, 운임비·숙박비 영수증, 외환은행 환율조회  
출력물(출장계획서 보고일 현금 살 때 기준) 등

라. 업무추진비

1) 적용범위 : 사업추진과 관련된 공식 회의, 세미나, 교육 등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다과 및 소모품 비용

2) 집행원칙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 원칙
- 목적에 맞는 지출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선결제·허위결제·상품권 등 구매를  
통한 편법 지출 금지
- 과도한 지출과 주류구매 및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사용 금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 명확화
-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3) 세부기준 (회의 및 교육 경비의 집행 기준)

[자문회의]

경비(다과비) 3,000원 × 인 × 회 = 원

경비(식비) 20,000원 × 인 × 회 = 원

[회의 및 일반교육]

경비(다과비, 소모품비 등) 3,000원 × 인 × 회 = 원

※ 국제워크숍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비 단가 상향 필요 시 질병관리본부 사전 협의 후 집행

※ 장소사용 등의 문제로 식비, 다과비 초과 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상향 가능하며, 식비와 다과비를 통합(23,000원)하여 식비로 사용가능

## 4)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경비사용영수증, 참석자 방명록, 세금계산서 등

## 마. 연구용역비

## 1) 적용범위

- 보조사업 내 학술, 기술, 평가, 자문·시운전, 실태조사,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 2) 집행원칙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 원칙

## 3) 세부기준

-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의 근거 및 지침에 준하여 적용
- 연구수행 집행경비 중 미집행 금액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정산

## 4)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세금계산서
-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1) 시점 :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 등
- 2) 내용 : 집행된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반납  
※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 반납 완료 조치
- 3) 기타 : 발생 이자 산정이 어려운 경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 적용

## 4. 인력관련 사항

### 가. 인력의 채용

-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한 공개채용 원칙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허증·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학위증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채용건강진단서, 재정보증(회계관련자의 경우 한함)
- 2) 채용된 인력의 인사권은 사업기관에 있음
- 3) 인사와 관련된 서류의 원본은 사업기관에서 일괄 보관

### 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1) 인건비

##### 가) 급여

- 보조사업비 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만 지급
- 급여는 사업인력 각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그 근거를 보관



## 나) 퇴직금

- 퇴직금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반드시 사업 종료 (매년) 시 정산하여 개인퇴직연금 등으로 운영
- 퇴직 시 본인 계좌로 지급하고 그 근거를 보관

## 2) 복리후생비

- 사업 인력은 사업기관 소속을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다. 근무규정

- 1) 투입된 인력에 따른 업무 및 역할, 근무규정 등을 내부분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사업 수행 시 혼선을 방지
- 2) 상근직 인력은 업무수행 및 근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겸업·겸직 금지
- 3) 채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정기적 보수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관리
- 4) 보조사업기관장은 수행 인력의 운영·관리에 예상되는 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에 노력

## 제 3 절

# 결핵 필수재 수급관리

### 일러두기

잠복결핵감염 진단제 및 결핵 치료제의 원활한 수요공급을 통해 결핵예방·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 절은 '결핵 필수재 수급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1. 개요

가. 목적 : 결핵 필수재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

나. '20년 수급계획

- 결핵 필수재의 수요, 공급, 사용 요인 등 수급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여, 잠복결핵감염 진단제의 충분한 구매확보 및 국내 생산이 중단된 결핵 치료제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함

(대상품목) 잠복결핵감염 진단제 : PPD, IGRA

결핵 치료제 : 카나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클로파지민 등

(수급기관) 잠복결핵감염 진단제 :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

결핵 치료제 :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PPM의료기관 등

(구매·공급시기) 2020년 3월(1년 1회)



다. 관련근거

-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관리사업), 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2. 잠복결핵감염 진단제 수급 관리

가. (사용대상) 결핵환자의 접촉자 등

나. (구매기관)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

다. (구매방법) 가족접촉자조사, 결핵역학조사 검진사업 예산 범위 내 지자체별 자율 구매

- 1) PPD : 지자체별 예산범위 내 지자체별 자율 구매
- 2) IGRA : 질병관리본부에서 경쟁에 의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계약된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

라. 기관별 역할

치료제명	기관별 역할			
	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보건소	조달청	공급업체
PP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현황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 및 사용, 보관 관리</li> <li>• 사용현황 모니터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량에 따른 공급</li> </ul>
IG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현황 모니터링</li> <li>•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량에 따른 공급</li> <li>• 계약물량의 소진 물량 실적보고</li> </ul>

① PPD 시약

- (질병관리본부) 약제수급현황 모니터링
- (시·도 및 보건소) 구매 후 사용, 보관 관리 및 약제현황 모니터링
- (공급업체) 수요량에 따른 즉시 공급

② IGRA

- (질병관리본부) 약제수급현황 모니터링 및 구매 가능 하도록 조달청을 통해 계약 추진
- (시·도 및 보건소) 조달청 계약이 체결된 공급업체의 진단제(IGRA)를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하여 사용 및 약제현황 모니터링
- (조달청) 경쟁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 체결
- (공급업체) 수요량에 따른 즉시 공급 및 계약물량 대비 소진물량 실적을 질병관리본부로 보고(월 1회)

### 3. 결핵 치료제 수급 관리

가. (사용대상) 결핵환자

나. (사용기관)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민간공공협력기관(PPM의료기관) 등

다. (공급방법)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치료제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과 계약을 통해 위탁 제조 및 구매하여 연 1회 일괄 무상 공급

1) 카나마이신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주관 국내 위탁 생산하여 공급  
\* 국내 유일 공급업체에서 수입원료의 수급 난항으로 생산·공급 중단(식약처 보고, '15.4.17.)



2) 스트렙토마이신

- 식약처 승인 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주관 해외 완제품 수입하여 공급
  - \* 국내 유일 공급업체에서 기존 생산라인을 용도변경하여 생산·공급 중단(식약처 보고, '17.5월)

3) 기타 수급이 불안정한 결핵 치료제(클로파지민 등)

- 의약품 제조 상황에 따라 구매 계약 등을 통해 공급

라. 기관별 역할

치료제명	기관별 역할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카나마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 및 수요량 모니터링</li> <li>• 위탁제조 요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li> <li>• 구매 및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량 조사</li> <li>• 사용 및 보관관리</li> <li>• 사용관리현황 모니터링</li> <li>• 필요시 전배진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약사와 생산일정, 가격협상</li> <li>• 제약사와 생산계약 체결</li> </ul>
스트렙토마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 및 수요량 모니터링</li> <li>• 긴급도입 구매요청 (식약처)</li> <li>• 구매 및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도입 검토·승인</li> <li>• 수입구매 요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해외공급선 조사</li> <li>• 해외 완제품 수입 대행</li> </ul>

① 카나마이신

- (질병관리본부) 약제수급현황 모니터링, 위탁제조 계약 추진 및 무상 공급(배송)
- (시·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 수요조사, 사용, 보관 관리 및 약제현황 모니터링(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약품 수령 즉시 배송상태와 수량을 확인하여 인수증(배송기사 제공) 확인 처리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국내위탁생산



## ② 스트렙토마이신

- (질병관리본부) 약제수급현황 모니터링, 긴급도입 계약 추진 및 무상 공급(배송)
- (시·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 수요조사, 사용, 보관 관리 및 약제현황 모니터링(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약품 수령 즉시 배송상태와 수량을 확인하여 인수증(배송기사 제공) 확인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도입 검토 및 승인, 수입구매 요청
-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해외공급선 조사 및 해외 완제품 수입 대행

## ③ 기타 수급이 불안정한 결핵 치료제(클로파지민 등)

- (질병관리본부) 약제수급현황 모니터링, 구매 계약을 통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 공급
- (시·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 사용, 보관 관리 및 약제현황 모니터링(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 4. 약제현황관리 모니터링

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요조사 및 약제현황 보고서 제출, 모니터링 진행(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 참고)

- (대상) 진단제·치료제를 사용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
- (목적) 수급전망 및 사용량을 예측 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함
- (수요조사) 연 1회(9/1~9/10) 제출
- (약제현황 보고서) 매월 1회 제출
- \* 제출 기간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지

나. 입출고 등록, 전배, 사용현황 등에 대한 사항은 상시 모니터링



## 5. 행정사항

- 가. 의료기관에서 배정량을 모두 소진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주관하여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보건소에서는 효율적 재고관리를 위해 관할지역 내(필요 시 지역 간 협조) 전배를 통해 타 의료기관으로 공급가능 함
- 나.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부터 순차 사용하며, 공급된 치료제는 주치의 판단 하 결핵 치료 목적으로 반드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하여야 함
- 다. 공급된 치료제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점에 대해 약품비에 대한 환자부담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라. 결핵 치료제를 공급받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약품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제 4 절

## 「결핵예방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 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결핵예방의 날)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모금의 사용) 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②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li> <li>2.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관리</li> <li>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li> <li>4.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li> <li>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li> <li>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li> </ol>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8, 2015.5.18&gt;</p>		
<p>제6조(결핵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p>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lt;개정 2014.1.28&gt;</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4.1.28&gt;</p>		
<p>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li> <li>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li> <li>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li> <li>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li> <li>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li> <li>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li> </ol>		<p>제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 영상의학정보, 진료·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lt;개정 2014.7.29, 2016.8.4&gt;</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p>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p> <p>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4.1.28&gt;</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4.1.28&gt;</p> <p>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4.1.28&gt;</p> <p>[제목개정 2014.1.28]</p>		<p>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7.29]</p>
<p>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p>		<p>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p>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8&gt;</p> <p>1. 결핵환자들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p> <p>2. 결핵환자들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p>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1.28&gt;</p> <p>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들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1.28&gt;</p> <p>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4.1.28&gt;</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환자등"은 "결핵환자등"으로 본다. &lt;신설 2014.1.28&gt;</p>		<p>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8.4&gt;</p> <p>1.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인적 사항</p> <p>2. 검사·진단·치료 정보</p> <p>3. 신고자 정보</p> <p>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핵환자들을 치료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8.4&gt;</p> <p>1. 완치, 실패 등 결핵환자들의 치료 결과</p> <p>2. 보고자 정보</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29]</p>

<p style="text-align: center;">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제8조의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 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 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 을 요청하여 결핵환자등과 잠 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제20조 에 따른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p>		
<p>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①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 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 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2.3&gt; ②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 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 서는 아니 된다. &lt;신설 2016. 2.3&gt; ③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 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 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p>		<p>제3조의2(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 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이하 "사 례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2. 접촉자에 관한 사항 3. 주거 및 생활형태에 관한 사항 4. 검사·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 항 5.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 한 사항 6. 그 밖에 집단시설에서의 생 활 여부와 정기적 활동모임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위하</p>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6.2.3&gt; [제목개정 2016.2.3]</p>		<p>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로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례조사서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사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8.4]</p>
<p>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2.3&gt;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lt;신설 2016.2.3&gt;</p>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③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lt;신설 2016.2.3&gt; ④ 그 밖의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역학조사반 구성, 업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lt;신설 2016.2.3&gt;</p>		
<p>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lt;개정 2016.2.3&gt;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p>		<p>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lt;개정 2016.8.4, 2017.9.18&gt;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과연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p>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4.1.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li> <li>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li> <li>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장이 요청하는 자</li> <li>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4.1.28&gt;</p> <p>[제목개정 2014.1.28]</p>		<p>에 따른 의료인</p> <p>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p> <p>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p> <p>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lt;개정 2016.8.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li> <li>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li> <li>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li> </ul> </li> <li>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16.8.4&gt;</p> <p>[전문개정 2014.7.29]</p> <p>제4조의2(준수사항)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p>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li> <li>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li> <li>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중사의 일시 제한</li> <li>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6.8.4]</p>
<p>제11조의2(준수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2.3]</p>		
<p>제12조(결핵예방접종)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1.28]</p>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제13조(업무중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촉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8&gt;</p>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중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lt;신설 2016.2.3&gt;</p> <p>③ 제1항에 따라 업무중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중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lt;신설 2016.2.3&gt;</p> <p>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lt;개정 2016.2.3&gt;</p> <p>⑤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6.2.3&gt;</p>		<p>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1.12.8, 2014.7.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li> <li>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li> <li>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향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li> <li>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li> </ol>
<p>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p>		<p>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lt;개정 2014.7.</p>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8&gt;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p>		<p>29&gt; [제목개정 2014.7.29]</p>
<p>제15조(입원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8&gt;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lt;개정 2014.1.28&gt;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lt;2014.1.28&gt; [제목개정 2014.1.28]</p>	<p>제4조(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는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에 적힌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p>	<p>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14.7.29&gt;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병원 중 결핵 치료가 가능한 병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시설</p>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li> <li>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p>	<p>격리치료"로 본다. [전문개정 2014.7.28]</p> <p>제4조의2(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결핵환자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 "감염병" 및 "호흡기 감염병"은 "결핵"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7.28.]</p>	<p>제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② 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이 갖추어진 병실</li> <li>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li> <li>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 격리실 [본조신설 2014.7.29]</li> </ol>
<p>제15조의3(면회제한 등) 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p>		



<p style="text-align: center;">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p>		
<p>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8&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1.28&gt; [제목개정 2014.1.28]</p>	<p>제5조(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생활보호조치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8]</p> <p>제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p>	



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p>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계 내 주소득자인 결핵환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받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생활보호조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한다.</p> <p>③ 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4.7.28]</p>	
<p>제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의 대상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국세·지방</p>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세,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조치를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4.1.28]</p>		
<p>제17조(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p>		<p>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4.</p>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7.29, 2016.8.4&gt;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2. 결핵환자등의 추적검사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치</p>
<p>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8&gt;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p>		<p>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소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명부에 접촉 대상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16.8.4&gt;</p>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8&gt;</p> <p>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16.2.3&gt;</p> <p>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조치와 제2항에 따른 결핵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lt;신설 2016.2.3&gt;</p>		
<p>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4.1.28&gt; [제목개정 2014.1.28]</p>	<p>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lt;개정 2014.7.28&gt;</p> <p>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결핵이 완치될 때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며, 완치 또는 완료 여부의 판정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료한 의사의 임상 소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lt;개정 2014.7.28&gt;</p> <p>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 항목 및 지급절차, 그 밖</p>	

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에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28> [제목개정 2014.7.28]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22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연구기관 및 지부(支部)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경비 보조) 보건복지부장		

<p style="text-align: center;">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관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24조(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제25조(모금 등) ① 협회는 크리스마스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 ③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① 협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크리스마스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 시작일 2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금계획서</li> <li>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li> </ol> <p>②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금 목적 및 그 사용계획</li> <li>2. 모금지역</li> <li>3. 모금방법</li> <li>4. 모금기간</li> <li>5. 모금 예정 총액</li> </ol> <p>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립학교법」 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li> </ol>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 3.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p> <p>제10조(모금의 사용) 모금은 법 제 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 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 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 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p> <p>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 ① 협회 는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 을 마쳤을 때에는 법 제25조제 4항에 따라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모금사업을 완료하였 을 때에는 사업결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 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모금액의 총액 2. 모금액의 사용 명세</p>	
<p>제26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 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부담한다. &lt;개정 2014.1.28&gt;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 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 진등에 드는 경비</p>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 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제목개정 2014.1.28]</p>		
<p>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 관리에 드는 경비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8&gt;</p>	<p>제12조(국가 및 시·도의 보조금)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도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27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p>	
<p>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lt;개정 2014.1.28&gt;</p>	<p>제12조(국가 및 시·도의 보조금)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p>	



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 에 드는 경비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6.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 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 는 경비 ②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도 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 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 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도 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 는 법 제27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 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누설 금지) ①이 법에 따른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 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 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개정 2014.1.28> ②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비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 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목 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 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1.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p> <p>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료 및 투약 등 치료</p> <p>나.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p> <p>다.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p> <p>라.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p> <p>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업무</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8]</p> <p>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13</p>	



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p>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4. 7.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핵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에 관한 사무</li> <li>5. 법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무</li> <li>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에 관한 사무</li> <li>7. 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에 관한 사무</li> <li>8. 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li> <li>9. 법 제18조에 따른 결핵환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등의 의료에 관한 사무</p> <p>10.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에 관한 사무</p> <p>11. 법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 등과 잠복결핵감염자 지원에 관한 사무</p> <p>[본조신설 2012.12.27]</p>	
	<p>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모금사용의 제한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모금의 실적보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12.9]</p>	
<p>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4. 1.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li> <li>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li> </ol> <p>②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본조신설 2016.2.3]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p>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2018.12.11.,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2호, 2019.6.4., 일부개정]</p>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p>
<p>제34조(과태료)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개정 2018.12.11&gt;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lt;신설 2018.12.11&gt; [본조신설 2016.2.3]</p>	<p>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6.4.]</p>	

제 5 절

자주 묻는 질문

일러두기

국가결핵관리사업 및 결핵예방법 이행에 따른 주요 FAQ를 정리한 것으로 잘 숙지하여 관할지역 결핵예방 관리 및 감독에 참고 한다.

1. 결핵환자 신고·보고 및 산정특례 관련

Q A 1

결핵 환자 및 의사환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보고 방법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를 참고하거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자주묻는 질문'의 신고·보고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기 바람

Q A 2

결핵환자 산정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결핵환자 산정특례 신청 절차는 'III. 결핵환자 관리, 4절. 결핵 산정특례 제도 안내'참고.
- 이 밖의 구체적인 사항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또는 지사)과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산정특례운영부: 033-736-1817

Q A 3

결핵 의사환자의 검사비와 예방적 차원의 약제비도 추후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결핵 산정특례는 결핵\*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인 환자에 한함. 따라서 결핵 의사환자에 대한 검사비와 예방적 차원의 약제비는 산정특례 신청 불가
- \* 상병코드: A15~A19, U84.3

## 2. 결핵역학조사 관련

### Q A 1 결핵환자가 누군지 공개할 수 있나요?

- 학교, 군대, 직장, 시설 등의 집단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결핵예방법 제29조(비밀누설 금지), 제31조(벌칙)에 따라 결핵환자 개인 신상은 공개할 수 없음. 만약 환자 개인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할 경우, 결핵예방법 제31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Q A 2 결핵 접촉자 검진에 참여해야 하나요?

- 결핵은 법정감염병으로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음. 특히 집단생활의 경우 특정 공간을 공유하므로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들이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규모의 전염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함
- \* 결핵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 결핵예방법 제 10조(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제19조(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 Q A 3 잠복결핵감염 1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었는데 2차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호흡기를 통해 결핵균이 침범하면 결핵균에 대한 면역반응이 형성되는데 2-8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염성 폐결핵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지 8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음성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환자와 마지막 접촉한 시점(8주 이상 경과시)에 따라 1차 검사로 종결할 수 있음

### Q A 4 결핵역학조사 관련 흉부 X선 촬영을 위해 신속대응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담당자에게 유선(043-719-7293)으로 일정 조정 후 공문(접촉자 검진명단, 검진요청서)으로 예약을 확정함
- 2020년 상반기에 질병관리통합시스템 내 신속대응차량 신청 프로그램 개발 예정



### 3.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에 대한 사항

#### 가.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관련

**Q A 1**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Q A 2**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정의, 진단방법,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결핵) 결핵제로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 > 홍보센터 > 결핵&기침예절 자료
- (잠복결핵감염) 결핵제로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 > 홍보센터 > 잠복결핵 바로알기
- \* 대표적인 자료 :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 소책자 등

**Q A 3**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검진 주기와 검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검진	실시 주기	실시 방법
결핵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 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li> <li>○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li> <li>○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li> </ul>
잠복결핵감염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하여야 함</li> <li>○ 다만,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역학적 검사</li> </ul>



검진	실시 주기	실시 방법
	제1항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67호('20.1.1. 시행))은 매년 실시하여야 함	

## 나.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관련

Q A 1

기관·학교 등의 장에게 부과된 결핵 검진등 의무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16.2.3일 공포되기 전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로 같음이 가능한가요?

-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1회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교직원 등은 「결핵예방법」 개정 전에 실시한 잠복결핵감염 검진도 소속된 기간 중에 실시한 검진이므로 같음 가능함

Q A 2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의 과태료 부과 주체는 누구인가요?

- 과태료 부과 주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토록하고 있음(동법 제34조 제2항)
- 따라서, 학교의 경우라도 교육청이 아닌 특별자치시장 등이 부과해야 함

Q A 3

과태료 부과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19.6.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료기관 등의 결핵 검진등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 기관·학교의 장 등에게 부과된 결핵 검진등의 의무는 '16.2.3 공포되고 '16.8.4부터 시행되어 적용 중인 규정입니다.(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 또한, 결핵예방법의 과태료 규정(제34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은 '16.8.4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19.6.12부터 시행되는 조항은 과태료 부과권자 및 세부 기준을 정한 것임
- 따라서, 의료기관 등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의 의무 와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16.8.4일 부터 적용되고 있음



Q A 4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에서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과태료 부과 대상은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결핵예방법 제11조의 제1항 각호에 나열된 6종류\*의 기관·학교의 장 등을 말함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Q A 5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주기(시기)와 점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 부과 주체가 결정할 사항이나, 결핵 검진등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연 1회 점검할 수 있음
- 이 경우, 검진 주기가 1년(1월~12월)이라 연중 검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점에 점검할 것을 권장함(전년에 6월에 점검하였으면 올해도 6월에 점검)
- 관내 점검 대상 기관·학교가 많은 경우 연간 점검 가능 기관·학교 수를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정한 후 순차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함
- 과태료 부과 주체가 사전에 점검 예정임을 고지하고, 해당 기관·학교 등을 방문하여 종사자·교직원 명부와 검진 기록 등을 대조하여 점검함
- \* 점검 시 종사자·교직원의 검진 여부만 확인하며, 검진결과에 대한 확인은 불필요

Q A 6

과태료 부과는 기관단위로 부과하는 것인가요?

- 결핵 검진 의무자의 특정 시점에서 의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관·학교 등의 단위로 부과함

Q A 7

검진대상자가 매년 실시해야하는 검진(결핵 검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미실시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의료기사

- 과태료 부과 주체의 위반 회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임
- 예를 들어, 금년 2월 점검시 종사자·교직원 5명에 대해 결핵 검진등 미실시 사례를 적발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내년 2월에도 5건을 적발하였다면 2차 위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 점검 시 전체 종사자·교직원 100명중 미수검자가 1명 혹은 100명이어도 위반회차 1회에 해당됨





8

검진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관·학교의 장 등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 결핵예방법령 상에는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다만, 의료기관평가인증, 어린이집평가인증기준 등과 같은 개별적인 기준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9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제34조(과태료) 조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종사자·교직원이 재직 중 1회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점검 특정시기에 검진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어려움
- 다만,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실시 기관·학교의 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을 신규 채용한 날로부터 일정기간(결핵 검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권고함
  - \* 입사 후 일정기간 내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특정시점에 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



10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이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태료 부과) 또한 기관·학교의 장에게 있나요?

- 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 검진등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아래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음
  -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외

Q  
A 1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에 따른 검진 의무대상자가 과거 치료력 (결핵·잠복결핵)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됨
- (참고) 결핵 진료지침(3판, 2017) :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과거에 이미 양성반응을 보였거나 과거 결핵 치료력이 분명한 환자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검사방법으로는 과거에 LTBI 치료 혹은 활동성 결핵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 새로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Q  
A 2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가 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의료기관에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함

Q  
A 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신규채용자는 결핵 검진을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 기관·학교 등은 자체적으로 채용건강검진 또는 개인적인 검진(결핵 검진 포함)을 한 경우 같음할 수 있나요? 같음이 된다면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동 제도의 취지상 신규채용 전에 기관·학교 등은 자체 채용건강검진이나 개인적인 결핵 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같음 가능함
- 예를 들어, 입사 예정자가 입사 전 다른 법령에 따라 결핵 검진을 포함한 신체검사(건강검진등)를 받았고, 해당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에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채용 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 검진”으로 같음 가능

Q  
A 4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신규채용으로 보고 결핵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같은 해에 결핵검진을 받고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는 재검사 할 필요가 없음. 다만,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다가 이직한 경우는 검사를 받아야 함



5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경우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동 규정은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재직 중 1회만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 즉 소속기관·학교 등을 변경시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산후조리원으로 소속을 변경)에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
- \* 검진의무가 발생하는 기관·학교와의 이동을 인정함



6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에 따라 검진 의무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관·학교의 장 등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고 파견·용역 업체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경우에도 종사자·교직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종사자·교직원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고용의 형태(직접고용인지 간접고용인지)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학교 등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교직원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법의 목적과 취지상 해당 기관·학교 등에 출입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필요가 있음.
- 외부기관 파견 강사 등 기관·학교의 장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학교의 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기관·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교직원에 해당되어 해당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 검진등을 실시해야 함
- 하지만 사회복지무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과 같이 기관·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결핵예방법」 상 종사자·교직원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핵 검진등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7

결핵 검진을 매년 실시하라고 하는데 매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통상 매년이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의미
- 다만, 결핵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진을 받은 시점에서 매년(1년 기준) 정기적으로 검진받기를 권장함



Q A 8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 검진등)에 따라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도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 결핵 검진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2항제1호'가~'다'목 (가. 임상적, 방사선학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의 결핵균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중 어느 한 기준을 충족하여도 인정됨
- 임신부의 경우 흉부 X선 검사는 적절한 납 차폐물 등을 이용하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여지가 있다면 현재 법령 적용의 기한범위 내에서 임신 전, 출산 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 \* 흉부 x선 검사 이외의 방법을 희망할 경우 객담 검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적절한 객담검사(검체의 적합성 등)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핵 검진을 위하여 x-ray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

Q A 9

잠복결핵감염 검진(IGRA)의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결핵환자 접촉자, HIV감염인 등 9개 범주에 속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률(30~60%)이 적용됨
  - \* 9개 범주 :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HIV 감염인,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 복용중(또는 예정자), 종양과사인자알파저해제 사용자(또는 예정자),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중(또는 예정자), 투석환자,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 시행(또는 예정자), 규폐증,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병변이 있는 자
- 위의 사항 외에 임상적으로 IGRA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요양급여의 8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단순 검진 목적으로 IGRA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에 해당됨

※ [참고] [누-602(D6020)]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 단가(키트비용포함)

- 민간의료기관 단가로, 상기 비용에서 기본진찰료가 가산될 수 있음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소정점수 10%를 가산하여 산정함

종별요양기관	검사단가 (C×(A×B))	점수 당 단가 (C)	총 상대가치 점수 (A+(A×B))	원 상대가치		종별 가산	총액 (검사단가× 종별가산)
				점수 (A)	검사료 가산* (B)		
의원	43,230	83.4	518.45	471.32	0.1	0.15	49,715
병원	38,830	74.9	518.45	471.32	0.1	0.20	46,596
종합병원	38,830	74.9	518.45	471.32	0.1	0.25	48,538
상급종합병원	38,830	74.9	518.45	471.32	0.1	0.30	50,479

\* 위 금액과 실제 발생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료원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2019년 3월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Q A 10

종사자·교직원이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기관·학교의 장이 처벌 받을 수 있음
-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적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Q A 11

국가사업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기관·학교의 장 등이 소속 종사자·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일괄적으로 보건소 등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검진 수검 여부를 조회 또는 회신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함.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각호의 요건(본 사안의 경우는 제2호1) 해당)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각호2)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검진자에 대한 기록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있음

- 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4. 7., 2011. 12. 31., 2012. 2. 1.,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3. 20., 2018. 8. 14.>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1., 2018. 9. 27.>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참고] 국가사업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경우 증명서(결과서, 확인서) 발급 방법  
 ○ 본인 요청 시 검진을 실시한 보건소에서 검진결과서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검진 확인서는 검진한 보건소 이외에도 전국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함  
 -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 결과 포함  
 -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 결과 미포함, 수검 여부만 기입



제 6 절

서 식

서식 목차

<서식 1>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293

<서식 2>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693

<서식 3> 환자관리 기록카드 .....993

<서식 4>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 대상자 통보서 .....2·0·4

<서식 5> 업무중사 및 등교 일시 제한 해제 통보서 .....3·0·4

<서식 6> 입원·격리치료명령대상자 알림통지서[의료기관 및 진료보건소→보건소] .....4···0···4

<서식 7> 입원·격리치료명령서[보건소→환자] .....5·0·4

<서식 8>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안내문(예시) .....6·0·4

<서식 9>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입원(전원)알림통지서[보건소→의료기관] .....9···0···4

<서식 10> 격리치료명령 협조의뢰서[보건소→경찰서] .....0···1···4

<서식 11>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전원요청서[의료기관→보건소] .....1···1···4

<서식 12>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소견서[의료기관→보건소] .....2···1···4

<서식 13>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알림통지서[보건소→환자] .....3···1···4

<서식 14> 입원비 지원신청서[환자→보건소] .....4·1·4

<서식 15> 입원비 지원신청서[의료기관→보건소] .....5·1·4

<서식 16> 약제비 지원신청서[환자→보건소] .....6·1·4

<서식 17> 약제비 지원신청서[약국(의료기관)→보건소] .....7···1···4

<서식 18> 비급여지원 초과비용 추가지원신청서[환자(의료기관)→보건소] .....8···1···4

<서식 19>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환자→보건소] .....9···1···4



<서식 20>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환자→보건소] .....	1·2·4
<서식 21> 소득 정보 확인동의서[환자→보건소] .....	2·2·4
<서식 22>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조사외서 [보건소→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324
<서식 23>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결과통보서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보건소] .....	424
<서식 24> 고용·임금 확인서[환자→보건소] .....	5·2·4
<서식 25> 지출실태조사표[환자→보건소] .....	6·2·4
<서식 26> 환자 복약확인 관리대장[보건소용] .....	8·2·4
<서식 27>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증[의료기관→보건소] .....	0·3·4
<서식 28> 결핵환자 약제관리표[의료기관→보건소] .....	1·3·4
<서식 29> 항결핵주사제 투약외서[투약외리 의료기관→관리보건소 및 환자] .....	2·3·4
<서식 30> 결핵 (검진·치료경과) 확인서(보건소용) .....	3·3·4
<서식 31> 접수증 .....	4
<서식 32> 결핵 검진 확인서(보건소 외 검사기관용) .....	5·3·4
<서식 33> 사업 수행인력 변경사항 보고 .....	6·3·4
<서식 34> 사업계획서 .....	7
<서식 35> 최종보고서 .....	04
<서식 36> 사업수행인력 보안서약서 .....	34·4
<서식 37> 교부신청서 .....	44
<서식 38> 정산보고서 .....	54
<서식 39>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서 .....	84·4
<서식 40> 시내출장비(교통비) 사용대장 .....	9·4·4
<서식 41> 카드·현금 사용 영수증 양식 .....	05·4
<서식 42> 방명록 .....	1
<서식 43>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의료기관→보건소) .....	2·5·4
<서식 44> 가족접촉자조사 사업 안내문(보건소→접촉자검진 참여 의료기관) .....	3·5·4
<서식 45>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정보이용 동의서 .....	4·5·4
<서식 46>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기본 문진표 .....	6·5·4



<서식 47>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가족접촉자 조사) .....	7·5·4
<서식 48> 결핵역학조사 협조 요청서(결핵균 유전형 분석용 결핵균주) .....	8·5·4
<서식 49> 집단시설별 결핵환자 상세 조사 항목 .....	9·5·4
<서식 50> 결핵역학조사 (방문/유선) 현장조사서 .....	1·6·4
<서식 51> 역학조사 시행일정 계획서 .....	9·7·4
<서식 52> 역학조사 대상기관 초기 유선(문자) 안내 예시 .....	0·8·4
<서식 53> 집단시설역학조사 체크리스트(TST 검사) .....	1·8·4
<서식 54> 집단시설역학조사 체크리스트(IGRA 검사) .....	2·8·4
<서식 55> 집단시설역학조사 체크리스트(TST/IGRA 병합검사) .....	3·8·4
<서식 56> 결핵환자 발생 및 발견 통보 .....	4·8·4
<서식 57>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 .....	5·8·4
<서식 58> 접촉자조사 설문지(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용) 예시 .....	7·8·4
<서식 59> 접촉자조사 설문지(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용) 예시 .....	0·9·4
<서식 60> 접촉자 설문조사 결과서 (예시) .....	2·9·4
<서식 61>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대상자) 예시 .....	3·9·4
<서식 61_1>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주의사항 .....	6·9·4
<서식 62>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대상자) 예시 .....	7·9·4
<서식 63>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TST/IGRA 병합법) 예시 .....	9·9·4
<서식 64>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흉부 X선 검사 대상자) 예시 .....	2·0·5
<서식 65> 결핵역학조사 발생보고서 .....	4·0·5
<서식 66> 결핵역학조사 종료보고서 .....	5·0·5
<서식 67> 소아청소년 접촉자 진료 의뢰서 예시(의료기관 공문발송용) .....	8·0·5
<서식 68> 의료기관 결핵 접촉자조사서 .....	9·0·5
<서식 69>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기본 문진표 .....	1·1·5
<서식 70>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전원 협조 요청서(공문 발송용) .....	2·1·5
<서식 71>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집단시설 역학조사) .....	3·1·5
<서식 72>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검진 결과보고 .....	4·1·5
<서식 73> 결핵검진(객담검사) 지원비 지급 신청서 .....	5·1·5

<서식 74> 잠복결핵감염 검진 안내문 (보건소→검진대상자) .....	6·1·5
<서식 75>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정보 이용 동의서 (검진대상자→보건소) .....	8·1·5
<서식 76>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개인용> (보건소→수검자) .....	9·1·5
<서식 77> 단체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기관용> (보건소→검진대상기관) .....	0·2·5
<서식 78>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보건소→수검자 요청 시) .....	1·2·5
<서식 79> 잠복결핵감염 치료 안내문 (보건소→치료대상자) .....	2·2·5
<서식 80>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뢰서 (보건소→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뢰 시) .....	2·2·5
<서식 81> 잠복결핵감염 치료 확인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용, 치료자 요청 시) (보건소→치료자) .....	2
<서식 82>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 .....	2·5
<서식 83>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경증) 보고서 (보건소→질병관리본부) .....	9·2·5
<서식 84>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중증) 보고서 (보건소→질병관리본부) .....	0·3·5
<서식 85>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신청서 .....	1·3·5
<서식 86> 인수공통결핵 의심 시 발생 보고 .....	2·3·5
<서식 87> 인수공통결핵 의심 시 역학조사 결과 보고 .....	3·3·5
<서식 88> 000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상반기 집행실적 보고 .....	4·3·5
<서식 89> 000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 .....	5·3·5
<서식 90> 보조사업 정산보고서(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6·3·5
<서식 91>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정내역 .....	8·3·5
<서식 92> 간병비 지원신청서[환자→보건소] .....	1·4·5
<서식 93> 소재불명 결핵환자 위치정보 확인요청서[시·군·구 → 질병관리본부] .....	2·4·5
<서식 94> 소재불명 결핵환자 위치정보 확인의뢰서[질병관리본부→경찰청] .....	3·4·5
<서식 95> 결핵 검진 사업 참여 수요조사서 .....	4·4·5
<서식 96> 검진일정 보고서 .....	5·4·5
<서식 97> 결핵 검진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6·4·5
<서식 98> 결핵 검진 안내문 .....	7·4·5
<서식 99> 검진 실적 보고서 .....	8·4·5
<서식 100> 가족접촉자 명단 변경 요청서 .....	9·4·5
<서식 101> 결핵역학조사 중점사례 보고서 .....	0·5·5



<서식 1>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8. 4.>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1쪽/4쪽)

수신자: 보건소장

팩스번호:

※ 본 신고·보고서는 결핵환자등을 진단·치료하거나 사망·사체검안 시 이를 신고하고, 치료결과를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 해당란에 √표시 또는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 신고: [ ]결핵환자등 진단·치료

[ ]결핵환자등 사망·사체검안(사망일: 년 월 일)([ ]결핵 관련 사망, [ ]결핵 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가.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

(1) 성명: [ ]	(2) 주민등록번호:
(3) 나이: 만 세	(4) 성별: [ ]남, [ ]여
(5)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 ]	(6) 최근 입국일(외국인만 해당합니다): 년 월 일
(7) 전화번호:	(8) 휴대전화번호:
(9) 주소:	
※ (10), (11), (12)번은 역학조사를 위한 필수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입합니다.	
(10) 직업: [ ]교직원, [ ]보건의료인, [ ]학생, [ ]군인, [ ]아·미용업, [ ]식품접객업, [ ]선원(원양), [ ]항공기 객실승무원, [ ]기타( )	
(11) 시설명(직장, 학교 등):	
(12) 시설(직장, 학교 등) 주소:	

나. 검사, 진단, 치료 정보

[결핵 초회 검사]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15), (16)의 날짜와 해당의 검체종류는 직접 기입)

※ 초회 검사는 반드시 실시하고, 신고 당시 미실시나 검사중인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보완신고합니다.

(13) 초회 검사 종류	(14) 검사 상태 및 결과			(15) 검체채취일 (또는 검사일자)	(16) 검체종류
	미실시	검사중	검사완료		
흉부X선검사			양성 결핵의심	년 월 일	
도말검사			음성 정상	년 월 일	[ ]객담, [ ]객담외
배양검사			NTM포함	년 월 일	[ ]객담, [ ]객담외
핵산증폭검사(TB-PCR검사)				년 월 일	[ ]객담, [ ]객담외
Xpert MTB/RIF 검사				월 일	[ ]객담, [ ]객담외
조직검사				년 월 일	[ ]

[진단 및 초치료 약제]

(17) 질병코드: [ ][ ][ ][ ][ ][ ] ※ 세분류(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반드시 입력	(19) 환자구분: [ ]신환자(초치료자) [ ]재치료자 ([ ]재발자, [ ]실패 후 재치료자, [ ]중단 후 재치료자, [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 [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
(18) 결핵종류 [ ]폐결핵(폐실질 또는 후두, 기관 및 기관지를 침범한 결핵, 좁쌀결핵) [ ]폐외결핵(병변위치: ) [ ]폐결핵 + 폐외결핵(병변위치: )	
(20) 해당의료기관에서 치료 실시 여부: [ ]치료시작(또는 예정)일: 년 월 일 [ ]치료안함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치료하지 않고 다른 기관 전원한 경우 등	
(21) 치료약제: [ ]H, [ ]R, [ ]E, [ ]Z, [ ]Rfb, [ ]Km, [ ]Amk, [ ]Cm, [ ]S, [ ]Lfx, [ ]Mfx, [ ]Ofx, [ ]Pto, [ ]Cs, [ ]PAS, [ ]Lzd, [ ]Clr, [ ]기타( )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시행 시마다 신고합니다.

(22)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결과: [ ]미실시, [ ]검사중, [ ]검사완료 ([ ]내성 없음, [ ]내성 있음)
(23) 항결핵약제 검사 방법: [ ]전통적인 방법, [ ]신속내성검사, [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Xpert MTB/RIF 검사 등)
(24) 항결핵약제 내성 약제: [ ]H, [ ]R, [ ]E, [ ]Z, [ ]Rfb, [ ]Km, [ ]Amk, [ ]Cm, [ ]S, [ ]Lfx, [ ]Mfx, [ ]Ofx, [ ]Pto, [ ]Cs, [ ]PAS, [ ]Lzd, [ ]Clr, [ ]기타( )
(25) 항결핵약제 내성 코드: [ ]U88.0(다약제내성 결핵), [ ]U88.1(광범위약제내성 결핵), [ ]리팜핀단독내성 결핵
(26) 검체채취일: 년 월 일 ※ 약제 내성 검사 의뢰용 검체를 환자로부터 채취한 날짜(검사중인 경우에도 입력합니다)

■ 치료 결과 보고

(27) 치료 결과 구분: [ ]완치, [ ]완료, [ ]실패, [ ]중단, [ ]사망, [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 ]진단변경([ ]NTM, [ ]종양, [ ]기타질병)	
(28) 치료결과 판정일: 년 월 일 ※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인 경우 마지막 진료일	(29) 치료종료일: 년 월 일
(30) 특기사항:	

[신고·보고자]

(31) 신고·보고일: 년 월 일
(32) 요양기관 기호: [ ], 요양기관이름: [ ] 요양기관 연락처: [ ]
(33) 담당의사 성명: [ ], 의사면허번호: [ ], 진료과목: [ ] (서명 또는 인)

「결핵예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핵환자등을 신고·보고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개요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및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및 「결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 신고·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신고
  - 1)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경우
  - 2)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신고 대상:**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감염병의 진단기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1)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도말 양성 또는
  - 2)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배양 양성 또는
  - 3)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양성
 \*특히 Mycobacterium bovis는 배양에서 동정이 되어야 확진됨  
 나. 결핵 의사환자: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결핵에 합당하나 세균학적으로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신고·보고 방법**
  - 가. 신고·보고처: 관할 보건소장
  - 나. 방법: 팩스 및 웹(질병보건의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 내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이하 전산시스템)
  - 다. 서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신고·보고 방법

**필수정보:** (1) 성명, (3) 나이, (4) 성별, (10) ~ (12) 직업정보, (31) ~ (33) 신고·보고자 정보

- 신고**
  - 가.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 서식(1쪽)의 노란색 음영은 신고를 위한 필수정보로 반드시 기입
  - 나. 검사·진단·치료 정보: 확인 가능 항목을 기입하여 신고하며, 신고 당시 미실시나 검사 중단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을 기입하여 보완신고
- 치료 결과 보고:** 해당요양기관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종결하였을 때 그 결과를 보고

### 환자구분 및 정의 [서식(1쪽)의 (19)항목 해당]

구분	정의
신환자(초치료자)	과거에 결핵 치료를 한 적이 없는 경우 ※ 과거에 항결핵제를 복용한 적이 있더라도 복용기간의 총합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다른 병원에서 신환자(초치료자)로 치료하다가 원치/완료/실패/중단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서 단순히 전원한 경우
재치료자	과거에 항결핵제를 복용한 적이 있고 복용 기간의 총합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류 함
재발자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가 완치 또는 완료인 환자가 다시 결핵으로 발병한 경우
실패 후 재치료자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가 실패*인 환자가 재치료를 하는 경우 (*실패 : 아래 치료 결과 구분 참조)
중단 후 재치료자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가 중단*인 환자가 재치료를 하는 경우 (*중단 : 아래 치료 결과 구분 참조)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	과거 결핵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가장 최근의 치료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과거 치료여부 불명확	과거 치료 여부를 알 수 없는 환자

### 치료 결과 구분 및 정의 [서식(1쪽)의 (27)항목 해당]

구분	감수성결핵	내성결핵 (다약제내성결핵, 광범위약제내성결핵, 리팜핀단독내성결핵)
원치	치료시작 시점에서 균양성 폐결핵으로 확인된 환자 중 치료 종결 후(또는 마지막 달)에 시행한 객담 배양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그 전에 한번 이상 객담 배양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던 경우	국내 지침에 따라 치료 실패의 증거 없이 치료를 완료한 환자로, 집중치료기 이후 최소 30일 간격으로 연속하여 시행한 배양 검사에서 3회 이상 음성인 경우
완료	치료 실패의 증거 없이 치료를 완료하였지만 치료 종결 후(또는 마지막 달)의 객담 배양 검사 결과가 없거나, 그 전에 한번 이상 객담 배양 음성 결과가 없을 경우	국내 지침에 따라 치료를 완료하였으나 균배양 음성 기준이 완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	치료 시작 후 5개월 째 또는 그 이후 시행한 객담 도말 또는 배양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다음의 사유로 치료를 종료하였거나 최소 2개 이상 항결핵약제의 영구적 처방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집중치료기 종료 시 음성 실패 - 유지치료기 동안 세균학적인 양전 - 귀찮게 약제 혹은 주사제에 추가로 내성이 획득된 경우 - 약제 부작용
중단	연속하여 2달 이상 치료가 중단된 경우	
사망	어떤 이유론든 치료 전 또는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완치/완료/실패/중단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서 단순히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진단변경	결핵 외의 다른 질환으로 진단이 변경된 경우	

동 서식의 내용은 국가결핵감시체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 방법

##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

- \* (1) 성명: 특수기호나 공백 없이 한글로 작성[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적혀진 영문명으로(공백 포함) 작성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에 적혀져 있는 영문명으로(공백 포함) 작성]
-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입
  -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성별과 나이는 자동 생성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에 적혀져 있는 생년월일과 여권번호를 기재
  - 미상의 경우 확인 가능 범위까지 입력 후 미상값은 \*로 입력
- \* (3) 나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기준으로 자동 생성됨(자동 생성 값 수정 가능, 필수 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입)
- \* (4) 성별: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성별란(주민등록번호 7째자리) 기준으로 자동 생성됨(필수 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입)
- (5) 국적: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란에 체크하고, 국적은 표준국가명 조회탭을 이용하여 입력
- (6) 최근 입국일: 외국인인 경우, 최근 입국일을 입력
- (9) 주소: 환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를 입력(주민등록 상 주소를 모르는 경우 거주지 주소 입력)
- (10) 직업: 해당 직업에 √표시하며, 직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직업을 모두 기재
- (11)·(12) 시설명 및 시설 주소: (10) 직업에 해당하는 직장, 학교 등 시설명과 시설 주소를 기재하며, 직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직업별로 모두 기재

## [결핵 초회 검사]

- (13) 초회 검사 종류: 결핵환자등을 최초 진단하기 위한 검사종류에 대한 정보를 입력
  - 동일 검사를 2번 이상 실시한 경우(예: 배양검사를 액체배지와 고체배지에서 각각 시행) 전산시스템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 (14) 검사 상태 및 결과: 검사 상태와 결과를 입력
  - 흉부X선검사의 경우: '결핵의심'은 '양성'란에, '정상'은 '음성'란에 표시
  - 배양검사결과 비결핵항산균(NTM)의 경우: '음성'란에 표시
- (16) 검체종류: 객담과 객담외를 구분하여 표시

## [진단 및 초치료 약제]

- (17) 질병코드: 결핵질병코드 서식(4쪽)을 참조하여 작성. 호흡기결핵/기타결핵 및 도말양성 등의 구분을 위해 소숫점 둘째 자리(최소 첫째자리까지) 입력
- (18) 결핵종류: 병변 위치를 전산시스템에서 선택(조회탭을 이용)하여 입력
- (19) 환자구분: 환자구분 정의 서식(2쪽)을 참조하여 입력  
환자구분과 별도로 다른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인 경우 전원여부를 (30)특기사항에 기재
- (21) 치료약제: 결핵환자등의 진단 후 해당의료기관에서 최초 처방한 성분명을 기입
  - 항결핵약제 종류 및 약어 : isoniazid(H), rifampicin(R), ethambutol(E), pyrazinamide(Z), rifabutin(Rfb), kanamycin(Km), amikacin(Amk), capreomycin(Cm), streptomycin(S), levofloxacin(Lfx), moxifloxacin(Mfx), ofloxacin(Ofx), prothionamide(Pto), cycloserine(Cs), p-aminosalicylic acid(PAS), linezolid(Lzd), clarithromycin(Clr)

##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를 시행한 때마다 필수정보(\*)와 함께 [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항목 보완 신고 (이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실시내역 입력)

- (25) 항결핵약제 내성 코드: (24) 항결핵약제 내성 약제 선택 시, 다음의 기준으로 자동 선택됨
  - R = 리팜핀단독내성결핵
  - H & R = U88.0(다약제내성결핵)
  - H & R & (Lfx or Mix or Ofx) & (Km or Amk or Cm) = U88.1(광범위약제내성결핵)

## [치료 결과 구분]

- (27) 치료 결과 구분 정의(신고서 2쪽)를 참조하여 입력  
사망의 경우 원사인을 기준으로 결핵 관련과 결핵 외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구분

## [특기사항]

- (30) 특기사항: 환자 실거주지, 과거치료약제, 수정·보완 내역, 특기사항 등 신고·보고서 정보 이외 중요 정보 기입  
동 서식의 내용은 국가결핵감시체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결핵 질병코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내용
A15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A15.0		배양 유무에 관계없이 가래 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폐결핵
	A15.01	A15.00	배양 유무에 관계없이 가래 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공동이 있는 폐결핵
	A15.1	A15.01	배양 유무에 관계없이 가래 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A15.2		배양만으로 확인된 폐결핵
	A15.20	A15.2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폐결핵
	A15.21	A15.20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공동이 있는 폐결핵
	A15.3	A15.21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A15.30	A15.3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폐결핵
	A15.31	A15.30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공동이 있는 폐결핵
	A15.4	A15.31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A15.5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흉곽내 림프절의 결핵
	A15.6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후두,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A15.7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결핵성 흉막염 흉막의 결핵
	A15.8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일차 호흡기 결핵
	A15.9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기타 호흡기 결핵
	A15.90	A15.9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A15.91	A15.90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공동이 있는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A16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A16.0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음성인 결핵
	A16.1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폐결핵
	A16.10	A16.1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공동이 있는 폐결핵
	A16.11	A16.10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A16.2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결핵
	A16.20	A16.2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동이 있는 폐결핵
	A16.21	A16.20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A16.3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흉곽내 림프절의 결핵
	A16.4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후두,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A16.5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결핵성 흉막염 흉막의 결핵
	A16.7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일차 호흡기 결핵
	A16.8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기타 호흡기 결핵
	A16.9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A16.90	A16.9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공동이 있는 호흡기 결핵
	A16.91	A16.90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A17			신경계통의 결핵
	A17.0		수막결핵
	A17.1		수막결핵중
	A17.8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A17.80	A17.8	뇌 및 척수의 결핵중
	A17.81	A17.80	결핵성 수막뇌염
	A17.82	A17.81	결핵성 신경염
	A17.88	A17.82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A17.9	A17.88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결핵
A18			기타 기관의 결핵
	A18.0		뼈 및 관절의 결핵
	A18.00	A18.0	척추의 결핵
	A18.01	A18.00	기타 관절의 결핵성 관절염
	A18.02	A18.01	기타 뼈의 결핵
	A18.08	A18.02	기타 근골격계의 뼈 및 관절의 결핵, 결핵성 유행마면, 결핵성 침출유행마면
	A18.1		비뇨생식계통의 결핵
	A18.10	A18.1	신장 및 요관의 결핵
	A18.11	A18.10	방광의 결핵
	A18.12	A18.11	기타 비뇨기관의 결핵
	A18.13	A18.12	전립선의 결핵
	A18.14	A18.13	기타 남자 생식기관의 결핵
	A18.15	A18.14	자궁경부의 결핵
	A18.16	A18.15	결핵성 여자골반의 염증성 질환, 결핵성 자궁내막염, 결핵성 난소염 및 난관염
	A18.17	A18.16	기타 여자 생식기관의 결핵
	A18.19	A18.17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관의 결핵
	A18.2		결핵성 말초 림프절병중
	A18.3		장, 복막및장간막림프절의결핵
	A18.30	A18.3	결핵성 복막염
	A18.31	A18.30	결핵성 장염
	A18.32	A18.31	후복막 결핵
	A18.4		피부 및 피하조직의 결핵 ·결핵에서의 눈꺼풀 침범
	A18.5		눈의 결핵
	A18.6		귀의 결핵 ·결핵성 중이염
	A18.7		부신의 결핵 ·결핵성 애디슨 병
	A18.8		기타 명시된 기관의 결핵
	A18.80	A18.8	갑상선의 결핵
	A18.81	A18.80	기타 내분비선의 결핵
	A18.82	A18.81	달라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관의 결핵
	A18.83	A18.82	심장의 결핵, 심근의 결핵, 심내막의 결핵, 심낭막의 결핵
	A18.84	A18.83	비장의 결핵
	A18.88	A18.84	기타 부위의 결핵
A19			췌상 결핵
	A19.0		하나로 명시된 부위의 급성 췌상 결핵
	A19.1		여러 부위의 급성 췌상 결핵
	A19.2		상세불명의 급성 췌상 결핵
	A19.8		기타 췌상 결핵
	A19.9		상세불명의 췌상 결핵
U88			다양체내성 결핵
	U88.0		광범위외내성 결핵
	U88.1		광범위외내성 결핵



<서식 2>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 8. 4.>

(1/3쪽)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

※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b>가. 인적사항</b>						
(1) 성명		(2) 생년월일	___년 ___월 ___일	(5) 연락처	주택:	
(3)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4) 나이	만 ___세		직장:	
(6) 주소	휴대전화:					
(7) ~ (9)의 항목은 외국인만 작성합니다.						
(7) 국적		(8) 체류자격				
(9) 입국일						
(10) 직업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군인 ( <input type="checkbox"/> 직업군인 <input type="checkbox"/> 현역군인 <input type="checkbox"/> 사회복무요원) <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인 [ <input type="checkbox"/> 의사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input type="checkbox"/> 간호조무사 <input type="checkbox"/> 방사선사 <input type="checkbox"/> 임상병리사 <input type="checkbox"/> 물리치료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이미용업 <input type="checkbox"/> 식품접객업 <input type="checkbox"/> 선원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객실승무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					
(11) 소속기관 명칭						
(12) 소속기관 주소						
(13) ~ (18)의 항목은 생후 24개월 이하인 영유아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13) 출생병원 명칭						
(14) 출생병원 주소						
(15) 분만형태	<input type="checkbox"/> 자연분만 <input type="checkbox"/> 제왕절개					
(16) 산후조리원 이용	<input type="checkbox"/> 이용함 <input type="checkbox"/> 이용안함					
(17) 산후조리원 명칭						
(18) 산후조리원 주소						
<b>나. 접촉자 정보</b>						
(19) 주변에 결핵환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관계	<input type="checkbox"/>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친구 <input type="checkbox"/> 직장동료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이웃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현재 접촉인 사람	<input type="checkbox"/>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친구 <input type="checkbox"/> 직장동료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이웃 <input type="checkbox"/> 기타 (            )					
(20) 가족 및 동거인	순서	관계	성명	연령	성별	연락처
	1			만    세		
	2			만    세		
	3			만    세		
	4			만    세		
<b>다. 주거 및 생활형태</b>						
(21)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가족과 함께 거주 <input type="checkbox"/> 하숙 <input type="checkbox"/> 1인 가구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마.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29) 과거 결핵발병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 최초 진단받은 연도 (      년) - 과거 결핵치료를 받은 횟수 :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이상 - 과거 결핵치료(또는 약제복용) 기간 <input type="checkbox"/> 1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1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모름
(30) 과거 잠복결핵감염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 진단받은 연도 (      년) - 치료결과 ( <input type="checkbox"/> 미치료 <input type="checkbox"/> 치료중 <input type="checkbox"/> 치료완료)
위험요인	(31) 기저질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규폐증 <input type="checkbox"/> 위·장절제 등 <input type="checkbox"/> 암 <input type="checkbox"/> 만성신부전 <input type="checkbox"/> HIV <input type="checkbox"/> 알콜중독 <input type="checkbox"/> 스테로이드복용 <input type="checkbox"/> 당뇨 <input type="checkbox"/> 면역억제제복용 <input type="checkbox"/> TNF 길항제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32) 흡연유무 <input type="checkbox"/> 비흡연 <input type="checkbox"/> 피웠지만 현재 금연 <input type="checkbox"/> 흡연
(33) BCG접종 유무 (15세 미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 아래 항목은 '있음'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피내 <input type="checkbox"/> 경피 <input type="checkbox"/> 모름
(34) 진료를 받게 된 사유	<input type="checkbox"/> 환자내원 ( <input type="checkbox"/> 결핵 증상으로 내원 <input type="checkbox"/> 타 질환으로 내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일반, 직장) <input type="checkbox"/> 개인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학생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가족접촉자검진 <input type="checkbox"/> 역학조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b>바. 특이사항</b> ※ 집단시설에서의 생활 여부 또는 정기적 활동모임 등에 대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조사일	년      월      일		
조사기관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보건소명 :                      )	조사자	성 명: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 80/㎡]

### 환자관리 기록카드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직업	신고번호	신고일	환자구분	질병코드	의료기관	기관명		
		성별							진료과목	담당의사	
	주소		연락처								
임상정보	키(cm)	체중(kg)	치료 시작일	년 월 일	흡연력	기저질환					
	결핵 가족력	과거결핵 치료력	과거결핵 치료횟수		과거결핵 진단받은년도	임상증상	증상시작일	년 월 일			
검사내역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검사일	결과확인일	검사결과	공동	검사일	결과확인일	검사결과	검체종류	검사 종류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불명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객담 <input type="checkbox"/> 객담외	<input type="checkbox"/> 도말 <input type="checkbox"/> 고체배양 <input type="checkbox"/> 액체배양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불명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객담 <input type="checkbox"/> 객담외	<input type="checkbox"/> 도말 <input type="checkbox"/> 고체배양 <input type="checkbox"/> 액체배양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불명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객담 <input type="checkbox"/> 객담외	<input type="checkbox"/> 도말 <input type="checkbox"/> 고체배양 <input type="checkbox"/> 액체배양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불명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객담 <input type="checkbox"/> 객담외	<input type="checkbox"/> 도말 <input type="checkbox"/> 고체배양 <input type="checkbox"/> 액체배양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불명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객담 <input type="checkbox"/> 객담외	<input type="checkbox"/> 도말 <input type="checkbox"/> 고체배양 <input type="checkbox"/> 액체배양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불명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객담 <input type="checkbox"/> 객담외	<input type="checkbox"/> 도말 <input type="checkbox"/> 고체배양 <input type="checkbox"/> 액체배양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불명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객담 <input type="checkbox"/> 객담외	<input type="checkbox"/> 도말 <input type="checkbox"/> 고체배양 <input type="checkbox"/> 액체배양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불명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객담 <input type="checkbox"/> 객담외	<input type="checkbox"/> 도말 <input type="checkbox"/> 고체배양 <input type="checkbox"/> 액체배양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불명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객담 <input type="checkbox"/> 객담외	<input type="checkbox"/> 도말 <input type="checkbox"/> 고체배양 <input type="checkbox"/> 액체배양		





핵산증폭검사(TB-PCR검사)				항결핵제 내성검사										
검사일	결과확인일	검사결과	검체종류	검사방법	검사일	결과확인일	검사결과	내성약제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객담 <input type="checkbox"/> 객담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객담 <input type="checkbox"/> 객담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객담 <input type="checkbox"/> 객담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객담 <input type="checkbox"/> 객담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객담 <input type="checkbox"/> 객담외		년 월 일	년 월 일								
기타검진														
검사일자	체중 검사 (kg)	시력				간기능검사		요산 검사	신장기능검사				말초혈액검사	
		좌	우	색맹	색약	SGOP (AST)	SGPT (ALT)		BUN	Creatinine	요단백	요당	RBC	WBC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서식 6> 입원·격리치료명령대상자 알림통지서[의료기관 및 진료보건소→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입 원 <input type="checkbox"/> 격리치료 명령대상자 알림통지서						
입원·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_____ . _____ . _____ (□남 □여)	
	진단코드			최근결핵균 검사결과	도말	20__ . .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배양	20__ . .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약제감수성 검사결과	20__ . . 내성약제명: _____
	주 소			전 화		
				휴대폰		
	과거력	과거결핵치료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만성배균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기저질환 여부	<input type="checkbox"/> 규폐증 <input type="checkbox"/> 위·장절제 등 <input type="checkbox"/> 암 <input type="checkbox"/> 만성신부전증 <input type="checkbox"/>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HIV <input type="checkbox"/> 알콜중독 <input type="checkbox"/> 스테로이드복용 <input type="checkbox"/> 면역억제제복용(TNF-α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없음				
	입원·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input type="checkbox"/> 치료비순응환자 ※ 반드시 의사소견 추가				
<input type="checkbox"/> 그 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진료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 외국인 강제퇴거 □ 전염성 결핵(도말 2+ 이상) □ 무연고 □ 기타_____) ※ '기타' 사유는 반드시 의사소견 추가(아래 주요 내용 기술)						
(의사소견)						
해당의료 기관입원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입원가능일: 20__ . . . .		국공립병원 입원필요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불가능 사유)			(필요 사유)		
의료 기관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서식 7> 입원·격리치료명령서[보건소→환자]

■ 결핵예방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14.7.28>

[ ] 입 원 [ ] 격리치료      명령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 . . . ( [ ]남, [ ]여)
입원장소	(시설명)	입원일	
	(주소)	기 간	~
<p> <input type="checkbox"/> 위 사람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결핵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을 명합니다.                      ※ 만일 입원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p> <input type="checkbox"/> 위 사람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입원치료 중 임의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어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격리치료를 명합니다.                      ※ 만일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직인</div> </div>			

<서식 8>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안내문(예시)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안내문

결핵은 공기를 매개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결핵균은 기침, 대화, 노래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공기 중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결핵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전염성 결핵환자 1명이 1년 동안 1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는 결핵예방을 위하여 입원을 통한 결핵치료로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고 결핵감염을 예방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로부터 결핵균이 음전 될 때까지 일정기간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입원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15조2호에 따라 격리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제33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입원치료기간 동안 발생하는

▶ 입원비 및 약제비

- 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 단, 결핵 이외의 타과질환에 대한 입원비 본인부담금은 지원에서 제외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전액지원(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및 일부 다제내성 결핵환자)
  -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 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급여 항결핵제

▶ 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해당자 한함)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 일정 소득이 확인되고
  - 환자가구의 소득수준이 당해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수준의 120% 미만인 경우를 지원해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입원비 및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_\_\_\_\_보건소 담당자\_\_\_\_\_

전화\_\_\_\_\_

팩스\_\_\_\_\_

□ 입원·격리치료명령 안내문 첨부(자세한 사항은 입원·격리치료명령을 실시한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문의)

구분	입원비 지원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고 환자본인 부담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입원·격리치료 명령결핵환자</li> <li>- 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및 일부 다제내성결핵환자</li> <li>* 일부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문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일정 소득 이하 결핵환자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자)</li> <li>* 자세한 지원대상자 기준은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문의</li> </ul>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일로부터 해제일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격리치료명령기간 중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li> <li>- 처방일로부터 1년까지 : 무조건 지원</li> <li>- 지원기간 1년 경과 후부터 2년까지 : 담당의사의 소견서 확인 후 1년 추가 지원</li> <li>* 단, 직접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문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격리치료명령을 실시하여 실제입원치료를 받은 기간</li> </ul>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li> <li>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일부</li> <li>- 아래와 같이 연간 지원 상한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결핵관련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방된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비용 전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금액 (단위: 원/월)</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1인</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r> </thead> <tbody> <tr> <td>527,158</td> <td>897,594</td> <td>1,161,173</td> <td>1,424,752</td> <td>1,688,331</td> <td>1,951,91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li> <li>※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 (8인 가구 2,481,920원)</li> </ul>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구 분	다제내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등
	만성배균자*	만성배균 자 이외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 지원항목: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및 검사료,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제증명료 및 수수료, 상급병실차액료 등

※ 만성배균자 : 다제내성 결핵환자(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포함)로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균양성인 결핵환자

<p>지원 신청시 구비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비지원신청서 1부</li> <li>•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 1부(원본)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li> <li>• 입원기간 진료비상세내역서(원본) 1부</li> <li>• 입금통장사본 1부</li> <li>•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견서 1부 * 최초 신청 시, 최초 처방 후 1년 후 추가지원 신청 시, 주요사항 변경 시 제출</li> <li>• 약제비지원신청서 1부</li> <li>• 처방 약제비 영수증 1부(원본)</li> <li>•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li> <li>• 입금통장사본 1부</li> <li>•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신청서 1부</li> <li>• 소득 관련 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신고서</li> <li>- 소득 정보 확인 동의서</li> <li>- 소득 확인 서류</li> </ul> </li> <li>• 입금통장 사본 1부</li> <li>•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시)</li> <li>• 주민등록등(초)본 1부</li> </ul>
----------------------------------------------------------------------------------------------------------------------------------------------------------------------------------------------------------------------------------------------------	--------------------------------------------------------------------------------------------------------------------------------------------------------------------------------------------------------------------------------------------------------	-------------------------------------------------------------------------------------------------------------------------------------------------------------------------------------------------------------------------------------------------------------------------------------





<서식 11>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전원요청서[의료기관 → 보건소]

[ ] 입 원 명령 결핵환자 전원요청서 [ ] 격리치료							
입원·격리 치료명령 결핵환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_ . _ . _ .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진단코드			최근결핵균 검사결과	도말	20_ . .	□ 양성 □ 음성
					배양	20_ . .	□ 양성 □ 음성
	전원요청사유						
	전원일자	년 월 일					
	입원환자의 입원치료경과 (의사소견)						
응급의료차량 이용여부	□ 사용 □ 사용하지 않음						
입원환자 전원요청 의료기관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위 환자의 전원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서식 13>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알림통지서[보건소→환자]

[ ] 입 원 [ ] 격리치료 명령 해제알림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 . . . ( [ ]남, [ ]여)
입원장소	(시설명)	입원일	
	(주소)	기 간	~
<p>□ 위 사람은 「결핵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원·격리치료명령을 실시하였으며 적정한 입원·격리치료 후 균음전 등으로 타인에 대한 전파 우려가 낮고 치료 호전 등 의사 해제소견에 따라서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span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15px;">직인</span> </div>			

<서식 14> 입원비 지원신청서[환자→보건소]

입원비 지원신청서 [환자용]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환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____.____.____ (□남 □여)		
	주 소					
	이메일		정보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input type="checkbox"/> 수신거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____.____.____ (□남 □여)		
	관 계		연락처			
의료 보장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 2종/ □ 특례종/ □ 차상위종)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가입자	종별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지역			
후원금	긴급의료비 등 국가지원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기관 :		, 금액 : )		
	개인·단체 후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내용:		, 금액 : )		
	환급금 수령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진료기간:		, 금액 : )		
환급·환수 안내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입원기간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입원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현재신청 입원비	총입원비(A+B+C)					
	지원금 총액 (A1+C1-후원금)		급여분 진료비		비급여분 진료비(C)	
			법정본인부담금(A)		공단부담금 (B)	지원(C1)
	지원(A1)	비지원(A2)				
위와 같이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년 월 일</span> <span>신청인 : (서명 또는 인)</span>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 <span>_____ 보건소장 귀하</span> </div>						
<b>처리 절차</b>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 접수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 입원비 지급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서식 15> 입원비 지원신청서[의료기관→보건소]

입원비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용]						
□ 신규 □ 기존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____.____.____ (□남 □여)	
	진단 코드			연락처	Tel : H.P :	
	주 소					
신청 의료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 소					
지원 대상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 2종/ □ 특례종/ □ 차상위종)				□ 해당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종별	□ 직장 □ 지역			
후원금	긴급의료비 등 국가지원여부	□ 없음 □ 있음(기관 : _____, 금액 : _____)				
	개인·단체 후원	□ 없음 □ 있음(내용: _____, 금액 : _____)				
	환급금 수령여부	□ 없음 □ 있음(진료기간: _____, 금액 : _____)				
환급·환수 안내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_____ (서명)		
입원기간	최초 _____년 _____월 _____일 ~ 마지막 _____년 _____월 _____일 (총 _____일간)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현재신청 입원비	총입원비(A+B+C)					
	<b>지원금 총액 (A1+C1-후원금)</b>		급여분 진료비		비급여분 진료비(C)	
			법정본인부담금(A)		공단부담금	
			지원(A1)	비지원(A2)	(B)	지원 (C1)
위와 같이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 의료기관 장 : _____ (직인)						
_____ 보건소장 귀하						
<b>처리 절차</b>						
입원·격리치료명령을 실시한 의료기관 지원신청 → 접수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 입원비 지급						
<b>의료기관 제출 서류</b>						

<서식 16> 약제비 지원신청서[환자→보건소]

약제비 지원신청서 [환자용]									
<input type="checkbox"/> 입원중 <input type="checkbox"/> 해제이후									
환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_____ (□남 □여)			
					연락처	Tel : _____ H.P : _____			
	주 소								
		이메일				정보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input type="checkbox"/> 수신거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_____ (□남 □여)			
	관 계				연락처				
환급·환수 안내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_____ (서명)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과거력여부	과거결핵치료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직접복약확인동의	동의인 _____ (서명 또는 인)				
입원기간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총 _____ 일간)								
약처방일수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총 _____ 일간)								
입원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약처방의료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				처방의사명				
현재신청 약제비	<b>약제비 신청금액</b>			<b>약제명(처방 용량)</b>			<b>처방일수(누적 처방일수*)</b>		
	_____ 원			( _____ mg)			_____ 일 ( _____ 일)		
<p>위와 같이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약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_____ 보건소장 귀하</p>									
<p>○ 약제비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제비(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지원신청서 1부</li> <li>-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각 1부</li> <li>- 결핵균검사 결과지: 환자가 제출하지 않고 보건소담당자가 전산 확인(지원신청 시점의 최근 1개월 검사 결과지 기준)</li> <li>- 의사소견서 1부 최초 신청시, 최초 신청 1년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그 밖에 주요사항 변경 시(처방 의료기관 및 처방의사 변경 등) 제출</li> <li>- 환자입금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한함) 1부씩</li> </ul> <p>※ 신청약제비(끓은선)는 보건소에서 처방전 및 영수증 확인 후 작성(누적 처방일수는 시스템 등록일수와 동일하도록 관리)</p>									

<서식 17> 약제비 지원신청서[약국(의료기관)→보건소]

약제비 지원신청서 [약국 및 의료기관용]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____.____.____ (□남 □여)
	입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Tel :
		전화번호			H.P :
	주 소				
직접복약확인동의		동의인 _____(서명 또는 인)			
신청 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 소				
지원대상자 의료보장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 2종/ □ 특례종/ □ 차상위종)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가입자	종별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지역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현재신청약제비	약제비 신청금액		약제명(처방 용량)		처방일수(누적 처방일수*)
	원		( mg)		____ 일 ( ____ 일)
위와 같이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약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____ 년 ____ 월 ____ 일		신청 기관 장 :		(서명 또는 인)	
_____ 보건소장 귀하					
<p>▶ 입원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원외처방 환자본인부담(전액본인부담 및 비보험) 항결핵제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자</p> <p>▶ 약제비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제비 지원신청서 1부</li> <li>2. 약제비 영수증 1부</li> <li>3.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li> <li>4. 신청하는 기관의 입금 통장 사본 1부</li> </ol> <p>▶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p> <p>- 약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제비 지원신청을 하는 약국의 장은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및 입원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 약제비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환자가 입원·격리치료명령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함</li> <li>◦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함(Fax 신청 가능)</li> <li>※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담당자는 결핵균검사 결과지 및 의사소견서의 경우 환자 및 입원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함</li> </ul> <p>- 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제비 지원신청을 하는 의료기관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함(Fax 신청 가능)</li> </ul> <p>※ 약제비 누적 처방일수는 보건소에서 작성(시스템 등록일수와 동일하도록 관리)</p>					

<서식 18> 비급여지원 초과비용 추가지원신청서[환자(의료기관)→보건소]

비급여지원 초과비용 추가지원신청서					
신청 구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_____ (□남 □여)
		관계	<input type="checkbox"/> 환자본인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신청 기관	기관명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입원·격리치료명령기간		20 . . . ~ 20 . . .		(총 일간)	
격리병실 급여 인정기간		20 . . . ~ 20 . . .		(총 일간)	
격리병실 급여 불인정기간		20 . . . ~ 20 . . .		(총 일간)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지원 신청금액		추가지원 신청사유 및 내역 (상세히 기술)		첨부 서류 확인	
				<input type="checkbox"/> 진료비 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진료비 상세내역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등(초)본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상급병실차액료) 지원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보건소장 귀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 접수 → 소득조사 → 검토 → <u>부양가족생활보호비</u> 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결정 → 통보	
작성 요령	<p>&lt; 한자가구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자가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li> <li>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한자가구 가구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li> <li>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한자가구 가구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li> </ul> </li> <li>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고 타인의 가정 또는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li> </ul> </li> <li>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한자가구 가구원과 생계나 주거를 모두 같이 하고 있으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li> </ul> </li> <li>한자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li> <li>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한자가구에 포함)</li> <li>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li> <li>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li> <li>기초생활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보장시설수급자)</li> <li>행방불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li> <li>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한 자</li> <li>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li> </ul> </li> </ul> </li> </ol>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1부</li> <li>입금통장사본 1부</li> <li>소득조사 관련 서류 1부</li> <li>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가구원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재적등본 제출)</li> </ol>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제출)</li> <li>주민등록등(초)본</li> <li>사업자등록증명서(자영업자인 경우)</li> <li>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회사퇴직자 등 근로소득자인 경우)</li> </ol> <p>※ 신청인의 제출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민원24의 공적자료 이용)를 통해 신청인의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함</p>
유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할 경우는 부정 수급한 의로비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본인 및 한자가구의 소득 현황 등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원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li> </ol>

10) 해당자에 한함





<서식 21> 소득 정보 확인동의서[환자→보건소]

소득 정보 확인동의서			
<b>1. 개인정보화일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b> ▶ 제공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성별, 주소, 연락처 등 - 조사기준일 현재 동의자 명의의 소득 내용 ▶ 활용목적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조사 ▶ 보관기간 : 반영구			
<b>2. 소득정보 확인동의자</b> ▶ 환자 인적사항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동의확인 (서명)  인
▶ 동의자 범위(조사대상자 범위) : 환자 가구원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동의확인 (서명)  인
			인
			인
			인
			인
			인
<b>3. 동의서의 작성일자 :</b> 년    월    일 <b>4.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b> 시                    구·군 보건소  위의 동의확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작성자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보건소 담당자 _____ (인)</div>			
▶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도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동의자(환자가구) _____ (서명 또는 인)</div>			
<b>시 통합조사팀 귀하</b>			

<서식 22>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조사의뢰서[보건소→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input type="checkbox"/> 입 원 <input type="checkbox"/>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조사의뢰서				
환자 가 구	환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i>예시) 본인</i>			

위의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에 대한 소득조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_\_\_\_\_ 시·군·구 보건소장 (인)

(의뢰자 소속 및 직위 : \_\_\_\_\_ 성명 : \_\_\_\_\_ (전화 : \_\_\_\_\_))



<서식 24> 고용·임금 확인서[환자→보건소]

고용·임금확인서								
피 고 용 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____.____.____ (□남 □여)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 하는 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금 지급 형태		일당제	일일 임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장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 직인)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인)								



<참고> 지출항목별 해당품목

지출항목		해당품목
식품비	1. 곡물 및 가공품	쌀, 떡, 라면류, 기타곡물가공품
	2. 고기, 야채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가공품, 우유, 요구르트, 갈치, 기타선어개류, 기타채소, 두부, 김치류, 김, 고추
	3. 과일	사과, 배, 포도, 귤, 수박, 딸기, 기타과실
	4. 빵 및 음료	케이크, 기타빵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커피, 음료류, 기타식품
	5. 외식비	식사대, 학교급식대
주거비	6. 월세	월세
광열수도비	7. 수도요금	수도료
	8. 전기요금	전기료
	9. 취사, 난방비용	등유, 도시가스
피복신발비	10. 의복, 신발	학생복, 아동용외의, 여자내의, 운동화
의료비	11. 입원, 진료비	병원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12. 의약품비	양약, 조제약
교육비	13. 고교납입금	고교납입금
	14. 보육료	보육료
	15. 교재, 참고서비	중고교재, 참고서값(1인당)
	16. 학원비	입시 및 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교양오락비	17. 방송수신료	방송수신료
	18. 기타오락비	원구, 기타교양오락서비스
교통통신비	19. 교통비	버스, 택시, 지하철 및 전철, 화물운송료
	20. 자동차유지비	부품 및 관련용품구입, 보험료, 경유, LPG
	21. 전화요금	이동전화기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22. 인터넷이용료	인터넷이용료
기타	23. 담배, 술값	소주, 맥주, 담배



## &lt;서식 26&gt; 환자 복약확인 관리대장[보건소용]

앞면

환자 복약확인 관리대장							
( _____ 보건소)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진단코드				항결핵제 내성코드			
주소				연락처	Tel :		
					H.P :		
관련 일자	입원·격리치료명령일	년	월	일	약제비 지원기간 (2년간)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총 _____ 일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일	년	월	일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기간	총 _____ 일
	실제입원기간 (지원시작입원일~ 해제일)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복약확인방법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내원 복약확인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입원 복약확인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복약확인	
	복약확인 시작일	년	월	일		복약확인 실시기관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주소지 <input type="checkbox"/> 실제 거주지 의료기관*
처방 약제	경구용 항결핵제	약제명		처방 용량		복용 주기	/
	주사 항결핵제	약제명		처방 용량		투약 주기	/
중도 복약확인 실시 포기 시 사유							

\* 의료기관에서 복약확인치료를 하는 경우로, 해당 빈칸에 의료기관명을 작성하고 뒷면의 관리대장은 &lt;서식 52&gt; 의료기관 직접복약확인증으로 대체함



(뒷면)

(환자명: \_\_\_\_\_ 보건소명: \_\_\_\_\_)

월	일	확인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환자																															
	보건소																																	
	환자																																	
	보건소																																	
	환자																																	
	보건소																																	
	환자																																	
	보건소																																	
	환자																																	
	보건소																																	

※ 환자 복약확인 관리대장은 **보건소 결핵담당자 및 입원·격리치료명령해제환자**가 해당 일의 **서명**을 통해 작성함

- 입원·격리치료명령해제환자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해당 서식에 **서명함**
- 보건소 결핵담당자 : 입원·격리치료명령해제환자의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복용을 확인 후 **서명함**





## &lt;서식 27&gt;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증[의료기관→보건소]

(환자명: \_\_\_\_\_ 의료기관명: \_\_\_\_\_)

입원·격리치료명령일		20__ . __ . __		입원·격리치료 명령 해제일		20__ . __ . __		직접복약확인(DOT) 시작일		20__ . __ . __																				
월	일	확인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월	환자																													
	담당자																													
월	환자																													
	담당자																													
월																														
월																														
월																														
월																														
월																														
확인 사항	복약확인 실시	보관 약제 개수	(개)		환자	20__ . __ . __		(서명 및 인)																						
					담당자	20__ . __ . __		(서명 및 인)																						
	퇴원 시*	복용 및 투여약	(개)		환자	20__ . __ . __		(서명 및 인)																						
		남은 약	(개)		담당자	20__ . __ . __		(서명 및 인)																						
20__ . __ . __										작성자 : _____(서명 및 인)		주치의사 : _____(서명 및 인)																		

\* 퇴원 시 : 입원·격리치료명령해제환자가 복약확인 실시 동의 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경우로 반드시 남은 약의 개수를 환자에게 확인시키고 서명을 받음

\* 의료기관에서 월별로 작성하여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송부

<서식 28> 결핵환자 약제관리표[의료기관→보건소]

이름		주민번호(앞자리)		입원·격리치료 명령일																
약제명	년/ 월/ 일	약제시작일																	약제중단일	중단사유
1군	INH																			
	RIF																			
	EMB																			
	PZA																			
	Rfb																			
2군	SM																			
	KM																			
	AMK																			
	CPM																			
3군	Mfx																			
	Lfx																			
	Ofx																			
4군	Pto																			
	PAS																			
5군	Cs																			
	AUG																			
	Lzd																			
<b>객담채취일 및 도말결과</b>																				
객담도말검사 (일/결과)																				
<b>객담채취일 및 배양결과</b>																				
객담배양검사 (일/결과)																				
<b>약제감수성검사 객담채취일</b>																				
<b>기 타 사 항</b>																				
의료기관명:      병원      확인날짜:      년      월      일      작성자:      (Tel:      )      담당의사:      (서명 및 인)																				



<서식 29> 항결핵주사제 투약의뢰서 [투약의뢰 의료기관→관리보건소 및 환자]

항결핵주사제 투약의뢰서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환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_____ . _____ . _____ (□남 □여)
	진단코드	[결핵] _____ [내성결핵] <input type="checkbox"/> U84.30 <input type="checkbox"/> U84.31 <input type="checkbox"/> 기타내성 _____	최근결핵균 검사 결과	도말음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배양음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주소		연락처	
부작용 위험 인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신질환 _____, (Creatinine : _____ mg/dL, 20 . . . .)] <input type="checkbox"/>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청력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투약내용	주사제	<input type="checkbox"/> 카나마이신(Kanamycin, Km)	투여(예정) 기간	(20 . . . .) ~ (20 . . . .)
		<input type="checkbox"/> 아미카신(Amikacin, Am)		투여방법
		<input type="checkbox"/> 카프레오마이신(Capreomycin, Cm)	용량·용법	
	<input type="checkbox"/>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S)			
주사제 부작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_____ ]			
의사 소견	※ 보건소 또는 1차 의료기관이 참고하여 투약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 의뢰			
의뢰 기관	기관명		의시명	
			연락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담당자에게 위 환자의 항결핵 주사제 투약을 의뢰드립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담당의사 : _____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_____				

<서식 30> 결핵 (검진·치료경과) 확인서(보건소용)

### 결핵 (검진·치료경과) 확인서

성명(Name)	성별(Sex) <input type="checkbox"/> 남(M) <input type="checkbox"/> 여(F)
출생일(Date of Birth)	전화번호(Phone Number)
여권번호(Passport Number)	한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 결핵 검진

1. 검사일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2. 흉부 X선 검사 결과

A. 정상\*

\* 결핵과 무관한 유소견의 경우 '정상'에 표시

B. 활동성 결핵

C. '비활동성 결핵' 등 결핵이 의심되는 유소견\*  → 3 번 검사 실시

\* 판독의 또는 검진 담당의가 추가 객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 3. 객담 검사 (TB-PCR, Xpert MTB/RIF, 배양 검사 등)

E. 결핵균(MTB) 양성 , F. 결핵균(MTB) 음성

\* 'F'에 해당하는 경우 객담 배양검사 추가 실시 여부는 담당의사가 판단함

#### 4. 판정

결핵환자(B or E)

결핵환자 아님(A or F)

결핵판정 보류\*(F)

\* 'F'이지만 담당 의사가 객담 배양검사 결과 추가 확인 때까지(1-2개월 소요) 판정을 보류한 경우

#### 결핵 치료경과

1.  치료 중 → 2 번

치료 종료 → 3 번

#### 2. 치료 순응도

A.  치료 순응자

B.  치료 비순응자

사유)  수약예정일\*로부터 2 주 이상 경과하여 방문한 횟수가 2 회 이상

\* 치료 시작 후 수약일마다 다음 방문일 지정하여 통보

기타 (사유 기술: \_\_\_\_\_ )

#### 3. 치료 종료 (치료 결과)

:  완치  완료  기타 ( \_\_\_\_\_ )

위 사람에 대한 결핵 (검진·치료경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보건소장 (직인)

<서식 31> 접수증

<b>접 수 증</b>	
성명(Name)	성별(Sex) <input type="checkbox"/> 남(M) <input type="checkbox"/> 여(F)
출생일(Date of Birth)	여권번호(Passport Number)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결핵 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으로 현재 본 보건소에서 결핵 검진이 의뢰되어 검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검진 결과가 확인된 후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이후에 결핵            검진 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_____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_____ 보건소장 (직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_____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p>	

<서식 32> 결핵 검진 확인서(보건소 외 검사기관용)

## 결핵 검진 확인서

성명(Name)	성별(Sex) <input type="checkbox"/> 남(M) <input type="checkbox"/> 여(F)
출생일(Date of Birth)	전화번호(Phone Number)
여권번호(Passport Number)	한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 결핵 검진

1. 검사일시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2. 흉부 X선 검사 결과 : 정상\*

\* 결핵과 무관한 유소견의 경우 '정상'에 표시

위 사람에 대한 결핵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검사기관장 (직인)

<서식 33> 사업 수행인력 변경사항 보고

사업 수행인력 변경사항 보고

병원명 :

		변경 전	변경 후
수행역할 (사업책임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성명			
소속부서			
계약형태 (정규직, 계약직)			
변경일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번호		
	이메일		

년 월 일

보건소장 귀하



<서식 34> 사업계획서

[            ]년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수행 기관명				
사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	
	소속 부서		E-MAIL	
			FAX	
사업 협력기관				
사업비			천원	총참여 인원수
총 사업기간	. . . . ~ . . . . ( 개월)			
<p>위와 같이    년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장                    서명 (인)</p>				
귀하				
<p>&lt;구비서류&gt;</p> <p>1.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p> <p>2. 사업계획서</p>				

1. 본 론

1.1 사업명 : \_\_\_\_\_

1.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3 사업내용 및 방법

1.4 기대효과

2. 자원활용 : 파트너쉽 구축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1		
2		
3		
4		

3. 사업예산

비 목 명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율(%)
인건비				
일반 수용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자료제작 및 인쇄비			
	사무용품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차량운영비				
기타 운영비	강사료			





## 1. 본 론

1.1 사업명 : \_\_\_\_\_

1.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3 사업 내용 및 방법

1.4 최종실적

1.5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2. 자원활용 : 파트너십 구축 실적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1		
2		
3		
4		

## 3. 사업비 집행실적

비 목 명		예산액 (천원)	집행(단위: 천원, %)		
			집행액	집행률(%)	잔액
인건비					
일반 수용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자료제작 및 인쇄비				
	사무용품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차량운영비					
기타 운영비	강사료				
국내여비					



###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수행 인력으로 계약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환자 정보 등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환자관리 업무에만 활용하고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해당 정보를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

서약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서식 37> 교부신청서

[     ]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교부신청서

1. 신청기관 :
  
2. 주 소 :
  
3.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
  - 사업명
  - 사업목적
  - 사업내용 등
  
4. (    )분기 신청금액 :
  
5. 사업기간 :

상기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귀 하



<서식 38> 정산보고서

[        ]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정산보고서

사업기관 :

주 소 :

정산내용

(단위 : 원)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이자액	불용액	반납액	납부자정보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담당자 (전화번호)	우편 번호	고지서발송 주소

(        )년 정산내역을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기관 :

책 임 자 : \_\_\_\_\_ (인)

귀 하

[        ]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세부 집행내역 (예시)

(단위 : 원)

항 목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집행잔액 (C)	집행율 (D)
			소계(B)	상반기	하반기		
인건비	인건비						
	부담금						
	소계						
일반 수용비	자료제작 및 인쇄비						
	회의 및 강사수당						
	소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임차료 및 관리비						
	일반관리비	소계					
○○○	○○○						
	○○○						
	○○○						
	소계						
	전체 총액						

※ 각 항목은 산출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산현액(A) : 예산액 + 예산 변경 등을 통한 증감액

집행액 소계(B) : 원인행위(실제 집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집행계획으로 잡아놓은 예산 포함)로  
집행한 예산액

집행잔액(C) : 총액(A) - 집행액(B)

집행율(D) : 총액(A)을 기준으로 집행현황(%)

각 항목 명

총액 : 원

세부항목	사용일	지급처 (상호)	금액
	소계		
	소계		
	소계		

<서식 39>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서[예시]

사업명 :

사업기관(사업책임자) :

변경사항

가. 사업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나. 예산 내역

- 총괄 사업비 내역 (변경 전·후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변경 사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지원비						

변경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 40> 시내출장비(교통비) 사용대장

시내출장비[교통비] 사용대장

년 월분

날 짜	시 간	목 적	목적지	소요금액	사용자
총 계					

년 월 일

책임자 : (인)

<서식 41> 카드·현금 사용 영수증 양식

예시) 회의경비 사용 영수증	
<input type="radio"/> 회의명 :	
<input type="radio"/> 회의일시 :	
<input type="radio"/> 회의장소 :	
<input type="radio"/> 참석인원 :	
<input type="radio"/> 사용경비총액 :	원
※ 관련 영수증 첨부란	

“〇〇〇〇” (회의명)

년 월 일( )

번호	성명	소속 및 직위	주민번호 (앞 7자리)	은행명	계좌번호	서명	비고
1							내부위원
2							
3							외부위원
4							
5							
6							



<서식 43>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의료기관→보건소)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b>[기관 정보]</b>			
요양기관코드		의료기관명	
기관분류	<input type="checkbox"/> 상급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의원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청구은행명		청구자 성명/ 계좌번호	
결핵담당자		결핵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b>[의사 정보] ※ 1인 이상 필수 지정</b>			
의사명		면허번호	
진료과명		전화번호	
<p>「결핵진료지침」 및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결핵환자 가족접촉자조사 사업」에 참여하는데 동의하며, 위와 같이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병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p>			
본 서식은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 제출함			



##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가족접촉자조사 안내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안내용]

### □ 가족접촉자 의료기관 방문 시 조치

- 환자관리보건소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통해 가족접촉자검진 대상자 여부 확인
- 가족접촉자 검사수첩 접수 후 진료
  - ※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뢰서 확인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은 [<http://tbzero.cdc.go.kr>]-[결핵정책]-[의료기관 검색]에서 조회 가능

### □ 가족접촉자 결핵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실시

- 가족접촉자 검사 절차 및 방법은 「결핵진료지침(3판)」 및 「2020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름
  - ※ 「결핵진료지침(3판)」 및 「2019 국가결핵관리지침」은 '결핵ZERO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 > 결핵자료 > 결핵진료지침 또는 결핵관리지침'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촉자 검사 정보 입력

- PPM 의료기관 : 결핵전담간호사가 입력
  - ※ 시스템 접촉자 검사정보 입력 방법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설명서(의료기관)」 참조
- 그 외 의료기관 :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 수첩 및 증빙자료 송부하여 보건소 담당자가 대신 입력

### □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검진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 받고(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납부),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검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그 외 자격자는 접촉자 주소지 보건소로 청구
- 보건소로 청구 시 의료기관 청구 관련 담당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청구 권한을 요청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승인 후 청구 가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권한/부가정보관리 -> 에이즈결핵관리 -> 결핵관리 User(검진비조회)
  - ※ 자세한 청구 항목, 청구 방법, 지급 절차는 「2020 국가결핵관리지침」 참고





## Treatment Consent Form for LTBI treatment

Personal Information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Telephone number	
	Cell phone number	
Purpose of investigation or Treatment	<input type="checkbox"/> Household contact <input type="checkbox"/> Congregate facility contact <input type="checkbox"/> Mandatory screening(Including national or local program) <input type="checkbox"/> Others	

\* If you have ever had any disease or have disease currently,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Disease status checklist	Past tuberculosis or latent tuberculosis history
	<input type="checkbox"/> I am being treated now or have ever treated for tuberculosis (If yes)                      the year of treatment completion _____ <input type="checkbox"/> I am being treated now or have ever treated for latent tuberculosis (If yes)                      the year of treatment completion _____
	Are there any TB patients around you?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Uncertain (If yes) The relationship with you : _____ Drug resistance status : <input type="checkbox"/> MDR <input type="checkbox"/> XDR <input type="checkbox"/> Uncertain
	Underlying disease investigation

**[Notification about collection&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collected and used without consent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 paragraph 1 subparagraph 2

Purpose of collection & utilization : prevention or management of tuberculosis & latent tuberculosis(education for prevention, counseling, providing services for health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project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dentification code(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hone number, cell phone number), sensitive information(disease status information, date, LTBI regimen, result, side effect of LTBI treatment)

Period of retention and use : semi-permanent

Legal basis :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6(project on statistics on tuberculosis), article 7(tuberculosis control projects, etc.), and enforcement of decree of same act article 14(management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 have been informed about treatment regimen, understood the common side effects (such as hepatotoxicity, skin rash, thrombocytopenia) associated with LTBI treatment, and agree to LTBI treatment.

Date : \_\_\_\_\_

Name : \_\_\_\_\_(Signature)



<서식 46>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기본 문진표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기본 문진표

□ 기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키/몸무게	/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 관련 요관찰군	
치료 시작일		치료법	9H, 3HR, 4R
기저질환		흉부 X선 검사 결과	
치료 전 검사 ( 월 일)	AST( ), ALT( ), 혈소판( ), 빌리루빈( ), BUN( ), Cr( )		
치료 후 검사 ( 월 일)	AST( ), ALT( ), 혈소판( ), 빌리루빈( ), BUN( ), Cr( )		

□ 문진표

- 처방된 잠복결핵감염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중단기간: )
- 최근 한 달간 잠복결핵감염 치료약을 제외하고 복용한 약이 있습니까?  
① 예(종류: )      ② 아니오
- 최근 한 달간 음주습관은 어떠셨습니까?  
① (거의) 마시지 않는다.      ② 일주일에 1-2회 마신다.      ③ 일주일에 3회 이상 마신다.
- 눈의 흰자위나 피부, 소변, 몸이 노랗게 보이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까?  
① 예(기간: )      ② 아니오
- 지난 한 달 동안 피로, 오심, 구토, 발열, 오한, 복통, 몸살 등 불편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① 예(기간: )      ② 아니오
- 지난 한 달 동안 몸무게의 변화 또는 몸이 붓는 증상이 있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지난 한 달 동안 피부질환이나 손발이 저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약간 스쳐도 멍이 잘 들고 코피 등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지난 한 달 동안 위의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이 있었습니까?  
① 예(기타 증상: )      ② 아니오

※ 4번-9번 항목의 답변이 '예'인 경우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 필요

검진일:      년      월      일

담당의사:      (인)



<서식 47>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가족접촉자 조사)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																			
시도				보건소				국적				등록번호							
											등록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키	cm	몸무게	kg	기저질환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								
주소		연락처		보호자		성명			등록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중단 후 재등록 <input type="checkbox"/> 전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락처													
지표환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조부 <input type="checkbox"/> 조모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손자·손녀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기타동거인				과거력											
				가족력															
비씨지		TST			IGRA ( <input type="checkbox"/> T-spot, <input type="checkbox"/> Quanti-feron )					처방법		<input type="checkbox"/> 9H <input type="checkbox"/> 4R <input type="checkbox"/> 3HR							
접종		반흔		1차 검사일 년 월 일		2차 검사일 년 월 일		1차 검사일 년 월 일		2차 검사일 년 월 일		지표환자 약제 내성							
<input type="checkbox"/> 유 ( <input type="checkbox"/> 피내 <input type="checkbox"/> 경피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mm		mm		<input type="checkbox"/> SFCs <input type="checkbox"/> IU/mL		<input type="checkbox"/> SFCs <input type="checkbox"/> IU/mL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H <input type="checkbox"/> R <input type="checkbox"/> H&R <input type="checkbox"/> 기타( )							
흉부 X-선 검사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간기능 및 혈소판 검사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AST:	T-Bil:		AST:	T-Bil:		AST:	T-Bil:		AST:	T-Bil:		AST:	T-Bil:		AST:	T-Bil:		
	ALT:	BUN:		ALT:	BUN:		ALT:	BUN:		ALT:	BUN:		ALT:	BUN:		ALT:	BUN:		
PLT:		Cr:		PLT:		Cr:		PLT:		Cr:		PLT:		Cr:		PLT:		Cr:	
투약예정일		투약일		INH		RIF		기타		수령자인		의사지시 및 관리사항			의사서명				
퇴록사유: 1. 완료( 년 월 일) 2. 중단( 년 월 일) 3. 전출( 년 월 일, 보건소) 4. 이환(결핵환자)( 년 월 일) 5. 기타																			



<서식 48> 결핵역학조사 협조 요청서(결핵균 유전형 분석용 결핵균주)

결핵역학조사 협조 요청서 (결핵균 유전형 분석용 결핵균주)			
환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 . . . . ([ ]남, [ ]여)
신고기관 및 신고일자		역학조사 관리번호	
요청기관	00시 00구 00보건소	요청자료	해당 환자 결핵 배양균주
회신의료기관	00대학병원(검사기관)	결핵균주 이송 예정 일자	. . . . .
이송방법			
<p><input type="checkbox"/>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위 환자의 결핵균주를 결핵예방법 제3조 2항 및 제7조 3항에 따라 요청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환자의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를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결핵 배양균주를 이송일자에 질병관리본부로 이송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p>			
			년    월    일
○○○보건소장			직인

<서식 49> 집단시설별 결핵환자 상세 조사 항목

1. 학교

지표환자		조사내용
기관	직업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	기관 규모, 등원 기간, 같은 반 인원, 종일반 여부(기관 내 머무는 시간), 방과 후 수업, 통학버스 이용 여부 등
	교사	기관 규모, 담당 반 규모, 담당 업무, 업무 시간, 근무 기간(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이전 검사일 및 검사 결과(보건증, 잠복결핵검염 검사 등), 통학버스 및 방과 후 종일반 업무 여부 등
초·중·고/ 특수·대안 학교	학생	학년, 반 인원, 친한 친구, 동아리 및 방과 후 수업, 등·하교 시간, 통학 방법, 학원, 기숙사 거주 등
	교직원	기관 규모, 담당 반 규모, 담당 업무, 업무 시간, 근무 기간(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이전 검사일 및 검사 결과, 동아리 및 방과 후 업무 여부, 마지막 근무일, 교무실 사용 및 사용 인원 등
대학교	학생	기관 규모, 학과 및 학년 규모, 수업 시간표, 학과 실습, 동아리 및 아르바이트, 기숙사 거주, 통학 방법, 마지막 등교일, 친한 친구, 이전 검사일 및 결과(기숙사 검진, 보건증 등),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
	교직원	기관 규모, 학과, 담당 업무, 업무 시간, 근무 기간(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이전 검사일 및 검사 결과, 같은 공간(사무실, 연구실) 사용 인원,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
재수학원, 기숙학원	학생	기관 규모, 입소일(개강일, 재원 기간), 같은 반 인원, 수업 시간, 기숙사 인원, 친한 친구, 여가 시간에 하는 일, 이전 검사일 및 검사 결과,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
	교직원	기관 규모, 담당 반 규모, 담당 업무, 업무 시간, 근무 기간(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이전 검사일 및 검사 결과, 같은 공간 사용 인원,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

2. 군부대 /경찰

지표환자	조사내용
병사/의무경찰	계급, 소속(소대, 분대 등), 입대일, 전입일, 일과시간(장소포함), 담당업무 및 업무형태, 같은 공간 사용 인원(생활관, 업무공간, 휴게공간 등), 이전 검사일(입대검사, 상병검사 등), 마지막 접촉일,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

## 3. 시설(요양병원, 정신병원 포함)

지표환자	조사내용
입소자	기관 규모, 입소일(입소 기간), 같은 공간(층) 거주 인원 및 근무 직원, 같은 방 사용 인원, 거동 여부, 프로그램 참여 여부, 재활치료 여부, 이전 검사일 및 검사 결과, 정기 검진 유무,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
직원	기관 규모, 입사일(근무 기간), 담당 업무, 업무 시간, 이전 검사일 및 검사 결과, 같은 공간 사용 인원, 통근 방법, 기숙사 거주 여부,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마지막 근무일 등

## 4. 직장

지표환자	조사내용
종사자	기관 규모, 입사일, 담당 업무, 업무 시간, 근무 형태(내근직/외근직/출장/영업 등), 이전 검사일 및 검사 결과, 같은 공간 사용 인원, 근무 장소 특징(채광, 환기, 면적 등), 동일 부서 인원, 정기적 회의, 동호회, 기숙사 사용 여부, 통근버스 이용, 마지막 근무일,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

## 5. 의료기관

지표환자	조사내용
의료기관 종사자	기관 규모, 직종, 근무 장소, 입사일, 담당 업무, 업무 시간, 소아 및 면역저하자 접촉 여부, 이전 검사일 및 검사 결과, 같은 공간 사용 인원, 통근 방법, 기숙사 거주 여부,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마지막 근무일 등

## 6. 기타

지표환자		조사내용
기관	직업	
산후조리원	종사자	기관 규모(직원 및 평균 입원 신생아), 직종, 근무 장소, 신생아 돌봄 여부, 입사일(근무 기간), 담당 업무, 업무 시간, 이전 검사일 및 검사 결과, 같은 공간 사용 인원,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마지막 근무일 등
학원	학생	기관 규모, 학원 종류, 등원 기간, 등원 간격(요일) 및 수업 시간, 같은 반 수강생 인원 및 나이, 학원 이외의 소속 기관(학교/다른 학원)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



결핵역학조사 (방문 / 유선) 현장조사서(예시)

1. 기관정보

1) 기관 구분	학교			
2) 기관명	가나다고등학교			
3) 기관 주소	○○시 ○○구 ○○○○			
4) 기관 규모	기관 전체 인원	총 1200명(학생 1000명, 교직원 200명)		
	결핵환자 소속부서 인원	1학년 320명		
5) 기관 보건 담당	담당자명	김보건	연락처	010-123-4567
	보건소명	○○보건소	결핵실담당자	박담당
6) 기관 관할 보건소	연락처 1	02-111-2222	연락처 2	010-345-6789
	7) 기관 특징 - 특성화 고등학교 (총 5개과, 각 200명씩) - 최근 5년간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기관			
8) 참석자	- 현장조사 시 기관 담당 참석자 소속, 성명			

2. 환자정보

사 례	환자명	성별 /나이	진단명	신고일	주증상 (증상 사실발기간)	가족력/ 과거력	흉부 X선 (공동/검 사일)	결핵균검사		특 이 사 항
								도말	음성	
1	장일번	남/16	결핵성 흉막염	'17.08. 01	기침, 객혈 ('17.07.15 /2주)	유(모) /무	결핵 의심 (공동무/ 17.07.29)	PCR	음성	·1학년 2반
								Xpert	양성	
								배양	양성	
								약제 감수성	감수성	
2										

### 3.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 기간

- 지표환자 전체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기간 . . . ~ . . . (주간)
- 해당기관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기간: . . . ~ . . . (주간)

해당사항 (체크)	지표환자 결과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 기간
	결핵 증상	객담 도말 양성	흉부 X선 공동	
예	예 또는 아니오	예 또는 아니오	예 또는 아니오	▶ 증상 시작 3개월 전부터 ▶ 객담 도말 및 흉부 X선 검사일 중 가장 앞선 날짜 이전 3개월 전 시점부터
아니오	둘 중 하나 이상 예			▶ 객담 도말 및 흉부 X선 검사일 중 가장 앞선 날짜 이전 3개월 전 시점부터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 객담 도말 및 흉부 X선 검사일 중 가장 앞선 검사일 이전 4주(28일) 시점부터

### 4. 발생 개요

#### 1. 발생 개요

- ▶ 주 증상, 증상 시작일, 증상 기간 등의 진단경위를 시간 순으로 기재
- ▶ 가족력, 과거력, 기저질환 유무
- ▶ 이전 검사 이력 : 2016년 직장검진 검사 결과 정상, 2017년 학생 건강검진 정상

### 5. 상세 조사내용

- 지표환자의 소속기관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소속기관 구분	지표환자 신분	사용서식
학교	학생	학생용
	교직원	직장용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용
군부대/경찰	병역의무자	군부대/경찰 병역의무자용
	직업군인/직업경찰	직장용

## 6. 환경정보

사용 공간 1( )		
면적	<input type="checkbox"/> 침실 면적(16m <sup>2</sup> , 5평)	
	<input type="checkbox"/> 원룸 면적(33m <sup>2</sup> , 10평)	
	<input type="checkbox"/> 학교 교실 면적(67m <sup>2</sup> , 20평)	
	<input type="checkbox"/> 30평 아파트 면적(99m <sup>2</sup> , 30평)	
	<input type="checkbox"/> 그 외 (총 m <sup>2</sup> 규모)	
사용인원		
일 사용시간/ 누적 사용시간		
창문	<input type="checkbox"/> 있음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없음</span>	
	환기	창문 개폐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margin-left: 100px;"><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채광	환기 횟수:
		창문면적
		<input type="checkbox"/> 총 벽면의 전체
		<input type="checkbox"/> 총 벽면의 3/4
<input type="checkbox"/> 총 벽면의 1/2		
<input type="checkbox"/> 총 벽면의 1/4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공조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있음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없음</span>	
	시간 당 환기 횟수	
	<input type="checkbox"/> 6회 이하 <span style="margin-left: 50px;"><input type="checkbox"/> 6회</span> <span style="margin-left: 50px;"><input type="checkbox"/> 12회</span> <span style="margin-left: 50px;"><input type="checkbox"/> 모름</span>	
그 이외 접촉자 조사 시 필요한 환경정보	·상세내용	

## 7. 접촉자구분

구분	사용 시간	사용 공간	대상자	대상자수	검사 방법
밀접 접촉자	40시간/주	1번 환자 같은 반	학생	30명	TST-IGRA 통합법(연속)
	3시간/주	1번 환자 같은 반	교사	7명	흉부 X선(초회+추구)

8. 조사일정 및 향후 계획

항목	일시	대상	내용
흉부 X선 검사	'18. 02. 08	1,310명	결핵협회 이동차량
1차 TST	'18. 02. 05 9시	80명	관할보건소 1명, 결핵 전문역학조사반 1명
1차 TST 판독	'18. 02. 08. 9시	80명	관할보건소 1명, 결핵 전문역학조사반 1명
IGRA 검사	'18. 02. 08	30명	관할보건소 1명
Repeated IGRA	'18. 04. 26	80명	중간고사 이후
기타 일정	'18. 04 21~25		1학기 중간고사

9. 기타(사진 및 기관 안내도 등)

1번 환자 교실	2번 환자 교무실
사진 첨부	사진 첨부

10. 종합의견

지표환자 소속 기관의 상세 조사내용을 종합한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 [직장 상세내용 작성 서식]

지표환자 기관정보	
지표환자 현재 기관 소속 기간	
(필요시) 이전 소속기관 및 소속기간	·기관명(소재지)
	·소속 기간:
채용 시 결핵검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검진일 ·검진결과
기관 정기 검진	결핵검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검진주기 ·최근 검진일 ·검진결과
	잠복결핵감염검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검진일 ·검진결과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input type="checkbox"/> 치료결과
최근 결핵검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검진일 ·검진사유 ·검진결과
업무종사 일시제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시작일 ·미 실시 사유
지표환자 마지막 근무일	
근무 장소(부서)	
주간 총 근무시간	총      시간/주
지표환자 주 근무시간 및 업무형태	<input type="checkbox"/> 내근직 <input type="checkbox"/> 외근직 ·근무 시작시간 :                      ·근무 종료시간 : ·상세내용

주로 생활하는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			
장소	활동내용	시간	같은 공간 사용 인원
정기 참여 모임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모임횟수, 시간, 회원 수 등 작성)		
통근버스 또는 카풀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통근방법, 이용 시간(왕복 00 분), 이용인원(명)		
기숙사 거주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기숙사 호실, 전체 사용인원, 같은 방 사용인원 등		
소아 및 면역 저하자 접촉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접촉형태, 업무, 소아 나이, 면역저하 상태 등		
친한 친구(동료)			
접촉자범위 선정 기간 중 근무지 이동 접촉자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그 이외 접촉자 조사 시 필요한 내용	·상세내용(회의, 출장, 교육, 조회 등)		

### [학생 상세내용 작성 서식]

지표환자 기관정보	
지표환자 학년/반	학년 반
(필요시) 이전 학년/반	학년 반
학생 건강검진	결핵검진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최근 검진일 ·검진결과
	잠복결핵감염검진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검진일 ·검진결과 <span style="margin-left: 100px;"><input type="checkbox"/> 양성</span>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음성</span> <span style="margin-left: 100px;"><input type="checkbox"/> 치료결과</span>
최근 결핵검사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검진일 ·검진사유 ·검진결과
등교 중지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시작일 ·미 실시 사유
지표환자 마지막 등교일	
지표환자 학교생활	·등교시간: <span style="float: right;">·하교 시간 :</span> ·같은 반 학생 수: <span style="float: right;">명</span> ·상세내용
이동수업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이동수업 학생 수: <span style="float: right;">명</span> ·상세내용
방과 후 수업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방과 후 수업 학생 수: <span style="float: right;">명</span> ·상세내용

주로 생활하는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			
장소	활동내용	시간	같은 공간 사용 인원
정기 참여 모임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모임횟수, 시간, 회원 수 등 작성)		
통학버스 이용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통학방법, 이용 시간(왕복 00 분), 이용인원(명)		
기숙사 거주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 기숙사 호실, 전체 사용인원, 같은 방 사용인원 등		
학원 등원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학원명(소재지): ·상세내용 :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학원명(소재지): ·상세내용 :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학원명(소재지): ·상세내용 :		
아르바이트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기관명(소재지): ·상세내용 :		
친한 친구			
접촉자범위 선정 기간 중 전학(전근) 간 접촉자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		
그 이외 접촉자 조사 시 필요한 내용	·상세내용 (학기 중 실습 여부 등)		



##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상세내용 작성 서식]

지표환자 기관정보	
지표환자 현재 기관 소속 기간	
(필요시) 이전 소속기관 및 소속기간	기관명(소재지)
	소속 기간:
채용 시 결핵검진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margin-left: 200px;"><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검진일 ·검진결과
기관 정기 검진 여부	<b>결핵검진</b>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margin-left: 200px;"><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검진주기 ·최근 검진일
	<b>잠복결핵감염검진</b>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margin-left: 200px;"><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검진일 ·검진결과 <span style="margin-left: 50px;"><input type="checkbox"/> 양성</span> <span style="margin-left: 100px;"><input type="checkbox"/> 음성</span> <span style="margin-left: 50px;"><input type="checkbox"/> 치료결과</span>
최근 결핵검사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margin-left: 200px;"><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검진일 ·검진사유 ·검진결과
업무종사 일시제한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margin-left: 200px;"><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시작일 ·미 실시 사유
지표환자 마지막 근무일	
담당 반 / 담당 원아 수	명
주간 총 근무시간	총 시간/주
지표환자 주 근무시간 및 업무형태	·근무 시작시간 : <span style="margin-left: 200px;">·근무 종료시간 :</span> ·상세내용 작성:

주로 생활하는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			
장소	활동내용	시간	같은 공간 사용 인원
통합보육(종일반) 참여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통학버스 승하차 지도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이용 시간(왕복 00 분), 이용인원(명)		
접촉자범위 선정 기간 중 퇴소한 접촉자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접촉자 중 24개월 미만 영아	총    명		
친한 친구(동료)			
접촉자범위 선정 기간 중 특별활동	·상세내용 (현장학습 등)		
그 이외 접촉자 조사 시 필요한 내용	·상세내용		

## [군부대/경찰 병역의무자 상세내용 작성 서식]

지표환자 기관정보	
지표환자 현재 기관 소속 기간	
군 복무 기간	·입대일 ·전역예정일
(필요시) 이전 소속기관 및 소속기간	·기관명(소재지) ·소속 기간:
자대 배치 시 결핵검진	결핵검진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검진일 ·검진결과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잠복결핵감염검진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검진일 ·검진결과 <input type="checkbox"/> 양성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음성</span> <input type="checkbox"/> 치료결과
최근 결핵검사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검진일 ·검진사유 ·검진결과
기관 정기 결핵검진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최근 검진일 ·검진결과
업무중사 일시제한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시작일 ·미 실시 사유
지표환자 마지막 근무일	
생활관	
생활관 사용인원	명
근무 장소(부서)	
보직(주특기)	
지표환자 주 근무시간 및 업무형태	·근무 시작시간 : <span style="float: right;">·근무 종료시간 :</span> ·상세내용

주로 생활하는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			
장소	활동내용	시간	같은 공간 사용 인원
정기 참여 모임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모임횟수, 시간, 회원 수 등 작성)		
외부 훈련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부대와 같이 진행한 훈련		
집합 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		
친한 친구(동료)			
접촉자범위 선정 기간 중 전역(전출)한 접촉자	<input type="checkbox"/> 예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아니오</span> ·상세내용:		
그 이외 접촉자 조사 시 필요한 내용	·상세내용		

## [시설 입소자(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포함) 상세내용 작성 서식]

지표환자 기관정보			
지표환자 현재 기관 입소기간			
(필요시) 이전 입소기관 및 기간	·기관명(소재지)		
	·입소기간:		
	·기관명(소재지)		
	·입소기간:		
입소 시 결핵검진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검진일 ·검진결과		
결핵 정기 검진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검진주기 ·검진결과 ·최근 검진일		
최근 결핵검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검진일 ·검진사유 ·검진결과		
지표환자 마지막 접촉일(퇴소/전원일)			
입원실/입소실	호실	기간	같은 공간 생활 인원
	( )층 ( )호실		
지표환자 거동여부	<input type="checkbox"/> 도움 없이 자유롭게 거동가능 <input type="checkbox"/> 부분도움: 보조 장치(휠체어/위커) 필요 <input type="checkbox"/> 거동 불가능(와상상태)		
	주로 생활하는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		
	장소	활동내용	같은 공간 사용 인원
담당 직원 접촉형태	(의료진, 요양보호사, 간병인, 물리치료사, 프로그램 강사 등 접촉시간 및 접촉형태 기술)		



## [현장조사서 항목별 작성 요령]

### 1. 기관 정보

- 신고된 결핵환자의 소속된 기관 정보(기관명, 기관 주소, 기관 전체 인원, 기관 보건 담당자명/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기관명, 기관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공식적인 명칭 사용
  - 기관규모는 그 기관의 전체 인원을 작성하고, 결핵환자가 소속된 부서(학년, 반, 학과, 병동, 같은 층 등) 인원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 역학조사 시행 주체인 기관 관할 보건소 정보(보건소명, 결핵실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기관 특징은 세부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되 업태, 업종, 과거 기관내 결핵 발생 이력,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2. 환자 정보

- 지표환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진단명, 신고일, 주증상, 증상 기간, 증상 시작일, 가족력, 과거 결핵 발병 여부, 결핵 검사 결과(흉부 X선 검사, 도말, PCR, 배양)를 기재합니다.
- 환자 세부 소속 기관, 직업 정보, 기저질환, 약제감수성검사 결과, 국적, 비자 상태, 입국일(외국인의 경우) 등 수집한 상세정보를 특이사항에 기술합니다.

### 3.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 기간

- 지표환자 특성에 따라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결핵 증상 및 객담 도말검사 결과, 흉부 X선 검사상 공동 유무를 표기 합니다.
-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 기간은 환자의 증상, 객담 도말검사, 흉부 X선상 공동 유무를 바탕으로 전체 기간을 작성하고 그 기관에 소속된 기간이 다를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기간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기간의 마지막 날은 치료시작 후 2주간 된 날짜로 작성합니다.
-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 기간 내 전출(전학)간 대상자도 명단에 포함합니다.

예시				
2018.09.01	A 직장으로 입사			
2018.09.10	기침, 가래 증상 시작			
2018.09.25	흉부 X선 결핵의심(공동 유), 객담검사: 도말양성, TB-PCR 양성			
2018.09.25	출근 후 병가제출			
2018.09.27	결핵치료 시작			
해당사항 (체크)	지표환자 결과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 기간
	결핵 증상	객담 도말 양성	흉부 X선 공동	
√	예	예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상 시작 3개월 전부터</li> <li>▶ 객담 도말 및 흉부 X선 검사일 중 가장 앞선 날짜이전 3개월 시점부터</li> </ul>
지표환자 전체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기간		2018.06.10. ~ 2018.10.11.		
해당기관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기간		2018.09.01. ~ 2018.09.25.		

**4. 발생 개요**

- 발생 개요에는 진단 경위 및 발견 경로, 주증상, 증상 기간, 가족력, 과거력 등의 사례조사 내용을 기입합니다.
- 결핵으로 진단 받기 이전 병원 진료 이력, 건강검진 날짜/결과를 기술합니다.

**5. 상세 조사내용**

- 지표환자의 소속기관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소속기관 구분	지표환자 신분	사용서식
학교	학생	학교 학생용
	교직원	직장용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용
군부대/경찰	병역의무자	군부대/경찰 병역의무자용
	직업군인/직업경찰	직장용
시설	입소자	시설 입소자용
	직원	직장용



- 지표환자가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기간을 작성하고,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기간 내 타 기관의 소속 여부가 확인된 경우 같이 작성합니다.
- 채용 시 결핵검진 및 기관 정기검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최근에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최근 결핵 검사일자, 검진사유, 검진결과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 현장조사 시 확인된 각 항목의 상세 내용을 기술합니다.
  - 지표환자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접촉한 누적시간과 접촉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주로 생활하는 공간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 누적 접촉시간과 접촉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접촉자 범위 선정기간 중 해당 기관에서 이직, 퇴소, 전학, 전원 등으로 현재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접촉자도 파악하여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 접촉자 중 소아 및 면역저하자 접촉여부를 확인하고, 소아 접촉자가 포함된 기관에서는 24개월 미만 영아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 지표환자가 접촉자 범위 선정기간 중 정기적으로 참여한 모임, 동아리, 학원, 아르바이트 참여 기간 및 접촉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6. 환경 정보

- 지표환자가 사용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방문조사 시 조사자가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고, 유선조사의 경우 기관 담당자를 통해 확인된 정보를 기재합니다.
- 지표환자의 사용 공간 따라 면적, 사용인원 및 사용시간을 작성합니다. 지표환자가 한 개 이상의 공간을 사용한 경우(예시 사무실, 회의실, 기숙사 등) 표를 추가하여 각각의 공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창문의 유무는 채광 및 환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창문의 개폐여부에 따라 환기 여부를, 창문의 면적에 따라 채광 상태를 판단합니다.
 

**예시)** 창문의 면적은 지표환자의 사용공간을 사각형으로 가정했을 때, 한쪽 벽면에 창문이 있는 경우 1/4, 양쪽 벽면에 창문이 있는 경우 1/2로 기재합니다. 그 이외에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기타 란에 확인 사항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건물 내 공조 시스템 유무를 확인하고, 시간당 환기 횟수를 작성합니다.

## 7. 접촉자 구분

- 밀접접촉자는 지표환자와 전염가능기간 동안 좁은 실내 공간에서 연속해서 하루 8시간 이상 접촉했거나 누적 기준 40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를 말하며 생활한 공간, 사용 시간, 대상자, 사용자수, 검사 방법을 기재합니다.
- 일상접촉자는 밀접접촉자 기준 외 대상이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 시간 이하의 접촉자도 밀접접촉자에 포함 가능합니다.
- 현장조사 결과 일상접촉자는 사용 시간, 사용 공간, 대상자, 대상자수 검사 방법(필요시)을 기재합니다.

## 8. 조사 일정 및 향후 계획

- 현장조사 시 협의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일정, 장소 등을 기재합니다.
- 기관 내 특별한 일정(시험, 방학, 훈련, 출장, 행사 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9. 기타(사진 및 기관 안내도 등)

- 방문조사의 경우 지표환자가 생활한 장소, 도면도 등 사진촬영 후 첨부합니다.

## 10. 종합의견

- 지표환자 소속기관의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 평가한 내용을 서술합니다.

### 역학조사 시행일정 계획서

최근 귀 기관에서 전염성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결핵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으로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 발생 시 전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OO보건소는 기관내의 결핵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OO보건소는 기관 내에서 최근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고, 조사를 통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검사는 발견되지 않은 추가 결핵환자를 찾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잠복결핵감염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결핵환자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검사 시기 및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관에서도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검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개인 및 기관의 선택에 따라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하여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1. 검사 대상자

총인원	00명	학생 (입소자)	00명	교직원 (직원)	00명	기타	00명
-----	-----	-------------	-----	-------------	-----	----	-----

#### 2. 검사 장소 : 000 보건소

#### 3. 검사날짜

	종류	목적	가능 일시	비고
1	흉부 X선 검사	결핵질환 여부 확인	2018.05.05.	
2	투베르쿨린검사 및 관독(1차)	결핵감염 여부 확인	2018.05.10. 2018.05.13.	

<서식 52> 역학조사 대상기관 초기 유선(문자) 안내 예시

## 역학조사 대상기관 초기 유선(문자) 안내(예시)

### ■ 접촉자 대상 검진 문자 안내(안)

안녕하십니까?

OO(기관명)에서 최근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 중입니다. 결핵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병으로, 발견되지 않은 추가 결핵환자를 찾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잠복결핵감염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결핵환자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당국에서는 접촉자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귀하는 접촉자검사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검사일은 O월 O일 OO시경 OOO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검사일정 변경 시 추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검사일 전에 기침 등 결핵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은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결핵전파 차단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OOO보건소(00-000-0000)로 연락 주십시오.

### ■ 접촉자 대상 검진 유선 안내(안)

안녕하십니까? OOO입니다.

(대상자 확인) OOO님 되십니까?

(상황 개요) OO(기관명)에서 최근 전염성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 중으로 OO님이(가) 접촉자검사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진 이유) 결핵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병으로, 발견되지 않은 추가 결핵환자를 찾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잠복결핵감염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결핵환자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당국에서는 접촉자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검진 일정) 검사일은 O월 O일 OO시경 OOO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검사일정 변경 시 추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검사일 전에 기침 등 결핵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OOO보건소(00-000-0000)로 연락 주십시오.

(필요시) 1) 설명회: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O월 OO일(월) 오전 10시에 OO(장소)에서 설명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2) 검사 방법, 검사 결과 등 의학적 질문을 하는 경우: 본 전화는 대상자분들께 현황을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검사에 대한 사항은 설명회에서 직접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충분한 설명과 안내 및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53> 집단시설역학조사 체크리스트(TST 검사)

집단시설 역학조사 체크리스트(TST 단독검사)

시설명:
지표환자 신고일:

점검항목	예	아님	해당 없음	시행 일자
1	지표환자 사례조사(병력, 증상 확인)			
2	지표환자 결핵 검사 항목확인	흉부 X선 검사(CT 등)		
		객담 도말/ 배양검사		
		객담 PCR, Xpert MTB/RIF		
		신속감수성 검사, 약제 감수성 검사		
3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역학조사 승인 요청			
4	현장조사 일정 조율(기관, 보건소, 결핵조사과 협의)			
5	기관에 역학조사 관련 공문(업무중사 일시제한 안내서 포함) 송부			
6	현장조사 시행			
7	유선현장조사 시행 시 유선현장조사서 작성 및 업로드			
8	기관에 역학조사 시행 계획서 송부			
9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촉자 명단 업로드			
10	접촉자 설문조사 결과 취합			
11	흉부 X선 검사	검사 시행		
		유소견자 관리	추가검사	
		유증상자(기침, 객담 등) 관리	(CT, 객담검사 등)	
12	1차TST	검사 시행 및 관독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에 검사 결과 입력		
13	1차 잠복결핵 감염자관리	결과 개별 안내, 필요시 기관에 통보		
		TST 결과 양성률 산출		
		치료 상담 및 동의서 징구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병력 증상 확인)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 및 관련 내용 시스템 입력 (지표환자 약제감수성검사 결과 확인)		
14	지표환자 배양검사 결과 확인 후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에 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배양양성 균주에 해당함)			
15	2차 TST	검사 시행 및 관독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에 검사 결과 입력		
16	2차 잠복결핵 감염자관리	결과 개별 안내, 필요시 기관에 통보		
		TST 결과 양성률 산출		

<서식 54> 집단시설역학조사 체크리스트(IGRA 검사)

집단시설역학조사 체크리스트(IGRA 검사)

시설명:
지표환자 신고일:

점검항목		예	아님	해당 없음	시행 일자
1	지표환자 사례조사(병력, 증상 확인)				
2	지표환자 결핵 검사 항목확인	흉부 X선 검사(CT 등)			
		객담 도말/ 배양검사			
		객담 PCR, Xpert MTB/RIF			
		신속감수성 검사, 약제 감수성 검사			
3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역학조사 승인 요청				
4	현장조사 일정 조율(기관, 보건소, 결핵조사과 협의)				
5	기관에 역학조사 관련 공문(업무종사 일시제한 안내서 포함) 송부				
6	현장조사 시행				
7	유선현장조사 시행 시 유선현장조사서 작성 및 업로드				
8	기관에 역학조사 시행 계획서 송부				
9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에 접촉자 명단 업로드				
10	접촉자 설문조사 결과 취합				
11	흉부 X선 검사	검사 시행			
		유소견자 관리	추가검사		
		유증상자(기침, 객담 등) 관리	(CT, 객담검사 등)		
12	초회 IGRA	검사 시행 및 검사기관으로 검체 이송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사 의뢰			
		검사 결과 확인 후 '통보확인' 체크			
13	초회 잠복결핵 감염자관리	결과 개별 안내, 필요시 기관에 통보			
		IGRA 결과 양성률 산출			
		치료 상담 및 동의서 징구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병력 증상 확인)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 및 관련 내용 시스템 입력 (지표환자 약제감수성검사 결과 확인)			
14	지표환자 배양 검사 결과 확인 후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에 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배양양성 균주에 해당함)				
15	연속 IGRA	검사 시행 및 검사기관으로 검체 이송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사 의뢰			
		검사 결과 확인 후 '통보확인' 체크			
16	2차 잠복결핵 감염자관리	결과 개별 안내, 필요시 기관에 통보			
		IGRA 결과 양성률 산출			

<서식 55> 집단시설역학조사 체크리스트(TST/IGRA 병합검사)

집단시설역학조사 체크리스트(TST/IGRA 병합검사)

시설명:
지표환자 신고일:

점검항목		예	아님	해당 없음	시행 일자
1	지표환자 사례조사 (병력, 증상 확인)				
2	지표환자 결핵 검사 항목확인	흉부 X선 검사(CT 등)			
		객담 도말/ 배양검사			
		객담 PCR, Xpert MTB/RIF			
		신속감수성 검사, 약제 감수성 검사			
3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역학조사 승인 요청				
4	현장조사 일정 조율(기관, 보건소, 결핵조사과 협의)				
5	기관에 역학조사 관련 공문(업무종사일시제한안내서 포함) 송부				
6	현장조사 시행				
7	유선현장조사 시행 시 유선현장조사서 작성 및 업로드				
8	기관에 역학조사 시행 계획서 송부				
9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에 명단 업로드				
10	접촉자 설문조사 결과 취합				
11	흉부 X선 검사	검사 시행			
		유소견자 관리	추가검사		
		유증상자(기침, 객담 등) 관리	(CT, 객담검사 등)		
12	1차 TST & 초회 IGRA	검사 시행, 판독 및 검사기관으로 검체 이송			
		시스템에 검사 결과 입력 및 IGRA 검사 의뢰			
13	1차 잠복결핵 감염자관리	IGRA 검사 결과 확인 후 '통보확인' 체크			
		결과 개별 안내, 필요시 기관에 통보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양성률 산출			
		치료 상담 및 동의서 징구			
14	지표환자 배양 검사 결과 확인 후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에 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배양양성 균주에 해당함)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병력 증상 확인)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 및 관련 내용 시스템 입력 (지표환자 약제감수성검사 결과 확인)			
15	연속 IGRA	검사 시행 및 검사기관으로 검체 이송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사 의뢰			
		검사 결과 확인 후 '통보확인' 체크			
16	2차 잠복결핵 감염자관리	결과 개별 안내, 필요시 기관에 통보			
		IGRA 결과 양성률 산출			

<서식 56> 결핵환자 발생 및 발견 통보

**결핵환자 발생 및 발견 통보**

수신 : ○○○○ 보건소장

발신 : ○○○○ 학교장/시설장

보고 일시 \_\_\_\_\_ 보고자 \_\_\_\_\_

이름	학년/반 (소속)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발견 근거	환자구분	
					결핵	의사결핵

※ 환자구분에서 진단 기준(결핵예방법 제2조)

- 1) 결핵환자 : 결핵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따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가)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 도말 양성이 확인된 사람
  - 나)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배양 양성이 확인된 사람
  - 다)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양성이 확인된 사람
- 2) 결핵의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결핵에 합당하나, 세균학적으로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서식 57>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

1) 학교 접촉자 명단

기관명	신분	학년	반	번호	기타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접촉강도
역학교등학교	1	1	1	1		일가나	1234567890123	자동 산출	1
기관명	신분	학년	반	번호	기타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접촉강도
역학대학원	1	1(학기)	1	1		이다라	1234567890124	자동 산출	1

\* 신분 : 1-학생, 2-교직원 \* 기타 : 이동수업 및 동아리 등 \* 나이 : 기재하지 않음 \*접촉강도 : 1-밀접, 2-일반

2) 군부대/경찰 접촉자 명단

기관명	신분	소속	생활관	번호	기타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접촉강도
역학부대	1	1	1	1	상병	일상병	1234567890123	자동 산출	1
역학부대	2	1	1	2	대위	이대위	1234567890124	자동 산출	2

\* 신분 : 1-현역군인, 2-직업군인, 3-군무원, 4-기타 / 1-경찰, 2-기타 \* 나이 : 기재하지 않음 \*접촉강도 : 1-밀접, 2-일반

3) 시설 접촉자 명단

기관명	신분	소속 (층)	호실	번호	기타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접촉강도
역학시설	1	2병동	203호	1		일다라	1234567890123	자동 산출	1

\* 신분 : 1-입소자, 재소자, 2-직원 \* 나이 : 기재하지 않음 \*접촉강도 : 1-밀접, 2-일반

4) 직장 명단

기관명	신분	소속	층	번호	기타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접촉강도
역학직장	1	**부서	1층	1		일직장	1234567890123	자동산출	1
역학직장	1	**부서	1층	2		이직장	1234567890124	자동산출	2

\* 신분 : 1-기타 \* 나이 : 기재하지 않음 \* 접촉강도 : 1-밀접, 2-일반

5) 의료기관 접촉자 명단

기관명	신분	소속	병동	번호	기타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접촉강도
역학병원	2	**과	72병동	1	721호	일가나	1234567890123	자동산출	1
역학병원	8	**과	61병동	2	612호	이환자	1234567890124	자동산출	1

\* 신분 : 1-의사, 2-간호사, 3-간호조무사, 4-방사선사, 5-임상병리사 6-물리치료사, 7-기타의료종사자, 8-환자, 9-기타의료기관종사자 \* 나이 : 기재하지 않음 \*접촉강도 : 1-밀접, 2-일반

6) 기타접촉자 명단

기관명	신분	소속	반 (생활관)	번호	기타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접촉강도
역학기타	1	**지점	1	1		일기타	1234567890123	자동산출	1
역학기타	1	**지점	1	2		이기타	1234567890124	자동산출	1

\* 신분 : 1-기타 \* 나이 : 기재하지 않음 \*접촉강도 : 1-밀접, 2-일반

※ 이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귀하의 정보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제12조(결핵예방접종),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관리사업 및 통계에서 활용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식 58> 접촉자조사 설문지(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용) 예시

### 접촉자조사 설문지(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용)

안녕하십니까? 최근 결핵환자 발생으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한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몇 가지 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개인 및 기관의 선택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기관을 통해 제공받았으며, 검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수집된 정보는 결핵예방관리사업 및 통계에서 활용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예방교육, 상담,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사업 평가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소속기관정보, 직군) 및 민감정보(사전 문진 정보, 접촉자조사 내용 및 검사 결과)
-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 수집 근거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감진), 제12조(결핵예방접종),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1. 접촉자조사 대상자는 BCG(결핵 예방접종) 접종을 하였습니까?

- (1) 예            (2) 아니오            (3) 모름

1-1. 접종을 하였다면 접종 시기는 언제입니까?

- (1) 생후 1년 이내    (2) 생후 1년 이후    (3) 모름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따라 시행한 경우 생후 4주 이내 시행

2. 접촉자조사 대상자는 과거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1로 가세요    (2) 아니오    (3) 모름

2-1. 치료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진단 및 치료 받았는지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치료시기 :                            / 치료기관                            / 치료기간 :            개월 /

완치 여부 :  완치  중단  모름

※ 예 : 치료시기 : 0000년 00월 / 치료기관 : 00시 00구 00보건소, 또는 00대학병원 등/치료기간 : 9개월 등의 개월 수로 기록 / 완치 여부 : 해당되는 항목에 ‘V’ 표



8. 켈로이드 체질인가요?

(1) 예      (2) 아니오



\* 켈로이드란 피부 손상 후 발생하는 상처 치유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섬유조직이 밀집되게 성장하는 질환으로 본래 상처나 염증 발생부위의 크기를 넘어서 주변으로 자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 \_\_\_\_\_ 소속: \_\_\_\_\_ 접촉자 이름: \_\_\_\_\_

<서식 59> 접촉자조사 설문지(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용) 예시

### 접촉자조사 설문지(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용)

안녕하십니까? 최근 결핵환자 발생으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정확한 검사를 통한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몇 가지 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개인 및 기관의 선택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기관을 통해 제공받았으며, 검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수집된 정보는 결핵예방관리사업 및 통계에서 활용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예방교육, 상담,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사업 평가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소속기관정보, 직군) 및 민감정보(사전 문진 정보, 접촉자조사 내용 및 검사 결과)
-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 수집 근거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1. 접촉자조사 대상자는 과거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 (1) 예 → 1-1로 가세요      (2) 아니오      (3) 모름

1-1. 치료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진단 및 치료 받았는지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치료시기 :                      / 치료기관                      / 치료기간 :              개월 /

완치 여부 :  완치  중단  모름

※ 예 : 치료시기 : 0000년 00월 / 치료기관 : 00시 00구 00보건소, 또는 00대학병원 등/치료기간 : 9개월 등의 개월 수로 기록 / 완치 여부 : 해당되는 항목에 ‘V’ 표

2. 접촉자조사 대상자는 과거에 ‘잠복결핵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1로 가세요      (2) 아니오      (3) 모름

2-1. 진단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진단 및 치료 받았는지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치료시기 :                      / 치료기관                      / 치료기간 :              개월 /

완치 여부 :  완치  중단  모름



<서식 60> 접촉자 설문조사 결과서 (예시)

접촉자 설문조사 결과서 (예시)

1. 기관구분

기관명		총 대상자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미실시	
기관담당자		연락처	

2. 설문조사 결과

1) BCG 미접종자 및 1세 이후 접종자 : 총   명

명단번호	신분	학년/소속	반/생활관	번호/분과	이름	접종 여부	접종시기
○	학생	○	○	○	○○○		
○○	교직원				○○○		

2) 과거력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 총   명

명단번호	신분	학년/소속	반/생활관	번호/분과	이름	과거 진단 정보				
						진단명	시기	기관	치료기간	완치/완료 여부
○	학생	○	○	○	○○○					
○○	교직원				○○○					

3) 가족력 : 총   명

명단번호	신분	학년/소속	반/생활관	번호/분과	이름	수검자와 관계	진단시기	완치 여부
○	학생	○	○	○	○○○			
○○	교직원				○○○			

4) 기타사항 (기저질환, 생백신 접종 여부 주사공포증, 켈로이드 등) : 총   명



<서식 61>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대상자) 예시

##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기관에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발견되지 않은 추가결핵환자를 찾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잠복결핵감염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결핵환자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결핵이란?

전염성 있는 결핵환자의 대화, 기침, 재채기, 노래 등에 의해 공기 중으로 나온 결핵균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하여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결핵은 폐와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폐결핵’이 대부분(80~90%)을 차지합니다. 환자가 항결핵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 약 2주가 지나면 일반적으로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항결핵제를 6~9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 2. 결핵의 증상은?

결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및 가래, 미열, 체중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흉통, 호흡곤란 등입니다. 기침은 결핵뿐만 아니라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이어서 간과하기 쉬우나, 2주 이상 기침을 한다면 결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병원 및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 3.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모두 결핵환자가 되나요?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결과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약 30%가 결핵균에 감염되고, 감염된 사람 중 90%는 잠복결핵감염 상태를 유지하며, 약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4.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이 몸 안에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흉부 X선 검사 정상이고 결핵 증상이 없음)를 말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을 전파시키지 않습니다.

### 5. 결핵 접촉자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결핵은 법정 제3군감염병으로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 밀폐된 생활 공간(교실 등)을

공유하므로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들이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집단 내 추가 결핵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촉자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 결핵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 결핵예방법 제 10조(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 6. 조사 대상자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 (1) 결핵 검사: 흉부 X선 검사
- (2) 잠복결핵감염 검사: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 7. 흉부 X선 검사는 왜 하나요?

흉부 X선 검사는 결핵을 진단하기 위한 첫 번째 검사입니다.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이 의심되면 가래(객담)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 정상이면 결핵환자가 아닙니다.

## 8.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는 무엇인가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는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검사시약을 피부에 주사하여 결핵균에 대한 면역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입니다. 검사시약 주사 후 48~72시간이 지난 후에 경결의 크기를 자로 측정하여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검사 후 주의사항

1. 검사를 시행한 부위는 시행 직후 문지르거나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2. 검사를 시행한 부위는 판독(진찰)할 때까지 긁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하고 로션, 크림, 약 등을 바르거나, 1회용 반창고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샤워는 평소 대로 해도 무방하나 주사 부위를 문지르지 않도록 합니다.
4. 주사부위에 가려움, 통증,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사부위를 차가운 물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주으로써 불편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검사한 부위에 물집, 궤양, 과사, 소속 림프절 비대 등의 심한 반응이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포나 궤양은 마른거즈로 덮어둬으로써 긁는 것과 이차감염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00보건소(000-000-0000)로 연락해 주십시오.

### 9.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결과 양성이면 어떻게 하나요?

결핵균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태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합니다. 잠복 결핵감염자 중 결핵 발병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결핵 발병 확률이 높아 잠복 결핵감염 치료를 권고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에서 소아청소년은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면 모두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일정 안내 ]

	검사종류	검사일자
1	1차 흉부 X선 검사	0000.00.00.( ) 시간
2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0000.00.00.( ) 시간
3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판독	0000.00.00.( ) 시간
4	2차 흉부 X선 검사	0000.00.00.( ) 시간

※ 상기 일정 이후 실시되는 검사 일정은 추후 공지 드립니다.

결핵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보내드리오니 작성하셔서 기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기관에서도 검사 대상자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 보건실(☎ ) 또는 000 보건소(☎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기관장

이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귀하의 정보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제12조(결핵예방접종),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관리사업 및 통계에서 활용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식 61\_1>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주의사항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주의사항

### ■ 검사 후 주의사항

1. 검사를 시행한 부위는 시행 직후 문지르거나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2. 검사를 시행한 부위는 판독(진찰)할 때까지 긁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하고 로션, 크림, 약 등을 바르거나, 1회용 반창고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샤워는 평소대로 해도 무방하나 주사부위를 문지르지 않도록 합니다.
4. 주사부위에 가려움, 통증,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사부위를 차가운 물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줌으로써 불편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검사한 부위에 물집, 궤양, 괴사, 소속 림프절 비대 등의 심한 반응이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포나 궤양은 마른거즈로 덮어둠으로써 긁는 것과 이차감염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000보건소 (000-000-0000)로 연락해주시시오.

###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판독 방문일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는 검사시약을 주입한 후 48~72시간 사이에 나타나는 반응을 확인해야 하므로,     월    일    요일    시 에                      로 방문하셔서 판독 결과 확인 및 진찰 안내를 받으십시오.

000 보건소

##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기관에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발견되지 않은 추가 결핵환자를 찾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잠복결핵감염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결핵환자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결핵이란?

전염성 있는 결핵환자의 대화, 기침, 재채기, 노래 등에 의해 공기 중으로 나온 결핵균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하여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결핵은 폐와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폐결핵’이 대부분(80~90%)을 차지합니다. 환자가 항결핵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 약 2주가 지나면 일반적으로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항결핵제를 6~9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 2. 결핵의 증상은?

결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및 가래, 미열, 체중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흉통, 호흡곤란 등입니다. 기침은 결핵뿐만 아니라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이어서 간과하기 쉬우나, 2주 이상 기침을 한다면 결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병원 및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 3.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모두 결핵환자가 되나요?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결과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약 30%가 결핵균에 감염되고, 감염된 사람 중 90%는 잠복결핵감염 상태를 유지하며, 약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4.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이 몸 안에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흉부 X선 검사 정상이고 결핵 증상이 없음)를 말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을 전파시키지 않습니다.

### 5. 결핵 접촉자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결핵은 법정 제3군감염병으로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 밀폐된 생활 공간(교실 등)을 공유하므로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들이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집단 내 추가 결핵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촉자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 결핵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 결핵예방법 제 10조(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제19조(전염성결핵 환자 접촉자의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6. 조사 대상자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 (1) 결핵 검사: 흉부 X선 검사
- (2) 잠복결핵감염 검사: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7. 흉부 X선 검사는 왜 하나요?**

흉부 X선 검사는 결핵을 진단하기 위한 첫 번째 검사입니다.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이 의심 되면 가래(객담)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 정상이면 결핵환자가 아닙니다.

**8.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가 무엇인가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에 감염되었을 때 몸에서 분비되는 인터페론감마라는 물질을 측정함으로써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9.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결과 양성이면 어떻게 하나요?**

결핵균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태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합니다.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양성이면 최근 감염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 감염은 결핵이 발병할 확률이 접촉자가 아닌 경우보다 더 높으므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끝까지 받은 경우 결핵 발병을 약 60~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일 정 안 내 ]**

	검사종류	검사일자
1	1차 흉부 X선 검사	0000.00.00.( ) 시간
2	IGRA(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검사	0000.00.00.( ) 시간
3	2차 흉부 X선 검사	0000.00.00.( ) 시간

※ 상기 일정 이후 실시되는 검사 일정은 추후 공지 드립니다.

결핵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보내드리오니 작성하셔서 기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기관에서도 검사대상자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 보건실(☎ ) 또는 000 보건소(☎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기 관 장

이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귀하의 정보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제12조(결핵예방접종),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관리사업 및 통계에서 활용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식 63>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TST/IGRA 병합법) 예시

##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 - 검사 방법(TST/IGRA 병합법)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기관에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발견되지 않은 추가결핵환자를 찾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잠복결핵감염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결핵환자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결핵이란?

전염성 있는 결핵환자의 대화, 기침, 재채기, 노래 등에 의해 공기 중으로 나온 결핵균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하여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결핵은 폐와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폐결핵’이 대부분(80~90%)을 차지합니다. 환자가 항결핵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 약 2주가 지나면 일반적으로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항결핵제를 6~9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 2. 결핵의 증상은?

결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및 가래, 미열, 체중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흉통, 호흡곤란 등입니다. 기침은 결핵뿐만 아니라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이어서 간과하기 쉬우나, 2주 이상 기침을 한다면 결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병원 및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 3.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모두 결핵환자가 되나요?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결과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약 30%가 결핵균에 감염되고, 감염된 사람 중 90%는 잠복결핵감염 상태를 유지하며, 약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4.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이 몸 안에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흉부 X선 검사 정상이고 결핵 증상이 없음)를 말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을 전파시키지 않습니다.

### 5. 결핵 접촉자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결핵은 법정 제3군감염병으로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 밀폐된 생활 공간(교실 등)을

공유하므로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들이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집단 내 추가 결핵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촉자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 결핵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 결핵예방법 제 10조(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제19조(전염성결핵 환자 접촉자의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 6. 조사대상자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 (1) 결핵 검사: 흉부 X선 검사
- (2) 잠복결핵감염 검사: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및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 7. 흉부 X선 검사는 왜 하나요?

흉부 X선 검사는 결핵을 진단하기 위한 첫 번째 검사입니다.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이 의심되면 가래(객담)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 정상이면 결핵 환자가 아닙니다.

## 8.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는 무엇인가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는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검사시약을 피부에 주사하여 결핵균에 대한 면역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입니다. 검사시약 주사 후 48~72시간이 지난 후에 경결의 크기를 자로 측정하여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검사 후 주의사항

1. 검사를 시행한 부위는 시행 직후 문지르거나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2. 검사를 시행한 부위는 판독(진찰)할 때까지 긁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하고 로션, 크림, 약 등을 바르거나, 1회용 반창고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샤워는 평소 대로 해도 무방하나 주사 부위를 문지르지 않도록 합니다.
4. 주사부위에 가려움, 통증,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사부위를 차가운 물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줌으로써 불편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검사한 부위에 물집, 궤양, 괴사, 소속 림프절 비대 등의 심한 반응이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포나 궤양은 마른거즈로 덮어둠으로써 긁는 것과 이차감염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00보건소(000-000-0000)로 연락해 주십시오.



**9.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결과 양성이면 어떻게 하나요?**

결핵균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결과 양성인 조사 대상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시행하게 됩니다. 단,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결과 15mm 이상의 경결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핵균 감염의 강한 증거이므로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하지 않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10.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가 무엇인가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에 감염되었을 때 몸에서 분비되는 인터페론감마라는 물질을 측정함으로써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1.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결과 양성이면 어떻게 하나요?**

결핵균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태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합니다.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양성이면 최근 감염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 감염은 결핵이 발병할 확률이 접촉자가 아닌 경우보다 더 높으므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끝까지 받은 경우 결핵 발병을 약 60~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일 정 안 내 ]**

	검사 종류	검사 일자
1	1차 흉부 X선 검사	0000.00.00.( ) 시간
2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0000.00.00.( ) 시간
3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판독	0000.00.00.( ) 시간
4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검사	0000.00.00.( ) 시간

※ 상기 일정 이후 실시되는 검사 일정은 추후 공지 드립니다.

결핵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보내드리오니 작성하셔서 기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기관에서도 검사 대상자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택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 보건실(☎ ) 또는 000 보건소(☎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기 관 장

이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귀하의 정보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제12조(결핵예방접종),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관리사업 및 통계에서 활용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식 64>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흉부 X선 검사 대상자) 예시

###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흉부 X선 검사 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관 내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발견되지 않은 추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추가적인 결핵 전파가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결핵이란?

전염성 있는 결핵환자의 대화, 기침, 재채기, 노래 등에 의해 공기 중으로 나온 결핵균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하여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결핵은 폐와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폐결핵’이 대부분(80~90%)을 차지합니다. 환자가 항결핵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 약 2주가 지나면 일반적으로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항결핵제를 6~9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 2. 결핵의 증상은?

결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및 가래, 미열, 체중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흉통, 호흡곤란 등입니다. 기침은 결핵뿐만 아니라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이어서 간과하기 쉬우나, 2주 이상 기침을 한다면 결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병원 및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 3. 흉부 X선 검사는 왜 하나요?

흉부 X선 검사는 결핵을 진단하기 위한 첫 번째 검사입니다.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이 의심되면 가래(객담)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 정상이면 결핵환자가 아닙니다.

#### 4. 결핵 접촉자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결핵은 법정 제3군감염병으로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 밀폐된 생활 공간(교실 등)을 공유하므로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들이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집단 내 추가 결핵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촉자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 결핵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 결핵예방법 제 10조(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 일 정 안 내 ]

	검사 종류	검사 일자
1	흉부 X선 검사	0000.00.00.( ) 시간

※ 상기 일정 이후 실시되는 검사 일정은 추후 공지 드립니다.

결핵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본 기관에서도 검사 대상자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 보건실(☎ ) 또는 000 보건소(☎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기 관 장

이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귀하의 정보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제12조(결핵예방접종),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관리사업 및 통계에서 활용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식 65> 결핵역학조사 발생보고서

결핵역학조사 발생보고서

1. 지표환자 기본 정보							
신고일자		2014-01-15		보고일자		2014-01-19	
이름		김 질 본		주민번호		980224 - *****	
성별		남		나이		15	
주증상	기침	증상기간	2주	진단명		호흡기결핵	
도말검사	양성+	배양검사	검사중	약제 감수성검사	검사중	유전형지문 분석검사	의뢰
발견경로	유증상	신고경로	병의원	신고기관	서울○○병원		

2. 지표환자 소속 기관 정보							
기관구분 1		학교		기관구분 2		고등학교	
기관명		아이나고등학교					
기관주소		○○시 ○○구 ○○동 ○○길 11(아이나고등학교)					
학년	2	반	4	보건 담당자	이름	박오송	
기타구분				연락처	043-719-0000		

3. 지표환자 가족 정보					
순번	관계	성명	연령	성별	연락처

### 결핵역학조사 종료 보고서

#### 1. 조사 개요

1) 지표환자 신고일	
2) 지표환자 보고일	
3) 현장조사 형태	
4) 현장조사일	
5) 발생 개요	

#### 2. 조사 기관 정보

1) 기관 구분	
2) 기관명	
3) 기관 주소	
4) 기관 규모	
5) 기관 특징	

#### 3. 지표환자 정보

사례	환자명	성별 /나이	직업 구분	진단명	신고일	주증상 (기간)	가족력/ 과거력	흉부 X선 검사	결핵균검사		특 이 사 항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유전형 검사 유무	DNA TYPE
									도말	음성				
									PCR	음성				
									Xpert	양성				
									배양	양성				
									약제 감수성	감수성				

#### 4. 조사 범위

1)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 기간	
-------------------	--

5. 조사 결과

1) 수검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결핵: 총 수검대상자(            명 ) <input type="checkbox"/> 잠복결핵감염: 총 수검대상자(            명 )																																															
2) 결핵검진	<input type="checkbox"/> 검사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수검자:                    명 (                    %)																																															
	<input type="checkbox"/> 결과: ·미검:            명 ·정상:            명 ·결핵경증:            명 ·결핵중증:            명 ·의사결핵:            명 ·비활동성결핵:            명 ·기타:            명																																															
	<input type="checkbox"/> 기타사항:																																															
3) 잠복결핵감염검진																																																
검사 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검사일</th> <th rowspan="2">대상자</th> <th rowspan="2">수검자</th> <th colspan="3">결과</th> <th rowspan="2">잠복결핵 진단자수 (%)</th> <th rowspan="2">치료</th> </tr> <tr> <th>양성(P)</th> <th>음성(N)</th> <th>불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1차</td> <td>TST 1차</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 rowspan="4">명(%)</td> <td rowspan="4">대상: 명 동의: 명 거부: 명</td> </tr> <tr> <td>IGRA</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r> <tr> <td>TST 2차</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r> <tr> <td>Repeated IGRA</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r> </tbody> </table>										구분	검사일	대상자	수검자	결과			잠복결핵 진단자수 (%)	치료	양성(P)	음성(N)	불명	1차	TST 1차	명	명	명(%)	명(%)	명(%)	명(%)	대상: 명 동의: 명 거부: 명	IGRA	명	명	명(%)	명(%)	명(%)	TST 2차	명	명	명(%)	명(%)	명(%)	Repeated IGRA	명	명	명(%)	명(%)	명(%)
구분	검사일	대상자	수검자	결과			잠복결핵 진단자수 (%)	치료																																								
				양성(P)	음성(N)	불명																																										
1차	TST 1차	명	명	명(%)	명(%)	명(%)	명(%)	대상: 명 동의: 명 거부: 명																																								
	IGRA	명	명	명(%)	명(%)	명(%)																																										
	TST 2차	명	명	명(%)	명(%)	명(%)																																										
	Repeated IGRA	명	명	명(%)	명(%)	명(%)																																										
4) 추구검사																																																
흉부 X선 검사																																																
	검사일		수검자수		결과	미검	정상	결핵경증	결핵중증																																							
						의사결핵		비활동성결핵	기타																																							

6. 기타 사항

## [종료보고서 항목별 작성 요령]

### 1. 조사 개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상 지표환자의 신고일, 보고일, 현장조사 형태, 현장조사일을 기재합니다. 지표환자가 여러 명일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발생 개요는 현장조사 후 종료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추가된 내용에 대해 기술합니다.

### 2. 조사 기관 정보

- 현장조사서를 참조하여 조사 기관정보를 기재합니다.

### 3. 지표환자 정보

- 현장조사서를 참조하여 지표환자 정보를 기재하며 결핵균검사 중 약제감수성, 업무중사 일시제한 여부(기간), 유전형검사 의뢰 여부 및 DNA TYPE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 4. 조사 범위

- 지표환자 전염성 강도에 따른 전염성 추정 기간 상세 일자 및 기간을 표기합니다.
- 조사대상은 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를 나누어 작성하며 소속, 인원을 기입합니다.

### 5. 조사 결과

- 차수별로 조사결과 표를 작성합니다.
- 수검 대상자에 조사 대상자 중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각각 수검 대상자를 표기합니다.
- 결핵 검사 결과는 검사일, 실제 수검자 인원수를 기입하며, 검사 결과는 정상 및 결핵의심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결핵의심자 발생 시 상세 소속, 지표환자와의 관계 등 상세설명을 작성합니다.
- 잠복결핵감염검사는 검사 방법, 검사일, 실제 수검 인원수를 입력하며, 검사 결과는 양성/음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잠복결핵감염검사 치료는 양성자 중 치료 대상자 및 동의자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추구검사는 흉부 X선 검사일, 실제 수검 인원수, 검사 결과를 차수별로 작성합니다.

### 6. 기타사항

- 기관 역학조사 중 언론보도에 노출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상세히 기술합니다.

<서식 67> 소아청소년 접촉자 진료 의뢰서 예시(의료기관 공문발송용)

소아청소년 접촉자 진료 의뢰서(의료기관 공문 발송용)

1. 지표환자 소속 기관 정보									
기관구분 1		학교			기관구분 2		어린이집		
기관 규모		약 50평 규모에 80명 정원			기관 형태		예) 2층 유치원, 가정식 어린이집		
2. 지표환자 기본 정보									
신고일자		2018-01-15			진단명		폐결핵		
신분		예) 담임교사, 방과 후 교사, 차량 운전기사 등							
주증상		기침			증상 시작일(기간)		2018-01-03(2주)		
흉부 X선 (공동유무)	결핵의심 (공동유무)	도말검사	양성 (1+)	TB-PCR Xpert	양성 양성	배양검사	검사 중	약제감수성 검사	검사 중
접촉자조사 대상자의 접촉 강도				<input type="checkbox"/> 밀접 <input type="checkbox"/> 일상					
3. 의뢰기관(담당 보건소)									
관할 보건소		00시 00구 보건소			관할 보건소 담당자		이름	박오송	
							전화번호	000-000-0000	
4. 수신기관									
의료기관		○○○병원			진료과		소아청소년과		
					이름		전문의 ○○○		

-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신속한 검사 진행 및 즉시 결과 회신을 요청합니다.
- 결핵진료지침 및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른 검사, 진단 및 치료를 요청합니다.
- 사전에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협의된 검사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공 정보의 내용과 활용 범위: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결핵예방법」의 비밀준수의 의무에 따라, 결핵예방법에 따른 국가결핵관리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절대 제공·활용되지 않습니다.

제공처: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결핵관리사업 위탁수행기간 (단체검진의 경우 소속 기관에 검사 실시 여부만을 제공)

제공 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직업 등) 및 검진·치료정보(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결과 등)

활용 범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예방교육, 상담,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사업 평가

활용 근거: 결핵예방법 제6조(결핵통계사업),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식 68> 의료기관 결핵 접촉자조사서

## 의료기관 결핵 접촉자조사서

### 1. 조사자정보

기관명	00 대학병원	소속	000과	이름	000	연락처	00-000-0000
-----	---------	----	------	----	-----	-----	-------------

### 2. 환자 정보

기관명	00 대학병원	이름	000	성별/나이	여/28	주증상(기간)	기침(3주)
진단명	폐결핵	진단일	2017.1.5	입원일	해당 없음	업무중사 일시제한일	2017.1.5
접촉자조사 범위 선정 기간	2016.10.12.~ 2017.1.4		직종	간호사	근무부서	소화기내과 병동(A병동)	
발생 경위							

### 3. 접촉자 정보

구분	접촉시간	접촉자수	대상
밀접접촉자	4시간/주	10명	소화기 내과 A병동 간호사
일상접촉자	1시간/주	2명	소화기 내과 A병동 보조인력

### 4. 접촉자조사 계획

접촉자 구분	인원	검사 방법	검사 사유
소화기 내과 A병동 간호사	10	흉부 X선 검사, repeated IGRA	지표환자와 동일 부서 근무(인수인계 실시, 매주 conference 함께 참석)
소화기 내과 A병동 보조인력	2	흉부 X선 검사	지표환자와 동일 부서 근무

### 5. 접촉자 명단 서식

기관명	신분	소속	병동	호실	기타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접촉강도
00대학병원	2	**과	A		수간호사	이가나	123456-7890123	45	1
00대학병원	2	**과	A		간호사	김다라	123456-7890124	28	1
00대학병원	2	**과	A		간호사	최마바	123456-7890125	29	1
00대학병원	2	**과	A		간호사	김일변	223456-7890123	30	1
00대학병원	2	**과	A		간호사	박이변	223456-7890124	29	1
00대학병원	2	**과	A		간호사	최삼변	223456-7890125	30	1
00대학병원	2	**과	A		간호사	정일변	223456-7890125	38	1
00대학병원	4	**과	A		보조원	홍이변	223456-7890125	50	2
00대학병원	4	**과	A		보조원	주삼변	223456-7890125	48	2

\* 신분 : 1-의사, 2-간호사, 3-간호조무사, 4-방사선사, 5-임상병리사 6-물리치료사, 7-기타의료종사자, 8-환자, 9-기타의료기관종사자 \* 접촉강도 : 1-밀접, 2-일반

\* 접촉자 명단 서식은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작성하시어 붙임파일로 회신

### 6. 접촉자 조사 결과

기관명	이름	흉부 X선		TST		IGRA		최종진단
		초회	추구	1차	2차	초회	연속	정상/활동성결핵/잠복결핵감염
		18.1.9	18.4.3	..	..	18.1.9	18.3.16	
00대학병원	이가나	정상	결핵의심	-	-	1.478	-	활동성결핵
00대학병원	김다라	정상	정상	-	-	0.244	2.327	잠복결핵감염
00대학병원	최마바	정상	정상	-	-	0.123	0.133	정상

### 7.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결과

기관명	이름	과거력		키	몸무게	LTBI치료		LTBI 치료방법	치료시작일	치료 완료여부	퇴록일
		TB	LTBI			동의	거부				
00대학병원	김다라	없음	없음					3HR	2018.3.1	완료	2018.5.31
00대학병원	박이변	없음	없음					3HR	2018.3.1	중단/간기능이상	2018.4.1

\* LTBI치료방법 : 9H, 4R, 3HR

\* 치료완료여부 : 완료, 중단/비협조, 중단/간기능이상, 중단/피부이상, 중단/혈소판이상, 중단/기타, 미확인(전출 등)



<서식 70>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전원 협조 요청서(공문 발송용)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전원 협조 요청서(공문 발송용)**

1.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자 기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기관명			
키				몸무게			
흉부 X선 검사		검사일		결과			
잠복 결핵 감염 검사	<input type="checkbox"/> TST	1차 TST	실시일		2차 TST	실시일	
			결과	mm		결과	mm
	<input type="checkbox"/> IGRA	초회 IGRA	실시일		연속 IGRA	실시일	
			결과	IU/mL		결과	IU/mL
	<input type="checkbox"/> TST/ IGRA 병합	TST	실시일		IGRA	실시일	
			결과	mm		결과	IU/mL

2. 지표환자 기본 정보

신고일	'18.9.1.	진단명	폐결핵	약제감수성검사	검사 중
-----	----------	-----	-----	---------	------

3. 잠복결핵감염 치료 정보

치료 시작일	. . .	치료방법	9H ( ), 3HR ( ), 4R ( )
--------	-------	------	-------------------------

4. 전원사유

대상자에 대한 소견 (기저질환, 특이사항 등 기재)

※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 치료 관련 검사 결과지(치료 전·후) 등 첨부

우리 기관에서 치료 중인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 ○ 보 건 소

<서식 71>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집단시설 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																
집단시설명		시도		보건소		국적		등록번호		등록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키	cm	기저질환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					
							몸무게	kg	접촉강도	<input type="checkbox"/> 밀접 <input type="checkbox"/> 일상						
주소				연락처		보호자		성명		연락처		등록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기관구분/신분						과거력							<input type="checkbox"/> 중단 후 재등록			
비씨지				TST				IGRA ( <input type="checkbox"/> T-spot, <input type="checkbox"/> Quanti-feron )				치방법	<input type="checkbox"/> 9H			
접종		반흔		1차 검사일 년 월 일		2차 검사일 년 월 일		1차 검사일 년 월 일		2차 검사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4R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피내 <input type="checkbox"/> 경피),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mm		mm		<input type="checkbox"/> SFCs, <input type="checkbox"/> IU/mL		<input type="checkbox"/> SFCs, <input type="checkbox"/> IU/mL			<input type="checkbox"/> 3HR			
흉부 X-선 검사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지표 환자 약제 내성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1.H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2.R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3.H&R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4.기타( )				
간기능 및 혈소판	초회			추구												
				1차		2차		3차		4차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AST: ALT:		Bilirubin: BUN/Cr:		AST: ALT:		Bilirubin: BUN/Cr:		AST: ALT:		Bilirubin: BUN/Cr:		AST: ALT:			
PLT:			PLT:			PLT:			PLT:			PLT:				
투약예정일		투약일		INH		RIF		기타		수령자인		의사지시 및 관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퇴록사유: 1. 완료 ( 년 월 일) 2. 중단 ( 년 월 일) 3. 전출 ( 년 월 일, 보건소) 4. 이환(결핵환자) ( 년 월 일) 5. 기타																



<서식 72>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검진 결과보고

○ 시·도명(담당자/연락처)

구분	기숙사 설치 학교명 및 학교수	학교 현황						흉부 X선 검진 현황									비고	
		전체 학생 수(명)			대상인원 수(명) (입소자 수)			검진자 수(명)			유소견자 수(명)			*결핵환자 (최종진단결과 수(명))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0000 시 도	소계	8																
	중학교 계	2																
	고등학교 계	2																
	대학교 계	2																
	기타학교 계	2																
0000 보 건 소	중학교	00중학교																
	중학교	00중학교																
	고등학교	00고등학교																
	고등학교	00고등학교																
	대학교	00대학교																
	대학교	00대학교																
	기타학교	00학교																
	기타학교	00학교																

\* 결핵환자 수 : 결핵환자의 최종검진결과가 나오지 않은 대상자는 우측 비교란에 현재 추구검사 및 관리 진행 상태를 기재  
(예: 1명 객담검사 진행 중)





<서식 74> 잠복결핵감염 검진 안내문 (보건소→검진대상자)

## 잠복결핵감염 검진 안내문

<1/2>

### □ 잠복결핵감염이란?

-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업무 종사 일시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적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비교 >

구 분	잠복결핵감염	결핵
증상 유무	전혀 없음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전염성 여부	전혀 없음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 결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 하면 전염력이 소실됨
환자 여부	환자 아님	환자
신고 의무	해당 없음	법적 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및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 □ 잠복결핵감염의 진단과 치료

- ▶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의 감염 여부와 균의 활동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종 진단합니다.

#### 잠복결핵 검사방법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감염을 확인합니다.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면역세포를 자극한 후 분비되는 인터페론감마를 측정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Tuberculin Skin Test, TST)

결핵균 항원을 팔의 피부에 주사하여 결핵균 감염을 확인합니다.  
\*48-72시간 이내에, 피부에 부풀어 오르는 경결의 크기를 측정



- ▶ 잠복결핵감염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핵균 감염자의 약 10%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
- ▶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하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60~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1~2가지 항결핵제를 3~9개월간 복용합니다.

□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 ▶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전염병)입니다. 전염성 결핵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공기 중에 나와 있다가 다른 사람이 숨을 쉴 때 공기와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전염됩니다. 이 때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 결핵균은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발하게 증식하면서 결핵을 일으킵니다.
- ▶ 다음은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입니다.

➔ 생활 속 결핵예방수칙



2주 이상 기침 또는 가래가 지속되면  
결핵검사 받기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잠복결핵 및 결핵 검사 받기



올바른 기침예절을 꼭 실천하기

- 기침할 땐 휴지 또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 기침 후에는 30초 이상 손 씻기

결핵예방접종(BCG접종) 바로알기



BCG 접종은 소아의 중증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는 결핵이 평생동안 예방되지 않습니다.



##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귀하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정보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 ① 초 회 검 사 (실시일 : )

검사방법 및 결과  양성  음성  판독불가

TST ( )

IGRA (TBAg-Nil: Nil: TBAg: Mitogen: )

#### ② 추 가 검 사 (실시일 : ) \* 2단계 TST 또는 TST/IGRA병합검사 시 사용

검사방법 및 결과  양성  음성  판독불가

TST ( )

IGRA (TBAg-Nil: Nil: TBAg: Mitogen: )

### 흉부 X선 검사

검 사 일  
검 사 결 과

최종 진단  정상  잠복결핵감염  결핵

진료 소견

년 월 일

○ ○ ○ 보건소장

직인

<서식 77> 단체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기관용> (보건소→검진대상기관)

## 단체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기관용>

귀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인별 검사결과는 본인에게 개별 통보하며, 기관에는 아래 정보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상 기관:

검진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검진 기관:

수검자 수:

수검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수검일

단체 검진결과

기관명	수검자 수	양성자(양성률)

※ 잠복결핵감염자는 외부로 결핵균을 배출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으므로, 「결핵예방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업무 중사 일시제한, 취업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2조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잠복결핵 감염 치료는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60~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보건소장

<서식 78>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보건소→수검자 요청 시)

##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 수검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전화번호	

### 수검 정보

검진기관명 <sup>1)</sup>	검진일	YYYY/MM/DD
---------------------	-----	------------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위와 같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보건소장<sup>2)</sup>

직인

<서식 79> 잠복결핵감염 치료 안내문 (보건소→치료대상자)

## 잠복결핵감염 치료 안내문

(1/2)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우리 몸에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결핵의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를 권장하며 약제를 복용하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약 60-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매일 꾸준히 약을 복용하여야 합니다. 치료 중 부작용이 나타나면 약제 복용을 중단하고 즉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절차 및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 전 병력 확인 및 검사

- (병력확인) 담당의사가 치료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이나 복용 중인 약제를 확인합니다. 특히, 과거 간질환이나 간기능 이상, 간염력 등이 있는 경우 치료결정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담당의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검사)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료 전 혈액검사를 받게 됩니다. (간기능검사, 일반혈액검사, 신기능검사 등)

▶ 치료 방법과 주기적 검사

- (치료요법)



치료 요법	복용 기간 (횟수)	복용 주기
3개월 이소니아지드 + 리팜핀 (3HR)	3개월 ( 90회)	매일
4개월 리팜핀 (4R)	4개월 (120회)	매일
9개월 이소니아지드 (9H)	9개월 (270회)	매일

- (치료방법) 일반적으로 항결핵약제를 3~4개월(최대 9개월) 처방받아 복용하게 됩니다. 개인별 검사결과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치료요법을 담당의사가 결정하며, 약제는 일반적으로 1개월 분량으로 처방받습니다.
- (모니터링) 치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치료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 ▶ 치료 부작용

- 잠복결핵감염 치료제는 대부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증상이라도 나타낼 경우, 즉시 약제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기관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리팜핀을 드시는 경우 소변색이 붉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리팜핀의 대사과정에서 그 부산물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자연적인 과정으로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발생 가능한 부작용

약 제	부 작용
이소니아지드 (Isoniazid)	 손, 발 저림, 피부발진, 가려움증, 구역, 구토, 설사, 복통 황달(피부 또는 눈)
리팜핀 (Rifampin)	 피부발진, 가려움증, 독감 증상(고열, 오한,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 구역, 구토, 설사, 복통, 황달(피부 또는 눈)

※ 부작용 발생 시 연락처: 00000 보건소 (☎ 000-0000)

(반드시 연락 가능한 보건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안내)

## ※ 복용관련 주의사항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항결핵약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해진 복용시간에 복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하루 중 점심이나 저녁 식전에라도 복용하여 매일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리팜핀을 드시는 경우에는 고지방식사에 의해 약의 흡수가 억제될 수 있으므로 식사 30분 전 혹은 식사 2시간 후와 같이 공복 시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팜핀 이외의 항결핵약제를 드시는 경우라도 약물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작용이나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결핵약을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 80>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뢰서 (보건소→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뢰 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용**

**※ 참고 - 요양급여의뢰서**

-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 요양급여의뢰서는 무상으로 교부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 ①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단계 요양급여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5.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7.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④ 가입자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서식 81> 잠복결핵감염 치료 확인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용, 치료자 요청 시) (보건소→치료자)

## 잠복결핵감염 치료 확인서

### 치료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YYYY/MM/DD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전화번호	

### 치료 정보

치료기관명		담당의사명	
관리보건소명	YYYY/MM/DD	관리보건소 연 락 처	YYYY/MM/DD
치료시작일	YYYY/MM/DD	치료 종료 예정일	YYYY/MM/DD
치료 경과	<input type="checkbox"/> 치료 중 <input type="checkbox"/> 치료 완료 <input type="checkbox"/> 치료 중단(중단 사유 :            )		

년 월 일

○ ○ ○ 보 건 소 장



&lt;서식 82&gt;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														
시도	보건소				국적			등록번호		등록일자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키	cm	기저질환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				
					<input type="checkbox"/> 여	몸무게	kg							
주소			연락처		보호자			성명		등록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중단 후 재등록 <input type="checkbox"/> 전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락처						
직업					집단시설명			과거력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인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군인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객실승무원 <input type="checkbox"/> 이·미용업 <input type="checkbox"/> 식품접객업 <input type="checkbox"/> 선원(원양)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족력						
비씨지			TST			IGRA ( <input type="checkbox"/> T-spot, <input type="checkbox"/> Quanti-feron )						처방법		
접종		반흔	1차 검사일 년 월 일		2차 검사일 년 월 일		1차 검사일 년 월 일		2차 검사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피내 <input type="checkbox"/> 경피),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mm		mm		<input type="checkbox"/> SFCs, <input type="checkbox"/> IU/mL		<input type="checkbox"/> SFCs, <input type="checkbox"/> IU/mL					
흉부 X-선 검사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지표 환자 약제 내성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1.H 2.R 3.H&R 4.기타( )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타질환 <input type="checkbox"/> 판독불능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타질환 <input type="checkbox"/> 판독불능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타질환 <input type="checkbox"/> 판독불능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결핵 <input type="checkbox"/> 타질환 <input type="checkbox"/> 판독불능							
간기능 및 혈소판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AST:		Bilirubin:		AST:		Bilirubin:		AST:		Bilirubin:		
		ALT:		BUN/Cr:		ALT:		BUN/Cr:		ALT:		BUN/Cr:		
		PLT:		PLT:		PLT:		PLT:		PLT:				
투약예정일		투약일		INH		RIF		Rpt		기타		수령자인 의사지시 및 관리사항		
. . .		. . .												
퇴록사유: 1. 완료( 년 월 일) 2. 중단( 년 월 일) 3. 전출( 년 월 일, 보건소) 4. 이환(결핵환자)( 년 월 일) 5. 기타														

<서식 83>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경증) 보고서 (보건소→질병관리본부)

##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경증) 보고서

년 월 일

대상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여)
	사업구분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	
잠복결핵감염 치료	치료시작일	(YY.MMDD)	치료요법	<input type="checkbox"/> 3HR	<input type="checkbox"/> 4R	<input type="checkbox"/> 9H
	치료중단일	(YY.MMDD)	투여용량	<input type="checkbox"/> INH mg	<input type="checkbox"/> RFP mg	
부작용 관련 정보	증상발현일	(YY.MMDD)	투약 시작 (즉시,            시간 /            일) 후에 발현			
	증상종료일	(YY.MMDD)	증상지속기간 (시간, 일, 주, 개월)			
	주 증상	<input type="checkbox"/> 발열	<input type="checkbox"/> 두통	<input type="checkbox"/> 전신 쇠약감		
		<input type="checkbox"/> 발진	<input type="checkbox"/> 소양감	<input type="checkbox"/> 복부 불쾌감		
	동반 증상	<input type="checkbox"/> 오심	<input type="checkbox"/> 구토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간효소 수치 상승	<input type="checkbox"/> 황달	<input type="checkbox"/> 관절통/근육통		
		<input type="checkbox"/> 작열감/동통	<input type="checkbox"/> 신경과민/불안감	<input type="checkbox"/> 기타(증상:            )		
		<input type="checkbox"/> 발열	<input type="checkbox"/> 두통	<input type="checkbox"/> 전신 쇠약감		
<input type="checkbox"/> 발진	<input type="checkbox"/> 소양감	<input type="checkbox"/> 복부 불쾌감				
<input type="checkbox"/> 오심	<input type="checkbox"/> 구토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간효소 수치 상승	<input type="checkbox"/> 황달	<input type="checkbox"/> 관절통/근육통				
<input type="checkbox"/> 작열감/동통	<input type="checkbox"/> 신경과민/불안감	<input type="checkbox"/> 기타(증상:            )				
조치사항	① 투약 중단    ② 치료방법 변경(변경후 :            )    ③ 투약 지속					
현재상태	① 완전 회복    ② 회복 중    ③ 회복되지 않음    ④ 기타					
기타사항	(조치사항 기재: 예, 의료기관 전원 등)					
검사 구분	검 사 일	검 사 결 과				
치료전 검사	AST/ALT	/	PLT			
	Bilirubin		BUN/Cr	/		
	Hb/Hct	/	기타검사			
(치료시작후) 1차 추구검사	AST/ALT	/	PLT			
	Bilirubin		BUN/Cr	/		
	Hb/Hct	/	기타검사			
(치료시작후) 2차 추구검사	AST/ALT	/	PLT			
	Bilirubin		BUN/Cr	/		
	Hb/Hct	/	기타검사			

소속기관		담당자 연락처		진료의 성명	
------	--	---------	--	--------	--

XI  
부  
록

<서식 84>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중증) 보고서 (보건소→질병관리본부)

<b>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중증) 보고서</b>						
					년 월 일	
<b>① 대상자 정보</b>	학교·직장/소속기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별	
	사업구분		주민등록상 주소	(남, 여)		
	키/체중	cm kg	과거력		현재 앓고 있는 질병	
<b>② 잠복결핵감염 치료</b>	치료시작일	(YY.MM.DD)	치료요법	<input type="checkbox"/> 3HR	<input type="checkbox"/> 4R	<input type="checkbox"/> 9H
	치료중단일	(YY.MM.DD)	투여용량	<input type="checkbox"/> INH mg	<input type="checkbox"/> RFP mg	
<b>부작용 관련 정보</b>	증상발현일	(YY.MM.DD)	투약 시작 (즉시, 시간 / 일) 후에 발현			
	증상종료일	(YY.MM.DD)	증상지속기간 (시간, 일, 주, 개월)			
	주 증상	<input type="checkbox"/> 발열	<input type="checkbox"/> 두통	<input type="checkbox"/> 전신 쇠약감		
		<input type="checkbox"/> 발진	<input type="checkbox"/> 소양감	<input type="checkbox"/> 복부 불쾌감		
	동반 증상	<input type="checkbox"/> 오심	<input type="checkbox"/> 구토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간효소 수치 상승	<input type="checkbox"/> 황달	<input type="checkbox"/> 관절통/근육통		
		<input type="checkbox"/> 작열감/동통	<input type="checkbox"/> 신경과민/불안감	<input type="checkbox"/> 기타(증상: )		
		<input type="checkbox"/> 발열	<input type="checkbox"/> 두통	<input type="checkbox"/> 전신 쇠약감		
<input type="checkbox"/> 발진	<input type="checkbox"/> 소양감	<input type="checkbox"/> 복부 불쾌감				
<input type="checkbox"/> 오심	<input type="checkbox"/> 구토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간효소 수치 상승	<input type="checkbox"/> 황달	<input type="checkbox"/> 관절통/근육통				
<input type="checkbox"/> 작열감/동통	<input type="checkbox"/> 신경과민/불안감	<input type="checkbox"/> 기타(증상: )				
조치사항	① 투약 중단 ② 치료방법 변경(변경후: ) ③ 투약 지속					
현재상태	① 완전 회복 ② 회복 중 ③ 회복되지 않음 ④ 사망 ⑤ 기타					
기타사항	(조치사항 기재: 예, 중환자실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전원 등)					
입원기간	(YY.MM.DD) ~ (YY.MM.DD)					
<b>④ 기타약품 정보</b>	병용약품	(한약, 건강보조제 등 상세히 기재)				
	과거에 약제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 (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약제명 및 부작용 기재 )				
검사 구분	검 사 일	검사 결과				
치료전검사	AST/ALT	/	PLT			
	Bilirubin		BUN/Cr	/		
	Hb/Hct	/	기타검사			
(치료시작후)1차 추구검사	AST/ALT	/	PLT			
	Bilirubin		BUN/Cr	/		
	Hb/Hct	/	기타검사			
(치료시작후)2차 추구검사	AST/ALT	/	PLT			
	Bilirubin		BUN/Cr	/		
	Hb/Hct	/	기타검사			
<b>⑤ 최종결과</b>	①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		② 회복 되었으나 후유증-명시:			
	③ 사망-날짜(YY.MM.DD)		④ 모름			
* 추가 정보는 별지 사용하여 기재						
소속기관		담당자 연락처		진료의 성명		



<서식 86> 인수공통결핵 의심 시 발생 보고

인수공통결핵 의심 시 발생 보고

□ 발생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일(년/월/일)</li> <li>▶ 신고일(년/월/일)</li> <li>▶ 지표동물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류(축종 :      품종 :      )</li> <li>- 두수(사육 :      검사 :      양성판정 :      살처분/폐사 :      /      )</li> </ul> </li> <li>▶ 발생 경위</li> </ul>
---------------------------------------------------------------------------------------------------------------------------------------------------------------------------------------------------------------------------------------------------------------------------------------------------------

□ 발생시설

▶ 시설(농장)명/농장주명 :
▶ 소재지 :
▶ 총인원 :

□ 향후대책

검사 종류	검사 범위	검사 대상자(명)	검사에정일
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기타			





### 인수공통결핵 의심 시 역학조사 결과 보고

□ 발생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일(년/월/일)</li> <li>▶ 신고일(년/월/일)</li> <li>▶ 지표동물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류(축종 :      품종 :      )</li> <li>- 두수(사육 :      검사 :      양성판정 :      살처분/폐사 :      /      )</li> </ul> </li> <li>▶ 발생 경위</li> </ul>
---------------------------------------------------------------------------------------------------------------------------------------------------------------------------------------------------------------------------------------------------------------------------------------------------------

□ 발생시설

▶ 시설(농장)명/농장주명 :
▶ 소재지 :
▶ 총인원 :

□ 조치사항

검사 종류	검사 범위	검사 대상자(명)	검사 일
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기타			

□ 결과

구분	발견(명)	치료(명)	비고*
결핵			

\* 비고란에는 시설(농장)내 농장주, 직원별로 치료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향후계획

- ▶ 추구검사 일정

<서식 88> 000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상반기 집행실적 보고

000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상반기 집행실적 보고

(단위: 원, %)

구분	내역사업명 (세내역사업 포함)	예산액	상반기 교부액 (A)	현액 (변경 예산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비고 (시도담당자/ 부서연락처 기재)
시도명	소 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 상반기 교부액(A) :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도로 교부한 금액
- \* 현액(B) : 당초 교부금액에 대해 내역변경(조정)된 예산액
- \* 집행액(C) : 각 기관(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민간기관 등)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
- ※ 엑셀서식에 작성·보고(엑셀서식은 공문 요청 시 별도 송부함)



<서식 89> 000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

000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

(총괄, 엑셀양식 시트 1)

(단위: 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A-B)			이자 발생액	비고 (시도담당자/부서/ 연락처)
				계	이월액	불용액		
시 도 명								홍길동/보건정책과/ 02-123-0000

(내역사업별, 엑셀양식 시트 2)

(단위: 원, %)

구분	내역사업명 (세내역사업 포함)	예산액	교부액 (A)	현액* (변경예산액) (B)	집행액 (C)	집행 잔액 (A-C)	이자 발생액	집행률 (C/A)	비고 (시도담당자/ 부서/연락처)
시 도 명	소 계								
	000000								홍길동/보건 정책과/02-1 23-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현액 : 당초 교부금액에 대해 내역변경(조정)된 예산액, 시도별 전체 교부액과 현액 합계는 일치해야 함

※ 엑셀서식에 작성·보고(엑셀서식은 공문 요청 시 별도 송부함)



<서식 90> 보조사업 정산보고서(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보조사업명칭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a)	지자체부담금(b)	자기부담금(c)	합 계(d=a+b+c)	보조금비율(e=a÷d)

###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f)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i=f+h)	수익금		
	전기 이월액(g)	집행액 (h)		발생액 (j)	반환액 (k)	미반환액 (l=j-k)

당기분집행잔액 (m=d-f)	전기이월잔액 (n=g-h)	집행잔액 (o=m+n)	발생이자 (p)	차기 이월액(q)	반환대상액 (r=o+p+k-q)	보조금 반환액 (s=r×e)	자기부담금 반환액 (t=r-s)



###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홍길동	1,000,000	20x1.1월분 급여
	보수(01)	20x1.3.1	홍길동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	xxx,xxx	부산xxx 1박출장 숙박비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XI  
부  
록





<서식 91>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정내역

##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정내역

(엑셀양식 시트 1)

<변경고지>

(단위:원)

사업 년도	납부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납입 고지액	비고*	담당자	정정사유
				당초	정정	당초(A)	정정(B)	차액 (B-A)				
	시도명									변경고지		자세히 기재

\* 변경고지 : 당초 고지된 집행잔액에 대한 수정

<추가고지>

(단위:원)

사업 년도	납부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납입 고지액	비고*	담당자	정정사유
				당초	정정	당초(A)	정정(B)	차액 (B-A)				
	시도명									추가고지		자세히 기재

\* 추가고지 : 당초 고지된 집행잔액 납부 후 추가 집행잔액 발생

<신규고지>

(단위:원)

사업 년도	납부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납입 고지액	비고*	담당자	정정사유
				당초	정정	당초(A)	정정(B)	차액 (B-A)				
	시도명									신규고지		자세히 기재

\* 신규고지 : 집행잔액 최초 보고

(엑셀양식 시트 2)

<변경고지>

(단위:원)

사업 년도	납부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이자발생액			납입 고지액	비고*	담당자	정정사유
				당초	정정	당초(A)	정정(B)	차액 (B-A)				
	시도명											자세히 기재

\* 변경고지 : 당초 고지된 이자발생액에 대한 수정

<추가고지>

(단위:원)

사업 년도	납부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이자발생액			납입 고지액	비고*	담당자	정정사유
				당초	정정	당초(A)	정정(B)	차액 (B-A)				
	시도명											자세히 기재

\* 추가고지 : 당초 고지한 이자발생액 납부 후 추가 이자 발생

<신규고지>-연구비 카드 캐쉬백

(단위:원)

사업 년도	납부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이자발생액			납입 고지액	비고*	담당자	정정사유
				당초	정정	당초(A)	정정(B)	차액 (B-A)				
	시도명											자세히 기재

\* 신규고지 : 캐쉬백 최초 보고



(엑셀양식 시트 3)

<내역사업별 집행액>

(단위: 원, %)

구분	내역사업명 (세내역사업 포함)	예산액	교부액 (A)	현액* (변경예산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비고 (시도담당자/ 부서/연락처)
시 도 명	소 계						
	000000						홍길동/ 보건정책과/ 02-123-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현액 : 당초 교부금액에 대해 내역변경(조정)된 예산액

※ 엑셀서식에 작성·보고(엑셀서식은 공문 요청 시 별도 송부함)





<서식 92> 간병비 지원신청서[환자→보건소]

간병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_____ . _____ . _____ (□남 □여)
	관계	<input type="checkbox"/> 환자본인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입원기간		20 . . . ~ 20 . . .		(총 일간)	
간병비 지원일수		20 . . . ~ 20 . . .		(총 일간)	
입원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예금주			입금은행		계좌번호
지원 금액		총 원		_____ 원(1일 단가) _____ 일	
구비 서류 확인 (지침의 해당 서류)		<input type="checkbox"/> 치매진단서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등록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장애진단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등(초본)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input type="checkbox"/> (공동)간병비용 청구서(간병인/간병단체) <input type="checkbox"/> (공동)입금통장 사본			
본인은 위와 같이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_____ 보건소장 귀하
▶ 신청인 : 주민등록등(초)본에 등재되지 않은 환자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간병비 청구서 증빙 필수(관인날인): 일일 단가 15만원 초과 시에는 15만원까지 지원 가능(차액은 본인 부담)					

XI  
부  
록









## 결핵 검진 사업 참여 수요조사서

시도	시군구	읍면리	총 검진인원 <sup>1)</sup> (A)	'20년 검진 대상자				우선 검진 대상자 외 검진 대상자 <sup>4)</sup> (C)
				'20년 검진 대상자 소계 <sup>2)</sup> (B)	의료급여수 급권자 (1)	재가와상노인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재가와상노인 <sup>3)</sup> (3)	
총 계								
000도	소 계							
	00시							
	00군							
	00구							

1) 총 검진인원(A) = 우선검진대상자 소계(B) + 우선검진 대상자 외 검진대상자(C)

2) '20년 검진 대상자 소계(B) = 의료급여수급권자(1) + 재가와상노인(2) + 의료급여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3)

3) 의료급여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노인 장기요양급여 3·4·5등급 판정자

4) 우선검진 대상자 외 검진대상자 :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건강검진 미수검자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 노인

## 검진 일정 보고서

□ 0000시·도 검진 일정

검진지역		검진일	시간	검진장소
00시·군·구	00동			
	00읍			
	00면			
	00리			
00시·군·구	00동			
	00읍			
	00면			
	00리			
00시·군·구	00동			
	00읍			
	00면			
	00리			
00시·군·구	00동			
	00읍			



- 결핵 검진 안내문 -

주민 여러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시·군·구 보건소장입니다.

결핵은 기침, 대화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결핵이 쉽게 생길 수 있지만, 기침 등 결핵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결핵을 빨리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빨리 발견·치료하고자 합니다.

○○ 기관에서 직접 방문해 결핵검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검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0년 ○월 ○일 (○시 ○분 ~ ○시 ○분까지)
- 검진항목 : 흉부엑스선검사(결핵 및 각종 폐질환) 등
- 대 상 자 : (검진사업 운영 현황에 따른 검진 대상자 명시)
- 준 비 물 : 신분증 지참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장소(시설명) : ○○○

※ 식사여부와 관계없으니,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시·군·구 보건소장





## 가족접촉자 명단 변경 요청서(예시)

최초 조사자	이병원	연락처	010-123-4567
--------	-----	-----	--------------

요청기관	가나다보건소	요청자	박오송
연락처	010-456-7890	요청날짜	2017.4.1

환자 신고 정보	성 명	신고번호	신고기관	신고 일자
	최일번	1234512345123451 234	결핵병원	2017.3.1

요청내용				
요청사항	접촉자 중 1명이 다른 환자의 접촉자인데 최일번의 접촉자로 오입력하여 삭제 요청			
접촉자 정보	번호	성명(관계)	연령	수첩번호
	1	박이번(조부)	70	201701010000
	2	김삼번(처)	50	201701011001
	3	최사번(자녀)	20	201701011002
변경 요청 사유	1. 박이번 : 최일번님의 사례조사에 박이번의 접촉자를 잘못 입력하여 박이번 접촉자가 최일번과 박이번 사례조사서에 중복 입력되어 있음			
증빙서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화면 캡처 등			

<서식 101> 결핵역학조사 중점사례 보고서

## 결핵역학조사 중점사례 보고서

### 1. 발생 개요

<p>&lt;지표환자 정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 신고일, 발견 경로, 결핵 검사 결과, 치료시작일, 내성여부 등</li> <li>- 과거 결핵 발병 여부, 과거 검진 이력 등</li> <li>- 국적, 직업정보, 근무기간 등</li> </ul>												
----------------------------------------------------------------------------------------------------------------------------------------------------------------------------------	--	--	--	--	--	--	--	--	--	--	--	--

구분	신고일	성별/나이	신분	발견 경로	결핵 과거력	진단명	주증상	흉부X선 공동	도말	TB-PCR (Xpert)	배양	기타
지표	'19.11.1	남/50	교사	검진	무	폐결핵	기침,가래 ('19.10.11~)	유	양성	양성	양성	'17년부터 근무
추가	'19.11.10	여/15	학생	접촉자 조사	무	폐결핵	무	무	음성	음성	검사중	'17년 학생 검진 정상

### 2. 그간의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조사 일시</li> <li>- 기관 현황 : 학생 500명, 교직원 50명</li> <li>- 접촉자 범위 : 총 280명(학생 250명, 교직원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담당 학급 학생, 동일 교무실 사용 및 회의 참석 교직원</li> </ul> </li> <li>- 결핵검사 : 280명 대상 흉부 X선 검사(11.3) 결과 추가환자 1명 발견</li> <li>- 1차 잠복결핵감염검사 : 280명 대상 IGRA검사(11.4) 결과 20명 양성(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15명(6.0%), 교직원 5명(16.7%)</li> </ul> </li> </ul>
-------------------------------------------------------------------------------------------------------------------------------------------------------------------------------------------------------------------------------------------------------------------------------------------------------------------------------------------------------------------------------------------------------------------------------------------

### 3.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잠복결핵감염검사 일정</li> <li>- 추구 흉부X선 검사 일정</li> <li>- 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일정</li> <li>- 추가환자 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 확대 시행 등</li> </ul>
----------------------------------------------------------------------------------------------------------------------------------------------------------------

### 4. 기타 사항

## 2020 국가결핵관리지침

---

발행연월 : 2020년 1월

발행처 : 질병관리본부

발행인 : 정은경

편집인 : 박옥

편집 :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인쇄 :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43-232-2177)

---



# 2020 국가결핵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T. 043-719-7326, 7337

F. 043-719-7339

비매품/무료



ISBN 978-89-6838-764-7 (PDF)